

II. 손해배상청구사례

방송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진위에 대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청주지방법원 2003. 8. 22.자 판결 (2001가합2034)

대전고등법원 2004. 6. 17.자 판결 (2003나7034)

사실개요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004년 12월 17일 ○○지방경찰청 소속 형사 이○○외 19인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는 1심 주문을 그대로 인용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방송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그 방송 등의 자료가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일반 시청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기가 쉬운 반면에 그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방송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 일방적인 제보가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

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고,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 훼손의 내용이 담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 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 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로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경찰인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MBC가 2001년 3월 25일 21:45 『취재파일 2580』 프로그램에 ‘마카오로 간 여인들’ 이란 제목의 기사를 방송하면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사채 폭력에 관련한 사건을 조작하여 사채폭력 피의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 혹은 폭행하였다”고 보도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1가합2034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1. 이 ○ ○
 2. 신 ○ ○
 3. 이 ○ ○
 4. 이 ○ ○
 5. 이 ○ ○
 6. 신 ○ ○
 7. 박 ○ ○
 8. 원 ○ ○
 9. 최 ○ ○
 10. 최 ○ ○
 11. 이 ○ ○
 12. 이 ○ ○

13. 신 ○ ○
14. 김 ○ ○
15. 이 ○ ○
16. 박 ○ ○
17. 조 ○ ○
18. 강 ○ ○
19. 나 ○ ○
20. 한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승 규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금 희

2. 오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주)문화방송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 우

담당변호사 최 정 환, 강 호 성, 손 석 봉

변론종결 : 2003. 7. 25.

판결선고 : 2003. 8. 22.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신○○에게 8,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1. 3. 25.부터 2003.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 '마카오 등지의 부녀매매 사건을 수사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 '시사매거진 2580'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정정보도문'을 통상 '시사매거진 2580'과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들이, 1/5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요일 21:00부터 22:00까지 사이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다음 인용부 안에 기재된 내용을 구술로 방송하되, 그 중 4개의 문단을 각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하고 매 프레임을 각 30초간으로 하여 1회 방송하라.

“본 방송국은 2001. 3. 25. 21:45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정규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카오로 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의 사채 폭력에 관련한 사건 수사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내용은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의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여 사채폭력 피의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 혹은 폭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은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자들만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의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관련 참고인들에게 피해를 준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방송사는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왜곡된 보도로 말미암아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형사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 갑 11호증의 5(을 10호증과 같다), 갑 12호증의 7(갑 14호증의 14, 을 9호증과 같다), 갑 14호증의 2, 8(을 11호증과 같다), 10(을 12호증과 같다), 11, 12(을 27호증과 같다), 39(을 16호증과 같다), 40(을 17호증과 같다), 45(을 18호증과 같다), 48, 50(을 19호증과 같다), 51(을 21호증과 같다), 52, 을 3호증의 10, 11,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14호증의 49(을 20호증과 같다), 을 3호증의 4, 5, 9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12호증의 3(을 13호증과 같다), 4(을 23호증과 같다), 12(을 15호증과 같다), 갑 13호증의 6, 을 3호증의 3, 8의 각 기재 및 위 갑 14호증의 49, 을 3호증의 4, 5, 9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사채업자인 박○○의 부녀매매 등 사건 및 또 다른 사채업자인 김△△의 윤락 알선 등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하였던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고,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오○○는 2001. 3. 25. 21:45부터 22:30경 까지 사이에 방영된 피고 문화방송의 취재파일 2580(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담당 프로듀서(이하 피디라 한다)이다.

나. 원고들의 박○○의 부녀매매 등 사건 및 김△△의 윤락알선 등 피의사건의 수사 경위

(1) 장○○은 청주시내에서 여관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그 여관으로 가서 대가를 받고 윤락행위를 하는 속칭 전화발이로서 윤락업에 종사하던 중, 2000. 1. 중순경 박○○으로부터 14,000,000원을 고율의 이자로 차용하고 돈을 갚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빚을 갚기 어렵게 되자, 마카오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카오로 떠나기 위하여 2000. 4. 초순경 서울로 상경하였다.

박○○은 장○○이 자신의 돈을 갚지 아니한 채 마카오로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서울로 가서 장○○을 붙잡은 후, 김△△의 소개로 전주의 윤락업주에게 장○○을 넘기고, 윤락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2,400,000원을 받아 장○○의 박○○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였다.

(2) 한편 김△△은 1999.경 장○○에게 3,000,000원을 고율의 이자로 대여한 이후로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빌려준 사채를 변제 받기 위하여 장○○을 평택, 과주, 서울 역삼동 등의 윤락업주에게 소개시키기도 하였는데, 2000. 6.경 장○○으로부터 박○○의 강요로 일하게 된 전주의 윤락업소가 힘이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주의 윤락업주에게 박○○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일부를 갚고 남아 있던 20,000,000원을 장○○을 대신하여 변제한 후 장○○을 청주로 데려왔으나, 장○○이 빠른 시일 내에 그 돈을 갚지 못하자 장○○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과 함께 ‘마카오로 가서 돈을 벌어서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카오로 갈 것을 요구하여 오다가, 2000. 6. 30. 마카오의 한국인 브로커인 조○○을 통하여 장○○을 마카오로 보냈고, 장○○은 2000. 7. 1.부터 2000. 7. 24.까지 사이에 마카오 시내의 윤락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였다.

(3) 장○○은 마카오에서 돌아온 후 오히려 김△△에 대한 빚이 늘어 김△△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2000. 9. 16.경 청주 동부경찰서에 ‘김△△이 자신에게 사채를 고리로 빌려준 후 이를 갚게 하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하여 자신을 마카오의 윤락업소에 취업시켰다’는 내용으로 김△△을 신고하였다.

(4) 한편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의 원고들은 박○○이 약속다방이란 상호로 전화발이업소를 운영하며 윤락녀들을 상대로 고율의 사채를 빌려준 다음 윤락녀들이 채무

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미리 약정한 것과 다른 계산법으로 계산하여 갚을 것이 더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직폭력배들을 항시 주위에 가까이 둠으로써 윤락녀들을 겁을 먹게 한 다음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여 윤락녀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하던 중 장○○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2000. 9. 23.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서 박○○에 대한 부녀매매 등 사건에 관하여 장○○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는데(당시 원고 신○○은 장○○이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의 위치를 알지 못하므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인근에 있는 청구체육관 앞에서 장○○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다른 형사로 하여금 청구체육관 앞에서 장○○을 만나 그녀를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장○○은 ‘자신은 박○○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는데, 박○○이 2000. 4. 초순경 돈을 벌기 위하여 마카오로 떠나려는 자신을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붙잡아 전주의 윤락업주에게 넘기고 그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장○○의 박○○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후 2000. 6. 경 김△△이 전주의 윤락업주에게 전주의 윤락업주가 박○○에게 소개비로 준 금원 상당을 장○○을 대신하여 갚아주어 자신이 전주의 윤락업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5)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장○○의 피해진술 등을 기초로 하여 박○○을 구속시키자, 박○○의 측근인 김◇◇와 송○○ 등은 원고들의 박○○에 대한 수사에 혼선을 가져오게 할 목적으로 장○○에게, 실제로는 박○○이 장○○을 전주의 윤락업주에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김△△이 2000. 4. 말경 장○○을 전주 사창가에 팔아 넘겼고, 그 외에도 평택, 파주, 서울 역삼동, 심지어 마카오에 있는 윤락업소까지 팔아넘겼다’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술을 할 것을 사주하면서 장○○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 주면 박○○이 운영하던 약속다방을 장○○이 운영하도록 해 주고, 장○○의 김△△에 대한 빚도 결국 탕감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장○○을 설득하였고, 이에 장○○은 김◇◇와 송○○의 사주에 따라 2000. 10.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에 대한 윤락알선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6)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김△△에 대한 윤락알선 피의사건을 조사하던 중 청구 동부경찰서로부터 장○○이 진술한 2000. 9. 16.자 진술조서 사본을 교부받았는데 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술한 내용 중 ‘김△△이 장○○을 전주의 윤락업주에게 팔아 넘겼다’는 부분이, 장○○이 박○○의 부녀매매 등 사건에 관하여 2000. 9. 23.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서 진술했던 ‘박○○의 강요로 전주의 윤락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부분과 중복됨을 발견하자 장○○의 진술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더 자세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었는데, 이 사건의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주거지가 ○○이었으므로 이 사건을 ○○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

(7) 원고들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김△△에 대한 윤락알선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보강수사를 하기 위하여 장○○에게 수 차례 출석 요구하였으나, 장○○은 이에 불응하다가 2000. 11. 20.에야 ○○지방경찰서 기동수사대에 출석하였는데, 원고 신○○은 장○○이 위와 같이 전주 윤락업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진술 내용을 녹취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앞서 녹음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몸수색을 하였다.

장○○은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김△△이 자신을 전주와 마카오의 윤락업주에게 팔아 넘겼다' 라고 진술하다가, 원고 신○○이 장○○의 2000. 9. 16.자 진술과 2000. 9. 23.자 진술이 모순됨을 지적하며 진위 여부를 추궁하자, '전주 사창가로 자신을 팔아 넘긴 사람은 김△△이 아닌 박○○이고, 김△△은 평택 사창가와 마카오로 팔아 넘긴 것이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8) 장○○은 김◇◇ 등으로부터 박○○에 대한 부녀매매 등 사건의 공판에서 박○○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는 사주를 받고, 2001. 12. 12.부터 2001. 3. 20까지 세 차례의 박○○에 대한 부녀매매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위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서의 2000. 11. 20. 자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김△△의 강요에 의하여 박○○이 자신을 전주로 팔아 넘겼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박○○이 자신을 전주로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김△△이 무서워서 자신이 먼저 전주로 가겠다고 한 것이다. 김△△은 자신을 평택, 마카오 등지의 사창가에 팔아 넘겼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및 방송경위

(1) 피고들은 2001. 1. 중순경 장○○으로부터, '자신은 김△△으로부터 사채를 얻어 썼다가 빚을 갚지 못하여 평택과 파주, 서울, 전주 등지를 전전하다가 마카오까지 팔려갔고 이러한 사실을 ○○지방경찰청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사채업자인 김△△의 편을 들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는 내용 등의 사실확인서(을 1호증)를 모사전송으로 받았다.

(2) 피고들은 취재파일 2580 기획회의의 결과 위 제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취재파일 2580의 피디인 피고 오○○가 2001. 3. 16.부터 2001. 3. 21.까지 사이에 위 제보와 관련하여 장○○과 마카오 현지를 동행 취재하고, 평택, 파주의 윤락 업주들을 만나 김△△으로부터 장○○을 소개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취재하였다.

(3) 피고 오○○는 이러한 취재를 바탕으로 2001. 3. 21.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로 찾

아가 원고들을 취재하였는데, 취재 당시 원고들은 ‘사채업자 박○○이 장○○을 전주 윤락업주에게 넘기기도 다른 사채업자인 김△△에게 이러한 사실을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장○○을 사주하여 청주 동부경찰서에 허위로 김△△을 고소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충청리뷰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① 원고들의 조사 과정에서도 장○○이 전주 윤락업주에게 자신을 넘긴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② 원고 신○○은 장○○이 자신의 진술 내용을 녹취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녹음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몸수색을 하였을 뿐 장○○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③ 장○○과 함께 윤락녀로 고용되었던 김□□는 자신은 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구타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를 조사한 적이 없으며 김□□를 구타한 사실은 더더군다나 없고, ④ 장○○은 청주 동부경찰서에 김△△을 신고한 후 경찰의 조사도 받기 이전에 김△△의 강요로 사직동 커피숍에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형사 두 명을 사전에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장○○을 사전에 사직동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도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피고 오○○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해명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마카오로 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2001. 3. 25. 21:45부터 22:30까지 사이에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취재파일 2580’을 통하여 이를 방영하였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전체 내용은 별지 ‘마카오로 간 여인들’ 기재와 같다)

(1) 도입부분 : 고리사채를 빌려쓰다가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윤락업소에 팔려다니다가 마카오까지 팔려간 여인들이 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얽혀있는 사채업자와 포주·폭력배의 먹이사슬을 끊으려고 발버둥쳤지만 허사였고, 경찰 또한 자신들의 편이 아니었다.

(2) 마카오의 윤락업소 촬영 부분 : 사채업자 김△△으로부터 고리사채를 빌려 쓰다가 빛이 엄청나게 늘어난 장○○은 김△△에 의하여 국내의 윤락업소에 이리 저리 팔려 다니다가 마카오 현지의 한국인 브로커에게까지 넘겨져 마카오의 윤락업소에서 윤락 생활을 하게 되었다.

(3) 원고들의 수사 상황 및 원고 신○○의 인터뷰 장면 :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장○○은 김△△을 윤락알선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의 현판을 비추며), ○○경찰은 오히려 김△△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조사하기도 전에 사직동 커피숍에서 미리 장○○을 만났으며, 피해자인 장○○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몸수색을 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김□□를 사무실로 불러 구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를 하므로, ○○경찰을 믿을 수 없는 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다시 수사를 의뢰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한 달이 넘는 조사 결과 국제인신매매조직을 밝혀내었으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에 대한 사건은 다시 ○○지방경찰청에 이첩되었는데, 윤락알선을 한 김△△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다.

(4) 김△△에 대한 취재 부분 : 김△△은 장○○에게 평택, 마카오 등지의 윤락업소를 알선한 사실을 부인하나, 평택의 윤락업주는 김△△으로부터 장○○을 소개 받고 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5) 끝부분 : 고리사채가 노비문서가 돼서 외국에까지 팔려나간 장○○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경찰마저 불성실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바,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고리사채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후의 정황

(1) 장○○은 김△△에 대한 무고 및 박○○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위증 혐의로 청주지방법원에 2001고단1205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01. 8. 1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법원 2001노760호로 항소하여 2001. 10. 26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2) 피고 문화방송은 2001. 6. 3. 취재파일 2580에서 “마카오의 진실 - 나는 억울하다”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2001. 3. 25.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후 김△△에 대한 재수사는커녕 오히려 제보자를 무고 혐의로 구속시켰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2. 판 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정정보도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

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신○○의 성명이나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형사들인 원고들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신○○의 인터뷰 장면만을 내보내면서 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한 상태로 방송하였으나, 원고 신○○의 인터뷰 장면에서 ‘신○○/ 담당형사’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피고 오○○가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현판을 크게 비추고, 원고들을 ‘○○경찰’이라고 칭하였는바,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라도 장○○을 조사한 경찰들이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형사들인 원고들이고, 담당형사는 원고 신○○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피해자는 원고들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그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그 방송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들이 장○○으로부터 김△△의 윤락행위 알선 등에 관한 사건 신고를 받고서도 김△△으로부터 장○○을 미리 만날 것을 부탁받고 사건을 조사하기 전 사직동 커피숍에서 장○○을 만났고, 피해자인 장○○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몸수색을 하였으며, 또한 사건과 관련 없는 장○○의 친구 김□□를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사무실로 불러 다리를 걷어차는 등 구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객관적인 사실로서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나 충분히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취재 대상은 담당 형사인 원고 신○○ 개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경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현판을 크게 비추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인상은 단지 원고 신○○ 개인이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전체가 그러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한 피고 오○○ 및 피고 오○○의 사용자의

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으로써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경찰인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나) 공공성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방송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제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진실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원고들 중 일부가 김△△의 청탁을 받고 김△△의 윤락알선 혐의 등에 관하여 장○○을 조사하기도 전에 사전에 사직동 커피숍에서 장○○을 만나는 등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김△△의 윤락알선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씨 김△△을 비호하였으며, ② 수사과정 중 피해자인 장○○이 원고 신○○으로부터 성추행에 가까운 몸수색을 당하였고, ③ 사건과 관계없는 장○○의 친구 김□□도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사무실로 불려와 원고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구타를 당한 것은 진실이고, 일부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1) 위 ①, ②, ③의 각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2호증의 3, 12, 갑 13호증의 6, 을 1호증, 을 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을 3호증의 4, 5, 9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들이 위 ①, ②, ③의 각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방송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그 방송 등의 자료가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등 각 참조),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일반 시청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방송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 일방적인 제보가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고,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 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을 3호증의 1, 2, 3, 4, 5, 8, 9, 10, 11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 오○○는 김△△이 장○○을 평택의 윤락업소에 알선하였음을 평택 및 전주의 윤락업주나 마카오 현지 취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나, 피고 오○○나 피고 문화방송이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원고들과 관련된 위 ①, ②, ③의 각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위 ①, ②, ③의 각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의 내용과 범위

(1) 손해배상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배상액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어구, 방영 시점, 방영 시간,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후 피고들의 태도, 그 외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의 원고들의 특정 정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이 원고들의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피고 문화방송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 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8,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일인 2001. 3. 25.부터 피고들이 그 채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3. 8.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송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내용 및 방송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취재파일 2580’ 프로그램은 현재 그 명칭이 ‘시사매거진 2580’으로 변경되어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방영되고 있다)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 ‘마카오 등지의 부녀매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기동수사대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 ‘시사매거진 2580’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정정보도문’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 ‘시사매거진 2580’과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용 찬

판사 선 의 중

판사 황 중 연

〈별지 1〉 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1. 3. 25. 21:45 시사매거진 2580에서 “마카오로 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의 형사들이 사채업자에 의하여 마카오의 율락업소로 넘겨진 율락녀의 피해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를 비호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으며, 참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만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의 형사들이 사채업자를 비호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참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도로 말미암아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형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로, 위 판결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방송합니다. 끝.

2심 판결문

사 건 : 2003나7034 손해배상(기) 등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1. 이 ○ ○ 외 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승 규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긍 희
2. 오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주)문화방송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관 형, 황 찬 서, 양 흥 규,
임 창 혁, 이 기 영

제1심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03. 8. 22. 선고 2001가합2034 판결

변 론 종 결 : 2004. 5. 13.

판 결 선 고 : 2004. 6. 17.

- 주 문 :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요일 21:00부터 22:00까지 사이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다음 인용부 안에 기재된 내용을 구술로 방송하되, 그 중 4개의 문단을 각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하고 매 프레임을 각 30초간으로 하여 1회 방송하라.

“본 방송국은 2001. 3. 25. 21:45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정규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카

오로 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의 사채 폭력에 관련한 사건 수사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내용은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의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여 사채폭력 피의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 혹은 폭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은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자들만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의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관련 참고인들에게 피해를 준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방송사는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왜곡된 보도로 말미암아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형사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25.부터 2003.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 '마카오 등지의 부녀매매 사건을 수사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 '시사매거진 2580'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정정보도문'을 통상 '시사매거진 2580'과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라.

이 유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인 복

판사 정 일 연

판사 박 병 찬

□

변호사인 원고가 판검사에게 사건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중요한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2. 27.자 판결 (2000가합400)

서울고등법원 2004. 12. 21.자 판결 (2004나24047)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04년 12월 21일 '대전법조비리 관련 이○○ 변호사가 문화방송과 소속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1심 판결을 변경, "피고들은 원고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04년 2월 27일 "원고가 판사 또는 검사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적시에 대해 증인 서○○의 증언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수임장부에도 판사, 검사의 경우 그 비용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대검찰청 수사 결과 발표문에도 검사가 원고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점, 대법원 조사결과에도 원고의 수임장부에 사건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판사는 친지들의 의뢰를 받아 추천한 것일 뿐 금품을 수수하거나 법관의 직업윤리를 위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보도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라 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방송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덧붙여 "보도내용 중 비록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반영하여 보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원고와 이해 상반되는 당사자의 욕설, 모멸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방영한 것은 그 표현의 한계를 이탈하였고, 마치 원고가 주변 환경이나 수임료의 액수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 돈을 위해서라면 재판과 관련된 사

실관계를 왜곡하여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도덕한 변호사라는 인상을 주었고,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은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당초 방송의 보도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원고 개인 비리의 단순 폭로나 비난에 불과하여 보도내용의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하였다.

문화방송이 1999년 1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8회에 걸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과 1999년 2월 2일 「PD수첩」 프로그램중 ‘철저해부 이○○ 리스트’ 제목의 방송에서 ‘대전법조비리’ 관련 보도를 하면서 변호사인 원고가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판검사 및 변호사들에게도 사건 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였으며, 판검사에게 돈 또는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하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0가합400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긍 희

2. 윤 ○ ○

3. 홍 ○ ○

피고 2., 3.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이 돈 명, 김 창 국, 이 석 태, 김 형 태, 진 선 미, 이 정 희,

윤 영 환

변론종결 : 2004. 2. 13.

판결선고 : 2004. 2. 27

주 문 :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금 50,000,000원, 피고 윤○○, 홍○○은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2. 3.부터 2004. 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74.경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79. 11. 1.부터 검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92. 8. 5.경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사직한 다음, 대전 중구 선화동 및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다음부터는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윤○○, 홍○○은 피고 문화방송 소속 프로듀서들로서 이 사건 방송 당시 'PD수첩'의 제작진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보도 내용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피고 문화방송은 1999. 1. 7. 21:00경 'MBC 뉴스데스크(이하 뉴스데스크라 한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MBC TV에서 매일 21:00경 방송되고, 피고 문화방송 뉴스 프로그램 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 시청률도 높은 프로그램이다)에서 이른바 '대전 이○○ 변호사 수임장부 폭로'를 처음 보도한 이래 같은 해 2. 7.경까지 세칭 '대전 이○○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보도를 하였는데, 그 중 1999. 1. 7. 별지 제1방송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9. 별지 제2방송, 별지 제3방송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0. 별지 제4방송, 별지 제5방송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3. 별지 제6방송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4. 별지 제7방송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25. 별지 제8방송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각 방송하였다.(다음부터는 별지 제1 내지 8 방송을 이 사건 제1 내지 8방송이라 한다)

(2) PD수첩 프로그램

(가) 피고 문화방송은 1999. 2. 2. 22:55경부터 23:55경까지 'PD수첩 프로그램' (MBC TV에서 매주 화요일 22:55경부터 23:55경까지 방송되고, 피고 문화방송의 대표적인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다)을 통하여 "99연중기획 21세기의 조건 부패없는 사회"라는 기획물의 하나로 "철저해부 이○○ 리스트"라는 제목의 별지 제9방송과 같은 내용의 방송 보도를 하였는데, 피고 윤○○, 홍○○은 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방송을 진행하였다.

(나) 프로그램의 개요

위 PD수첩 프로그램은 먼저 도입부에서 원고의 수입장부가 언론에 공개되기까지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 원고에 대한 주위의 평판과 수입장부에 기재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아울러 원고의 비도덕적인 사건수입 사례와 불성실한 변론, 쌍방수입, 탈세의혹 등을 지적한 다음, 후반부에는 국회의원과 대학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위 전 관예우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언급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의 방송의 보도 경위

(1) 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 소속 서○○ 기자는 원고가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던 김○○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수입장부(컴퓨터 파일을 인쇄 또는 복사한 것임)를 넘겨받았는데, 그 당시 위 김○○의 설명을 들었고, 위 수입장부에 소개인으로 기재된 검찰, 법원 등 직원들의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는 취재원들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취재하였다. 그리고 위 대전문화방송 소속 고○○ 기자는 위 김○○의 사촌 형 등을 통해서 위 수입장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2) 피고 문화방송은 위 기자들의 위와 같은 자료 및 취재, 그리고 그 소속 기자들의 취재,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뉴스데스크 방송을 보도하였는데, 위 서○○을 비롯한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들이 이 사건 뉴스데스크 방송을 위하여 원고 및 대전 지역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직접 취재한 적은 없었다.

(3) 한편, 피고 윤○○, 홍○○은 위 PD수첩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의 수입장부에 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원고에 대한 비리 등을 제보해 온 취재원들 및 변호사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였으나 원고를 상대로 직접 취재한 적은 없었다.

라. 수입장부의 내용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원고의 수입장부에 '소개인' 항목이 기재된 인원은 총 379명, 사건은 총 1,137건이고, 그 중 '비용' 항목이 기재된 인원은 122명, 사건은 279건

이며, '비용' 항목의 총 합계는 1억 6,630만 원이다. 한편, '소개인' 항목이 기재된 379명과 '비용' 항목까지 기재된 122명의 직역은 다음 표와 같은데,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경우에는 비용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 검사장 | 검 사 | 판 사 | 검찰일반직 | 법원일반직 | 경찰관 | 교도관 | 변호사 | 일반인 |
|-----------|-----|-----|-----|-------|-------|-----|-----|-----|------|
| 소개인 항목 기재 | 5명 | 23명 | 6명 | 71명 | 13명 | 30명 | 5명 | 11명 | 215명 |
| 비용 항목 기재 | . | . | . | 46명 | 11명 | 21명 | 4명 | . | 40명 |

(일반인 중에는 전직 검찰 직원이 22명, 전직 법원 직원이 4명, 전직 경찰관이 5명 포함되어 있음)

마. 검찰 수사 결과

(1) 검찰의 1999. 1. 10.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MBC 제출 장부 및 추가 입수 장부의 분석 내용, 김○ 사무장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 검찰에서 원고를 소환 조사한 결과 원고는 검찰에서 MBC 제출 장부는 대체로 자신이 컴퓨터로 작성하고 디스켓으로 관리해 오다가 오래 전에 파기하여 현재 보관된 것은 없고, MBC 제출 장부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분량이 적고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장부 중 수입비 내역표로 보도된 자료는 자신이 미수금현황표로 작성, 관리해 오던 것이고, 미수금현황표 중 문제된 '비용' 항목은 김○ 사무장에게 활동비를 매일 수회에 걸쳐 지급하고, 사무장이 수입에 참여한 사건 실수령액의 15~20%를 활동비로 인정하여 비용으로 기재한 것으로 자신은 소개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소개비를 직접 지급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검찰의 1999. 1. 11.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판·검사들의 경우 직접 전화로 의뢰인을 알려 주거나 의뢰인들이 판·검사들의 소개를 받고 왔다고 하여 기재한 것이고,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검사들은 아는 사람이지만 돈을 준 적은 전혀 없으며 일부 판사는 자신과 사적인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검찰의 1999. 1. 12.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김○ 사무장의 자수 및 철야 조사내용과 원고에 대한 재소환 철야 조사, 원고가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제압수 수색, 압수 컴퓨터의 삭제 파일 복구 작업, 현 사무장 김○○ 소환 조사, 소득세 신고자료 입수 분석, 원고의 예금계좌를 추적 중이라는 내용, 김○ 사무장을 조사한 결과 공갈 혐의는 대체로 시인하고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자수하면서 사전 대비한 듯 철저히 부인하였다는 내용, 그 날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검찰의 1999. 1. 13.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원고가 1994. 1.경부터 1997. 7.경 까지 검찰 직원 등 107명으로부터 225회 사건을 알선받고, 사건 소개비 1억 2,950만 원을 교부하였고, 수사 사건 취급 경찰관 31명으로부터 44회 사건을 알선받고 직무에 관하여 2,2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그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 김○ 사무장도 폭력행위의 점 및 업무상 횡령의 점과 1994. 1.경부터 1997. 7.경 까지 사이에 검찰 직원 등 107명으로부터 225회 사건을 알선받고, 사건 소개비 1억 2,950만 원을 교부하였고, 수사 사건 취급 경찰관 31명으로부터 44회 사건을 알선받고 직무에 관하여 2,2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그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 압수 컴퓨터의 삭제 파일 복구 작업, 원고 및 원고의 가족, 사무원, 김○ 사무장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발부,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입수, 분석 등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검찰의 1999. 1. 14.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원고, 김○에 대한 구속 집행 사실과 함께 압수 컴퓨터 4대의 삭제 파일을 완전히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1993.경부터 1997.경까지의 사건 수입명세서(36매)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한 수입금액 내역이 적혀있고, 사건내역, 진행사항, 수입금액만 적혀 있을 뿐 문제 장부와 같이 '소개인', '비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복구된 파일은 모두 업무용 파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그 외에 관련자 본격 소환 조사 준비, 그 날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검찰의 1999. 1. 16.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검찰 직원 등 관련자 39명을 소환 조사하였다는 등 전날의 수사상황과 아울러 그 날의 수사계획, 그 다음날의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대검찰청의 1999. 2. 1.자 '대전 이○○ 변호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판·검사의 사건소개 부분 수사결과' 항목에 "판사, 검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 친지, 동향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소개해 준 것으로 밝혀졌음. 판사, 검사가 원고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는 내용(위 항목의 '소개 유형'란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소개 - 소개비를 받지 않았으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경우 2명 - 검사장 1명, 고검 검사 1명"이라는 내용이 있음)이, '판·검사 금품수수사건 수사결과' 항목에 "원고가 변호사로 개업한 1992. 8. 이후 발표 당시까지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 25명이 원고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검사장 1인은 10여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의 술접대를 받음),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판사 5명도 명절 떡값, 휴가비, 전

별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특별사무감사결과’ 항목에 “검사 및 일반적 간부가 소개한 사건, 외형상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으나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는 없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대법원의 조사 결과

한편, 대법원이 원고의 수입장부 및 검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수입장부에 사건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현직 법관 8인 중 2인이 원고를 변호사로 추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친지들의 의뢰를 받아 추천한 것일 뿐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법관의 직업윤리를 위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5인의 법관이 원고로부터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1999. 1. 29. 사무장인 김○ 등과 공모하여 검찰 직원, 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죄명은 변호사법 위반, 뇌물 공여죄)로 기소(대전지방법원 99고합37호)되었다가 2000. 2. 16. 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001. 2. 2.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0노117호)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2002. 3. 15. 상고심(대법원 2001도970호)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의 4, 6, 7, 8, 11, 갑 제6호증의 5, 12, 13, 14, 15, 18, 20, 21, 22, 23, 25, 26, 27, 28, 갑 제7호증의 1, 3, 4, 5, 8, 9, 10, 11, 12, 16, 17, 18, 19, 21,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5, 7 내지 46, 을 제6호증의 3, 4, 5, 6, 9, 11 내지 1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6 내지 11, 을 제20, 21, 22, 24, 25, 26, 27, 28, 30호증, 을 제32호증의 1, 2, 을 제33, 35호증, 을 제36, 37호증의 각 1, 2, 3, 을 제39, 40호증, 을 제4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서○○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여부

(1) 방송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방송 보도가 그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시청

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방송 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 방송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6방송은 원래 소장 청구원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03. 11. 14.자 소변경신청서에서 새로이 주장한 것으로, 이는 이전과는 전혀 별개의 방송 내용이므로 서로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추가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내지 8방송은 모두 피고 문화방송이 1999. 1. 7.경부터 같은해 2. 7.경까지 사이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세칭 ‘대전 이○○ 변호사 수입비리 사건’의 방송 보도들 중 일부이고, 또한 이 사건 제2, 6방송 보도의 주된 내용 역시 원고가 판, 검사들과 뒷거래를 하였다거나 또는 판, 검사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부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한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제2, 6방송 내용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청구원인을 추가한 것이 그 이전의 청구원인과 사이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개별 항목에 대한 판단

(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1) 이 사건 제1방송

원고는, 이 사건 제1방송이 i) 원고가 판, 검사들에게 사건 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였고, ii) 더구나 원고는 담당 검사에게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주고 원고가 수입한 사건의 피의자가 불구속되도록 하였으며, iii)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비밀장부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방송 내용 가운데 “이 사건 수입 비장부에는 검찰과 법원의 전·

현직 간부와 일반직원, 그리고 경찰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는 부분과 “비밀장부에 는 전·현직 판검사도 사건을 알선해 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는 부분 및 “변호사의 비 장부에 기록된 소개인은 현직인사 200여명을 포함해 줄잡아 300명을 웃돕니다. 이중에서 2/3는 판사나 검사를 포함해 법원과 검찰, 교도소 직원이고 나머지 1/3은 경찰입니다.”는 부분은 판·검사가 원고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었고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이 비밀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일 뿐 원고가 판·검사에게 사건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주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다음의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건을 알선해 주고 수 백만원의 받은 뒤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를 불구속 처리하기까지 했습니다.”는 보도 내용은 구속·불구속 처리의 최종적 권한이 판사 또는 검사에게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가운데 일부”가 판사 또는 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바로 다음에 “특히, 현직 판검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현직 고위 간부들까지 사건 알선에 관여한 것은 법조계가 이 사회의 마지막 개혁대상이라는 말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는 보도 내용이 이어지면서 이 사건 제1방송이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1방송의 주된 보도 취지는 판사 또는 검사까지도 사건 알선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한 것이고, 또한 일반 시청자들로서도 “수백만원을 받은 뒤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를 불구속처리까지 한 사람”이 바로 판사나 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 였다기보다는 경찰관이나 검찰직원 등 신병처리에 관여하는 공무원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방송이 원고가 판, 검사들에게 사건 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검사에게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주고 원고가 선임한 사건의 피의자가 불구속 되도록 하였다는 사실 및 그와 같은 사실이 비밀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방송

“이렇게 아래 위로 로비를 한 덕분에 이○○ 변호사는 맡은 사건을 의뢰인의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었고”라는 부분과 “상습도박혐의로 입건된 김씨는 자신이 원한대로 검찰에서 석방됐습니다. 사기혐의로 내사를 받던 차 모씨는 검찰에서 내사가 종결됐습니다. 사기혐 의의 이 모씨와 건축법 위반혐의의 조 모씨도 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내사종결 등으로 풀 려났습니다. …… 실제로 이 변호사는 개업한지 열 달만에 형사사건을 무려 332건이나 수 입했고 90%가 넘는 사건을 제 뜻대로 요리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전 지역의 검사와 판사들이 이 변호사와 어떤 형태로든 뒷거래를 했거나, 전관예우를 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는 부분(특히 ‘뒷거래’라는 표현)은 원고가 대전 지역의 검사와 판사에게 돈 또는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부당한 특혜를 받는 이익을 누렸음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3방송

‘벌써 축소’라는 표제 부분, “달아난 사무장이 MBC 취재진에게 비밀장부를 건네기에 앞서 만일의 불이익에 대비해 현직 판·검사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기록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라는 부분은 원고가 판·검사에게 사건 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제4방송

‘변호사간 거래도’라는 표제 부분, “이처럼 11명의 변호사들이 이 변호사에게 소개한 사건 의뢰인은 모두 100여명, 변호사들이 부장검사 출신인 이종기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맡겨주고 수임료는 사이좋게 나눠쓰는 내부거래가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는 부분은 단순히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임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사건 수임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제5방송

원고는, 이 사건 제5방송이 원고가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방송 내용에 “검찰은 또 일반직원은 검찰이 현직 54명을 포함해 84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 18명, 법원 18명 교도소 7명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확인 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소개비용이 적혀 있는 사람은 58명으로 전체의 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는 보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의 수임장부를 분석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도한 것뿐이고 또한 그 보도 내용 자체에도 소개비용이 적혀 있는 사람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의 보도내용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방송 내용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제6방송

“이번 수임 비리 사건은 전·현직 판·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경찰 직원들까지 개입했습니다. 모두가 공무원의 신분이면서도 업무상 알게 된 피의자들을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등 이 변호사의 실질적인 브로커 역할을 해왔습니다.”는 부분, “변호사 비리 뒤에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변호사와 결탁해 뒷돈을 챙겨온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는 부분은 원고가 판사 또는 검사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제7방송

‘파렴치한 사건 수임’이라는 표제 부분, “이○○ 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를 변호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는 부분, “착수금 500만원을 받은 이 변호사는 피고소인을 한 명씩 구속시킬 때마다 500만원을 받고 성공사례비로 천만원을 얹어 줄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구속은 물론 승소에 자신이 있다던 이○○ 변호사는 한 달 뒤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오히려 고소인측을 몰아붙였습니다. …… 김씨측은 뒤늦게 이 변호사가 피고소인들로부터 수임을 받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는 부분, “이 변호사는 한술 더 떠 뒤따른 민사소송에서는 같은 사무실의 변호사에게 김씨의 피고소인측 변론을 맡겼습니다. 지난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개설한 범조비리 시민고발 창구에는 이처럼 수임을 둘러싼 고발이 6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3은 이 변호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는 부분은 원고가 고소인 및 피고소인으로부터 동시에 사건을 수임하였고, 더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같은 사무실의 변호사에게 상대방측의 소송대리를 맡기기까지 하였으며, 이와 같은 원고에 대한 수임관련 고발이 시민단체에 대략 20여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8) 이 사건 제8방송

“이번 이○○ 변호사 사건에서 보듯 브로커를 통한 수임비리는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는 부분, “이처럼 연줄이나 브로커를 통해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것은 일반 시민이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라는 부분은 원고가 “브로커”를 통하여 사건을 수임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위 방송 내용 중 “브로커”의 의미는 사건 소개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건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PD수첩 프로그램

1) 브로커 고용과 관련된 주장

“이렇게 돌린 떡값이, 1,145만원, 특이한 것은 떡값이나 소개비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사무장도 소개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김씨는 사건을 직접 물어오는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입니다.”는 부분, 그 다음의 “우리가 아는 브로커는 외근 사무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사건을 물고 오는 거죠. 사건의 길목이 대개 경찰, 검찰 아닙니까, 경찰서에 가 갖고 검찰에 가 갖고 공무원들과 유착해서 사건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소개비 전달하는 거죠.”라는 변호사의 인터뷰 부분은 원고가 경찰이나 검찰에 가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즉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해왔고 더구나 원고가 고용한 사무장까지도 사건을 유치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판·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과 관련된 주장

“실제 이○○ 변호사도 판, 검사들과 술자리가 잦았던 것으로 대전 유흥가 일대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세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씩씩이도 화끈하고 매너도 좋아 이 바닥에서는 황태자 주윤발로 통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는 부분, 유흥업소 관계자라는 사람의 “이○○ 씨가 업소에 오면, 거기 종업원들이나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황제 대우를 받는다. 가령 유성의 어느 업소에서는 그 사람이 손님 좀 모시고 오면 간판 불 다 꺼놓고 안에서 문을 잠궈놓고 그 사람만 받던 업소도 있었다.”는 인터뷰 부분, “하루밤에 뿌리는 돈이 최고 얼마로 알려져 있습니까?”라고 물은뒤 “최고가 얼마 정도라야 7백에서 천은 자기가 5-6명 모시고 오면 그 정도(돈을) 뿌리고 간다.”라고 답변한 부분, “특이한 사실은 세 곳의 술집을 정해 두고 판사, 검사 그 밖의 사람들을 각기 다른 술집에서 접대했다고 합니다. 외관상으로 봐도 제일 화려해 보이는 업소가 주로 판, 검사들과 드나들었던 술집이라는 것입니다.”라는 부분, 유흥업소 관계자라는 사람의 “업소 세집이 A라는 집은 큰 집, B라는 집은 작은 집 그렇게 층차를 두고 하겠죠. 접대를...”라는 인터뷰 부분,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판, 검사들에 대한 향응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는 부분은, 원고가 대전 지역 유흥가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사치스러운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나아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판, 검사들에게 거액의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비도덕적인 사건 수임 또는 부당한 변론활동과 관련된 주장

가) 이 사건 방송 중 “대전지역 판, 검사들의 향응,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서 판결에 대한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파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 변호사는 무리한 사건 수임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의 비도덕적인 사건 수임을 취재했습니다.”는 멘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변호사가 제 재판에서 반대측인 피고인의 사건을 수임해서 지금까지 2년동안 저를 고생시키고 이○○ 변호사는 상대방을 죽이는 명수입니다.”는 임○○의 인터뷰 부분, “윤씨 역시 이 변호사와는 상대측에 섰던 사람입니다.”고 설명한 뒤 “변론조서를 내려 법원에 가서 이○○ 변호사와 마주쳤는데 나도 모르게 개××, 돈이라면 생사라도 죽이는 ×× 소리가 나오더라구”라는 윤○○의 인터뷰 부분, 그리고 김○○(건물 1/3지분권자)라는 사람의 “논리적으로 해도 맞지 않는데 그걸 맞는다고 판결을 내렸다면 판사가 아니면 이○○ 변호사가 거기서 부정한 짓을 했던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죠.”의 인터뷰 부분과 그 다음 이어지는 “김씨는 송사에서 지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전세보증금 1억4천5백만원이 그대로 빚이 되었습니다. 당장 짐들일 곳이 마땅치 않아 건물 한편에 쌓아둔 짐들은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는 부분, 다시 김○○(건물 1/3지분권자)라는 사람의 “속상해 가지고 여기 와보지를 못해요.”라는 인터뷰 부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처삼촌의 상대변호사도 이○○ 변호사였습니다. 김씨 가족은 현재 남이 버리고 간 판자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는 부분, “당장 돈 한푼이 아쉬운 형편이라 애들 엄마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일당 2만2천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 살 돈마저 없지만 그래도 김씨는 이○○라는 큰 장벽이 무너졌다는 한가닥 희망이 생겨 열심히 항소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는 부분은 원고가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을 망각한 채 비도덕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왔고, 또한 서민을 울리는 부당한 변론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위 임○○, 윤○○, 김○○의 소송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위와 같은 비도덕적인 사건 수임의 예를 잘 보여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인터뷰 내용은 대전 지역 법조에서의 원고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고 원고를 칭찬하는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면서 다투고 있지만, 위 보도 내용 서두에 “무리한 사건 수임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비도덕적인 사건 수임을 집중 취재”라는 멘트가 있고 또한 원고를 칭찬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다분히 냉소적인 표현(“국가적으로는 좋은 방법으로만 머리를 쓰고 처신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인재입니다.”)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 내용은 단순히 사건 관계자들의 원고에 대한 평가를 보도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비도덕적인 사건 수임과 부당한 변론활동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거나 재판진행중인 상대방의 일방적인 비난 등을 아무런 반론 없이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를 의도적으로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 도입부 부분에 원고 주장과 같이 “정말 판사님이 보기에요 (이 변호사는) 지나칠 정도라구요. 완전히, 그 오만방자라는 건... 검은 걸 흰 걸로 만들고, 흰 걸 검은 걸로 만들고... 너무 문제가 많아요.”라는 윤○○의 인터뷰 부분, “한 마디로, 구속으로 떨어진 것도 불구속으로 바꿔버리고, 그런 재주가 많았던 양반이죠.”라는 김○○의 인터뷰 부분, “현직에 있을 당시 이○○ 변호사의 별명이 팔색조였다고 합니다. 좀처럼 가늠하기 힘든 성격이라 붙여진 별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멘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원고의 수입장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원고에 대한 평가를 변호사 사무실 직원, 강○○ 변호사 등의 인터뷰와 함께 방영한 내용 중 일부이고, 또한 위 방영 부분에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게 된 근거나 이유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위 방영 부분이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평가를 위해 사용한 용어 자체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보도 내용에 위와 같은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의 모멸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슬롯머신사건 피의자가 부당하게 석방되도록 하였다는 주장

“과거 호텔에서 슬롯머신 오락실을 운영하던 서 모씨는 자신이야말로 전관예우의 희생자란 주장을 하며 저희 취재팀을 찾아왔습니다.”는 부분, 서○○라는 사람의 “검찰에 한 날 한 시에 세 곳이 구속되었는데 두 곳은 구속 연장까지 해서 수사중에 두 곳은 검사님이 구속취소 석방으로 아무런 사유 변경도 없이 석방시키더라구요.”라는 인터뷰 부분과 “검찰이 오락실 세 곳을 단속했는데 두 오락실은 구속 취소 석방을 하고 서씨 측만 구속 기소를 한 것입니다. 서씨의 주장은 그것이 다른 오락실의 변호사가 전관 변호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는 부분, 다시 서○○라는 사람의 “공평치 못하다고 봤죠. 같은 잘못이고 같은 조건인데 두 군데는 사유변경도 없다는데 석방시키고”라는 인터뷰 부분, “구속 취소된 서류인데요. 어디에도 구속 취소에 대한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는 부분, “구속 취소된 오락실의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그는 뜻밖에도 당시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변호사라는 사람의 “내가 검찰은 출입은 안 했어요. 그때는 아예 검사들하고 사이가 나쁘게 돼 가지고 누구한테 물

어쨌든, 형사사건이 있으면 ○○형한테 보냈다고, 그 뒤에는...”라는 부분은, 이○○ 변호사가 소위 전관예우를 받고 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인 원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수입한 사건의 피의자를 부당하게 불구속처리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5) 원고가 자신의 부도덕함을 시인하였다는 주장

“의정부 법조비리의 이○○ 변호사는 8개월의 실형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의 죄명에도 이 변호사법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에게 구속직전 남긴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1년 사느냐 2년 사느냐다’”라는 멘트 부분은 당시 원고 스스로도 징역 1년 또는 2년 정도의 복역을 각오할 정도로 많은 비리를 저질렀음을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위법성의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방송 보도로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공공성

이 사건 방송 내용은 모두 소위 법조계의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그 목적 또한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 진실성

1) 이 사건 제2방송

이 사건 제2방송은 원고가 대전 지역의 검사와 판사에게 돈 또는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수입한 사건에 대하여 부당한 특혜를 받는 이익을 누렸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증인 서○○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대검찰청의 1999. 2. 1.자 수사결과 발표문(갑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변호사로 개업한 1992. 8. 이후부터 발표 당시까지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 25명이 이○○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고, 또한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판사 5명이 명절 떡값, 휴가비,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대법원의 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서 특별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입한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보도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3방송

이 사건 제3방송은 원고가 판·검사에게 사건 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보도 내용이기도 하지만,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단순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 아닌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위 보도 내용의 주된 취지는 판, 검사들이 원고로 부터 사건 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위 사실 자체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그 정도의 암시나 의혹의 제기는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다) 이 사건 제4방송

이 사건 제4방송은 원고가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입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사건 수입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수입장부에 기재된 소개인 중 변호사가 11명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중 소개비가 기재된 변호사는 1명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서○○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6방송

이 사건 제6방송은 원고가 판사 또는 검사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증인 서○○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수임장부에도 판사, 검사의 경우 그 비용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대검찰청의 1999. 2. 1.자 수사결과 발표문에서도 판사, 검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 친지, 동향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소개해 준 것으로 밝혀졌고 판사, 검사가 원고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대법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수임장부에 사건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판사는 친지들의 의뢰를 받아 추천한 것일 뿐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법관의 직업윤리를 위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제7방송

이 사건 제7방송은 ① 원고가 고소인 및 피고소인으로부터 동시에 사건을 수임하였고, ② 더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같은 사무실의 변호사에게 피고소인측 변호를 맡기기까지 하였으며, ③ 또한 시민단체에 대략 20여건 정도의 고발이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인데, 갑 제7호증의 21,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가 1997.경 김△△를 상대로 형사 고소함에 있어 원고가 위 사건의 고소대리를 맡은 사실(위 사건은 1997. 4. 11.경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김○○가 1997.경 김△△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97가합1097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서○○ 변호사가 김△△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이후 서○○ 변호사가 사임하고 강○○ 변호사가 김△△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한편 원고의 수임장부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개설한 시민고발창고에 총 60건 정도의 범조비리와 관련된 고발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된 고발이 14건 정도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③의 사실은 그 주요 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한편,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서○○ 변호사가 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김△△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소인측인 김△△로부터도 사건을 수임하였다거나 또는 서○○ 변호사에게 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김△△의 소송대리를 맡도록 권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①, ②의 사실이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방송 보도에 관한 불기소결정문(을 제37호증의 3)에 언급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사안은, 위 김○○와 김△△ 사이의 분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1996.경 성○○, 김○○, 장○○, 김○○, 정○○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정○○으로부터 그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사건을 수임한 상태에서, 그 피고소인의 1인으로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김○○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합의를 진행시킨 다음 그를 위하여 변론을 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이로 인해 변호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갑 제6호증의 7 내지 10)}.

바) 이 사건 제8방송

이 사건 제8방송은 원고가 “브로커”를 활용하여 사건을 수임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기서 “브로커”라 함은 사건 소개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건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당시 원고와 사무장 김○은 검찰 직원 등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점, 이후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사건 유치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직접 고용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무장 등을 통해 사건 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해 온 이상 위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은 그 주요 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PD수첩 프로그램

가) 브로커 고용과 관련된 주장

위 방송 부분은 원고가 경찰이나 검찰에 가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즉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해 왔고 더구나 원고가 고용한 사무장도 사건을 유치하는 브로커 역할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인데,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수임장부에 기재된 ‘김○’은 사무장이 아닌 원고와 알고 지내던 변호사이고 그 비용란에도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을 제5호증의 16, 20, 을 제7, 26호증), 위 방송 내용의 “브로커”라 함은 반드시 사건 소개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널리 사건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위 방송 당시 원고와 사무장 김○은 경찰관

이나 검찰 직원 등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점, 이후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한 사실은 주요 부분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검사들에 대한 항응 제공과 관련된 주장

위 방송 부분은 원고가 사치스러운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나아가 자신이 수입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판, 검사들에게 거액의 항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인데, 을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유흥업소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 매출장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므로 보이고, 한편 위 방송 하루 전에 발표된 대검찰청의 1999. 2. 1.자 수사결과에도 당시 검사장 1명이 10여회에 걸쳐 100만원씩 도합 1,000만원 상당의 술대접을 받았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다) 비도덕적인 사건 수입 및 부당한 변론활동과 관련된 주장

위 방송 부분은 원고가 위 임○○, 윤○○, 김○○와 관련된 사건에서 보듯이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을 망각한 채 비도덕적으로 사건을 수입해 왔고, 또한 서민을 울리는 부당한 변론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21, 22호증, 을 제3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6, 갑 제7호증의 2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임○○(‘임○○’로 추측된다), 윤○○(누구인지 불분명하다)와 관련된 사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원고측의 반론을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비도덕적인 사건 수입과 부당한 변론을 일삼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그대로 방영한 사실, 또한 위 방송 당시에는 위 김○○(김○○)이 김○○(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8가합6101호로 제기한 청산금소송이 계속중인 상태였는데, 이후 1999. 8. 19. ‘원고(김○○)의 청구를 기각’ 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슬롯머신사건의 피의자가 부당하게 석방되도록 하였다는 주장

위 방송 부분은 소위 전관예우를 받고 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인 원고의 영향력으로 슬롯머신 사건에서 특정 피의자만이 불구속처리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인데, 피고들은 이○○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방송한 것이므로 위 사실은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변호사가 당시 슬롯머신사건의 피의자 중 한 사람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피의자가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 제7호증의 14, 을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 변호사가 위 PD수첩 취재진에게 “내가 검찰은 출입은 안 했어요. 그때는 아예 검사들하고 사이가 나쁘게 돼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형사사건이 있으면 ○○형한테 보냈다고, 그 뒤에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정식의 인터뷰 형식으로 취재한 것은 아니다), 위 대화 내용에 원고의 도움으로 슬롯머신사건의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피고들이 “그때는”의 의미를 슬롯머신사건 당시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더라면 위 슬롯머신사건은 원고가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로 믿을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가 자신의 부도덕함을 시인하였다는 주장

위 방송 부분은 원고 스스로도 징역 1년 또는 2년 정도의 복역을 각오할 정도로 많은 비리를 저질렀음을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인데, 피고들은 원고를 면회한 주○○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듣고 위와 같이 방송한 것이므로 위 사실은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재진이 주○○ 변호사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8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갑 제7호증의 10, 15(주광기 변호사 본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1년 또는 2년 이야기는 당시 대전 지역 변호사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중 이 사건 제2, 4, 6, 7방송과 PD수첩 프로그램 중 판·검사들에 대한 항응 제공, 비도덕적인 사건수입 및 부당한 변론활동, 슬롯머신 사건의 피

의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원고 스스로 자신의 부도덕함을 시인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위법성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보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각 방송의 제목과 내용 및 전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방송시점 및 방영시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문화방송이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 뉴스데스크 및 PD수첩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사회적 지위, 피고 윤○○, 홍○○의 관여 정도, 그리고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보도는 소위 법조계의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주된 기조였다고 할 것이나, PD수첩 프로그램은 원고의 수입비리, 향응 제공 등 원고 개인에 국한된 사항과 관련하여 상당한 시간이 할애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관하여 피고 문화방송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2,000만 원, PD수첩 프로그램에 관하여 피고 문화방송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3,000만 원, 피고 윤○○, 홍○○이 피고 문화방송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문화방송은 금 5,000만 원(2,000만 원 + 3,000만 원), 피고 윤○○, 홍○○은 피고 문화방송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1,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PD수첩 프로그램 방영일 다음날인 1999. 2.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2.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창 보

판사 이 유 형

판사 김 우 현

2심 판결문

사 건 : 2004나2404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이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이 공 희

2. 윤 ○ ○

3. 홍 ○ ○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김 형 태

제1심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2. 27. 선고 2000가합400 판결

변 론 종 결 : 2004. 11. 9.

판 결 선 고 : 2004. 12. 21.

주 문 :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70,000,000원, 피고 윤○○, 홍○○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000,000원 및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위 70,000,000원 중 50,000,000원과 피고 윤○○, 홍○○에 대한 위 40,000,000원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2. 3.부터 2004.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위 70,000,000원 중 20,000,000원과 피고 윤○○, 홍○○에 대한 위 40,000,000원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2. 3.부터 2004.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금원지급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가. 별지 제1기재 정정보도문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영되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21:00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시간부터 매일 프로그램 첫머리에 '대전 이○○ 변호사 사건 정정보도'라는 제목으로, 같은 프로그램 중 '간추린 뉴스'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청색 바탕에 흰색 자막으로 15일간 방영하며 진행자로 하여금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이를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별지 제2기재 정정보도문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영되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PD수첩 프로그램 첫머리에 '대전 이○○ 변호사 사건 정정보도'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은 크기의 글자로, 청색 바탕에 흰색 자막으로 방영하며 진행자로 하여금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이를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가, 나 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그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 소 취 지 :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5쪽 6행의 "비용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를 "비용란이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로, 제23쪽 5행의 "비용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을 "비용란이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었던"으로 정정하고, 제18, 19쪽 "다)" 항을 아래 2.항과 같이 바꾸고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며, 제28, 29쪽 "다. 소결론" 과 "3.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을 아래 3.항에서 새로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꿔 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 가운데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거나 재판진행 중인 상대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비난 등을 아무런 반론 없이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PD수첩 프로그램 중 “정말 판사님이 보기에도 (이 변호사는) 지나칠 정도라고요. 완전히, 그 오만방자라는 건... 검은 걸 흰 걸로 만들고, 흰 걸 검은 걸로 만들고... 너무 문제가 많아요.”라는 윤○○의 인터뷰 부분, “이○○ 변호사가 제 재판에서 반대측인 피고인의 사건을 수임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저를 고생시키고 이○○ 변호사는 상대방을 죽이는 명수입니다.”라는 임○○의 인터뷰 부분, “윤씨 역시 이 변호사와는 상대측에 섰던 사람입니다.”고 설명한 뒤 “변론조서를 내려 법원에 가서 이○○ 변호사와 마주쳤는데 나도 모르게 개××, 돈이라면 생사람도 죽이는 ×× 소리가 나오더라구”라는 윤○○의 인터뷰 부분, “현직에 있을 당시 이○○ 변호사의 별명이 팔색조였다고 합니다. 좀처럼 가늠하기 힘든 성격이라 붙여진 별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부분은 원고의 수임장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사건관계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고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방영하고자 한 것으로, 위 보도부분이 모멸적 언사를 사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방송사가 개인의 비위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비위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보도 내용에 포함되는 어휘, 표현 등을 신중하게 취사 선택하여 보도 대상의 인격이나 명예감정을 존중하여야 하고, 단지 시청자의 이목을 끌거나 시청율을 높이기 위하여 욕설,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 비유 등을 써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보도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사실로서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는 정당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원칙은 방송사가 제3자를 인터뷰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방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PD수첩의 보도내용 중 “이○○ 변호사는 상대방을 죽이는 명수입니다.”, “검은 걸 흰 걸로 만들고, 흰 걸 검은 걸로 만들고... 너무 문제가 많아요.”, “개××, 돈이라면 생사람도 죽이는 ×× 소리가 나오더라구”, “현직에 있을 당시 이○○ 변호사의 별명이 팔색조였다고 합니다.”라는 부분은 비록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반영하여 보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원고와 이해 상반되는 당사자의 욕설, 모멸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하여 그 표현의 한계를 이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원고가 주변환경이나 수임료의 액수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꾸면서

돈을 위해서라면 재판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도덕한 변호사라는 인상을 주었고,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은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당초 방송의 보도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원고 개인 비리의 단순 폭로나 비난에 불과하여 보도내용의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각 보도내용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3. 새로 쓰는 부분

【다. 소결론

그렇다면,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중 이 사건 제2, 4, 6, 7방송 및 PD수첩 프로그램 중 판·검사들에 대한 항응 제공, 비도덕적인 사건수입 및 부당한 변론활동, 슬롯머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원고 스스로 자신의 부도덕함을 시인하였다는 부분, 반대 당사자 등이 원고를 비난하는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방송한 부분은 모두 위법성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보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각 방송의 제목과 내용 및 전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방송시점 및 방영시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문화방송이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 뉴스데스크 및 PD수첩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사회적 지위, 그리고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보도는 소위 법조계의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주된 기초였다고 할 것이나, PD수첩 프로그램은 원고의 수입비리, 항응 제공 등 원고 개인에 국한된 사항과 관련하여 상당한 시간이 할애된 점, 시사고발을 주목적으로 PD저널리즘을 표방하는 PD수첩 프로그램의 성격과 위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프로듀서들인 피고 홍○○, 윤○○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관하여 피고 문화방송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만 원, PD수첩 프로그램에 관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4,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십에 이르러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써 별지 제1,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정신적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점, 이 사건 보

도의 내용 및 보도 후의 정황, 관련소송들의 진행경과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정정보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70,000,000원, 피고 윤○○, 홍○○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000,000원 및 제1심 인용금액인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위 70,000,000원 중 50,000,000원과 피고 윤○○, 홍○○에 대한 위 40,000,000원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PD수첩 프로그램 방영일 다음날인 1999. 2. 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4.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당심의 추가인용금액인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위 70,000,000원 중 20,000,000원과 피고 윤○○, 홍○○에 대한 위 40,000,000원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99. 2.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4.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금원 지급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김 대 응
판사 박 인 식

제1정정보도문

“대전 이○○ 변호사 사건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1999. 1. 7.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저녁 9시에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전 이○○ 변호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1) 이○○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판사, 검사들로부터 사건수임을 알선

받고 소개비를 지급하였고, (2)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를 불구속처리 받았으며, (3)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비밀장부가 발견되었고, (4) 대전지역 검사와 판사들이 이변호사와 어떤 형태로든 뒷거래를 하였거나 이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았으며, (5) 이○○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받고 소개비를 지급하였으며, (6) 이변호사가 사건브로커를 활용하여 소송사건을 수임하였고, (7)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을 동시에 사건수임하는 등 파렴치한 사건수임을 하였고, (8)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개설한 법조비리 시민고발 창구에는 수임을 둘러싼 고발이 6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3은 이 변호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변호사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판사, 검사들로부터 사건수임을 알선받고 소개비를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대전지역 판사와 검사들이 이변호사와 뒷거래를 하였거나 전관예우를 받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변호사가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지급하고 의뢰인을 불구속처리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뉴스데스크가 입수한 자료는 비밀장부가 아니라 이변호사 평상시 업무편의상 작성하는 메모지 형태의 미수금정산표와 일일미제 사건표였습니다.

이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사건수임을 알선받고 소개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변호사가 다른 사건브로커를 고용하거나 활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변호사가 고소인 피고소인을 함께 수임하는 등 파렴치한 사건수임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1999. 1. 8.부터 30.까지 개설한 시민고발창구에 방문 접수된 60건의 사례 중 이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이 14건이지만 시민연대의 분석에 의하면 그 중 2건은 근거 없는 법조불신에 해당하고, 상대변호를 원고가 맡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5건, 법조비리가 3건, 수임료반환이 3건, 불성실변호가 1건으로 분류되었으나 고발의 정당성은 확인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사실과 다른 뉴스보도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이○○ 변호사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뉴스데스크의 보도로 이○○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방송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제2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

원고의 활동 목표와 내용, 대외적인 성명 등을 통해 원고 스스로 밝힌 설립 배경과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기한 의혹이나 주장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자 판결 (2003가합35432)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언론개혁을 따르는 후보를 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노무현 정권의 친위세력 내지는 ‘관변, 어용단체’로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활동 목표와 내용, 원고가 대외적인 성명 등을 통해 원고 스스로 밝힌 설립 배경과 목적, 원고 소속의 저명인사의 구성 내용, 원고가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인의 면면, 그 밖에 통상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어떤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단체에 소속된 일반인들의 입장보다는 소속 저명인사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등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될 여지도 있는 점, 원고가 표명하고 있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의 이른바 개혁인사 당선운동에 있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의 정치적 입장에 견해를 같이하거나 그에 대하여 호의적인 정치인들에 대하여 지지활동을 하리라고 예상할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정치인에 대한 지지활동이나 낙선·낙천 운동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만큼 정치영역에서 일정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타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는 만큼 원고 스스로도 상당한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내용이 비록 원고를 노무현 정권 또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만을 편들기 위한 단체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정도의 의혹 제기나 주장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의 “피고가 오로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로 한나라당 부대변인이나 사무총장의 원고에 대한 발언을 일방적으로 인용,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기사에는 한나라당 당직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을 뿐이고 한나라당 소속의 당직자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은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발언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과도한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피고의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조선일보가 2003년 4월 3일자 A1면 『노대통령의 정치·언론개혁 따르는 후보 내년 총선거 지지할 것』, A6면 『“조선일보 보는 사람과는 결혼 안 하기 운동 벌이자”』, 2003년 4월 10일자 배달판 『국민의 힘은 노 친위대... 즉각 해체지시 내려야』, 2003년 4월 23일자 『‘국민의 힘’은 정권의 흉위병』 등의 제목하에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판 결 문

사 건 : 2003가합35432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4-1 신도빌딩 2층

대표자 이 ○ ○, 김 ○ ○, 심 ○ ○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4. 5. 12.

판결선고 : 2004. 5. 27.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A1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항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 또는 강제1호증의 1 내지 8, 강제2호증, 강제3호증의 1, 강제4호증의 1 내지 3, 강제6호증의 1 내지 3, 강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 정치의식을 고양하여 제도 및 의식 전반에 있어 정치개혁, 언론개혁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단체의 목적으로 표명하면서 2003. 2. 17. 정식 사이트(www.cybercorea.org)를 개설하였고, 2003. 2. 27. 원고 설립을 위한 준비단체인 추진위원회가 원고의 창립제안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후 2003. 4. 19.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단체로서 인터넷상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가입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며, 피고는 일간지 ‘조선일보’ 등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게재 전의 정황

(1) 원고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2003. 2. 27.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추진위원회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창립제안문’에서 언론개혁, 정치개혁, 국민통합 등을 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고 2004년에 있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바른 정치인의 팬클럽이 모일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권자 활동, 언론개혁을 위한 감시활동과 절독(絶讀)운동 등의 언론개혁 활동, 국민통합을 위한 일의 실천 등을 위하여 원고를 설립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였다.

(2) 그와 같은 창립제안문 말미에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의 팬클럽이었던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노사모’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영화배우 명○○, 노사모의 회원이었던 영화배우 문○○, 시인 노○○, 대표적인 조선일보 비판단체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하, ‘조아세’라 한다)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 임○○, 운영위원 이○○ 등이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의 ‘먼저 모인 사람들’ 명단에, 조선일보반대시민모임의 대표자인 김○○, 회원인 김○○ 등이 정책자문위원단 명단에 각각 포함되어 있었고, 한편 명○○은 그 기자간담회에서 원고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노사모’가 각성한 개인들의 느슨한 모임이었다면 ‘국민의 힘’은 회비를 내는 진성 회원 중심의 딱 짜인 전사들의 모임”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3) 그 후 원고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2003. 3. 29. 및 2003. 3. 30.에 오산시 소재 삼

보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모이는 ‘전국 대번개’ 모임(이하, ‘전국모임’ 이라 한다)을 가졌고, 2003. 4. 17.경에는 인터넷투표를 통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일꾼’으로 소외 김○○, 이○○, 정○○를 선출하였으며, 2003. 4. 19. 및 2003. 4. 20.에는 조치원 소재 청소년수련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4) 한편 2003. 3. 29. 및 2003. 3. 30.에 있었던 전국모임에서는 ‘국민통합의 밤’이라는 행사에서 소외 김○○(당시 경기대 교수로 원고의 정책자문단 소속)이 ‘정치·언론개혁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고, 정치개혁분과, 언론개혁분과로 나뉘어 ‘국민의 힘 사업분야별 워크숍’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그 중 정치개혁분과에서는 소외 박○○(당시 참여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낙천·낙선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소외 이○○(당시 새천년민주당 구로갑지구당 위원장)이 ‘민주당 개혁안을 둘러싼 향후 민주당 진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언론개혁분과에서는 소외 김○○(전 대한매일신문 주필)이 ‘조선일보 친일윤전기 철거조치 후 처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소외 최○○(당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사무총장)가 ‘조선·동아 민족신문으로 기재 역사교과서 개정과 불채택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다. 조선일보의 2003. 4. 3.자 기사

(1) 피고가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3. 4. 3.자 A1면 좌측 상단 부분에는 원고의 그와 같은 전국모임을 다루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 기사는 “노대통령의 정치·언론개혁 따르는 후보 내년 총선거 지지할 것”이라는 큰 제목하에 “노사모 핵심·조아세 통합 ‘국민의 힘’ 모임”, “조선일보만 까면 중앙·동아는 저절로 해결”이라는 소제목으로 『연예인 명○○, 문○○ 씨 등 ‘노사모’를 최근 탈퇴한 인사와 대표적 안티조선 단체인 ‘조아세’가 통합해 창립을 추진 중인 ‘국민의 힘’이란 단체는 조선일보 절독운동과 국회의원 개인비리 조사 등을 통한 낙천·낙선운동을 펼칠 것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노사모’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국민의 힘’은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언론개혁을 따르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정치·언론계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30일 경기 오산시 삼보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각 지역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국민의 힘’ 전국대회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언론개혁사업’으로 조아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폭 언론 절독 방법을 대중에게 알리는 등의 사업을 통해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치개혁사업’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인터넷 선거운동 보장을 위한 선거

법 개정과 국회의원 개인비리·의정활동 조사 및 DB 축적을 통한 낙천·낙선운동, 정치인 팬클럽 결성 활성화 운동 등을 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김○○ 전 평민당 당보 주간은 “조선일보에 글 쓰는 사람과 사돈 안 맺기, 조선일보 보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 힘의 한 회원은 “조선일보만 까면 중앙과 동아는 또 저절로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명○○ 씨, 이○○ 민주당 의원, 최○○ 민주언론운동연합 사무총장, 임○○ 조아세 대표, 김○○ 경기대 교수, 박○○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는 내용이다(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2) 또한 같은 일자의 조선일보 A6면에는 “조선일보 보는 사람과는 결혼 안 하기 운동 벌이자”, “내년 총선 겨냥해 국회의원 비리 조사 통한 낙선운동도 결의”라는 제목하에 “언론·정치개혁 주장하는 ‘국민의 힘’ 전국 모임”이라는 기획특집 기사에서, 앞서 본 원고의 2003. 3. 29. 전국모임에서 있었던 언론개혁에 관한 강연 중 김○○이 “조선일보 보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어떠한 목적을 가졌고 그 인적 구성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다루는 내용의 기사가 작성·게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

라. 조선일보 2003. 4. 10.자 기사

조선일보의 2003. 4. 10.자 신문의 배달판에는 “국민의 힘은 노친위대… 즉각 해체 지시 내려야”, “한나라당 축구”라는 제목하에 『한나라당은 9일 배우 명○○, 문○○ 씨와 안티조선 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단체인 ‘국민의 힘’과 관련, “중심인물 면면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친위대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가장하지 말고 즉각 ‘국민의 힘’ 해체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선일보 글 쓰는 사람과 사돈 안 맺기 ▲조선일보 구독자와 결혼 안 하기 등 ‘국민의 힘’이 추진하고 있는 운동내용을 열거하면서 “혼란이 극심했던 광복 직후에도 이같이 편향적이고 속이 뻘히 보이는 활동을 버젓이 표방한 단체는 찾아보기 힘든 듯하다”고 말했다.』라는 기사가 작성·게재되었고, 2003. 4. 9.자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는 그와 같은 취지의 기사에다가 『황 부대변인은 “독일 나치스 시대의 위르겐스, 중국 모택동 시절의 홍위병들이 얼마나 역사를 후퇴시켰는지 상기해야 한다”며 “선관위와 검찰, 경찰 등 선거관리기관도 초동단계에서부터 이 단체의 불법성에 대해 엄중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

마. 조선일보 2003. 4. 23,자 기사

조선일보 2003. 4. 23,자에는 “‘국민의 힘’은 정권의 흥위병”이라는 제목하에 『한나라당 김○○ 사무총장은 22일 “노사모의 과격 불법 정치활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참여한 자칭 ‘국민의 힘’이 창립총회를 열고 공격적인 활동을 선언하고 나섰다”면서, “이 단체는 겉으로는 ‘국민의 힘’을 표방하고 있으나 인적 구성과 활동방향을 보면 야당과 언론탄압을 주목적으로 하는 현정권의 흥위병임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 단체는 일간지 기사에 점수를 매기고,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사설과 칼럼을 비판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이는 현정권이 추진 중인 언론탄압에 이 단체가 흥위병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이들이 현정권의 전위세력임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낙선·낙천운동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치테러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작성·게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4기사’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비법인사단의 정관작성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반드시 서면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임에도 원고의 정관은 그 작성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원고의 회원은 인터넷사이트에 실명인증만 하면 회비납부와 무관하게 회원자격을 얻게 되어 있어 회원의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과 같으며, 원고의 정관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인터넷투표를 두고 있으나 인터넷투표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터넷 동호회에 불과할 뿐 우리 법이 일정한 경우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2003. 4. 19. 창립총회를 하였다고 하는데 문제된 기사 중 3개는 원고의 창립총회 전에 보도된 것이므로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이전의 보도에 대하여까지 그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비법인사단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련된 소송에서만 그러한 것이지 단체의 개별 구성원들에게 귀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단체가 대신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계속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비법인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각 증거 및 강제8호증의 1 내지 5, 강제11호증, 강제12호증의 1 내지 3, 강제13 내지 1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창립총회는 2003. 4. 19. 개최되었지만 원고는 현재의 명칭으로 2003. 2. 17.경부터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한 이래 원고의 활동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원고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2003. 2. 27. 원고의 창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의 자격, 원고의 조직 구성, 사업목표 등을 설정하고, 정식 설립시까지 명○○, 임○○, 정○○ 3인이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로 선임되었으며, 2003. 2. 27. 창립추진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외적인 활동을 시작한 사실, 원고의 정관에는 회원은 정관 제2조에서 정하는 원고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가입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비는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선출직 선거에 있어 피선거권은 회비 납부 회원에 한하여 부여된다고 정하고 있고(정관 제6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제명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제7·8조),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인터넷투표를 두고 안전상정의 방법과 투표일정의 확정방법, 상정안건의 공지기간,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제10조 내지 12조), 대표자 및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3조 내지 17조), 재정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 사실(제18·19조), 인터넷상이기는 하나 2003. 4. 4.에는 2003. 4. 4.부터 2003. 4. 9.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인 대표일꾼을 추천해달라는 공고, 추천된 사람들의 선거운동, 2003. 4. 15.부터 2003. 4. 17.까지의 기간 동안 인터넷투표를 통하여 대표자 선출 및 정관 찬반 투표의 절차를 거쳤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은 접속한 회원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원고의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는 사실, 그 대표자 선출을 위한 인터넷선거에 선거인단 1919명 중 546명이 투표하여 초대 대표자로 김○○, 이○○, 정○○가 선출되었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03. 10. 16. 2대 대표자로 이○○,

김○○, 심○○이 선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에
 의 가입을 원하는 개인들은 실명확인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가입함은 물론
 그 가입회원들에 의하여 정관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명날인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그 정관작성 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비법인사단으로
 서의 요건인 조직, 대표자의 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재정의 구성이나 관리 기타 단체로
 서의 주요사항을 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법인의 경우는 물론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타인의 어떠한
 표현으로 인하여 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예·신용 등을 침해당하
 였다면 명예의 주체가 되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완전히 갖추기 전의 명예 등
 침해행위와 관련해서도 그 침해행위가 비법인사단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할 것이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발행의 앞서 본 조선일보 기사로
 인하여 원고라는 단체의 명예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지 그 소속 회원 개개인의
 명예훼손을 청구원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
 일 수 없다.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제1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원고의 2003. 3. 29. 및 2003. 3. 30. 전국모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언론개
 혁을 따르는 후보를 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1기사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노무현 정권의 친위
 세력 내지는 ‘관변, 어용단체’로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인 평가를 말하고,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기사의 내용, 사용된 어휘의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는 노무현 정권의 입장만을 일방
 적으로 지지하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언론기관에 대하여 낙선·낙천운동을
 벌이고, 절독운동 등을 행하는 등 무조건적 비판을 가하는 단체로 인식되도록 할 수 있었
 던 것이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로서 정치·언론개혁 및 국민통합을 지향한다는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국모임에서 “내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언론개혁을 따르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발언은 언론개혁 부분 토론회의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으로서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 소속 회원 중 누군가가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과 같은 내용의 발언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기사 내용과 같이 “노대통령의 정치·언론개혁 따르는 후보 내년 총선서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기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4호증의 6, 을제1호증의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전국모임에서 원고 소속의 회원 중 누군가가 이 사건 제1기사에 게재된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언론매체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그에 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강제4호증의 4 내지 7, 강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3. 2. 27.자 창립제안문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뽑힌 후보가 국민의 성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운동 덕에 대통령이 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발성의 승리’였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수행하고, 바른 정치인을 위한 팬클럽이 모일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며, 언론개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절독운동까지 망라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였고, 원고의 2003. 4. 19.자 창립선언문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자발적이며 직접적인 지지, 그를 통한 승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였다”는 등의 표현으로 원고의 설립 배경이 되는 정치적 사건이 노사모 등의 활동을 통한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임을 표명하기도 한 사실, 원고의 구성원들은 주로 인터넷상의 일반 네티즌들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 부각된 주요 인물들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의 팬클럽으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펼쳐 언론 등에

의하여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공헌을 미쳤다고 평가받았던 ‘노사모’의 회장이었던 영화배우 명○○, 회원이었던 영화배우 문○○, 시인 노○○ 등 ‘노사모’와 관련된 사람들이었고, 명○○은 2003. 2. 27. 원고의 창립추진기자간담회에서 “‘노사모’가 각성한 개인들의 느슨한 모임이었다면 ‘국민의 힘’은 회비를 내는 진성 회원 중심의 짝 짜인 전사들의 모임”이라고 밝히기도 한 사실, 원고의 정치개혁사업은 선거법 개정운동이나 정당구조 개혁운동과 더불어 2004년에 있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참여운동을 수행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었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른바 낙천·낙선운동 및 개혁인사 당선운동을 펼칠 예정이었고, 그 방법으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자료의 분석은 물론 2003년 8월경까지 여러 시민단체에 연대를 제안하여 2003년 10월까지 그를 위한 협의체 구성, 2003년 12월까지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1차 낙선대상자 명단발표, 개혁인사 정치인 팬클럽 활성화, 개혁인사 선정기준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원고가 추진하는 개혁인사 정치인팬클럽의 대상 정치인으로는 강금실, 이○○, 천정배, 김두관, 임종석, 정운재, 이창동, 추미애, 송인배, 조순형, 송영길 등이 거론되었고, 원고의 언론개혁사업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신문의 각 기사에 점수를 매기는 ‘기사에 ★점 주기’, 조선일보의 친일행각, 조선일보비평팩스신문 등을 모으고 정리하는 등의 ‘주간 안티조선’ 활동, 안티조선 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독재협력 조선일보 심판 민간법정, 국사교과서 중 조선일보·동아일보를 민족지로 기술한 부분의 개정과 불채택운동, 안티조선 국민의 힘 신문발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원고의 활동 목표와 내용, 원고가 대외적인 성명 등을 통해 원고 스스로 밝힌 설립 배경과 목적, 원고 소속의 저명인사의 구성 내용, 원고가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인의 면면, 그 밖에 통상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어떤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단체에 소속된 일반인들의 입장보다는 소속 저명인사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등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될 여지도 있는 점, 앞서 본 원고의 설립과정상의 여러 사정상 원고가 추진하는 언론개혁활동의 주요비판 대상이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원고의 활동을 언론에 의하여 접할 수밖에 없는 일반 독자들로서도 원고의 성격을 2002년 대선 당시의 ‘노사모’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고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정치인 등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로 인식할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표명하고 있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의 이른바 개혁인사 당선운동에 있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의 정치적 입장에 견해를 같이하거나 그에 대하여 호의적인 정치인들에 대하여 지지활동을 하리라

고 예상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를 악의적으로 비판하거나 폄하하기 위한 것에 1차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보다는 원고의 정치적 입장이 이 사건 제1기사 내용과 같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정치인에 대한 지지활동이나 낙선·낙천 운동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만큼 정치영역에서 일정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타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는 만큼 원고 스스로도 상당한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활동 중 언론개혁 부분의 주요 비판대상이 피고이고 원고가 설립 당시부터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비판을 가하여 온 만큼 원고로서도 정치적 입장과 시각 등을 달리하는 피고로부터의 비판 내지 평가를 폭넓게 용인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후 원고가 피고를 항의방문하기도 하였고 다른 언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한 원고의 입장이나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한 반론을 어느 정도 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기사 내용이 비록 원고를 노무현 정권 또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만을 편들기 위한 단체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정도의 의혹 제기나 주장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를 평가함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제2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제2기사의 제목과 같은 발언은 원고의 전국모임에서 김○○이 강연 도중에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여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원고를 경박한 단체로 인식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김○○이 원고의 전국모임의 언론개혁분과에서 ‘조선일보 친일윤전기 철거조치 후 처리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 사건 제2기사의 제목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설립 준비 당시부터 언론개혁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를 주요 비판대상으로 삼아 왔고 원고 설립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조선일보를 친일·반민족 언론 또는 조폭언론이라고 비판해 온 조아세의 대표인 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제목뿐만 아니라 기사의 본문 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제2기사는 강연자였던 김○○이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정서적이기 때문에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조선일보 보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기 운동’ 같은 것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한가지의 예로 들면서 그와 함

게 최○○, 임○○ 등의 발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원고의 전국모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총괄적으로 전달하는 기사로 작성·보도한 것이지 원고가 문제삼는 그 발언만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기사가 아닌 점, 어느 한 입장에서 그와 정치적 견해 등이 대비되는 다른 입장에 관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에 그 발언의 취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 파악해야 하므로 원고의 주요 비판 대상인 피고로서는 김○○의 그 발언을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발언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많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기사 게재 후에 다른 언론 등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제2기사와 같은 보도방식에 대하여 상당한 비판을 가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기사의 제목과 기사 내용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를 경박한 단체로 매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제3·4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의 여부

(1) 원고는, 다른 신문들은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가 오로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로 한나라당 황○○ 부대변인이나 김○○ 사무총장의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이 사건 제3·4기사를 작성·게재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3·4기사는 한나라당의 당직자인 황○○이나 김○○이 원고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그것은 피고가 원고를 노사모에 참가하여 불법하고 과격한 정치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로 독일 나치스 시대의 위르겐스, 중국 모택동 시절의 홍위병들처럼 무비판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만을 추종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그를 비판하는 언론을 탄압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정치인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 당직자인 황○○이나 김○○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과다한 논평 없이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그와 같은 기사는 한나라당 당직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을 뿐이고 한나라당의 소속의 황○○이나 김○○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든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어 그 보도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발언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황○○이나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발언을 과다한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피고의 이 사건 제3·4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고가 원고측의 입장은 전혀 듣지도 않고 2003. 2. 27.부터 2003. 4. 3.까지 원고 자체에 대하여 사실 왜곡과 이미지 왜곡형 기사를 양산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의 그와 같이 왜곡된 정보를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그대로 재생해서 원고에 대해 논평한 것을 다시 피고가 인용보도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제3·4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 지〉 정정보도문

조선일보는 2003. 4. 3.자 신문에 “노 대통령의 정치·언론 개혁에 따르는 후보 내년 총선서 지지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 ‘국민의 힘’은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언론 개혁을 따르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정치·언론계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게재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주최의 2003. 3. 29. 전국 대번개에서 ‘현 정권이 추구하는 정치·언론 개혁만을 따르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명시적으로 결의하거나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

표현의 정도에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된 광고의 게재 경위,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는 원고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의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8.자 판결 (2002가단249152)

서울고등법원 2005. 1. 11.자 판결 (2004나44089)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시스템사회운동본부 지○○이 오마이뉴스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광고는 정부의 정체성이나 정책과 관련하여 이념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충분한 조사와 개념규정을 거쳐 시민의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일반 대중이나 언론매체로부터 비난과 비평이 가해지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광고를 자비를 들여 게재함으로써 비난과 반발을 유발한 점, 광고의 내용 자체가 충분한 사실적인 입증이나 추론을 거친 논리적인 것이기 보다는 단순히 원고 자신의 주관을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근거나 전제를 반박하는 등의 논리적 비판이나 비난이 용이하지 않은 점, 광고의 표현정도나 사용된 용어 또한 일반적인 표현의 한계를 훨씬 넘고 있어 광고에서 거론된 개인이나 단체 및 그 관련자들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가 그 표현의 정도에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광고의 게재 경위,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는 원고가 스스로 수인해야 할 범위 내의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자신이 동아일보 2002년 8월 16일자 2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지○○

과 늑대』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건 기사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인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 등의 모멸적인 표현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원색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의견표명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2가단249152 손해배상(기)

원 고 : 지 ○ ○

피 고 : 1.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오 ○ ○

2. 권 ○ ○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김 택 수, 김 광 길, 차 현 환, 류 홍 섭, 김 성 규, 한 상 혁,

정 대 화, 박 경 홍, 김 용 재

변 론 종 결 : 2004. 4. 13.

판 결 선 고 : 2004. 6. 8.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2004.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16. 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시스템공학박사)로서 동아일보 2면에 『대국민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나. 피고 권○○은, 이 사건 광고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서, 2002. 8. 24. 인터넷상으로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지○○과 늑대』라는 제목과 『정신질환자들을 순교자로 만들지는 말자』라는 부제목 하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기고하였고, 피고 회사의 편집부장 성○○은 같은 날 이 사건 기사에 대해 원고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5.18 관련단체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광고의 비정상적인 논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에 게재하면서, 피고 권○○을 기자로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2003. 1. 28. 광주지방법원 2002고합594호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등 사건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1980. 5. 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유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쌀, 마늘 사건 등으로 농민을 분노케 해놓고, 거기에 노동세력, 흥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당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03노1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3.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도1699호

로 상고하였으나 2003. 5.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서울지방법검찰청 2002년형제79216호로 피고 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권○○은 2002. 11. 8.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기사가 단순한 반박성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강제1호증, 강제2호증, 강제12호증, 강제14호증, 강제15호증, 을제2호증의 1, 2, 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저하, 추락시키려는 실행적 악의를 가지고 쓰여진 글로서 원고가 ‘파괴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자기가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고 허위사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우회적으로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인격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다만,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또한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광고 중 일부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에 대한 반박을 포함하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 해당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인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사에서 위와 같은 기본적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 상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원색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인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언론의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이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한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비판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표명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바,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적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

인 점, 피고 권○○이 이 사건 기사를 기고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광고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 회사의 편집부장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게재하였던 점, 원고의 인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언론의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적 의견표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위자료의 액수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의견표명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고 게재된 경위,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가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죄로 처벌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2.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사 김 복 형

2심 판 결 문

사 건 : 2004나4408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지 ○ ○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오 ○ ○

2. 권 ○ ○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8. 선고 2002가단249152 판결

변 론 종 결 : 2004. 12. 7.

판 결 선 고 : 2005. 1. 11.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 14,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4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평소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현상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에서 언론 등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해 온 원고는, 2002. 8. 16. ○○○사회운동본부 대표의 자격으로 동아일보 2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 하에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비난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나. 비판적인 대안언론을 표방하며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를 편집, 게시하는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시민기자(기자회원이라고도 하는데 피고 회사의 정식기자가 아니고 오마이뉴스의 구독자 중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피고 회사에 기사를 기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피고 회사는 편집회의를 거쳐 기자회원이 기고한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인 피고 권○○은 이 사건 광고를 보고 그에 대한 비판의 의도로 『지○○과 늑대』라는 제목과 ‘정신질환자들을 순교자로 만들지는 말자’라는 부제목 하에 이 사건 광고의 내용과 이를 작성, 게재한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기고하였고, 피고 회사는 편집진의 회의를 거쳐 2002. 8. 24.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에 게시하면서, 피고 권○○을 기자로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5·18 민주화운동이 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1980. 5. 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정

립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된 폭동인 것처럼 적시하여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위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3. 1. 28. 제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02고합594호 판결 참조), 원고와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3. 3. 20.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03노102호 판결 참조),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3. 5. 14.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3도1699호 결정 참조),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저하, 추락시키려는 실행적 악의를 가지고 쓰인 글로서, 피고들은 원고를 ‘파괴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자기가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등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원고의 인격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는, 당시 김대중 정부를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친북, 좌익세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5·18 민주화운동을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으로 묘사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속될 경우 ‘광주사태’와 같은 ‘폭동’이 재발하여 국가가 전복될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광고 중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광고 내용의 비이성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 비추어 원고는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사람이거나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에 대비해 위와 같은 정부에 비판적인 광고를 통하여 자신의 출세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의심된다는 비판 내지 비난의 내용일 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나 그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의견의 표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표현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모욕을 가하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인 언론매체나 온라인상의 인터넷신문 등이 직접 또는 독자들의 기고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행동, 의견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감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 독자의 이목을 끌거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욕설,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이나 비유 등을 써서는 안 된다.

다만, 위와 같은 기사가 이념적인 문제와 관련된 상대방의 공적인 의견표명에 대한 대응 내지는 비판의 의도로 작성된 경우 그 기사가 위법하여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비판의 대상이 된 상대방의 의견표명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일반인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이를 자초하였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다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일부는 다소 자극적이고 표현에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과연 원고 자신의 이념적인 의견을 공적으로 표명한 이 사건 광고에 대한 비판 내지는 비난의 의도로 작성, 게시된 이 사건 기사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광고는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정체성이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이념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개념규정을 거쳐 5·18 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좌익', '폭동', '소요사태' 등의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본질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일반 대중이나 언론매체로부터 비난과 비평이 가해지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광고를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일간신문에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그와 같은 비난과 반발을 유발한 점, 이 사건 광고의 내용 자체가 충분한 사실적인 입증이나 추론을 거친 논리적인 것이기 보다는 단순히 원고 자신의 주관을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여 광고내용의 근거나 전체를 반박하는 등의 논리적 비판이나 비난이 용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광고의 표현의 정도나 사용된 용어 또한 일반적인 표현의 한계를 훨씬 넘고 있어 광고에서 거론된 개인이나 단체 및 그 관련자들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가 그 표현의 정도에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광고의 게재 경위,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는 원고가 스스로 수인해

야 할 범위 내의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김 대 응
판사 박 인 식

〈별 지〉 기사목록 생략 — 편집자 주



실명을 공개했더라도 확인과정을 거쳐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30.자 판결 (2004가합7045)

서울고등법원 2004. 12. 28.자 판결 (2004나49923)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04년 12월 28일 전 세무공무원 김○○외 3인이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된 범죄혐의도 직무와 직접 관련된 ‘뇌물수수’ 라는 점, 우리 사회에서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청렴성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그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욕구 내지 정보이익 역시 매우 크며, 원고의 혐의가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고는 이 사건 범죄혐의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 구속기소된 후에 공소장을 열람하고 담당 검사로부터 구속기소사실과 피의사실에 관하여 설명을 듣는 등 취재내용의 확인과정을 거쳐 작성 보도한 것이고, 기사내용이 원고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의 실명이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실명을 보도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기사의 취재원 및 취재경위, 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들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0년 12월 20일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각 『목사 등 20억 탈세 혐의 적발』, 『교회 신축 탈세 목사 구속』의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 김○○가 ○○세무서 법인세과 계장으로 근무 중 관내업체에 대한 법인세 탈루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중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형사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되자 위 보도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원고 김○○가 침해받은 명예 내지 인격권보다 그 실명보도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보다 무거웠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4가합7045 손해배상(기)

원 고 : 1. 김 ○ ○

2. 김 △ △

3. 김 ◇ ◇

4.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탁 경 국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2.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구, 신 상 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인 철

변 론 종 결 : 2004. 6. 16.

판 결 선 고 : 2004. 6. 30.

주 문 : 1. 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원고 김○○에게 700만원, 원고 김△△에게 100만원, 원고 김◇◇, 원고 김□□에게 각 5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2. 13.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원고 김○○에게 600만원, 원고 김△△에게 100만원, 원고 김◇◇, 원고 김□□에게 각 5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2. 13.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2/3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1억원, 원고 김△△에게 1,000만원, 원고 김◇◇, 원고 김□□에게 각 500만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강제1 내지 3호증, 강제4호증의 1, 2, 을 강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김○○는 1995년 4월경부터 1997년 8월경 사이에 도봉세무서 법인세과 법인세 계장

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김△△은 그의 처, 원고 김◇◇, 원고 김□□은 그의 자녀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피고 한국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한국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김○○의 범죄혐의 및 구속 기소 등

원고 김○○는 2000. 12. 19.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그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고 김○○는 1995년 4월경부터 1997년 8월경까지 도봉세무서 법인세과 법인세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법인세의 조사 및 징수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1996. 8. 4.경부터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서울 도봉구 ○○동 ○○○의 ○소재 주식회사 ○○○○산업의 법인세 탈루 및 주식 위장 분산 여부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반의 반장으로 재직하면서 1996년 8월 하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8동 소재 도봉세무서 부근 ○○○○빌딩 2층의 일식집 '○○○○'에서, 당시 원고 김○○가 소속된 도봉세무서에서 ○○교회가 사실상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산업의 법인세 탈루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산업과 관련된 법인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 업무 등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으로부터 도봉세무서 담당자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은 ○○교회의 기획실장 겸 교회 신축건설본부장 윤○○으로부터 “교회가 억울하니 세무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해주고, 회사와 교회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1996년 9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윤○○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피고들의 각 기사 내용

(1) 피고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인 소외 신○○와 피고 한국일보사 소속 기자인 소외 손○○은 2000. 12. 19. 법원에 제출된 원고 김○○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부장검사에 대하여 그 내용에 관한 확인취재를 한 후 기사를 작성하였다.

(2) 동아일보의 2000. 12. 20.자 기사

피고 동아일보사는 신○○가 작성한 기사를 '동아일보' 2000. 12. 20.자 A29면에 “목사 등 20억 탈세혐의 적발... 신도들 명의 주식위장 분산”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9일 회사를 인수해 그 부지 위에 교회를 신축

하면서 이 회사 주식을 신도들에게 위장 분산하는 방법으로 20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 H교회 목사 유○○씨(46)와 기획실장 윤○○씨(4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교회에서 세무조사 선처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서울 도봉세무서 법인세 계장 김○○씨(46)를 구속기소하고 교회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구청장 유모씨(63)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사 유씨는 92년부터 SOO산업의 주식을 인수한 뒤 96년 SOO산업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20억원의 법인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도 23명에게 주식을 위장 분산했다가 이후 헌납받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목사는 검찰에서 “신도들이 스스로 주식을 산 뒤 자진헌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목사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신도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하, ‘이 사건 1기사’라 한다).

(3) 한국일보의 2000. 12. 20.자 기사

피고 한국일보사도 손○○이 작성한 기사를 ‘한국일보’ 2000. 12. 20.자 사회면에서 “교회 신축 탈세 목사구속”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뇌물공여와 탈세를 통해 교회를 신축·이전한 목사와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전직 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9일 2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서울 성북구 H교회 담임 목사 유○○(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및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신도 윤○○(47)세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교회측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전 도봉세무서 법인세 계장 김○○(46)씨를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000만원의 급행료를 받고 교회 신축허가를 내준 전직 구청장 유모(6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유 전 구청장과 세무공무원 김씨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하 생략)』.

라. 원고 김○○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속기소된 원고 김○○에 대하여 이 법원(2000고합1402호)은 2002. 1. 10. 그 공소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3,5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2노313호)은 2002. 7. 11. 원고 김○○가 금품을 공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3. 8. 22. 대법원(2002도4161호)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김○○의 범죄혐의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전에 그의 구속기소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김○○가 마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여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 김○○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와 같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기사이므로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것이고 혐의를 받고 있던 뇌물수수액이 3,500만원으로 거액이었으며, 그 공여혐의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탈세혐의의 교회 목사 등이고, 이미 범죄혐의가 구증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공소장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공소사실 요지 및 기소사실 등 객관적인 상황만을 기사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 김○○의 실명이 보도되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고 한국일보사는 이에 더하여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로부터 원고 김○○가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2기사에 그러한 취지까지 포함하였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3. 판단

가. 일반적 법리

(1)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이라는 또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情報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구체적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2)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며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혐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나 범죄의 재발 방지 또는 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범죄혐의자가 누구인지가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범죄혐의자가 사인(私人)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여론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기사 작성상 신원을 추지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지 않고서는 사실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을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언론매체로 하여금 사실상 범죄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여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사 작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원을 추지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는 1996년 8월 하순경 도봉세무서 법인세과 법인세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세무공무원이었다는 점에서 언론보도 등에 의한 인격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 김○○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그의 혐의가 어느 정도 구증되어 공소제기된 후에 작성·보도된 것임은 물론 그 기사 내용이 공소제기된 범죄혐의와 검찰의 수사결과를 별다른 논평 없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탈세나 뇌물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의 형평 및 정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공무원의 청렴성이나 윤리의식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보도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원고 김○○는 도봉세무서 법인세 부과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원고 김○○의 직책, 직위,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대중들로부터 저명성을 획득한 유명 인물이라거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이 일반 국민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거나 그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정도로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일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정도로 보도가치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피고들 주장과 같이 당시 이른바 각종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던 때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청렴성이나 윤리성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실명을 보도하는 등으로 관련된 인물의 신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서도 그 범죄와 수사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 피고들이 의도하는 공익적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문제된 범죄 혐의사실이 기사 작성상 신원을 추지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지 않고는 사실특정이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와 같은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의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피고 한국일보사의 주장처럼 원고 김○○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에 함께 게재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때문에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인 점, 피고들 소속 기자들이 원고 김○○에 대한 공소장을 확인하고 수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원고 김○○가 이미 그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기는 하였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 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언론기관으로서도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 김○○에 관해서는 실명을 보도하였지만 원고 김○○와 함께 기소된 전직 구청장에 대하여는 실명을 보도하지 아니한 점(물론 이 사건 각 기사의 주된 내용은 탈세에 관한 것이어서 탈세부분과 원고 김○○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원고 김○○에 대한 공소사실이나 그 전직 구청장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교회의 목사 유○○의 부탁을 받은 윤○○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어서 그 보도가치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교형량을 한다면 이 사건 각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원고 김○○가 침해받은 명예 내지 인격권보다 그 실명보도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보다 무거웠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에서의 실명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기사의 당사자로 표시된 원고 김○○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사회적 신분, 연령, 교육정도, 원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보도한 구체적 경위,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표현방법, 원고 김○○에 대한 무죄판결 선고 후 피고들이 따로 후속보도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 한국일보사가 이 사건 2기사에서 원고의 변소 내용을 게재하여 준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동아일보사는 원고 김○○에게 700만원, 원고 김△△에게 100만원, 원고 김◇◇, 김□□에게 각 50만원씩을, 피고 한국일보사는 원고 김○○에게 600만원, 원고 김△△에게 100만원, 원고 김◇◇, 김□□에게 각 50만원씩을 각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보도가 공동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부진정연대책무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 듯하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보도행위는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지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취지 속에는 피고들에게 분할채무로서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따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한다) 그 각 위자료 및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4. 2. 13.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2심 판결문

사 건 : 2004나4992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김 ○ ○
2. 김 △ △
3. 김 ◇ ◇
4.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탁 경 국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훈
2.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구, 신 상 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인 철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4가합7045 판결

변 론 종 결 : 2004. 11. 23.

판 결 선 고 : 2004. 12. 28.

주 문 : 1.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1억 원, 원고 김△△에게 1,000만 원, 원고 김◇◇, 김□□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즈,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김○○는 1995년 4월경부터 1997년 8월경까지 도봉세무서 법인세와 법인세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김△△은 그의 처, 원고 김◇◇, 김□□은 그의 자녀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 라고 한다.)는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피고 한국일보사' 라고 한다.)는 일간지 '한국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김○○의 범죄혐의 및 구속기소

원고 김○○는 2000. 12. 19.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그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고 김○○는 1995년 4월경부터 1997년 8월경까지 도봉세무서 법인세과 법인세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법인세의 조사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1996. 8. 4.경부터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서울 도봉구 ○○동 ○○○-○ 소재 주식회사 ○○○○산업의 법인세 탈루 및 주식 위장분산 여부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반의 반장으로 재직하면서 1996년 8월 하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8동 소재 도봉세무서 부근 ○○○○빌딩 2층의 일식집 '○○○○'에서, 당시 원고 김○○가 소속된 도봉세무서에서 ○○교회가 사실상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산업의 법인세 탈루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산업과 관련된 법인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 업무 등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산업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으로부터 도봉세무서 담당자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은 ○○교회의 기획실장 겸 교회신축건설본부장 윤○○으로부터 “교회가 억울하니 세무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해주고, 회사와 교회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1996년 9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윤○○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피고들의 각 기사 내용

(1) 피고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인 신○○와 피고 한국일보사 소속 기자인 손○○은 2000. 12. 19. 법원에 제출된 원고 김○○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을 보고,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 한 부장검사에게 공소사실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을 한 후 아래와 같이 기사를 작성하였다.

(2) 동아일보의 2000. 12. 20.자 기사

피고 동아일보사는 신○○가 작성한 기사를 '동아일보' 2000. 12. 20.자에 “목사 등 20억 탈세혐의 적발... 신도들 명의 주식 위장분산”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9일 회사를 인수해 그 부지 위에 교회를 신축하면서 이 회사 주식을 신도들에게 위장분산하는 방법으로 20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 H교회 목사 유○○ 씨(46)와 기획실장 윤○○ 씨(4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교회에서 세무조사 선처 청탁과 함께 3,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서울 도봉세무서 법인세 계장 김○○ 씨(46)를 구속기소하고 교회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구청장 유모씨(63)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사 유씨는 92년부터 S○○산업의 주식을 인수한 뒤 96년 S○○산업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20억 원의 법인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도 23명에게 주식을 위장분산했다가 이후 헌납받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목사는 검찰에서 “신도들이 스스로 주식을 산 뒤 자진헌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목사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신도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3) 한국일보의 2000. 12. 20.자 기사

피고 한국일보사도 손○○이 작성한 기사를 ‘한국일보’ 2000. 12. 20.자 사회면에 “교회신축 탈세 목사구속”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물공여와 탈세를 통해 교회를 신축·이전한 목사와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전직 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9일 20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서울 성북구 H교회 담임목사 유○○(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및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신도 윤○○(47)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교회측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전 도봉세무서 법인세 계장 김○○(46)씨를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000만 원의 급행료를 받고 교회 신축허가를 내준 전직 구청장 유모(6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유 전 구청장과 세무공무원 김씨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하 생략)』

라. 원고 김○○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구속기소된 원고 김○○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2000고합1402호)은 2002. 1. 10.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6월 및 3,500만 원 추징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2노313호)은 2002. 7. 11. 원고 김○○가 금품을 공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3. 8. 22. 대법원(2002도4161호)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김○○의 범죄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의 구속 기소사실을 실명(實名)으로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김○○가 마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여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 김○○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와 같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기사이므로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것이고 혐의를 받고 있던 뇌물수수액이 3,500만 원으로 거액이었으며, 이미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공소장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확인한 공소제기 사실 및 공소사실의 내용 등 객관적인 상황만을 기사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 김○○의 실명이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 범죄사건 그 자체는 공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범죄를 보도하면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밝히는 경우 이것도 공공성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문제되는데,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범인이나 범죄혐의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기관이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범죄에 관한 익명보도를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요구하면 때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자에 인격권 등 개인적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후자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익명보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인 공적 인물이 범죄 혐의자인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자가 누구인지도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죄혐의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밝히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공적 인물이라든 그것만으로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 범죄가 공적 인물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범죄의 경중, 기사의 내용과 취재경위 및 기사의 보도형식과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김○○는 1996년 8월 하순경 도봉세무서 법인세과 법인세 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세무공무원이고,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문제된 범죄혐의도 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뇌물수수'라는 점에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청렴성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그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욕구 내지 정보이익 역시 매우 크며, 원고 김○○가 수수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있던 뇌물의 액수가 3,500만 원으로서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고 김○○는 이 사건 범죄혐의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 김○○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 구속기소된 후에 공소장을 열람하고 수사담당 검사로부터 구속기소사실과 피의사실에 관하여 설명을 듣는 등 취재 내용의 확인과정을 거쳐 작성·보도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 김○○에 관한 부분은 검찰이 원고 김○○를 3,5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구속기소 사실 외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인 사실의 적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 작성자의 주관적 견해나 논평도 들어 있지 아니하다(더구나 이 사건 한국일보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 작성자 손○○이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로부터 원고 김○○가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말을 듣고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고자 이를 반영하여 원고 김○○의 범죄혐의 부인 사실도 함께 기재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 김○○의 실명이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원고 김○○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에서 원고 김○○의 실명을 보도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기사의 취재원 및 취재경위, 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들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김 대 응

판사 박 인 식

□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제보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7.자 판결 (2002가합70506)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한나라당이 ‘한인옥 씨 10억 수수설’과 관련하여 이○○ 전 기양건설 상무와 독립신문사 및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1억원을 배상하되 이중 5천만원은 이씨와 독립신문사 그리고 취재기자 등이 각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음과 함께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 보도의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과 신중성이 더욱 더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기사는 김○○과 대립관계에 있던 피고 이○○의 제보에 근거한 것으로 모두 김○○ 또는 원고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거나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 취재기자들은 원고나 김○○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한 취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고 이○○ 등의 주장에 근거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등 비중 있게 기사화한 점, 특히 김○○의 비자금에 이회창이나 한인옥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된 문서인 ‘자금지출내역서’는 피고 취재기자들로서도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기양건설이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별장부라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기사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취재기자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고 보도를 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 독립신문사가 발행하는 시사저널 2002년 11월 14일자에 『한인옥, 10억원 받았나?』, 『기양건설 전 상무 장부 공개·인터뷰 … 김○○ 회장 부부가 전달』 제하의 기사에서 김○○이 신앙촌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이회창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판 결 문

사 건 : 2002가합70506 손해배상(기)

원 고 :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4-17

대표자 박 근 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피 고 : 1.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대표이사 심 상 기
2. 이 ○ ○
3. 주 ○ ○
피고 1, 2, 3의 주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최 승 수
4.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호 영

변 론 종 결 : 2004. 6. 16.

판 결 선 고 : 2004. 7. 7.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은 1억원,

나. 피고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피고 이○○, 피고 주○○ 는 피고 이△△과 각자 가.항 금액 중 5,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 23.부터 2004. 7. 7.까지는 연 5%, 2004. 7. 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강제1호증의 1, 2, 3, 강제2호증, 강제6호증의 3, 5, 8, 9, 10, 11, 12, 13, 15, 을가제1호증의 3, 4, 6, 9, 10, 15, 17, 18, 19, 21, 25, 27, 28, 30, 을가제2호증의 12, 20, 25, 을가제9호증의 1, 2, 3, 을가제19호증의 16, 32, 33, 43, 46, 54, 을가제20호증의 9, 10, 14, 15, 17,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을 후보로 추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정당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매주 수요일마다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간하고 있고,

피고 이○○, 주○○는 다음에서 볼 '시사저널'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한 피고 독립신문사 소속 기자들이며, 피고 이△△은 피고 주○○ 등에게 이 사건 기사에 관련된 제보를 한 사람이다.

나. 기양건설산업의 신앙촌 재개발사업

(1) 기독교 유사계열인 재단법인 시온학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등 일대의 지역은 시온학원이 신앙촌이라는 공동체를 설립하여 그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그곳에 아파트 5,500세대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시행방침이 정해지자, 주민들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협의회와 주민회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

(2) 1996년경부터 소외 김○○이 운영하는 기양건설 주식회사는 주민협의회 측에, 소외 김△△이 운영하는 세경진흥 주식회사는 주민회의 측에 접근하여 서로 재개발사업권을 얻으려고 경쟁하면서, 기양건설은 액면금 합계 138억원의 약속어음을, 세경진흥은 액면금 합계 396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동서팩토링 주식회사,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아 그 할인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1997년말에 닥친 IMF 외환위기로 기양건설과 세경진흥이 발행한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3) 김○○은 1998. 6. 25. 기양건설의 후신으로 기양건설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1999년 12월경 세경진흥이 발행한 396억원의 어음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세경진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4) 그리고 기양건설산업은 2000년 4월경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현대건설로부터 기양건설과 세경진흥이 발행한 부도어음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340억원을 대여받았는데, 김○○은 기양건설산업의 상무이사였던 피고 이△△과 상의하여 그 대여금의 범위 내에서 부도어음을 모두 변제하여 회수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외형상 제3자인 그 법인이 부도어음을 저가에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2000년 4월경 주금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BHI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이△△을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한 다음, 금융브로커 등을 동원하여 부도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던 동서팩토링 등 금융기관(대부분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이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BHIC에게 부도어음을 합계 149억원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현대건설로부터 대여받은 돈에서 191억원의 차액을 남기고 부도어음을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5) 또한 김○○은 2001년 1월경부터 11월경까지 부천시 지역 관내 경찰관 또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시온학원의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문제에 관하여 청탁하면서 뇌물 등을 공여하였고, 아파트단지 내 학교부지 조성공사를 도급준 업체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 전의 상황

(1) 피고 이△△은 기양건설산업이 재개발사업권을 취득하고 부도어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이익 분배문제 등으로 김○○에게 불만을 품고 2001년 8월경 기양건설산업을 퇴직한 다음 수사기관에 김○○의 위와 같은 비리에 관하여 제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은 2001. 11. 19. 횡령·배임증재죄 등 혐의로 구속되어(2001. 12. 26. 보석으로 석방) 2002. 1. 24. 이 법원 2002고합727, 750, 883호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이△△은 그 뒤에도 신앙촌 주민회의측 관계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김○○의 뇌물제공목록을 제공하여 그 관계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진정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은 2002. 6. 27. 다시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구속되어(2002. 9. 18. 보석으로 석방) 2002. 10. 1. 이 법원 2001고합1302호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도 그 과정에서 피고 이△△을 공갈 등 혐의로 맞고소하여 이△△으로 하여금 구속당하게 하는 등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2) 피고 이△△은 위와 같이 신앙촌 재개발사업에서뿐 아니라 서울 한남동 단국대학교 부지 주택조합사업에서도 기양건설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던 김△△과 협의하여 이번에는 김○○의 범죄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기로 하고, 2002년 5월경 김△△으로부터 경향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주간지 '뉴스메이커' 팀 소속 소외 이△△ 기사를 소개받아 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보하면서 이△△에게 뇌물제공목록, 비자금장부 등을 제공하였다.

(3) 이△△의 취재로 2002. 6. 13.자 및 2002. 6. 27.자 뉴스메이커에 “기양건설산업이 유명업체를 내세워 신앙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예금보험공사 고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이나 금품을 제공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어음을 헐값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2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양건설산업 임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4) 한편 피고 이△△은 김△△에게 “김○○의 부인인 장○○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정자 이회창의 부인인 한인옥과 친인척관계인데 1997년 가을 개최된 신라호텔 모임에서 한인옥에게 5,000만원을 준 일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김△△이 피고 이△△에게 그와 같은 진술내용에 관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자, 2002년 9월 초경 ‘이○○’라는 가명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후 ‘李’라고 서명하고 김△△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김△△은 2002년 8월 초순경 신앙촌 주민회의측 사람과 함께 새천년민주당의 김○○ 전문위원에게 “김○○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비자금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긴 신앙촌 주민회의 명의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진정서를 전달받은 새천년민주당의 김○○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받고 위와 같이 피고 이△△이 2002. 9월 말경 다시 가명으로 작성한 제보내용 확인서를 건네준 다음, 2002. 10. 8. 피고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양건설의 각종 장부, 예금통장,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피고 이△△이 수첩에 작성한 초기 비자금 내역 등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5) 이에 새천년민주당의 전○○ 국회의원은 김○○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2002. 10. 10.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사건 의혹과 관련하여 김○○이 약 400억원의 로비자금을 조성하여 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대통령후보 부부와 측근 인사들에게 최소한 8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 중 4장의 약속어음과 피고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6) 이△△은 피고 이△△ 등으로부터 “김○○의 처제가 이회창 후보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장○○에게 조흥은행 남산지점 발행의 6억원권 자기앞수표를 전달하였고 장○○가 그 돈을 이회창 후보가 거주하던 서울 가회동 경남빌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내용의 신앙촌 주민회의 명의의 진정서 및 종로구 가회동 빌라를 구입할 당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6억원의 조흥은행 자기앞수표와 입금표 사본을 입수하고 그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의 취재를 거쳐, 2002. 10. 24.자 뉴스메이커에 “조흥은행 남산지점 발행 자기앞수표와 입금표 사본 및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신앙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성한 비자금 중 6억원이 이회창에게 가회동 빌라를 제공하여 준 사람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기사

(1) 이 사건 기사 직전의 보도

피고 독립신문사 소속의 기자인 피고 이○○는 그동안 국회에서 주장되거나 뉴스메이커 등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취재를 계속하여 2002. 10. 24.자 시사저널(배포 시기는 일주일 전인 2002. 10. 17.경으로 보인다. 다른 일자 시사저널도 같다)에 ‘이회창 비

자금 배일 벗기는가’, ‘기양건설 80억원 제공설 도마에 올라, 민주당 가회동 빌라 구입자금도 김○○ 회장이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새천년민주당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신양촌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김○○이 199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유령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부도어음을 다시 싼 값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5백억원을 조성했고, 그 중 1997년 7월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138억원에 할인하여 그 중 46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김○○이 그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80억원 가량을 이회창 후보 측에게 전달하였다. 김○○의 처 장○○은 이회창 후보의 처 한인옥과 먼 인척인데 한인옥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기양건설산업전 직원의 진술서가 공개되었다”는 취지의 별지 제1기사를 게재하였다.

(2) 김△△은 기양건설이 동서팩토링 등으로부터 할인받은 약 138억원 중 10억원이 이회창(한인옥)에게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기양건설의 명판이 찍혀 마치고 기양건설에서 작성한 내부 서류인 것처럼 위조된 ‘자금지출내역서’ {A4 용지 1장에 표 형식으로 약 138억원의 지출내역이 사업부지대금, 김○○의 사택 관련비용 등의 순서대로 지급처·지급일·지급금액·지급내역 항목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 줄에 위와 같이 지급처가 ‘이회창(한인옥)’, 지급일이 ‘수시지급’, 지급금액이 ‘10억원’, 사용내역이 ‘5천만원 내지 1억원을 수시인출하여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과 피고 이△△ 중 한 명이 또는 그들이 함께 피고 이△△이 기양건설에서 갖고 나온 각종 장부를 분석하여 138억원 중 지출증빙이 부족한 금액을 10억원으로 보고 이 문서를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를 2002년 10월 중순경 이△△에게 기양건설의 ‘어음및수표발행내역서’ (138억원의 어음을 포함한 기양건설의 어음·당좌수표의 발행내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토지매입대장, 조흥은행 남산지점 발행 6억원권 자기앞수표 사본과 입금표 사본 등의 문서와 함께 제공하였다.

(3) 김△△은 다시 2002. 11. 4. 평소 피고 이○○와 함께 김○○의 정치권 밀착 여부를 집중 취재하던 피고 독립신문사 소속의 기자인 피고 주○○에게도 ‘자금지출내역서’와 ‘어음및수표발행내역서’, 토지매입대장 등 관련자료를 건네주면서(이 때 건네준 ‘자금지출내역서’는 하단에 날인되어 있던 기양건설의 명판 부분이 가려진 사본인 것으로 보인다), ‘자금지출내역서’가 피고 이△△이 기양건설에서 가지고 나온 특별장부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고 주○○가 피고 이△△에게 전화로 ‘자금지출내역서’와 관련된 인터뷰 요청을 하자, 피고 이△△은 “자금지출내역서는 기양건설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특별장부다. 그 장부에 적힌대로 기양건설의 약속어음 2장을 할인한 47억 원에서 이회창과 한인옥에게 로비자금으로 10억 원이 전달되었다. 김○○이 다방 종업원을 시켜 수차례 5천만원과 1억

원을 인출하여 그의 아내 장○○가 현금으로 전달했다. 특히 1997년 11월경 신라호텔의 행사에서 장○○가 한인옥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대했고, 김○○으로부터 당시 한인옥에게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4) 한편 이△△ 기자는 2002. 11. 4. ‘자금지출내역서’와 관련하여 “자금지출내역서는 당시 회계장부에 적힌 기양건설의 어음 및 당좌수표내역을 토대로 자금조달내역을 산출한 뒤 부동산 매입현황 등 자금이 지출된 내역을 따로 뽑아 정리해 둔 것이다. 작성시기만 다를 뿐 기양건설의 입·출금 원 장부와 조달 내역 및 지출내역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중략) 여기까지는 기양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매입대금 지출현황과 자금지출내역서가 모두 일치한다. 문제는 남은 차액 10억 원에 대한 행방이다. 자금지출내역서에는 이 돈이 한인옥 여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기양건설의 원장부에는 명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은 것이다. (중략) 이와 관련하여 뉴스메이커는 김○○ 회장과 동업자이면서 이번 비자금 장부의 진실을 밝혀줄 기양건설 핵심인사의 증언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이△△에게 자금지출내역서 등과 관련한 문의를 하였던 피고 주○○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으나, 뉴스메이커에 그 초안에 기초한 기사가 게재되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기사 내용

피고 주○○는 위와 같은 취재를 토대로 피고 이○○와 함께 2002. 11. 14.자 시사저널에 ‘한인옥, 10억원 받았나?’, ‘기양건설 전 상무 장부 공개·인터뷰…김○○ 회장 부부가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2기사(다음부터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① 김○○의 비자금이 이회창측으로 유입되었음을 시사하는 기양건설 내부 장부와 관련자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위와 같이 김△△으로부터 입수한 어음 및 수표 발행내역서를 <자료1>로, ‘자금지출내역서’를 <자료2>로 하여 그 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 ② 그 자료들이 기양건설의 특별 장부라는 피고 이△△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피고 이△△이 김○○의 최측근으로서 그의 자금거래를 꿰고 있다가 현재 사이가 틀어졌다고 설명하는 부분, ③ 김○○이 장○○를 통하여 한인옥에게 돈을 주다가 나중에는 직접 주었다는 피고 이△△의 진술이 포함된 피고 이△△과의 일문일답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상황

(1) 그 후 피고 이○○, 주○○는 2002. 11. 21.자 시사저널에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 ‘한인옥과 10억 진실게임’, ‘기양이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고, 한인옥 10억원 수수설 관련자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추적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양건설이 신앙촌 재개발사업

에 뛰어들어 세경진흥을 제치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토지매입대금으로 발행한 138억원의 약속어음금 중 일부가 한인옥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으로 그동안 게재하였던 기사를 다시 정리하는 내용의 별지 제3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에는 ‘새 시공사인 LG건설로부터 대여받은 돈 일부가 이회창이 거주하는 가회동 빌라의 근저당권 설정비용로 쓰였다’는 뉴스메이커 기사를 인용하는 부분과 피고 이△△ 및 김○○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별도의 박스 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시사저널에 이 사건 기사와 2002. 11. 21.자 후속 기사가 게재되자, 기양건설산업은 2002. 11. 19. 조선일보에 “기양건설산업은 한나라당이나 어떤 정치권과도 무관하고 장○○ 등은 한인옥과 일면식도 없다. 피고 이△△은 회사가 정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인양 자금지출내역서라는 문서를 몰래 만들어 한인옥에게 10억원을 준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호소문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3) 이에 피고 주○○는 김△△과 피고 이△△에게 김○○이 조선일보에 게재한 호소문을 통해 자금지출내역서가 위조서류라고 주장하는 것을 거론하며 그 진위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김△△은 “자금지출내역서는 기양건설의 장부가 틀림없다. 비자금 장부를 만든 사람들이 그 장부를 비자금 장부라고 인정할 리 없다”고 말하고, 피고 이△△은 “기양건설의 통장이나 해화다방 종업원들이 인출한 주택은행 출금내역표를 보면 돈의 흐름을 금방 알 수 있다. 더 정확한 증거는 검찰에서 밝히겠다.”는 등으로 무마하였다.

바. 민주당의 대응 및 대통령선거 결과

민주당 대변인들은 시사저널의 보도가 이루어질 무렵인 2002. 10. 11.경부터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인 2002. 12. 19.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이회창 또는 한인옥이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 내지 80억원의 검은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하였고, 이회창은 그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사. 수사결과 및 피고 이△△ 등의 형사처벌

(1) 검찰은 2003. 4. 18.경 ‘자금지출내역서’에서 이회창에게 전달되었다는 10억원의 조성근거로 지목된 기양건설 발행 어음 2장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그 약속어음들을 할인한 자금에서 이회창 또는 한인옥에게 건네간 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 피고 이△△은 이 사건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 법원 2003고합694호로 2003. 10.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2003. 5. 12. 구속), 기양건설산업과 김○○이 피고 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법원 2003가합55672호로 2003. 12. 2. 기양건설산업 등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김△△ 역시 이 사건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 법원 2003고합1166호로 2004. 3. 25.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판 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기양건설이 신양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이회창이나 한인옥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비록 그 각 기사의 표현 중에는 다른 사람의 주장 또는 진술을 인용하거나 추측 또는 의혹을 나타내는 형태로 된 부분이 많고, 이 사건 기사의 전후로 그 기사의 내용을 부인하는 김○○ 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관한 기사를 함께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의 주요 취재원인 이△△이 김○○의 비리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기사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는 서류라고 하면서 기양건설의 자금지출내역서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등,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으로 기사에 사용된 표현, 각 부분 기사의 비중, 기사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흐름, 보도태도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기사 내용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강한 인상을 줌으로써 이회창이나 한인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직접적으로는 이회창 또는 한인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정당의 중요한 존재목적 중의 하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인데(정당법 제2조 참조),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 이회창은 원고의 총재로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원고의 후보로 지정된 상태였고, 원고로서는 대통령선거에 추천한 후보의 당선여부에 따라 장차 여당으로서 주도적으로 고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야당으로서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조력하는 지위에 머무를 것인지가 결정되는 등 통상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과 대표자의 관계보다 이회창에 대하여 더욱 밀접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정당인 원고와 이회창 또는 한인옥이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인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원고의 목적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정당인 원고의 명예 또한 함께 실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이회창이나 한인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다고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 독립신문사, 피고 이○○, 주○○의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당시 원고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의 자질·인품·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도된 것이므로 공익성이 있고, 피고 이○○, 주○○가 피고 이△△이나 김△△, 이△△ 기자, 전○○ 국회의원, 범박동 주민들을 상대로 확인취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피고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2)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신앙촌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기양건설이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부실이 초래되어 수백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그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이 원고의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에게 유입되었다는 등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그 진실여부를 밝히고자 하는 점에 있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쉽게 인정된다.

(3) 진실성

이 사건 기사 중 김○○이 신앙촌 재개발사업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10억원을 장○○를 통하여 또는 직접 5,000만원 내지 1억원씩 이회창 후보 측에게 전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나머지 의문제기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삼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그 내용에 부합하는 근거로는 피고 이△△의 진술, 이△△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하여 임의로 작성된 자금지출내역서, 범박동 주민들이 작성한 진정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의 주장 등이 있으나 아래의 '상당성'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김○○이 1997년 11월 신라호텔 모임에 장○○와 함께 참석하여 한인옥에게 5,000만원을 직접 건네 주거나 다방종업원들에게 심부름을 시켜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수시로 5,000만원 내지 1억원의 돈을 이회창측에 주었다는 사실 등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상당성

(가) 나아가, 피고 이○○, 주○○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사는 김○○이 신앙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비리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 비리행위로 조성된 자금을 이회창측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보도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이 김○○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여 이회창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적 사항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기사는 그로 인하여 새로운 정치쟁점이 형성되고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선거결과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도의 신속성 못지 않게 정확성과 신중성이 더욱 더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사는 주로 신앙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김○○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김○○과 대립관계에 있던 피고 이△△의 제보와 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던 신앙촌 주민회의 관계자들의 진술, 김○○과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다가 밀려난 김△△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지출내역서, 김△△과 주민회의 관계자의 진정을 받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를 정치쟁점화 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등에 근거한 것으로 모두 김○○ 또는 원고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부터 나온 것이거나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 이○○, 주○○가 원고나 김○○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한 취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고 이△△ 등의 주장에 근거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등 비중있게 기사화한 점, 특히 김○○의 비자금이 이회창이나 한인옥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된 문서인 ‘자금지출내역서’는 그 내역이 날짜순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관된 형식으로 타자되어 있는 등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외형상으로도 분명하고, 이△△이 작성하여 피고 주○○에게 송부한 기사 초안에도 분명히 ‘자금지출내역서’가 기양건설의 장부를 기초로 자금조달내역과 지출내역을 사후에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으며, 수령인을 이회창 또는 한인옥으로 하여 5,000만원 내지 1억원이라는 불특정한 금액을 수시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이○○, 주○○로서도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면 ‘자금지출내역서’는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이△△이나 김△△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자금지출내역서’가 기양건설이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별장부라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기사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이○○, 주○○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고 보도를 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이△△의 경우 김△△에게 김○○이 이회창에게 수시로 돈을 주었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말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그럴듯하게 뒷받침할 자료를 제공하여 김△△으로 하여금 피고 주○○ 등에게 잘못된 제보를 하게 하고 피고 주○○ 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여 커다란 사회적 파급효과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배상할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내용, 게재 시점, 피고 이○○, 주○○가 사실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취재기자가 취할 수 있는 사실확인의 방법과 정도, 대통령 후보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혹은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는 점, 원고측 주장을 기사화하는 데에도 약간의 지면을 할애한 점, 기사 게재 이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경과, 피고 독립신문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이회창 및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독립신문사, 피고 이○○, 주○○ 각 각자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이△△은 1억원, 피고 독립신문사, 피고 이○○, 주○○는 피고 이△△과 각자 위 1억원 중 5,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3. 1. 23.부터 판결선고일인 2004.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피고들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4. 7. 8.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 지〉 기사목록 생략 — 편집자 주

□

원고가 적시한 사실은 피고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여 피고를 압박하려는 데 있어 그 행위에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진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허용되는 권리실현 방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8.자 판결 (2003가합55498, 2004가합48190(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004년 7월 28일 허OO가 뉴스위크 한국판 기자 임OO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본소) 및 임OO가 허OO를 상대로 한 반소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소에 대한 판결에서 “측근이라 함은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자서전 대필을 의뢰받은 사람에 불과한 원고를 최OO의 최측근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목적으로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어휘를 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최OO 사건은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피고의 그와 같은 부정확한 사실적시로써 원고의 명예가 어느 정도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렇게 표현된 사실에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여 그러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반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원고는 피고를 형사적으로 고소·고발하고 민사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한 데서 더 나아가 피고의 회사와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제보에 대하여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과 원고가 최OO의 사무실에서 최OO의 문서를 몰래 갖고 나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러한 행위의 주된 목적은 피고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여 피고를 압박하려는 데 있고 피고의 취재과정상 잘못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적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 행위에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권리실현 방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가 뉴스위크 한국판에 ‘체육복표사업을 비롯한 여러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기소된 최○○의 최측근인 원고가 “최○○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에게도 20만 달러를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원고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명예훼손혐의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비난하고 헐뜯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3가합55498 손해배상(기)
2004가합4819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허 ○ ○

피고(반소원고) : 임 ○ ○

서울 중구 순화동 7 중앙일보사 M층 뉴스위크 한국판 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종
담당변호사 진 용 희

변 론 종 결 : 2004. 6. 30.

판 결 선 고 : 2004. 7. 28.

주 문 :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6.부터 2004. 7. 28.까지는 연 5%, 2004. 7.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4.부터 2004. 7. 28.까지는 연 5%, 2004. 7.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본소 :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강제1, 3, 6, 8호증, 강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2, 6, 7, 12, 13, 15, 16호증, 을제8, 9호증의 각 1, 2, 을제14호증의 1 내지 15, 을제17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관계

(1) 원고는 1996년 1월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소설가로 등단한 이후, 2000년 12월경 출판사인 주식회사 시공사에 입사하여 단행본사업부 마케팅 책임자로 일하다가 2002년 3월경 소외 최○○(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왈리드 왕자와 미국 금융인 조지 소로스의 방한과 한국투자 등을 주선하였으나 공직에 기용되지 못하고 미래도시환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으로부터 자서전 대필을 의뢰받아 집필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2) 피고(가명 임□□)는 1992년 5월경부터 경향신문사 기자로 근무하다가 2002. 4. 15. 주식회사 중앙일보미디어인터내셔널에 입사하여 그 회사가 발간하는 주간지 '뉴스위크 한국판'의 취재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와 원고의 처인 소외 송○○(2003. 3. 24. 원고와 협의이혼)는 2002년 2월경 기수련원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당시 피고가 케이블TV 푸드채널에서 진행하던 토크쇼인 '거인들의 저녁식사'에 관한 책을 시공사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기도 하였다.

나. 최○○ 사건과 원고의 최○○ 녹음테이프 제공

(1) 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체육복표사업을 비롯한 여러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2002년 3월말경 그의 비서의 폭로로 드러나게 되어 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해지자, 최○○은 2002. 4. 14. 원고를 데리고 고향인 전남 영암으로 가는 차 안에서 청와대로부터 해외로 밀항하여 도피하라는 종용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독백 형식의 진술을 하면서 그 진술을 녹음하게 하였다.

(2) 원고는 2002년 4월경 시공사를 사직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송○○를 통하여 원고가 최○○의 자서전 대필작업을 하면서 최○○의 진술을 녹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시공사에 복직하거나 시공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최○○의 녹음테이프를 건네달라고 원고를 설득하여 원고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최○○

의 녹음테이프를 입수한 다음, 뉴스위크 한국판 2002. 5. 15.자에 그 녹취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3) 한편 최○○은 2003.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추징금 456,109,095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특종 보도

(1) 원고는 최○○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위한 구상을 하면서 피고와 그에 관한 상담을 하기도 하고, 2002년 7월말경 최○○의 운전기사였던 소의 백○○을 통하여 최○○으로부터 소설 출간에 관한 사항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 두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소설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겠다는 등의 구실로 2002. 8. 3. 및 2002. 8. 4. 두 차례에 걸쳐 백○○의 안내를 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최○○의 미래도시환경 사무실에 들어가 최○○의 전화번호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관련 문서, 권노갑 관련 문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찍은 사진 등을 몰래 갖고 나왔다.

(3) 피고는 최○○의 사무실에서 갖고 나온 자료를 토대로 2002. 9. 25.자 뉴스위크 한국판에 “특종 권노갑의 비파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02. 10. 16.자 뉴스위크 한국판에 “노벨평화상 만들기 최○○ 파일 단독입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위 2002. 5. 15.자 기사를 포함한 이러한 일련의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관훈클럽이 선정하는 관훈언론상,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선정하는 한국기자상,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선정하는 한국언론대상, 최은희여기자상, 자랑스런 이화언론인상 등을 수상하는 한편, 2002. 10.말경 뉴스위크 한국판의 편집장으로 승진하였다.

(4) 피고는 2002년 8월경 아는 사람을 통하여 시공사 사장에게 원고 문제를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를 복직시켜 주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대신 2002년 10월경 송○○를 중앙일보미디어인터내셔널에 특별채용시켜 기자수습을 받게 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기사

(1) 한편 최○○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새천년민주당 설○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도 측근인 윤○○ 국회의원을 통하여 최○○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는 2002년 10월초경 검찰에서 그 수수의혹설과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최○○으로부터 이회창에게 20만 달러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면서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

(2) 설○ 의원은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었

는데, 설○ 의원이 2003. 3. 27.경 공판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이회창의 금품수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설○ 의원의 폭로가 청와대의 기획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는 뉴스위크 한국판 2003. 4. 16.에 최○○의 사무실에서 갖고 나온 최○○이 이회창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20만 달러 수수설, 청와대 기획폭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회창이 윤○○을 통하여 최○○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청와대가 설○ 의원을 내세워 폭로공작을 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뉴스위크 한국판은 1996년도에 이회창이 최○○과 함께 찍은 사진, 최○○씨의 2002년 스케줄 수첩, 2002년 10월까지 진행된 검찰의 사건기록 등을 입수했다"고 첫 부분을 시작하고 이회창·윤○○과 최○○의 관계에 관한 이회창·윤○○ 측의 주장과 피고가 입수한 증거를 대조하는 내용에 이어 "20만 달러 수수설에 대해 최씨 측근들은 한결같이 최씨로부터 이를 들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우선 최씨의 자서전 작가였던 허씨는 20만 달러 수수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음은 지난 해 10월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라면서 원고와의 위 전화대화 녹음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와 같은 문답 형식의 기사를 게재한 다음, "허씨는 지난 해 3월 초부터 4월 16일 최씨가 구속될 때까지 자서전 집필 문제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최측근이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홍사덕 의원을 서울 시장에 당선시켜 자신은 정부부시장이 되려고 했던 최씨는 서둘러 자서전 작업을 마치고 했고 이로 인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허씨와 함께 보냈다. 허씨가 최씨의 자서전 작업을 진행한 약 한달 반 정도의 기간을 전후로 최씨 비서 천○○씨의 인터넷 게시판 폭로, 김 전 대통령 3남 홍걸씨에게 돈을 줬다는 최씨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라고 원고 관련 부분을 마무리하는 내용의 기사(다음부터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마. 원고의 고소·고발 등

(1) 원고는 2002년 3월 하순경부터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도서출판 휴먼앤북스로부터 입사를 거절당하고 시공사에도 복직이 되지 않은 데다 송○○마저 피고와의 불화로 2003. 6. 17.경 중앙일보미디어인터내셔널을 퇴사하자, 피고가 자신의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하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2003. 7. 25. 검찰에 "최○○으로부터 이회창에게 20만 달러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피고에게 그러한 이야기가 최○○의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 최○○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가 허위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다시 2003. 9. 8. 피고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가 최○○의 사무실에서 최○○의 문서 등을 몰래 갖고 나온 것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3. 8. 3. 중앙일보미디어인터내셔널에 피고가 비위를 저질렀다고 진정하고, 그 임직원들에게 2003. 8. 14. '피고가 원고의 제보 대가로 시공사 복직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고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2003. 12. 10. 원고가 최○○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경위, 피고가 최○○ 사무실에 침입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원고·피고·백○○의 검찰 대질신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한편 2003년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 국내 각종 신문에는 피고의 뉴스위크 특종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취재원보호·취재의 방법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그 기사들에서는 대부분 원고의 실명이 명시되고 몇몇 기사에는 원고의 사진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바. 수사·재판 결과

(1) 검찰은 2004. 1. 8. 피고의 혐의 중 특수절도 혐의만 인정하여 피고를 그 혐의로 기소하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기 등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원고가 피고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원고를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2) 이 법원은 2004. 6. 17.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원고에게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2003고단10626 사건).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사화를 전제로 피고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최○○이 이회창에게 20만 달러를 건넸다거나 이회창의 방미과정에서 총재특보 자리를 노렸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고 원고를 최○○의 최측근으로 묘사하면서 원고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원고가 진술한 것처럼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원고와의 전화인터뷰에 기초한 것이고 원고의 제보에 대하여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일이 없는데도 원고는 피고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과 사기 등 혐의로 무고하였고 다른 언론기관에게 피고를 기자 윤리를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여 피고가 그동안 쌓아왔던 여성 최초의 정치부 기자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잃게 하였으며 피고의 회사에 허위로 피고의 비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보내어 해직을 요구하는

한편 동료 직원들에게 피고를 비난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피고를 헐박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완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를 ‘허씨’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의 실명이 전부 알려진 것은 이 사건 기사 이후의 다른 보도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기사에서 ‘허씨’가 최○○의 자서전 작가로서 최○○의 자서전 집필을 위하여 최○○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를 아는 사람이나 원고와 같이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일정 범위의 사람들은 그 호칭이 원고를 가리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보도가 ‘허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이회창이 최○○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데, 먼저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회창 측에 20만 달러를 주었음을 암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서 그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보도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의 왜곡보도 주장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2002년 10월경 전화통화의 내용과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일치하는 것일 뿐 아니라(을제2호증 녹취록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 자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를 최○○의 ‘최측근’이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측근이라 함은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자서적 대필을 의뢰받은 사람에게 불과한 원고를 최○○의 최측근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목적으로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어휘를 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최○○ 사건은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피고의 그와 같은 부정확한 사실적시로써 원고의 명예가 어느 정도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렇게 표현된 사실에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여 그러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최측근이라는 표현은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그 전제되는 사실이 최○○의 자서전 대필 작가라는 것에 불과한 이상 그러한 논평이 정당한 의견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원고의 고소 내용과 달리 피고가 원고의 진술 내용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는 것으로서(을제7호증의 기재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의 진술 내용과 다르게 기사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고소가 법리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진술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원고를 최○○의 최측근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결과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02년 10월경 전화통화를 할 때에 보도를 전제로 인터뷰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보자가 원고임을 드러나게 하여 취재원 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원고는 이를 명예훼손의 사유로 주장하나,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원고로서는 피고가 기자로서 최○○과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 이전에도 피고가 원고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최○○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 대화 내용이 피고의 기사 작성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비보도요청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취재와 보도가 취재원인 원고에 대하여 취하

여야 할 절차를 흠결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를 '허씨'라고 언급한 것은 보도기사의 사실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취재원 명시의 필요성과 제보자의 사생활 보장을 위하여 요구되는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을 절충한 조치라고 보인다.

(4)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면,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상호관계, 그들 사이에 분쟁에 일어나게 된 경위, 이 사건 기사 중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내용,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실명을 전부 드러내지는 않은 점, 원고도 피고의 이 사건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를 고소하고 피고의 직장에 피고의 비위를 호소하는 진정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피고에게 고통을 가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이를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최○○의 최측근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고소장에 적시된 피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상 원고의 고소가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고의 고소행위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형사적으로 고소·고발하고 민사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한 데서 더 나아가 피고의 회사와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제보에 대하여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과 원고가 최○○이 사무실에서 최○○의 문서를 몰래 갖고 나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러한 행위의 주된 목적은 피고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여 피고를 압박하려는 데 있고 피고의 취재과정상 잘못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적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 행위에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권리실현 방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한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상호관계 및 분쟁의 경위 등 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 행위의 목적과 구체적 행위 내용, 그 명예훼손 등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구체적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를 1,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보도일인 2003. 4.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4.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다투는 것이 상당하므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2004. 7.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6.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4.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4. 7.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 지〉 인터뷰 내용 생략 — 편집자 주



**북한 주석이었던 김일성에 대해 언급함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촉구한 공공의 영역에 속한 보도이고,
‘북한을 미화했다’는 정도의 표현은 방송사 연출자들인
원고들로서 수인할 만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4.자 판결 (2003가합96598)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004년 8월 4일 KBS의 오락

프로그램 PD들이 동아일보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한과는 해방 이후 50년 이상 분단된 체제 아래서 서로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여 온 반면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북한과의 관계 정립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언론사인 피고 동아일보나 그 소속 기자들인 나머지 피고들로서는 공영방송인 KBS가 아직까지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는 북한의 주석이었던 김일성에 대하여 언급함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파급될 영향까지 고려하여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갖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이 각 방송·언론사마다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편집태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도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며, 그러한 편집태도나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에 그 당부는 상호간의 비판·견제나 여론의 평가를 통하여 충분히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 입장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방송의 본래 취지와는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적절한 비판을 가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영방송인 KBS의 방송내용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영역에 대한 것이고 그 비판의 내용도 ‘북한을 미화했다’는 정도에 그쳤을 뿐 특별히 KBS 소속 연출자들인 원고들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폄하하는 표현이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로서 수인할 만한 의견표명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동아일보가 2003년 10월 7일 『KBS 청소년 오락프로 김일성시계 미화 물의』라는 제하의 기사로 KBS의 주말 간판 오락프로그램에서 제일교포가 마술 공연하는 과정에 김일성 주석을 여러 차례 강조해 ‘북한을 미화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3가합96598 손해배상(기)

원 고 : 1. 김 ○

2. 김 ○ ○

3.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김 택 수, 전 태 진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학준, 김재호

2. 이 ○ ○

3. 조 ○ ○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변 론 종 결 : 2004. 7. 21.

판 결 선 고 : 2004. 8. 4.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1.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5,000만원, 피고 이○○·조○○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동아일보 2면에 2단 상자기사로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 본문은 본문활자 크기의 별지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강제1, 2, 3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한국방송공사(KBS)의 2TV 채널에서 방영되는 오락프로그램인 '자유선언 토요일대작전'의 연출자로서, 원고 김○은 팀장, 원고 김○○은 그 프로그램 중 다음에서 볼 '매직스쿨(Magic's Cool)' 코너의 팀장, 원고 김△△은 그 코너의 조연출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를 발행·배포하고 있고, 피고 이○○·조○○은 피고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들로서 다음에서 볼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나. '자유선언 토요일대작전'의 방영 내용

(1) '자유선언 토요일대작전'은 매주 토요일 18시부터 19시 50분까지 사이에 방영되는 오락프로그램으로 가수·탤런트·개그맨 등 연예인들이 출연하며, 다음에서 볼 이 사건 방송 무렵에는 3인조 가수 그룹 '쿨(Cool)'이 마술사로부터 마술수업을 받는 내용의 '매직스쿨(Magic's Cool)', 출연자들과 외국인들이 한글에 관한 퀴즈대결을 벌이는 '세종대왕 가라사대', 5명의 여자 연예인들이 5명의 남학생들과 짝짓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미의 전쟁' 등 세 코너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다.

(2) '자유선언 토요일대작전'의 2003. 10. 4.자 방송 중 '매직스쿨' 코너(다음부터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는 쿨 멤버들이 북한 국적 출신의 재일동포인 야스다 유지로부터 마술을 배우는 모습이 방영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야스다 유지의 마술시범 사진이 나온 뒤 「선생님의 화려한 경력」이라는 자막에 이어 그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막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1985-87년 북한 평양 공연 - 김일성 앞에서 공연」이라는 자막이 포함되어 있고, 이어서 「선생님을 깎듯이 모시는 쿨」이라는 자막이 나온다.

(나) 진행자가 “야스다 선생님이 85년도에 평양 그, 김일성 앞에서 직접 공연을 하셨대요”라고 하자, 「85년 평양 김일성 앞에서 공연!」이라는 자막과 함께 “우와야”하는 관객탄성 소리가 효과음으로 나오고, 야스다 유지가 “보는 앞에서”라고 하자 출연자들이 “오오”하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박수를 치는 장면과 함께 관객박수 소리가 효과음으로 나온다.

(다) 「공연을 한 후 특별한 손목시계를 받았다는데…」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야스다 유지가 “아, 그래서 그, 시계를 받았어요”라는 대사를 하자 다시 관객탄성 효과음이 나오고 야스다 유지가 손목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어진 뒤, 출연자가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애”라고 하자 「김일성에게 직접 받은 손목시계!」라는 자막과 함께 손목시계 중 시계 윗부분에 새겨진 김일성의 서명 부분이 클로즈업되면서 ‘짹’ 하는 효과음이 나오는 동시에 이름 둘레에 빨간 테두리가 쳐지는 장면이 나온다.

(라) “이 시계만 있으면 북한에서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라는 야스다 유지의 대사가 동일한 내용의 자막과 함께 나오면서 관객탄성 소리 효과음이 이어지고, 출연자 한 명이 손목시계를 들고 무대 바깥쪽으로 뛰어나가자 다른 출연자가 “나도 같이 가자구”라고 하면서 뒤쫓아 가는 장면이 이어 관객웃음 소리 효과음이 나온다. 출연자 한 명이 “케이스만 있으면 북한에서 며칠 살아요?”라고 농담을 하고 관객 웃음소리 효과음이 나온다.

(마) 「뭔가 특별한 걸 찾아낸 왕자」(‘왕자’는 클 멤버 중 한 명을 지칭함)라는 자막이 나온 뒤 그 지칭된 출연자가 “여기를 보면 특이하게 한글로 뭔가 써 있어요”라고 말하자 손목시계 뒷면에 「요술사 안성우」라고 새겨진 글씨가 클로즈업되는 장면이 나오고, 관객탄성 효과음에 이어 「특이하게 한글로」, 「요술사 안성우」, 「선생님은 재일동포, 한국이름은 안성우」라는 자막이 차례로 나온다.

(바) 진행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훈장과 같은 거네요”라고 하자 「손목시계는 훈장과 같은 기념품」이라는 자막이 나온다.

(3) 방송위원회는 2003. 10. 9.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가족시청 시간대 오락프로그램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장시간 지나치게 회화화하는 내용을 다룬 것은 시청자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작책임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심의의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

(1) 피고 이○○·조○○은 이 사건 방송을 보고 나서 그 방송이 청소년들에게 김일성을 미화하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자, 2003. 10. 6. ○○○○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인 박○○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방송을 보지 못한 박○○에게 방송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2003. 10. 7.자 동아일보 사회면(31면)에 <KBS 청소년 오락프로 김일성시계 미화 물의>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BS의 주말 간판 오락프로그램 ‘자유선언 토요일대작전’이 10월 4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인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클로즈업하며 ‘훈장과 같은 것’이라고 치켜세워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 마술실력을 공연하는 과정에서 김 주석을 여러 차례 강조해 ‘북한을 미화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별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손목시계 중 김일성 이름 부분을 클로즈업하는 방송장면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2) 그 뒤 KBS 1TV의 각종 방송·언론보도 내용의 적정성 문제를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에서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2003. 10. 11. “동아일보는 북한을 미화한 내용은 부적절하다는 대학교수의 논평까지 인용하며 유독 KBS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교수는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김일성 손목시계를 소개한 것은 야스다 유지가 1985년 평양 공연의 대가로 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김일성 손목시계를 확대하여 보여준 것은 시청자의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연출기법의 일종일 뿐 김일성이나 김일성 손목시계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상 오히려 북한사

회를 풍자하거나 희화화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들이 북한을 미화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서 별지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원고들이 북한을 미화했다’는 부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논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논평은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전히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변론 종결 후 제출된 준비서면에서의 주장도 포함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사실적시인지 의견표현인지 여부

어떠한 신문보도의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 외에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당해 기사가 게재된 사회적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머리의 “이 사건 방송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락프로그램인데도 김일성 시계를 훈장과 같은 것이라고 치켜세워 물의를 빚고 있고 김주석을 여러 차례 강조해 북한을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부분과 마지막의 “공영방송인 KBS가 오락프로그램에까지 북한을 간접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을 내보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박○○의 의견을 인용하는 부분은 그 중간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 즉 야스다 유지가 김일성 앞에서 공연한 것을 화려한 경력이라고 하거나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손목시계를 부각시키면서 훈장과 같은 특별한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비록 그 표현이 ‘물의를 빚고 있다’거나 ‘지적을 받고 있다’는 등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이 ‘북한을 미화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방송을 보지 않은 박○○의 진술을 인용한 부분도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박○○이 이 사건 방송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논평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서 박○○이 이 사건 방송을 보았다고 적시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그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 아

니므로 그 부분 역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나. 의견표현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든 아니면 아무런 사실도 전제하지 않은 것이든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에 의하여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고, 그러한 의견표현 행위 중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전제된 사실관계로부터 지나치게 과장 또는 유리된 의견을 표현하거나 표현방식이 지나치게 모멸적이거나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모함 또는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의견 또는 논평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널리 허용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야스다 유지가 1985년경에 평양 김일성 앞에서 공연을 한 사실을 소개하고 그 때 야스다 유지가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김일성 싸인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보여주면서 그 손목시계는 훈장과 같은 것으로 그것만 있으면 북한에서 사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하는 한편, 출연자가 그 시계를 갖고 도망가고 다른 출연자가 쫓아가는 소동을 벌이는 장면이나 손목시계 케이스만 있어도 며칠간 살 수 있다는 대사와 같은 희극적 요소를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탄성소리, 박수소리 등의 효과음을 동원하거나 손목시계를 클로즈업하여 싸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연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 장르, 출연진, 방송 구성 등과 아울러 남북관계가 대립·긴장관계에서 대화·협력관계로 변화되고 있어 북한사회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야스다 유지가 김일성 앞에서 공연하고 그 공로로 김일성으로부터 그의 서명이 새겨진 특별제작 시계를 받은 것은 야스다 유지에 대한 하나의 경력으로 볼 수 있을 뿐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김일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담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방송에서 그와 같은 경력을 강조한 것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나 특수성에 비추어 1985년도경에 북한에서 마술공연을 하고 김일성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특별제작된 고급시계를 받았다는 것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만한 특이한 일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이 사건 기사에서는 ‘자유선언 토요일대작전’의 시청율이

이 사건 방송 당시 비교적 전 연령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도(을제3호증의 기재) 위 프로그램이 유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비판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과는 해방 이후 50년 이상 분단된 체제 아래서 서로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여 온 반면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북한과의 관계 정립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언론사인 피고 동아일보나 그 소속 기자들인 나머지 피고들로서는 공영방송인 KBS가 아직까지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는 북한의 주석이었던 김일성에 대하여 언급함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파급될 영향까지 고려하여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갖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이 각 방송·언론사마다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편집태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도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며, 그러한 편집태도나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에 그 당부는 상호간의 비판·견제나 여론의 평가를 통하여 충분히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KBS도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기사를 비판하였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 입장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방송의 본래 취지와는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적절한 비판을 가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영방송인 KBS의 방송내용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영역에 대한 것이고 그 비판의 내용도 '북한을 미화했다'는 정도에 그쳤을 뿐 특별히 KBS 소속 연출자들인 원고들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폄하하는 표현이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로서 수인할 만한 의견표명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 지〉 정정보도문, 기사 생략 — 편집자 주

□

검찰 직원에 대한 수사가 납득하기 쉽지 않게 진행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로서 외부로부터 비판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고, 기사의 쟁점 부분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8. 16.자 판결 (2002다16804)

사실개요

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004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김○○ 부장
검사 및 9인의 검사가 한겨레신문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
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는 모두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권
한을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그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한 수사가 일반인이 납득
하기 쉽지 아니하게 진행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
사를 게재한 것은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
부분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사의 쟁점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한겨레가 1999년 9월 16일자에 『검찰 ‘자기 식구’ 싸고들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검
찰이 소속직원에 대한 수뢰혐의사건 수사에 있어서 소속 직원이 사전에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러 늦게 체포함으로써 결국 검찰은 당초
고소 내용에 나타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다른 혐의로 구속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8집 94~107면, 2
심 판결문은 동 10집 57~70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2다16804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 1. 김 ○ ○
2. 차 ○ ○
3. 신 ○ ○
4. 최 ○ ○
5. 김 ○ ○
6. 김 ○ ○
7. 박 ○ ○
8. 김 ○ ○
9. 이 ○ ○
10. 이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고, 피상고인 :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최 학 래

2. 이 ○ ○
3. 김 ○ ○
4. 김 ○ ○

피고 2 내지 4의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결

담당변호사 송 두 환, 백 승 현, 조 광 희, 여 영 학, 차 병 직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2. 2. 7. 선고 2000나31320 판결

판 결 선 고 : 2004. 8. 16.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사와 보도의 경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

(1) 김△△은 1999. 7.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이하 '서울지검' 이

라 한다)에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박△△(직급 : 주사보)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 사실의 요지는 김△△의 남편 김□□이 1998. 10.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속되자 위 박△△이 김△△에게 김□□의 피의 사실을 축소하고 석방되도록 도와준다면 금품을 요구하여 1998. 10. 27. 김○○을 통하여 2,0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1998. 11. 4. 김○○, 최○○을 통하여 2,0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등 모두 4,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제대로 사건 처리를 하여주지 않았으니 박△△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김△△은 당시에 증거자료로서 돈을 인출한 통장사본, 박△△의 전화를 받고 최○○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김○○이 작성한 진술서와 박△△의 지시로 2,000만 원을 찾아 김○○에게 주어 김○○이 2,000만 원을 박△△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조○○가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였다.

(2) 고소사건을 접수한 서울지검은 위 고소장을 접수한 1999. 7. 13. 사건을 형사4부에 소속된 원고 차○○에게 배당하였으나 원고 차○○은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1999. 8. 3. 고소인 김△△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고 그가 제출한 김□□에 대한 형사 제1심 판결문을 제출받았을 뿐 피고 회사가 1999. 8. 1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기까지 고소장에 첨부된 진술서를 작성한 김○○, 조○○는 물론 박△△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1999. 7. 24. 당시 피고 회사 사회부 기동취재팀에 근무하던 피고 김○○은 토요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중 이 사건에 대한 제보전화를 받고 데스크에 보고한 뒤 취재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달 26. 오전 서울지검 사건과에서 김△△이 박△△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의 집으로 찾아가 고소내용을 취재하면서 고소장을 복사하였다.

그 후 피고 김○○과 당시 서울지검 출입기자이던 피고 김○○은 함께 1999. 8. 초경 이 사건 주임검사이던 원고 차○○을 만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취재하면서 원고 차○○으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른바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으니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 후 수사에 진전이 없자 위와 같은 취재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여, 1999. 8. 12. “한겨레” 사회면(15면)에 ‘뒤틀린 챙긴 대검 직원, 공동만 챙긴 변호사’라는 제목의, 같은 달 17. “한겨레” 사회면(14면)에 ‘피의자 등친 대검직원 계좌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각 기사가 보도되었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기에 이르자 원고 차○○은 1999. 8. 12. 곧바로 김△△과 김□□의 각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계좌추적을

실시하여 1998. 10. 27. 김△△의 계좌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이, 같은 해 11. 4. 김□□의 계좌에서 역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이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1999. 8. 25. 부터 위 각 수표의 최종 사용자로 나타난 사람들을 소환하여, 손○○(공○○의 경리) 등 11명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박△△ 및 이 사건의 중요참고인들로 지목된 김○○, 최○○ 등은 “한겨레”의 1999. 8. 12.자 첫 보도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1999. 8. 30. 이후 서울지검에 출석하여, 김○○, 조○○, 조△△에 대하여는 1999. 8. 30., 공○○에 대하여는 1999. 9. 6., 범○○에 대하여는 같은 달 7., 최○○에 대하여는 같은 달 8., 유○○에 대하여는 같은 달 9. 각 첫 조사가 실시되었고, 박△△에 대하여는 같은 달 13.에 이르러서 신병이 확보되어 첫 조사가 실시되었다.

(5) 원고 차○○은 위 참고인들 조사 직후 참고인들이 입을 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형사 4부 부장검사인 원고 김○○과 위 문제를 상의하면서 위 박△△의 신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점을 고려하여 형사 4부 검사 전원을 수사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 하여 1999. 9. 13. 형사 4부에서는 원고 김○○이 사건을 총괄하고, 주임검사인 원고 차○○은 박△△에 대한 조사를, 원고 신○○과 박○○은 적용법조에 대한 법리검토를, 원고 최○○은 공○○에 대한 조사를, 원고 김○○은 최○○에 대한 조사를, 원고 김○○은 공○○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고 김○○은 김△△에 대한 조사를, 원고 이○○은 김○○에 대한 조사를, 원고 이△△은 박△△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6) 위 수사 결과 원고 차○○은 애초 김△△이 고소하였던 내용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김△△은 1998. 10. 27. 남편 김□□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검찰에서 일이 빨리 해결되도록 할 목적으로 조○○를 통하여 김○○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이를 박△△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으나, 김○○은 위 돈을 박△△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돈 중 100만 원은 조△△에게 경비조로, 100만 원은 그 날 저녁 술값으로 각 지급한 후 나머지 1,800만 원은 공○○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 1998. 11. 4. 김○○이 김△△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중 100만 원은 술값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을 최○○을 통하여 공○○에게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모두 3,700만 원을 전달받은 위 공○○은 위 돈을 김○○과 마신 술값으로, 최○○의 경비조로, 피해자 범○○의 치료비 및 생활비조로, 피해자 유○○과의 합의를 위한 경비조로, 기타 변호사 비용조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위 수사과정에서 원고 차○○은 박△△에 대하여는 그가 범○○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김□□과 범○○간의 합의를 알선하였고 1998. 11. 28. 범○○이 김□□으로부터 합의금으로 8,500만 원을 받게 되자 그 가운데 2,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으로 회수한 사실을 밝혀 내어 이를 토대로 1999. 9. 13. 박△△, 김○○, 최○○, 공○○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한 후 1999. 9. 21. 기소하였다.

(7)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애초 김△△의 고소 내용과 달리 나오자, 1999. 9. 16. “한겨레” 사회면(15면)에는 위 사건에 관해서 “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라는 제목과 “돈 받은 혐의 대검계장 조사 한 달 보름 뒤 체포”, “입맞추기 시간 충분 ... 뒤늦게 다른 혐의로 구속”이라는 소제목 하에, “구속된 피의자 부인에게 잘 봐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된 대검찰청 직원 등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검찰이 고소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다른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축소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같은 달 22일 서울지검 형사 4부에 배당했으나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한 달 보름이 훨씬 넘은 지난 13일에서야 박씨와 사채업자 공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부인 김씨가 4천만 원을 박씨에게 전달했다는 고소내용은 밝히지 못한 채 이를 중간에서 공씨 등이 가로챈 것으로 결론 내면서, 폭행사건의 피해자 범씨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결과적으로 박씨와 공씨 등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증거 등을 없앨 충분한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박씨는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구속된 김씨 가족들을 여러 차례 만나 사과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바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 김○○, 김○○이 작성한 원심 판시 별지 제1 기사내용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보도되었다.

(8) 위와 같은 보도가 나간 후, 원고 김○○이 피고 회사에 위 보도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그 이후에는 원심 판시 별지 제2 기사내용과 같이 수정된 기사가 보도되었다.

(9) 한편, 위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김○○, 최○○, 공○○은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에서 1999. 10. 26. 각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박△△는 벌금 1,000만 원, 김○○과 최○○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공○○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박△△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지방법원 항소심에서 2000. 2. 1. 형 및 추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나.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판시 이 사건 기사의 제목 중 “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 “입 맞추기 시간 충분...”, 내용 중 “...축소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결과적으로 박씨와 공씨 등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증거 등을 없앨 충분한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은 전체적으로 보아 구속된 피의자 부인에게 잘 봐 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된 대검찰청 직원을 뒤늦게 체포한 위 원고들이 당초의 범죄 혐의를 밝혀 내지 못하고 그보다 가벼운 혐의 사실로 기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아 관련자들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증거 등을 없앨 시간을 주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검찰이 검찰직원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기사는 모두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그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한 수사가 일반인이 납득하기 쉽지 아니하게 진행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외부

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쟁점 부분과 같은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로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 즉, 이 사건 고소 내용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고, 특히 고소인이 증거자료로서 통장사본과 관련 참고인의 진술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사건을 배당받은 후 20여일이 지난 1998. 8. 3. 고소인 조사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1998. 8. 1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도한 뒤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김△△과 김□□의 예금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한 점, 김○○, 최○○ 등을 비롯한 중요 참고인들이 자취를 감추었다가 1999. 8. 30. 이후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박△△에 대하여도 1999. 9. 13.에야 조사가 이루어진 점, 박△△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반복되었다는 점 등은 모두 진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쟁점 부분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그 설시에 있어 미흡하기는 하지만 피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의견 표명과 위법성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김○○이 피고 회사에게 송고하였다는 기사(또는 그 기사가 담겨 있는 파일)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기사가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위 기사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 무 제
 대법관 이 용 우
 주 심 대법관 이 규 홍
 대법관 박 재 윤

□

취재기자의 사실확인 전화에 원고측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아 더 큰 의혹을 가지도록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0.자 판결 (2003가합37254)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박동영 부장판사)는 2004년 8월 20일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신문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하여 조흥은행에 대한 재실사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보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조흥은행의 민영화 여부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보면, 조흥은행 매각 무산을 우려한 원고가 재실사 결과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여 그 공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조흥은행의 재실사는 그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재실사 결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재실사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독립성이 엄격히 확보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측의 주선에 의해 비공개 간담회가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진실로 밝혀졌고, 그로 인해 의문을 품은 취재기자가 사실확인을 위한 전화를 걸었음에도, 원고측이 간담회 개최경위와 배경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아 더 큰 의혹을 가지도록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비공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측이 재실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내린 언론기관의 상당한 평가라고 여겨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사실 확인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여겨지고, 특히 원고측이 비공개 간담회 개최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실사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이○○의 일관된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

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신문이 『조흥은 ‘매각가치 조정’ 외압 의혹』제하의 기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하여 조흥은행에 대한 재실사 결과를 사전조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예금보험공사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3가합37254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대표자 사장 이인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 동 원, 오 양 호, 박 지 연

피 고 : 1.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채 수 삼

2. 안 ○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편집국 경제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 촌

담당변호사 송 인 보, 임 명 옥

변 론 종 결 : 2004. 7. 16.

판 결 선 고 : 2004. 8. 20.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3. 4.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송달일 이후 10일 이내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의 각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광고문을 제목은 2호 고딕체 활자로, 광고내용은 6호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송달일 이후 같은 피고가 첫 발행하는 편집

이 완료되지 아니한 “서울신문” 제1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003. 4. 25.자 대한매일신문 제19면의 “조흥은(銀) ‘매각가치 조정’ 외압 의혹”이라는 제목과 같은 컷으로 내용은 위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에서 2004. 1. 1.부터 현재의 상호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03. 12. 1.경까지 ‘대한매일신문’을 발행하여 오다가 2004. 1. 1.경부터는 신문의 제호를 ‘서울신문’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일간신문 ‘서울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 안○○은 피고회사의 편집국 경제팀 소속 취재기자이다.

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조흥은행 주식 매각 결정 및 조흥은행 자산가치를 재실사하기에 이른 경위

(1)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라 한다)는 2002. 8. 6.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주식을 매각하여 조흥은행을 민영화하기로 하는 계획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9. 말경 매각주간사로 주식회사 모건스탠리와 주식회사 삼성증권(이하 ‘제1차 실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 한 다음, 제1차 실사기관으로 하여금 조흥은행을 실사하여 조흥은행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제1차 실사기관이 2002. 9. 말을 기준으로 조흥은행의 자산가치를 1주당 4,691원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자 이에 기초한 가격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조흥은행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은 공자위 및 원고의 조흥은행 주식 매각 방침에 대하여, 조흥은행 노동조합은 조흥은행의 독자생존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정부가 그 보유 주식을 헐 값에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조흥은행의 민영화 여부가 사회문제화되어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03. 1. 14.경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및 금융노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3자에게 재실사를 맡겨 조흥은행의 가치를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공자위는 2003. 1. 23. 조흥은행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선정하는 한편, 조흥은행의 매각가치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조흥은행에 대한 재실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3. 3.경 신한회계법인과의 사이에 신한회계법인이 2003. 4. 6.까지 6주간 동안 조흥

은행의 기업가치(내재가치, 인수가치)를 재실사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보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신한회계법인이 은행을 실시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을 협의기관으로 선정하여 재실사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용역계약이 체결되기에 앞서 신한회계법인은 원고에게 조흥은행의 내재가치는 은행영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여 자기자본가치법(향후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적정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구체적으로는 계산식에 해당하는 평가모델에 판매관리비, 자산증가율 등과 같은 가정치를 대입하여 산정하게 됨)에 의해 산출하고, 인수가치는 시너지 가치와 신규전략 가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예정임을 조흥은행기업가치평가제안서(갑 제19호증)를 통해 전달하였다.

다. 신한회계법인의 제1차 실사기관과의 비공개회동

(1) 신한회계법인은 김○○를 재실사단장으로, 조○○을 내재가치팀장으로, 이○○을 인수가치팀장으로 투입하여 재실사단을 구성한 다음, 조흥은행의 내재가치와 인수가치를 엄격히 구분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는데, 다만 내재가치팀의 경우 조○○보다 회계사 경력이 많고 기업실사경험이 많은 김△△이 내재가치 실사에 관한 대부분의 실무를 처리하면서 그 처리내용을 인수가치팀장인 이○○에게 보고하였고, 이로 인해 이○○이 사실상 인수가치팀과 내재가치팀의 실사작업을 총괄하는 실사본부장의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2) 재실사단 인수가치팀은 2003. 3. 28. 평가모델을 확정된 후 인수가치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4. 1. 확정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같은 달 2. 오타수정 및 검토작업을 계속하였고, 내재가치팀은 같은 달 31.부터 4. 2.까지 가치모델을 최종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직원으로서 조흥은행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는 김○○에게 2003. 3.경 신한회계법인이 재실사결과를 담은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조흥은행 부서장, 노동조합, 제1차 실사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하였고, 김○○가 이에 응하자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2004. 4. 2.로 잡아 이를 통보해 주었다.

(4) 김○○는 이○○에게 간담회 참석에 앞서 제1차 실사기관과의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이○○은 김△△과 함께 2004. 4. 1.부터 같은 달 2. 새벽까지 이미 확정된 평가모델에 판매관리비, 자산증가율 등과 같은 가정치를 대입하여 조흥은행의 내재가치를 주당 금 7,820원으로 산출한 다음, 제1차 실사기간의 내재가치 산

정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모건스탠리와와의 차이 표’ 등을 작성하여 제1차 실시기관과의 간담회를 준비하였다.

(5) 신한회계법인 재실사단 김○○, 이○○, 김△△ 등은 2003. 4. 2. 15:00경 조흥은행 부서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다음,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힐튼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원고의 직원 김□□의 주선하에 제1차 실시기관과 비공개 간담회(이하 ‘이 사건 1차 비공개 간담회’라 한다)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은 신한회계법인 재실사단을 대표하여 제1차 실시기관에게 재실사단이 적용한 평가모델과 대입한 가정치(자산증가율 : 물가가 반영된 명목성장률, 판매관리비 : 전체 비용의 27 내지 28 % 정도)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어 제1차 실시기관측도 자신들이 적용한 평가모델과 대입한 가정치(자산증가율 : 물가가 반영되지 않는 실질성장률, 판매관리비 : 35%)를 설명하였다.

(6) 신한회계법인 재실사단은 같은 달 7. 저녁 신라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재차 김□□의 주선하에 제1차 실시기관과 비공개 간담회(이하 ‘이 사건 2차 비공개 간담회’라 한다)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는 앞서 이 사건 1차 간담회 때와는 달리 신한회계법인 재실사단을 대표한 이○○과 제1차 실시기관 사이에 평가모델에 대입한 가정치(주로 자산증가율, 판매관리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라. 제1차 실시기관과의 비공개 간담회 이후의 경과

(1) 이○○은 2003. 4. 10.부터는 재실사단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재실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후 신한회계법인은 2003. 4. 16. 원고, 조흥은행 임직원, 제1차 실시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흥은행 자산가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잠정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이하 ‘이 사건 공식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그 자리에서 조흥은행의 내재가치는 1주당 최저 5,788원에서 최고 6,700원 정도라는 1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 신한회계법인은 위 설명회 자리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2003. 4. 25. 조흥은행의 내재가치가 1주당 최저 5,929원에서 최고 6,967원 정도라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 및 보도 내용

(1) 피고 안○○은 2003. 4. 20.경 취재원으로부터 조흥은행의 매각가치의 산정과 관련하여 제1차 실시기관과 재실사기관인 신한회계법인이 극비리에 만났고 원고측이 그 자리에서 신한회계법인측에 매각가격을 제1차 실시기관이 평가한 가격에 맞추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부한 회계사가 재실사팀에서 배제되었다는 취지의 전화제보를 받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1차 실시기관과 신한회계법인측이 극비리에 만나는 자리에 있

었다는 신한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4명(김○○, 김△△, 조○○, 이○○)과 원고의 직원 김□□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우선 위와 같은 비밀스런 회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위 안○○의 전화질의에 대하여, 김○○는 2003. 4. 16.의 공식설명회 외에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김△△은 어떤 이야기도 할 입장이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하였으나, 조○○, 이○○은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가 개최된 사실을 시인하였다. 한편, 김□□는 제1차 실사기관과 신한회계법인이 실사과정의 일환으로 공식적으로 만난 사실만 있을 뿐 비밀회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대답하면서, 신한회계법인이 이 사건 공식설명회에서 제1차 실사기관의 의견을 들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 안○○이 재차 2003. 4. 2. 과 같은 달 7.로 날짜를 특정하여 제1차 실사기관과 신한회계법인이 극비 회동한 사실이 없는지를 묻자, 극비회동한 사실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3) 피고 안○○은 위와 같이 제1차 실사기관과 신한회계법인이 극비 회동한 사실을 신한회계법인측 회계사 2명이 시인하고 있음에도 원고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공교롭게도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가 개최된 이후 신한회계법인의 재실사 가격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 특히 제1차 실사기관과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이○○이 중도에 재실사작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앞의 전화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원고측의 외압행사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내사에 착수하고 감사원이 원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목록 기재 제1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회사는 이를 피고회사가 발행하는 2003. 4. 25.자 대한매일신문에 게재하였다.

(4)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자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는 재실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이고 통상적인 모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에 피고회사는 2003. 4. 28.자 대한매일신문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기사를 게재하여 이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 22, 갑 제23,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김○○, 이○○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한편 신문기사에 의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기사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조흥은행의 객관적인 기업가치 산출을 위해 재실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이 제1차 실사기관과 극비리에 만나 재실사 결과를 사전조율하였고, 그 과정에 원고가 개입하여 신한회계법인측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인바, 신한회계법인이 제1차 실사기관과 극비리에 만나 단순히 재실사 결과를 서로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 '사전조율' 또는 '사전조정'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 외압 행사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하여도 비록 전문의 형식이기는 하나 원고측이 신한회계법인측에 딜(deal)이 가능한 가격을 산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단순한 의혹제기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하여 신한회계법인의 재실사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공공성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은행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어 공적자금이 올바르게 회수될 것인지 여부는 중대한 사회적 관심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무렵 조흥은행의 기업가치에 대한 제1차 실사기관의 실사결과에 대하여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조흥은행의 독자생존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등 조흥은행의 민영화 여부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보면, 조흥은행 매각 무산을 우려한 원고가 재실사 결과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그 공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신한회계법인과 제1차 실사기관이 극비에 회동한 사실이 진실로 드러났음에도 원고측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이전까지 극비회동사실을 계속 부인하였다는 점, 신한회계법인 재실사팀의 실사업무를 총괄한 이○○이 원고의 직원인 김□□가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김△△의 진술도 이○○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제1차 실사기관과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인 이○○이 갑자기 실사팀에서 배제되었다는 점, 한편 피고 안○○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김○○, 김△△, 조○○, 이○○, 김□□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사실확인절차를 거쳤고, 그 밖에 청와대의 내사착수 사실, 감사원의 감사착수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그 주요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설혹 일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한회계법인과 제1차 실사기관이 2003. 4. 2. 및 같은 달 7. 각 회동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에 불과하고, 김□□가 위 일시의 회동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이○○이 주장하고 있는 원고측의 외압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감사원이 원고의 외압행사와 관련된 감사에 착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이○○의 허위 진술과 청와대의 내사착수 사실에만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만남이었으므로 극비리에 이루어진 회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이○○, 김□□(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앞서 본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는 2003. 4. 2. 15:00에 개최된 조흥은행 부서장들과의 간담회 및 같은 달 16. 개최된 이 사건 공식설명회의 경우와는 달리 호텔에서 비공개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 신한회계법인이 재실사과정에서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 이 사건 제1차 비공개 간담회가 개최되기 전 김□□는 명함을 교환하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다음에 만날 때에도 처음 만난 것처럼 명함을 교환하라고 말하였던

사실,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후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밀유지를 위해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 개최 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사실, 기업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가치 산정에 시비가 일어 재실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운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또한 공자위가 조흥은행의 기업가치를 재실사하도록 결정한 취지는 제1차 실사기관의 실사결과 및 그 결과에 따른 조흥은행의 민영화 추진 이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재실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미 협의기관이 2곳이나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신한회계법인이 굳이 제1차 실사기관과 만남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는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재실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것이 우려되어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해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만남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김□□가 피고 안○○에게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 개최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간담회가 개최된 날짜까지 특정하여 비밀회동 여부를 묻는 피고 안○○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비밀리에 회동한 사실은 없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을 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의 개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흥은행의 재실사는 재실사를 하게된 경위와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실사의 결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재실사의 과정에 있어서도 그 공정성과 독립성이 엄격히 확보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측의 주선에 의해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가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진실로 밝혀졌고, 그로 인해 재실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은 피고 안○○이 원고측에 사실확인을 위한 전화를 걸었음에도, 원고측이 위 각 간담회가 개최된 경위와 배경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솔직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취재기자로 하여금 더 큰 의혹을 가지도록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안○○이 재실사 결과를 사전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고 믿은 데에는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에 앞서 본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은 조흥은행의 기업가치를 재실사하는 작업을 총괄하는 실사본부장의 역할을 겸하면서 재실사 업무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신한회계법인을 대표하여 주도적으로 재실사과정에서 적용한 평가모델과 가정치를 설명하고, 나아가 제1차 실사기관과 적용한 평가모델과 가정치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논쟁을 벌인 사실, 김□□는 이 사건 제2차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이 조흥은행의 내재가치를 제1차 실사기관의 실사결과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자, 이○○만을 따로 불러내 이○○에게 조흥은행을 무조건 매각해야 하니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자산증가율에 대한 이○○의 가정은 인정할 테니 다른 가정을 뜯어 고쳐서라도 딜(deal)이 가능한 가격을 산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김□□는 2003. 4. 8. 재차 이○○에게 딜(deal)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신한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파기하고 수입료를 줄 수 없으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 김○○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 하고,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직원인 김□□가 이○○에게 그 소신을 굽혀서 원고측이 원하는 실사결과 즉 매각이 가능한 실사결과를 산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한편 이러한 원고측의 요구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실로 확인된 위와 같은 정황들을 기초로 부당한 외압이 존재하였다고 평가하여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그러한 평가에 상당성을 일탈한 무리한 억측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김□□가 이○○을 따로 불러낸 자리에서 매각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산출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매각이 가능한 가격을 산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앞서 본 사실을 보태어 보면, 조흥은행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조흥은행의 주당 가치를 5,500원 상당으로 주장하며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사실상 매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 위와 같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입장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실제 자금동원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재실사결과가 높게 나올수록 조흥은행의 독자생존을 주장하는 조흥은행 노동조합의 주장이 힘을 얻게되고 나아가 자칫 매각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그 당시 금융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

었다는 점, 따라서 일관되게 조흥은행 매각방침을 밝혀온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흥은행의 기업가치가 높게 나올 경우 매각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이와 그로 인해 빚어진 당시의 사회적 논란의 내용과 그 진행경과를 고려해보면, 비록 김□□가 이○○에게 외압을 행사할 의도 없이 조흥은행의 매각과 관련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가격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측이 일관되게 조흥은행 매각방침을 고수하며 더욱이 그 개최의 배경과 취지가 의심스러운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를 주선까지 하면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면, 자신의 실사결과가 원고가 기대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의 입장에서는 김□□의 위와 같은 요구를 실사결과를 낮추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여기에 조흥은행을 재실사하기까지 이른 경위와 신한회계법인이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의 범위 및 실제 용역수행과정(신한회계법인은 원고로부터 조흥은행의 내재가치와 인수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뢰받았고, 이에 따라 신한회계법인은 조흥은행의 인수가치산정은 물론이고, 조흥은행의 은행영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내재가치를 산정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김□□가 위와 같은 요구와 함께 용역계약 파기의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이○○이 전문가적인 소신을 굽혀서라도 조흥은행의 매각이 가능한 가격을 산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받았다고 여기더라도 거기에 큰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그 주된 내용, 즉 원고측이 재실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내린 언론기관의 상당한 평가라고 여겨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 안○○이 재실사결과를 사전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작성 경위에 의하면 피고 안○○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사실확인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여겨지고, 특히 원고측이 이 사건 제1, 2차 비공개 간담회 개최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실사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이○○의 일관된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

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동 영
판사 민 성 철
판사 이 봉 수

〈별 지〉 기사목록, 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국민적 관심사안을 파헤쳐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의 역할과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김훈 중위 타살의혹’ 을 보도한 언론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5.자 판결 (2001가합888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전 육군 중사 김○○과 그의 가족들이 ‘김훈 중위 타살의혹사건’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당시 공동경비구역의 상황에 비추어 원고 김○○의 북한군 접촉 사실은 김훈 살해의 주요한 동기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 더욱이 원고 김○○의 김훈 사망 당일의 알리바이나 그 후의 행적 등에 의문점이 많다는 점, 김훈이 북한군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김훈이 내부인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취재기자의 취재원과 취재 활동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 김○○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김훈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부분은 피고나 그 소속의 취재기자로서는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

다.

한편, 재판부는 “종래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도 정치적·군사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그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도 그러한 경우에 이를 파헤치고 우리 사회에 의문을 던지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함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바 그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고 김○○는 시사저널이 지난 1998년 12월 17일자 『“판문점 경비 한국군 일부, 북측과 몰래 접촉”제하의 기사를 포함 총 4건의 기사에서 원고 김○○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북한군의 지령을 받았거나 이적행위가 탄로나자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합8887 손해배상(기)

원 고 : 1. 김 ○ ○

2. 김 △ △

3. 김 □ □

4.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상 원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 세 창, 임 영 수, 김 수 호, 정 인 섭

피 고 :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수정아파트 에이동 1202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58-1

대표이사 이 승 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최 승 수

변 론 종 결 : 2004. 7. 28.

판 결 선 고 : 2004. 8. 25.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 김○○에게 1억원, 원고 김△△, 김□□, 김◇◇에게 각 1,000만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1998.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2호증, 강제3호증의 1 내지 3, 강제7호증, 강제8호증의 3, 4, 9, 강제10호증의 2, 강제11호증의 1 내지 4, 강제12호증의 1, 2, 강제13호증의 1 내지 4, 강제14호증의 2, 3, 강제15호증의 2 내지 4, 강제16호증의 2 내지 4, 강제17조의 2, 강제19호증의 2 내지 10, 강제20호증의 2 내지 4, 강제21호증의 2, 강제2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2 내지 4,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9, 14, 15, 17 내지 19, 21, 23, 24, 을제6 내지 8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6, 을제12 내지 16호증, 을제17호증의 20, 27, 5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김○○은 1989. 12. 12. 육군 하사관으로 지원 입대하여 1990. 4. 28. 육군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대대 소속 하사관으로 군생활을 시작한 이후 1997. 3. 16.부터 1998. 6. 19.까지 육군 중사로 UN군 관할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 이하 공동경비구역이라 한다) 경비대대 경비중대 2소대(이하 '2소대'라 한다)의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김△△는 원고 김○○의 아버지, 원고 김□□은 원고 김○○의 어머니, 원고 김◇◇는 원고 김○○의 형이다.

(2) 피고는 주간지인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그 소속 기자이자 뒤에서 보듯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소외 정○○의 사용자이다.

나. 김훈의 사망과 이 사건 기사 보도 전까지의 상황

(1) 1998. 2. 24. 12:20경 공동경비구역 내 241 GP(Guard Post) 지하 3번 벙커(bunker)에서 당시 원고 김○○이 소속된 2소대의 소대장인 김훈 중위(1996.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1998. 1. 18.부터 2소대의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우측 관자놀이에서 좌측 관자놀이로 이어지는 관통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 김훈의 사체는 일병 박○○이 처음 발견하였는데 박○○은 사체 발견 직후 상병 김△△을 만나 함께 사고 상황을 재확인한 후 식당으로 가서 원고 김○○ 및 2소대원들에게 김훈의 사망 사실을 전파하였고, 이에 원고 김○○은 곧바로 김훈 사망 현장으로 달려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2소대원들에게 현장 출입통제 및 GP 자체비상을 지시한 후, 기관총 거치대 위에 놓여 있던 김훈의 무전기로 GP 상황실 근무 소대원에게 그 상황을 지휘계통

에 따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3) 그 후 공동경비대대 대대장인 미군 소령 로펜버그(James F. Laufenburg)는 1998. 2. 24. 12:40경 김훈 사망 현장에 도착하여 원고 김○○으로부터 김훈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병력들이 3번 지하병커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대대 군의관 대위 아레스(Richard D. Ares)를 통하여 김훈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게한 다음 1998. 2. 24. 13:00경 대대본부에 김훈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선통보하였다. 이어 1998. 2. 24. 15:30경 미군범죄수사대(CID,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권총, 탄피 등 사인규명을 위한 증거물을 확보함과 아울러, 현장상황을 촬영하고 현장도면을 작성하는 등 현장수사를 시행하였고, 1998. 2. 24. 16:45경 육군 제1군단 헌병대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변사자 검시, 현장 사진 촬영 등 기초 조사 절차를 마친 다음 1998. 2. 24. 22:20경 김훈의 아버지인 김□(1965. 2. 20.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7. 11. 30.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다) 등 유족들에게 사체를 확인시킨 후 1998. 2. 25. 사체 부검을 하는 등 변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그와 같은 김훈 사망 소식은 1998. 2. 25. 주요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4) 육군 제1사단 헌병대(1998. 3. 27. 육군 제1군단 헌병대가 수사권을 인계받았다)는 1998. 2. 24.부터 1998. 4. 29.까지 미군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김훈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이하 '1차 수사'라고 한다) 1998. 4. 29. '김훈은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권총을 댄 후, 왼손을 이마 앞으로 뻗어 권총으로 감싼 채 스스로 발사했다'고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1차 수사 과정에서 유족들은 군 수사 기관, 군 지휘부, 미군측에 대하여 정확한 사인(死因) 조사를 요구하면서 타살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언론기관과 국회에 그러한 의혹을 알렸다. 그러자 피고는 1998. 4. 23. 그 발행의 '시사저널'을 통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훈의 사망에 타살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시작하였고(기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이 작성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하경근도 1998. 4. 14. 열린 제191회 임시 국회 질의에서 국방부에 대하여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견 표명을 요구하였다.

(5) 1차 수사결과에 대해 김훈의 유족들이 반발하고, 피고도 1998. 5. 14.자 '시사저널'에 1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보도하자 군 검찰은 1998. 6. 1.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김훈 사망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 시작하였다(이하 '2차 수사'라 한다). 그와 같이 2차 수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재미 법의학자인 노여수(미국 이름은 Louis

S. Roh) 박사가 1998. 7. 27. 부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타살 의견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유족들과 피고 등을 중심으로 타살 의혹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위 수사팀도 1998. 9. 1. 노여수 박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이어 1998. 9. 3. 국내 법의학자들과 노여수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법의학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6) 그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서울방송이 1998. 9. 13. SBS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훈의 타살 의혹을 세밀하게 방영하면서 타살의혹은 더더욱 증폭되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 1998. 10. 16. 하경근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회 소속 5인의 국회의원이 '김훈 육군 중위 및 김○○ 해군 하사 사망 진상 파악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하경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덕우 변호사를 법률 자문 위원으로 위촉한 후, 추후 4차례에 걸쳐 우선 김훈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되 자료 수집 기간을 거쳐 1998. 11. 27. 제1차 소위원회를 열기로 하는 등의 계획을 정하고 진상 규명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7) 육군본부 고등검찰부는 1998. 11. 27. 김훈의 사인은 '격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는 2차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한편, 소위원회는 1998. 11. 27. 열린 제1차 소위원회에서 제2차 소위원회에 참석할 전역병에 대한 소환 등 준비 절차를 마쳤고, 소위원회는 1998. 12. 3. 열린 제2차 소위원회에서 육군 고등검찰부의 2차 수사결과보고를 듣고, 곧 이어 전역병인 참고인 두 사람과 전 북한군 판문점 경비장교였다가 1998. 2. 3. 귀순한 변○○ 상위에 대하여 비공개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훈이 소대장으로 있던 2소대원들이 오래 전부터 북한군과 접촉하면서 그들과 물건을 교환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원고 김○○의 경우에는 1997년 여름 무렵부터 야간 경비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감시카메라를 반대로 돌려 놓고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넘어 북한군 초소를 찾아가 북한군과 접촉하였고, 북한군 초소에 고기를 구워가거나 국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을 가져간 다음 돌아올 때에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맥주와 인삼주 등을 받아오기도 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되었다. 이에 소위원회는 당시 배석한 군 수사당국 관계자에게 원고 김○○의 북한군 접촉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촉구하였고 국방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원고 김○○의 신병 확보를 요구하였다.

(8) 그에 따라 국군 기무사령부는 1998. 12. 4. 원고 김○○을 반국가 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등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소위원회의 김훈 사망 진상 규명 활동은 계속되어 1998. 12. 4. 제3차 소위원회가(시신 검안 군의관과

부검 군의관에 대한 조사), 1998. 12. 7. 제4차 소위원회가(공동경비구역 내 사건 현장 방문 및 수사 관계자 조사) 각각 열렸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보도

정○○은 1998년 3월경 김훈의 유족들로부터 타살가능성에 대한 의혹제기를 접하고 취재를 시작하여 1998년 4월경부터 1998년 11월 말경까지 피고 발행의 '시사저널'에 7차례에 걸쳐 김훈 사망 사건에 대하여 연쇄보도하였는데, 1998. 11. 27. 2차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1998. 12. 4. 원고 김○○이 구속되자 그 때까지 취제한 수사 상의 문제점과 타살정황을 종합하여 1998. 12. 7. '시사저널' 제447호(1998. 12. 17.자) 커버스토리란에 별지 1 내지 4 부분으로 구성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8. 12. 8. 경부터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제447호를 발행·판매하였다.

라. 이 사건 보도 후의 정황

(1)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1998. 12. 8. 18:30경 국군 기무사령부는 기자들에게 원고 김○○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 중이고 추후 여죄와 북한군과의 접촉 배경에 대하여 수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2) 한편 국회 소위원회는 1998. 12. 9. 제5차 소위원회를 열어 2소대 전역병과 현역병, 군 수사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기자들에게 소위원회의 중간 활동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 김○○의 북한군 접촉 사실이 소위원회 활동으로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고, 원고 김○○이 국군 기무사령부에 구속되어 수사 중이어서 추후 수사 결과를 본 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다시 원고 김○○을 조사할 방침이며, 그동안 김훈 사망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오던 수사의 의문점들, 즉 사용된 권총이 김훈에게 지급된 것이었는지, 권총불출대장(Deadline Paper)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권총의 실제 수령인이 원고 김○○은 아니었는지, 미군이 수거해간 김훈 중위의 수첩에 관한 의문, 권총에 지문이 없었던 점과 사망 추정 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대하여 보다 공정하고 심도있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것이었다.

(3) 이에 국방부도 1998. 12. 9.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는 하사관과 병사들에 대한 북한군과의 내통 사건 및 김훈 사망 의혹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군과 민간의 전문 수사 기관으로 편성된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육군 중장 양○○, 요원은 군검찰, 기무사, 정보사, 국정원, 민간검찰 등 요원 68명 및 변호사, 법의학자, 심리학자, 교수, 인권단체 구성원 등 2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하 '합조단'이라고 한다)을 발족하면서, 그 조사 계획으로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괴군과 접촉한 전 공동경비구역 경비소대 김○○ 중사(28, 당시

부소대장)를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으로 구속하여 수사중에 있는데,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출발, 철저히 재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전공동경비구역 근무 하사관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로 제공하였다.

(4) 그러자 1998. 12. 8.부터 SBS,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을 비롯한 언론사들이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방부의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원고 김○○의 실명을 거론하여 원고 김○○의 북한군 불법접촉 및 군사분계선 월경 등의 범죄 혐의를 보도하고 김훈의 사망과 원고 김○○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일제히 방송 또는 게재하였다.

(5) 국군 기무사령부와 합조단은 국방부의 발표내용에 따라 원고 김○○의 김훈 사망과의 관련성에 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김○○은 1999. 1. 18. 1997년 7월경부터 1997년 12월경 사이의 10여 차례에 걸친 반국가 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금품 수수, 반국가 단체 지배 지역으로의 탈출, 잠입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 군형법위반(명령위반 및 무단이탈)의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다가, 1999. 5. 14. 그 각 공소 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1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0. 8. 15. 사면·복권되기에 이르렀다.

(6) 한편 합조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1999년 1월경부터 김훈의 유족들 및 피고 등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했던 일부 전역병들이 김훈을 최후로 목격한 시간, 그들의 사망 장소 도착시간, 사망 사실 전파 시간 등에 대한 이전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고, 합조단이 1999. 1. 15. 국내 법의학자와 노여수 박사, 수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 법의학 토론회에서 노여수 박사는 이전 자신의 견해에 일부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7) 그런데도 합조단은 1999. 4. 14. 김훈은 '전방 소대장경험 부족에 따른 중대장의 잦은 질책, 변○○ 귀순 이후 극도로 긴장된 공동경비구역지역의 근무여건 등 급변해진 부대 환경에 적응치 못하고, 평소 내성적인 성격관계로 타 소대장 및 소대원들보다 업무 면에서 뒤지는 무력감과 소외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고민해오다가, 사망 다음날로 예정된 업무보고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자살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미화한 소설 「노르웨이의 숲」을 통하여 합리화된 자살을 결심하고 사망장소인 한적한 3번 지하병커로 이동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장갑, 수색정찰계획표, 모자 등을 가지런히 기관총 거치대 위에 올려놓은 후, 자신의 지급 권총에 실탄 1발을 장전한 뒤 좌측 손으로 권총을 감싸쥔 채 총구를 우측 관자놀이에 대고 우측 손으로 격발, 단 1발의 두부관통총창을 입은 상태로 비틀거리

다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자세로 사망한 것'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8) 그러자 원고들은 이 법원 99가합30768호로 원고 김○○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김훈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던 서울방송과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경향신문사 등에 대하여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해 원고 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였고, 이 법원은 2000. 7. 19. 서울방송, 동아일보사, 경향신문사 등은 원고 김○○에 대한 정식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실명과 신상을 밝혀 보도하여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와 같이 보도함에 있어 취재원이 된 국군 기부사령부, 국방부와 소위원회의 공식 발표 내용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이나 취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이른바 진실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9) 한편 김훈의 유족들도 이 법원 99가합103781호로 국가를 상대로 군 수사기관이 김훈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진상을 은폐·조작하여 김훈의 사인을 자살로 처리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고 김훈의 사인을 자살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해 김훈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였고, 이 법원은 2002. 1. 31. 유족들의 청구는 김훈이 피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한 김훈이 피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김훈의 유족들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나13814호로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04. 2. 17. 김훈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군 수사기관이 고의로 그 진상을 은폐·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초동 수사 당시 현장조사의 미흡 및 현장보존의 소홀, 권총 등 현장증거품 등에 대한 조사미비, 형식적인 알리바이 조사, 2소대 상황일지와 원고 김○○의 컴퓨터 등의 미확보, 사인에 대한 예단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김훈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국가는 그와 같은 부실수사로 인해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유족들이 또다시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 2004다149732호로 상고심에 재판이 계속 중이다.

2. 판단

가. 원고 김○○에 대한 명예훼손

(1)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그 기사를 읽은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김○○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김훈을 살해한 살인범 또는 간첩이라는 인상을 주어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김○○의 실명을 거론한 바 없고 이 사건 기사는 군 수사당국과 소위원회의 수사결과 및 김훈의 유족들과 정○○ 등의 취재·조사결과를 전제사실이나 기초로 삼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그에 대해 논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룬다.

(2)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김○○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김아무개 중사”라고만 표현하고 있으나 “김훈과 같은 소대의 부소대장”,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여 원고 김○○과 같이 근무하던 군인들이나 원고 김○○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김아무개 중사”가 원고 김○○을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 김○○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명예훼손적 표현

피고는 별지 1 부분에서 “판문점 경비 한국군 일부, 북측과 몰래 접촉”, “시사저널 추적 확인/김훈 중위 의문사와 깊은 관련.. 월북 등 이적행위 해온 부소대장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큰 제목 아래, ‘시사저널’ 등이 9개월여 동안 김훈 사망 사건을 취재한 결과는 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달리 “김훈의 사인은 권총에 의한 타살”이고, “범행동기는 이적행위가 탄로난 부하가 적(북한)의 지령을 받아 상관을 살해한 것”이며, “살인 용의자는 같은 소대의 부소대장 김아무개 중사”라고 나름대로 결론지은 다음, 그와 같은 “상관살해용의자”인 김아무개 중사가 국군 기무사령부에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여 원고 김○○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김훈을 살해하였고 그러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고, 이어 김훈 사망 당시 2소대에 근무하였던 병사들의 말을 인용해 김아무개 중사가 1997년경부터 북한군을 접촉하여 왔는데 변○○의 귀순 등으로 극히 긴장된 상황이었다던 1998. 2. 16.경 다시 한 차례 월북하였다 돌아온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김

훈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원고 김○○의 북한군 접촉과 김훈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김아무개 중사가 “모종의 지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게재하였다. 나아가 “용의자, 김중사 사건 현장 장악하고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김훈 사망 당일 김아무개 중사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알리바이 진술의 모순점 등을 열거하는 한편 노여수 박사가 법의학적으로 김훈의 사인은 명백한 타살이라고 밝혔음을 강조하고 김훈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 역시 김아무개 중사가 지급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게재하여 그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 김○○이 김훈을 살해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 다음 결국 김훈의 사망 원인은 “이적 행위자에 의한 타살”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피고는 별지 2 부분에서 “군 수사 발표와 ‘시사 저널’의 추적결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큰 제목 아래, 2차 수사결과와 ‘시사저널’ 등의 추적결과를 자살동기, 타살동기, 알리바이, 법의학적 소견과 수사 및 조사결과로 항목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여 그 결론으로 “상관 살해 용의자는 특전사 출신으로 대테러·암살 특수 훈련을 받은 자로서 상관 살해 후 교묘히 자살로 위장하고 부대 상황 및 알리바이를 장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대 내 이적행위자에 의한 타살로 판단된다”고 하는 한편, 별지 3 부분에서 “술·시계 주고 한국 병사 포섭”이라는 큰 제목으로 2소대 20여 명의 병사들이 북한군과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후 소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군 정보기관의 변○○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보도하였고, 별지 4 부분에서 “관문점 한국군 병력 숙련된 장교로 바뀌야”는 큰 제목 아래 하경근 의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김아무개 중사의 이적행위가 김훈 살해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여 원고 김○○이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별지 1 부분을 보강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읽은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김○○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북한군의 지령을 받았거나 이적행위가 탄로나자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인상을 받게 하여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군사분계선 남측지역 최전방인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원고 김○○의 북한군 접촉 등의 범죄와 공동경비구역 내 한국군 배치 후 최초로 발생한 장교 사망 사건인 김훈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에 관한 보도는 국가 안보와 긴밀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관심사에 해당하여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며, 가사 진실이 아

나라 하더라도 피고 소속 기자가 9개월 여 간의 취재를 걸쳐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익성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지역은 판문점으로 유엔군이 관할하고 있는데, 원고 김○○과 김훈이 함께 근무하던 공동경비구역은 휴전선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군과 바로 대치하고 있는 구역으로 군사상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더구나 김훈 사망 사건은 우리군이 공동경비구역에 배치된 1991년 이래 최초로 발생한 장교 사망 사건으로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군사적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1998. 2. 24.에 일어났고, 그 사인을 둘러싸고 군 수사당국과 유족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고 국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 당국 역시 그러한 의문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채수사를 하던 상황으로서 김훈 사망 사건의 진상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의 대상이었다. 또한 원고 김○○의 북한군 접촉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보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총을 겨누는 현실에서 발생한 최전선의 군기 문란 행위로 그에 대한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과거 발생한 사건의 처리 측면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었다 할 것이고, 김훈 사망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 역시 당시 군대 내 의문사가 사회적 관심사였고, 유족들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소대원들의 북한군 접촉 사실, 북한이 변○○의 귀순에 따른 보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시사저널' 등의 추적과 소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그러한 모든 정황들이 김훈의 사망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어 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기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3) 진실성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주요부분에 있어 진실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김훈의 사인은 기초사실 1의 마. (9)항과 뒤의 상당성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자살이나 타살 어느 쪽으로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김훈의 사인은 타살일 가능성이 크거나 김훈 살해의 유력한 용의자가 원고 김○○이라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와 반대로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기초사실 1의 마.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이 북한 지역으로 잠입·탈출하거나 북한군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위반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이 되나, 원고 김○○이 북한군의 지령을 받아 형법 제94조 내지 제99조 소정의 이적 행위나 간첩행위까지 저질렀다거나 더 나아가 북한군의 지령을 받아 김훈을 살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 김○○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행위를 저질렀고(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김○○이 간첩이라거나 간첩행위를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게재하고 있지는 않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김훈을 살해한 것이라는 부분은 진실하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4) 상당성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 소속의 기자인 정○○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함에 있어 그 기사 내용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하지 않거나 또는 진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 김○○에 대해 적시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을제5호증의 1 내지 9, 14, 15, 17, 19, 21, 23, 24, 을제6 내지 8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6, 을제12 내지 16호증, 을제17호증의 20, 27, 51, 을제18호증, 을제19호증의 1 내지 5, 을제20호증의 1 내지 5, 을제21호증, 을제26호증의 1, 2, 을제27호증의 1 내지 3, 을제28호증, 을제29호증의 3, 4, 을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훈의 타살 가능성

1) 군 수사 당국은 3번에 걸친 수사 결과 김훈의 사인은 자살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김훈의 유족들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은 그와 달리 김훈이 자살할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훈 사망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들의 상태, 김훈 사체에서 발견된 두정부출혈, 권총발사자세, 총기발사에 따른 화약반응실험결과 등에 대한 법의학적 의문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훈의 사인이 타살일 가능성이 높고, 김훈 사망 현장에서 크레모아 스위치 박스와 김훈의 손목시계가 파손되었다는 것은 격투나 반항의 흔적이 될 수 있으며, 또 원고 김○○이나 2소대원들의 북한군 접촉사실이나 소위 '소대장 길들이기'는 주요한 타살의 동기가 될 수 있고, 김훈 사망 당시 원고 김○○을 비롯한 2소대원들의 알리바이에 의문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김훈의 타살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기초사실 1의 마. (9)항 기재와 같이 김훈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역시 김훈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

관이 김훈 사망 현장을 조사함에 있어 타살임을 입증할 단서가 될 수도 있는 현장의 크레모아 스위치박스나 손목시계의 파손 사실 등을 간과하고 유류품의 위치를 실측하거나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고 미군에 의한 현장훼손을 방지하였으며, 부검을 위하여 후송된 김훈의 사체를 사망 당시와 같이 보존하지 아니하고 법의학적인 감정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김○○의 컴퓨터 등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에 있어서도 김훈 사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2소대원들이 서로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또 시간별 상황을 알 수 있는 2소대 상황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241GP의 상황을 2소대원들에 대한 진술에만 의존하게 함으로써 2소대원을 상대로 한 알리바이 조사에 대한 신빙성을 한층 더 의심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2소대원들에 대한 지문채취나 피복압수 등 타살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조사 역시 이루어진 바 없다), 나아가 1차 수사 당시 군수사기관이 김훈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이 누구의 권총인지 조차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자살이라고 단정지었다고 전제한 후 그와 같이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김훈 사망의 원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결론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 김○○의 수상한 행적 내용

1) 원고 김○○은 1997년 7월경부터 야간 경비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감시카메라를 우리 지역으로 돌려 놓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초소를 드나들며 북한군과 접촉해왔다.

2) 그러던 중 원고 김○○은 변○○의 귀순에 따른 북한군의 보복 위협이 있었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고조된 상황하에서 경비중대장인 김○○이 남·북한 간 정전협정 내용을 언급하면서 군사분계선 근처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 2. 16.경 다시 야간 경비 근무 중이던 김 모 병장에게 감시카메라를 반대로 돌려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다) 원고 김○○의 김훈 사망 당시 알리바이 등

1) 한편 원고 김○○은 김훈 사망 당일 박○○으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 받고 사망 현장으로 가 그 입구를 막고 입구 주위의 땅을 만지며 화약 냄새가 난다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고, 검시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공동경비대대의 대대장에게 김훈이 자살한 것 같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2) 이어 1차 수사를 담당하였던 육군 제1사단 헌병대 수사팀이 김훈 사망 당일 23:00경

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2소대원 35명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김훈의 사망 당일 행적, 2소대원들의 당시 임무 및 시차별 행적에 관하여 진술서를 받았는데, 그 때 위 수사팀은 당일 행적에 관한 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2소대원들에게 서로 상의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원고 김○○이 2소대원들에게 박○○의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비상을 건 시간이 12시 29분이라고 말하여 2소대원들은 원고 김○○이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김훈 사망 전후의 행적을 기재하였다.

3) 또한 원고 김○○은 1차 수사 당시부터 자신은 김훈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2소대장실에서 다음날 있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컴퓨터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김○○이 작성했다는 업무보고 문서는 오전 9시 56분에 저장되어 있고 1998. 5. 11. 사진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된 업무보고 문서에는 실제 작업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그 후 원고 김○○은 1998년 8월경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결과적으로 그 작업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라) 정○○의 김훈 사망 사건 취재 경위

1) 정○○은 1998년 3월경 김훈의 유족들로부터 김훈이 타살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착수하여 앞서 본 초동 수사의 문제점과 2소대 내의 군기문란 등을 취재하고 유족들과 함께 군 수사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던 중 1998년 10월경 국회 국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함께 김훈 사망 사건의 진상을 공동추적하기로 하고, 국방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방부와 육군 고등검찰부로부터 수사 진척사항과 공식자료를 받아내고, 정○○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변호사들은 김훈과 함께 근무한 병사들을 비롯한 참고인들을 접촉하기로 하여 각각 조사한 내용은 공유하되 1998년 12월경 열릴 국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전에는 보도하거나 발표하지 않기로 하였다.

2) 이에 정○○은 1998년 10월경부터 2소대 전역 병사들인 김○○, 최○○, 박○○ 등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김훈의 육사 동기생들을 비롯한 친구, 은사 등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김○○을 비롯한 2소대원들이 북한군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내고 국방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군 정보당국의 변○○에 대한 신문조서에 의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노여수 박사, 영등포 경찰서 김○○ 반장, 공동경비구역 총기 관리 미군 군무원 등의 진술 내용을 입수하여 1998. 11. 20.경 이 사건 기사 작성을 위한 취재를 완료하였으며, 그 후 2차 수사결과 발표가 있고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 김○○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자 1998. 12. 6.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3) 더욱이 정○○은 1998년 4월경부터 김훈의 사인과 사망 경위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

술을 직접 청취하고, 문서들을 검토·분석하여 김훈의 사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심증을 가진 다음 1998. 4. 23.자 '시사저널'에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훈은 자살할 만한 동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후 발견된 김훈의 자세, 총알의 박힌 위치,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의 위치 및 상태 등에 의문이 있으며, 2소대 내에 소대원들 간의 가혹행위, 음주, 보급품 외부유출 등 각종 군기문란행위가 빈발했었다는 점 등 김훈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의문점들을 제시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사를 보도한 이래, 1차 수사결과 발표 후 1998. 5. 14.자 '시사저널'에 1차 수사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사를, 1998. 9. 19.자 '시사저널'에 김훈의 사인은 타살이라는 노여수 박사의 법의학적 소견을 소개한 기사를, 1998. 10. 5.자와 1998. 10. 18.자 각 '시사저널'에 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과의 공동 조사 결과 김훈이 지급받은 권총의 일련번호와 김훈 사망 당시 시신 옆에 떨어져 있던 권총의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사를 각각 보도하는 등 1998년 11월 말경까지 7차례에 걸쳐 김훈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보도를 해왔다.

4) 이에 정○○은 민간인으로서 접근하기 곤란한 점이 많은 공동경비구역 내 김훈 사망 사건을 최초로 또 9개월간 추적·취재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1999년 삼성언론재단이 수여하는 제3회 삼성언론상과 기자회견이 수여하는 제99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김훈 사망 사건 및 군내 의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여 왔다.

(마)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김훈의 사인은 자살이나 타살의 어느 쪽으로나 쉽게 단정할 수 없어 그 사건에서 나타난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훈의 사인이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중을 두고 9개월여 동안의 긴 기간에 걸쳐 단독 취재 또는 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과의 공동 조사를 거쳐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들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그 때마다 '시사저널'을 통해 보도하였고, 그러한 점이 수사기관에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재수사의 계기가 되기까지 하였던 바(그 점에서 이 법원 99가합30768호 사건의 피고들이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방부의 각 공식발표,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의 중간발표자료, 유족들의 주장, 하경근 의원보좌관과의 면담, 보도 직전에 공개되거나 제시된 기타 수사기록, 언론보도자료(이 사건 기사와 그 전에 정○○이 작성하여 '시사저널'에 게재된 기사들이 그 주된 언론보도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만을 취재하여 보도한 것과는 취재경위나 취재방법, 취재원의 종류와 내용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며, 원고 김○○에 대해 익명보도를 한 점은 신중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김훈의 사인이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부분에 관해 피고나 그 소속의 정○○으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 현역군인인 원고 김○○이 북한 지역으로 잠입·탈출하거나 북한군을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를 저질러왔고 나아가 위(나) 항의 ‘원고 김○○의 수상한 행적 내용’ 등에 비추어 김훈 사망 직전인 1998. 2. 16.에 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바,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김○○이 북한군의 지령을 받아 이적행위나 간첩행위를 하였다거나 북한군의 지령을 받아 그에 따라 김훈을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는 하나, 당시 공동경비구역의 상황에 비추어 원고 김○○의 북한군 접촉 사실은 김훈 살해의 주요한 동기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 더욱이 원고 김○○의 김훈 사망 당일의 알리바이나 그 후의 행적 등에 의문점이 많은 점, 김훈이 북한군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김훈이 내부인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앞서 본 정○○의 취재원과 취재 활동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 김○○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김훈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부분 역시 피고나 그 소속의 정○○으로서는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종래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도 정치적·군사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그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의혹의 진위를 가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도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이 철저히 지켜짐으로써 피해자 유족이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아쉬움이 있었던 일이 없지 않았고 바로 그러한 경우에 이를 파헤치고 우리 사회에 의문을 던지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함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바(대법원 2003. 7. 8. 2002다64384 판결 참조), 그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부연해 둔다.

다. 원고 김△△, 김□□, 김◇◇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김△△, 김□□, 김◇◇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 김○○의 명예가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 김○○의 부모인 원고 김△△, 김□□과 형인 원고 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원고 김○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김△△, 김□□, 김◇◇의 청구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 지〉 기사 생략 — 편집자주

□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사회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무분별한 땅굴탐색의 문제점을 보도한 것은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확인 보도한 점을 감안할 때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4. 8. 31.자 판결 (2004나18059)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민간단체회원 8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의 발견은 사회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사항이어서 땅굴의 존재여부, 땅굴을 발견하였다는 단체의 실체와 그 활동방법,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땅굴탐색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보도한

이 사건 보도는 그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땅굴의 존재가 의심되는 곳이라고 지적한 570여 곳을 국방부가 조사한 결과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결국 그로 인하여 국가 예산이 낭비되었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파헤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관련기관의 작업중지 및 원상회복 지시에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초능력이나 철사로 땅굴을 발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점, 이 사건 보도가 관련 공무원, 군관계자, 남굴사 회원들에 대한 충분한 취재와 국방부의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원고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관련자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편성, 보도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도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문화방송이 2003년 2월 27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땅굴을 발견한다면서 초능력과 철사등을 이용한 비과학적이고 황당한 방법으로 땅굴을 찾아다닌다는 보도를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취재내용중 일부만을 방송하여 원고들이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는 인상을 강조함으로써 보도에 있어 지켜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다소 잃은 것으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백5십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1집, 308~313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4나18059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

김 ○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 중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성 규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4. 선고 2003가합17571 판결

변 론 종 결 : 2004. 7. 20.

판 결 선 고 : 2004. 8. 31.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

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모두 합쳐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민간단체(이하 ‘남굴사’라고 한다)의 회원들이고, 피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일 21시에 ‘뉴스데스크’라는 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국에 방송하고 있다.

나. 정○○, 최○○, 이○ 등은 약 15년 전부터 국내 10여개 지역 중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70여개 지점에 구멍을 뚫고 녹음기를 설치하여 지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는 방법 등으로 남침땅굴을 탐사해오다가 2001. 4. 3.경부터 남굴사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탐사활동을 해 왔는데, 남굴사는 2002. 10.경 화성시 매송면 일대에 휴전선으로부터 서해를 통과하여 위 지역까지 설치한 장거리 땅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땅굴을 발견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동원하여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소재 공병부대 앞에 있는 경기도 소유지를 절개하고, 2003. 1. 27.경부터는 같은면 원평리 소재 정○○의 밭을 절개하기 시작하였다.

다. 화성시청 및 매송면사무소 공무원들은 남굴사 회원들의 위와 같은 절개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민심이 동요되는 징후를 보이자 군부대, 국가정보원 등에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고 남굴사 회원들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남굴사 회원들에게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대집행계고를 하였다.

라. 남굴사 회원들은 2002. 11. 21.경 국방부에 화성시 매송면 일대에서 탐사용 시추공이 내려가자 역대책을 위한 작업소음과 대화소리가 녹음되고 에어가 새어 나오는 등 남침땅굴이 있다는 증거를 포착하여 민간인 땅굴탐사자 20여명이 시추작업과 절개작업을 하고 있으니 조사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국방부가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땅굴의 존재여

부를 확인하였으나 땅굴발견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은 땅굴이 발견되었다는 민원을 접하고 수십억 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군 보유 첨단장비로 570 군데에 구멍을 뚫어 탐사하고 그 중 세 곳을 절개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였으나, 남굴사 등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땅굴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 그 중 2000. 9. 30.경 화성시 지화리에서 신고된 땅굴에 대한 조사분석결과, 신고지점은 휴전선으로부터 63km, 해안으로부터 400m 떨어진 지점으로서 이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지층구조 등에 비추어 땅굴을 건설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민원인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지하에서 북한군의 음성이 녹음되었다는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은 지하에서 녹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지역의 지반이 장기간 풍화와 침식으로 형성된 지층으로 되어 있고 지반이 연약하므로 압축공기가 새어나왔다거나 시추기 로트가 낙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땅굴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2002. 10.경 원고들이 절개하고 있는 화성시 매송면 지역도 위 지화리와 동일 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같은 이유로 땅굴의 존재가능성이 없다.

마. 한편, 정○○은 피고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원고들의 땅굴탐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를 본 피고 보도국 사회부 소속 이○○ 기자는 2003. 2. 중순경 화성시 매송면 땅굴 탐사현장을 찾아가 정○○, 매송면사무소 공무원, 현장에 있던 남굴사 회원들인 최○○, 윤○○ 등을 취재하였고, 다음날 국방부, 육군본부 공보실에서 원고들의 땅굴발견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국방부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2003. 2. 27. 뉴스 데스크 방송 중 카메라출동 시간에 '황당한 땅굴찾기'라는 제목으로 별지 보도내용 기재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부

(1) 원고들은, 남굴사 회원들이 화성시 매송면 일대에서 북한의 남침땅굴을 발견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무시한 채 근거 없이 남굴사의 땅굴발견이 허위라고 보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남굴사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요지는, 남굴사 회원들이 땅굴을 발견한다는 명목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허락도 받지 않고 파헤치고 있는데, 남굴사 회원들이 주장하는 땅

글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보도의 당초 의도가 땅굴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재산을 무단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보도의 제목,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보도는 땅굴발견의 사실 여부를 떠나 방송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청자들에게 남굴사가 초능력과 철사 2개 등 황당한 방법으로 땅굴을 찾아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그로 인하여 남굴사의 구성원인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도는 남굴사 회원들의 땅굴탐사로 인한 피해를 고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의 발견은 사회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사항이어서 땅굴의 존재여부, 땅굴을 발견하였다는 단체의 실체와 그 활동방법,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땅굴탐색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보도한 이 사건 보도는 그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3) 또한 앞서 든 국방부의 조사결과, 화성시청 및 매송면사무소의 관련공문의 내용과 취재기자가 남굴사 회원인 최○○, 윤○○을 취재한 자료 등에 의하면, 원고들과 남굴사가 화성시 매송면을 비롯하여 약 15년간에 걸쳐 땅굴의 존재가 의심되는 곳이라고 지적한 570여 곳을 국방부가 조사한 결과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결국 그로 인하여 국가 예산이 낭비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굴사가 화성시 매송면 일대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파헤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관련기관의 작업중지 및 원상회복 지시에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초능력이거나 철사로 땅굴을 발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점, 이 사건 보도가 관련 공무원, 군관계자, 남굴사 회원들에 대한 충분한 취재와 국방부의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원고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관련자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편성, 보도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도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김 대 응
판사 박 인 식

〈별 지〉 선정자목록, 보도내용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1집 312면 참조) □

**원고의 설교내용을 잘못 인용하여 사실의 전제사실로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담임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을
부추겼다는 인상을 주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5.자 판결 (2004가합32294)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김상균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와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이 한겨레신문과 사실 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새문안교회에 700만원을, 원고 이○○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은 원고 이○○의 설교 내용 자체를 잘못 인용하여 전제사실로 적시하고 그에 관해 의견을 논평한 것으로 이 사건 사실의 전체적인 흐름, 이 사건 사실이 총선을 7일여 앞두고 게재되었다는 점, 색깔론이라는 말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사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이○○이 마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곧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색깔론을 부추겼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 이○○ 및 원고 이○○이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원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 내용에 원고 교회 자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의 설교는 당해 교회의 주된 종교행사인 주일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담임 목사의 면면과 설교 내용 등이 당해 교회의 인상,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와 연관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새문안교회의 이○○ 목사’라고 하여 원고 이○○이 원고 교회의 목사임을 명시한 이상 이 사건 설교 내용에 대한 적시 내지 논평은 원고 이○○ 개인뿐만 아니라 원고 이○○이 대표하고 있는 원고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사죄광고청구 부분과 예비적 사실취소광고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한겨레신문이 지난 2004년 4월 8일자 27면 『우려스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색깔론』이라는 제하의 사실을 게재하자 한겨레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32294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원 고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42

대표자 담임목사 이 ○ ○

2. 이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인 애

피 고 :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희 범

2. 김 ○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 태 휘

변 론 종 결 : 2004. 9. 1.

판 결 선 고 : 2004. 9. 15.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에게 7,000,000원, 원고 이○○에게 10,00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04. 5. 11.부터 2004. 9. 15.까지는 연 5%, 200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한겨레신문'의 사설란 밑에 2일간 연속하여 5호 활자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죄광고를 게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겨레신문'의 사설란 밑에 2일간 연속하여, 5호 활자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기사 취소광고를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내지 5호증, 강제6호증의 1, 2, 강제7, 8호증, 강제11호증의 1, 강제12호증, 을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1887. 9. 27. 미국인 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설립한 우리 나라 최초의 개신교회로 2004년 현재 교인수가 12,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원고 이○○은 1968년 2월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1975년 2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각각 졸업하고 1984년 6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영락교회 협동목사를 거쳐 2000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당회장을 맡고 있다.

(2) 피고 신문사는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김○○는 1988. 3. 2.부터 현재까지 피고 신문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논설위원실 소속 논설주간으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설의 작성과 편집을 총괄한 사람이다.

나. 원고 이○○의 이 사건 설교

(1) 원고 이○○은 2004. 3. 21. 주일 예배에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이하 '이 사건 설교'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설교와 관련하여 기독교 뉴스 전문 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www.chtoday.co.kr)에 2004. 3. 22. '이○○ 목사, 극진보세력 우려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이○○牧사는 설교에서 기독교계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과 위험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으며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탄압하려는 좌익세력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면서 이 사건 설교 내용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고 그에 대해 상반된 여론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월간조선'의 대표이사인 소외 조갑제도 그 홈페이지(www.chogabjae.com)에 2004. 4. 5.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새문안교회 이○○牧사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공산주의식 모략과 선동, 홍위병식 여론몰이와 인민재판식 인격살인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는가. 지금 우리 나라는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달려가고 있다. 북한정권의 거짓선동에 춤춰온 자들은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며 지금까지 감춰온 악마의 발톱을 세우고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사 5:20)' 이 목사는 또 "사탄은 본래부터 거짓의 아버이고 속이는 자이다. 사탄의 간악한 술책을 가장 잘 습득, 활용해온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사탄의 가장 무서운 도구라고 말했다.』며 이 사건 설교 내용을 인용한 다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총선은 사탄의 심부름꾼들인 공산주의자들이 민주, 진보, 개혁인사로 위장하여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라고 논평(이하 '조갑제의 논평'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실의 게재

2004. 4. 7. 피고 신문사의 편집국 편집회의에서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이라 한다)를 앞두고 소위 '색깔론'이 제기되고 있고 원고 이○○ 등 일부 기독교목사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제가 있자, 피고 신문사는 논설위원회의를 통해 그와 관련된 사실을 게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 신문사 소속 논설위원인 소외 김△△가 크리스천투데이, 조갑제의 홈페이지와 원고 교회의 홈페이지(www.saemoonan.org)를 통해 문제가 된 이 사건 설교 내용을 확인한 다음 '한겨레신문' 2004. 4. 8.자 제27면 사실란에 '우려스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색깔론'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이하 '이 사건 사실'이라 한다)을 작성·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사실 게재 후의 정황

이 사건 사실 게재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실에 인용된 원고 이○○의 설교 내용이 이

사건 설교 내용과 다르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2004. 4. 10.자 ‘한겨레신문’ 제2면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8일치 ‘우려스러운 일부 기독교인들의 색깔론’ 사설에서 새문안교회의 이○○ 목사가 최근 설교에서 한 말로 인용한 부분(이 사건 사설 본문 중 “새문안교회의 이○○ 목사는... 시험대라고 열변을 토했다”는 부분)은 이 목사가 하지 않은 말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제6호증)을 게재하였고, 원고들은 2004. 4. 14.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를 거쳐 2004. 4. 16. 피고들에게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은 사죄광고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설을 통하여 원고 이○○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하였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원고 이○○에 대해 ‘사랑과 화해의 정신에 기초한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어둠과 광기의 진원지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흑평함으로써 원고 이○○ 개인뿐만 아니라 원고 이○○이 담임 목사로 있는 원고 교회의 명예까지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설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펴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설의 제목과 본문 서두에서 조갑제·김동길 등 이른바 보수우익논객들 및 ‘좌파척결 국민행동본부’라는 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기독교인들마저 이에 가세하고 있다면서 그 한가지 예로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새문안교회의 이○○ 목사는 “이번 총선은 사탄의 심부름꾼들인 공산주의자들이 민주, 진보, 개혁인사로 위장하여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라고 열변을 토했다』며 조갑제의 논평 내용을 마치 원고 이○○의 설교 내용인 것처럼 잘못 인용한 다음 이를 전제 사실로 삼아 신성한 주일 예배 설교를 색깔론 시국강연으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태도로 인해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어둠과 광기의 진원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사설은 원고 이○○의 설교 내용 자체를 잘못 인용하여 전제사실로 적시하고 그에 관해 의견을 논평한 것으로 이 사건 사설의 전체적인 흐름, 이 사건 사설이 총선을 7일 여 앞두고 게재되었다는 점, 색깔론이라는 말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사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이○○이 마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곧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색깔론을 부추겼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 이○○ 및 원고 이○○이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원고 교회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우선 그 점에서 원고 교회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경우는 물론 원고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타인의 어떠한 표현으로 인하여 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예·신용 등을 침해당하였다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또한, 가사 원고 교회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 내용에는 원고 교회 자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 교회 소속 14명의 목사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한 원고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여 바로 원고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강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이○○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원고 교회를 대표하고 나머지 13명의 목사들은 원고 교회의 부목사로 원고 이○○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임 목사의 설교는 당해 교회의 주된 종교행사인 주일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담임 목사의 면면과 설교 내용 등이 당해 교회의 인상,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와 연관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새문안교회의 이○○ 목사' 라고 하여 원고 이○○이 원고 교회의 목사임을 명시한 이상 이 사건 설교 내용에 대한 적시 내지 논평은 원고 이○○ 개인뿐만 아니라 원고 이○○이 대표하고 있는 원고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들은 이 사건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색깔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적인물인 원고 이○○의 설교를 전제사실로 인용한 것이었고, 그 전제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설교 내용과 일치하여 진실하며, 나아가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설교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사실을 게재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의 좌·우 이념대립, 6·25 전쟁 및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정권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고, 군사정권하에서는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나 또는 친북성향의 인물을 상징하는 소위 ‘빨갱이’로 낙인찍어 탄압하기도 해왔으며, 더욱이 선거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상대편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나 친북성향의 인물로 비방·공격하는 색깔론과 같은 폐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색깔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원고 이○○은 우리 나라 최초의 개신교회인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공적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이 전제사실로 적시한 원고 이○○의 설교 내용 자체는 이미 피고들이 원고 이○○이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의 전제사실은 진실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설교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이 사건 설교 내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잘못 인용하였던 것으로서 피고들이 그 적시된 전제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와 같이 잘못 적시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논평한 것은 원고들의 수인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결국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실의 제목, 내용 및 게재 시점, 게재의 목적과 배경, 피고들이 이 사건 설교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그 내용과 다르게 잘못 사실을 적시하여 인용한 점, 이 사건 사실 게재 후 피고들이 원고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정정보도한 사정, 원고 이○○의 원고 교회에서의 지위, 한국 기독교 교단에서 원고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배상할 정신적 손해액은 원고 교회에 대해 700만원, 원고 이○○에 대해 1,000만원으로 각각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신문사는 피고 김○○와 소외 김△△의 사용자로서, 피고 김○○는 이 사건 사실 작성·편집 책임자로서, 각자 원고 교회에게 700만원, 원고 이○○에게 1,000만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5.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4. 9. 15.까지는(그 때까지는 피고들이 그 각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상당하다) 민법이 정한 연 5%의, 200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죄광고청구 및 이 사건 사실취소광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에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주위적으로, 사죄광고를 게재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설취소광고를 게재할 것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인 사죄광고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양심표명을 강제하는 것이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며(헌법재판소 결정 1991. 4. 1. 89헌마160 참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되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법인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인격권을 인정한 바 있다).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사설취소광고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광고가 사죄광고와 달리 윤리적 판단이 게재되지 않고 공연히 적시된 사실의 존재의 취소를 명하는 데 그치는 점, 또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란 피해자에 대하여 일단 생긴 사회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의 자료가 되었던 정보의 정정의 효과가 있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죄광고와 달리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를 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의 전제 사실을 정정하는 보도를 하였고, <별지 2> 기재 이 사건 사설취소광고의 내용이 그 정정보도문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사설취소광고의 게재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주위적 사죄광고청구 및 예비적 이 사건 사설취소광고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지 1, 2, 3, 4> 생략 — 편집자 주

□

형사재판과정에서 신빙성이 배척된 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수사내용을 소설화한 점 등에 비추어 소설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9. 24.자 판결 (2003가합6217)

사실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아가동산의 대표인 김○○이 ‘신도 살해 암매장 의혹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 강○○이 쓴 소설 ‘뽕나무와 돼지똥’을 출판한 해우출판사와 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강○○은 2천만원을 배상하되 이중 1천만원은 강씨와 해우출판사가 각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설 등이 진실하다거나 또는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으나, 이 증거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 속에 자세히 심리된 결과 그 반대되는 증거나 정황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살인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피고 강○○은 이 사건 소설을 발간할 당시 현직 검사의 신분이었는데, 직무상 취급한 아가동산 사건에 관하여 위 형사사건에서 그 신빙성이 배척된 기존의 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소설발간 등 사적인 방법으로 발표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소설 등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또는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소설을 발간했다는 취지의 피고 측 항변에 대해서도 “이 소설에 사이비종교의 위험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공익적 의도가 일부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 강○○가 이 사건 소설 등을 공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정치입문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홍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3가합6217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고 : 1. 주식회사 해우출판사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405-10 만영빌딩3층

대표이사 조 용 희

2. 강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 상 익

변 론 종 결 : 2004. 9. 3.

판 결 선 고 : 2004. 9. 24.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강○○는 금 20,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해우출판사는 위 피고와 각자 위 금원 중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0. 7.부터 2004.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0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5억원, (2) 피고 강○○는 금 5억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의 소외 강△△ 및 최○○에 대한 살인 등을 공소사실로 한 소위 '아가동산' 사건(위 사건 중 위 살인 부분을 이 사건 살인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이고, 피고 강○○는 당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담당한 검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해우출판사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아가동산의 형성 및 아가동산에서의 원고의 지위

(1) 원고를 비롯한 아가동산의 구성원들은 본래 1970년대 이리시 소재 주현교회에서 활동한 소외 이○○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로 당시 이들은 대부분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위 이○○가 주최하는 신앙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이○○는 '3선을 끊는 교리' 즉 '인정선(人情線: 가족이나 사람간의 정)' '정욕선(情慾線: 성적인 욕망)' '물욕선(物慾線: 재물에 대한 욕심)' 등 3가지 욕망을 끊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독특한 교리를 창안하여 그를 따르는 신도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도들은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근로장사 음반장사 등 떠돌이 행상을 하면서 생활하여 오다가, 1979. 1.경 이○○가 기성교회 목사들을 구타하는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위 신도들 중 300명 정도가 원고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2) 그런데 1981.경 위 이○○가 형을 복역하고 나온 후 원고 등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및 그를 따르던 소외 김△△ 등을 심하게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자 원고 등은 이○○와 결별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 및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1982년경에 이르러 복지농촌을 만들어 공동생활을 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구성원들이 김밥장사 등 생업에 종사하여 번 돈과 일부 구성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판 돈을 모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일대 약 4,000평 정도의 임야를 구입하여 그 곳에 농장을 만든 다음, 1982. 1. 12. 공동생활에 관한 약관을 만들고 그 명칭을 '협업마을-아가동산'으로 칭하였다.

(3) 아가동산은 초기에는 순수한 생활공동체를 지향하였으나, 아가동산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원고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어 신격화되면서 초기의 순수한 생활공동체적인 색채는 퇴색하였고, 인정선, 정욕선, 물욕선을 끊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삼선교리에 따라 가정의 존재나 결혼, 이성간의 사랑, 재산의 사적 소유 등은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징벌로서 어린아이들은 돼지우리에 가두고, 어른의 경우에는 남자는 '마당쇠', 여자는 '중년'이란 이름으로 중노동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 최○○, 강△△ 등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한 체벌을 가하기도 하였는데(아가동산에서는 체벌을 가할 경우, 때리는 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 등 최근친자로 하여금 먼저 때리게 한 다음 특징의 한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때를 때리게 한다) 이와 같은 엄격한 내부규율과 징벌 때문에 1980년대 후반 경부터 아가동산 이탈자가 속출하였다.

(4) 원고는 주말에 아가동산의 구성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환경으로 인한 지구의 종말론이나 영원히 죽지 않는 '신나라' (신의 나라) 등을 강조하는 식의 설교를 자주하면서 자신을 아이들처럼 천진 무구하고 영생한다는 의미에서 '아가야'로 부르게 하였고,

1986년부터는 매년 그의 생일을 전후하여 커다란 생일축하행사를 벌였으며, 중추절이나 설날 등에 개최되는 연례행사에서는 구성원 전원들로부터 큰절을 받는 등 신격화하여 오다가 1989.경 중추절에 거행된 '신나라' 원년식 행사에서는 '신나라'가 도래하였으며 그가 곧 '사랑의 왕'이자 '구세주'라고 선포하였다.

또한 원고는 신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아가동산의 책임자로서 그 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하고 매주 일요일 오후에 개최되는 집회에서 구성원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임무를 부여하는 등으로 아가동산의 의사결정 및 집행행위를 총괄하고 그의 핵심 추종자들에게 각자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아가동산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원고는 그 추종자들과 함께 아가동산의 구성원 중 1987. 8. 중순경 소외 최○○를, 1988. 11. 말경 소외 강△△을 위 아가동산 내에서 각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1996. 12.경 구속, 기소되었고, 이에 아가동산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300여명이 같이 모여 사는 사이비 종교집단으로서 그 교주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안에서 폭행과 살인까지 벌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위 각 살인의 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1997. 5. 19. 96고합74호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98. 3. 3. 97노1138호로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에서 1998. 6. 23. 98도869호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최○○에 대한 살인의 점

서울고등법원은 최○○에 대한 살인의 점에 관하여 원고는 피해자 최○○(만 5세)가 매우 영특하여 평소 부모와도 함께 못살게 하는데 불만을 품고 “나는 아가야가 싫다”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하는 등 불손한 행동을 자주하자 최○○에게 ‘아가야를 미워하는 귀신’이 썩었다고 생각하고 1987. 7.말 원고의 주도로 신도들을 아가동산 운동장에 모이게 한 후, 최○○에게 썩워진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 굿까지 하였으나 최○○의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외 김△△과 함께 1987. 8.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아가동산 내 돼지우리 철창에 위 최○○를 묶어 놓았고, 그 다음날에는 아가동산 내 어린이와 학생들의 규율과 징벌을 담당하는 소외 정○○의 주도하에 소외 최△△, 김모, 신○○, 김□□ 등이 위 돼지우리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아가야를 괴롭히는 귀신이 들렸다면서 돼지 똥

을 피해자의 전신에 바르고 뽕나무가지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그 다음날에는 정○○이 소외 강□□(당시 10세) 등 약 20-30명 가량의 어린이들을 위 돼지우리 부근에 모아 놓고 소외 최△△, 서○○ 등과 함께 피해자의 전신을 위 쫄대, 뽕나무가지 등으로 때렸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정△△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소외 선○○은 의사에게 부탁하여 위 피해자의 사체를 보이지도 아니한 채 그 사망원인을 선천성 심질환, 중간 선행사인을 심부전증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은 다음 1987. 8. 18. 벽제화장터에서 화장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먼저 폭행의 정도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 등이 3-5cm 두께의 뽕나무몽둥이와 어른 손목 굽기의 각목으로 피해자를 무수히 때려 그 뽕나무몽둥이와 각목 등 수십개가 부러졌다는 위 형사사건에서의 증인 명○○, 명△△, 윤○○, 남궁○○, 안○○, 채○○, 채△△, 채□□, 김모, 유○○의 각 진술은 그 각 진술에 있어 일관성이 없거나 상호간에 있어서도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 위 증인들은 모두 아가동산을 이탈한 사람들로써 아가동산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굽기의 뽕나무가지나 각목이 어린애를 때려서 부러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위 진술들은 모두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과 만 5세에 불과한 어린애가 원고에게 불손한 행동을 취하고 원고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사고가 고정되지 아니한 철부지 어린애를 죽음까지 계산해 넣고 폭행을 감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귀신이 씌었다는 이유로 그 귀신을 떨쳐 버리기 위하여 굿을 한 점, 폭행을 주도한 정○○은 아가동산 내에서 어린이, 학생의 교육과 징벌을 담당하는 자인 점, 그리고 폭행장소가 공개된 돼지 우리이고 그 돼지우리는 전에도 어린이들의 징벌장소를 사용된 점, 더구나 어린 학생들 20-30여명을 일부러 모아 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폭행의 목적은 피해자에게서 귀신을 떨쳐 버리려는 미신적 동기와 어린이들에게 피해자와 같이 불손한 행동을 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교육적 효과를 노린 징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범행은 폭행(상해)치사 정도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등에게 사망의 결과까지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강△△에 대한 살인의 점

서울고등법원은 강△△에 대한 살인의 점에 관하여도 원고는 피해자가 아가동산 내부 규율을 어기고 자신의 아들과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1988. 11.말 일자불상경 서울 신나라레코드사에 근무 중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아가동산 내에 있는 씨제로(C-O)로

불리는 창고로 데려와 피해자의 부모와 소외 최△△, 정○○, 김모, 김□□ 등 약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을 무릎 꿇게 한 다음, 말을 듣지 않으니 정신차리게 단단히 혼내 주라면서 먼저 피해자의 부모로 하여금 때리도록 지시하여 그의 아버지인 소외 강모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어머니인 소외 정□□도 손바닥으로 몇 차례 얼굴과 등을 때리다가 나중에는 회초리로 엉덩이 부분을 때렸고, 그 후 최△△을 시작으로 정○○, 김모, 김□□, 송○○, 정모, 서△△, 전○○ 등이 번갈아 가면서 3시간여에 걸쳐 뽕나무 가지, 각목 등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으며,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집단폭행으로 그 자리에 실신하여 쓰러진 후 현재까지 그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원고는 그 후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고 아가동산 내 구성원들에게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인 강모는 그로부터 약 8, 9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가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가출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먼저 폭행의 정도에 있어 소외 최△△ 등이 3-5cm 두께의 뽕나무 몽둥이와 어른 손목 굵기의 각목으로 피해자를 무수히 때려 그 뽕나무 몽둥이 등이 부러졌다는 위 사건에서의 증인 주○○, 안△△, 이△△, 명○○, 명△△의 각 진술은 위 최○○에 대한 살인 부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인하여 그 시경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위 아가동산을 이탈한 사람들인 증인들의 증언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는 사체의 존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사체발굴에는 실패하여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폭행의 동기는 피해자가 내부규율을 어기고 이성교제를 한 점에서 비롯되었고, 폭행당시 20여명이 모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더구나 피해자의 부모도 함께 폭행에 가담한 점, 그 폭행의 방법도 아가동산에서 통상 규율을 어긴 자에게 징벌로서 체벌을 가할 때처럼 근친자인 그의 부모로 하여금 먼저 때리게 한 다음 8-9명의 여자들로 하여금 때리게 한 점, 원고가 폭행을 지시함에 있어 정신차리게 혼내 주라고 하였으며 특히 증인 주○○도 이성교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노동의 징벌을 받고 있었는데 부름을 받고 폭행장소에 갔더니 자신을 위 피해자 옆에 꿇어 앉혀 놓고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보게 하였고 주위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정□□와 최△△ 등이 ‘너도 똑같은 년이다’, ‘너도 같은 죄인이니까 강△△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야단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의 목적도 위 피해자 최○○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규율을 어긴 데 대한 징벌적 차원의 폭력행위라고 봄이 상당하

여, 위 범행은 폭행(상해)치사 정도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등에게 사망의 결과까지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피고들의 출판행위 등

(1) 2003. 8. 18. 조선일보 기사 보도

피고 강○○는 2003. 8.경 이 사건 살인사건을 소재로 자신의 주임검사로서의 수사경험을 소설화한 ‘뽕나무와 돼지똥’이라는 제목의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 발간과 관련하여 조선일보 기자 소외 박○○과 인터뷰함으로써 기사를 제공하여 2003. 8. 18.자 조선일보에 ‘아가동산사건 수사검사가 소설로 펴내’라는 제하로 별지 신문기사와 같은 내용의 신문기사가 출판되게 하였다.

(2) 2003. 8. 19. 엠비씨(MBC) 보도

피고 강○○는 2003. 8. 19. 엠비씨(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엠비씨(MBC) 초대석 장원 재입니다’에 출연하여 사회자와 대화중 이 사건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방송보도문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내용이 방송되도록 하였다.

(3) 2003. 8. 23. 출판물 발행

피고 강○○는 이 사건 소설(소설의 주요 내용은 별지 소설내용과 같다)을 저술한 후 피고 주식회사 해우출판사와 이 사건 소설에 대한 출판계약을 맺었고, 피고 주식회사 해우출판사는 위 출판계약에 따라 2003. 8. 23. 이 사건 소설을 발행하여 전국서점에 배포하였다. 위 소설의 내용은 이 사건 살인 사건을 기동 줄거리로 삼아 피고 강○○가 ‘아가동산’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한 과정, 원고(다만 소설 속에서는 ‘김경숙’이라는 가명으로 지칭하였으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원고를 지칭하고 있음은 명백하다)를 포함한 아가동산 내의 가담자들을 기소하여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피고 강○○의 나름대로의 평가 및 판결 후 증인 등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하며 겪은 이야기, 피고 강○○의 출생지 및 성장지, 검사가 된 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살인사건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원고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처럼 묘사하면서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느낀 점과 사이버종교집단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것이다.(이하 위 신문보도, 방송, 소설을 ‘이 사건 소설등’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통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설을 발행·배포하고, 피고 강○○는 별지 기재 각 신문 및 방송 보도에 응하여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위 강△△ 및 최○○를 각 살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 성립여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설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고, 위 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족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사유

(가) 피고들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설 등은 피고 강○○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이어서 진실한 것일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사이버종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기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다) 판단

1) 공익성 유무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소설을 제작·배포하고 신문 및 방송 보도를 통해 이를 홍보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익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설 등을 공표할 무렵 경기 연천군에서 모 사이비종교단체와 관련된 살인사건(속칭 '생명수 사건')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소설은 '아가동산'이라는 종교시설 속에서 자행된 각종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하고 판결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검사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공익적 의도가 일부 나타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갑 제1호증의 일부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설에는 피고 강○○의 출생지 및 성장지(그 장소가 위 피고가 한나라당 지구당 조직책으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인 것으로 보임), 검사가 된 동기,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열정과 애환, 상사로부터의 긍정적인 평가 등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적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 강○○는 이 사건 소설이 발간될 즈음인 2003. 8.경 한나라당 서울 금천구 지구당 조직책 모집에 응모한 후 2003. 8. 27. 검사직을 사직하고 2003. 9. 9. 지구당 조직책으로 선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가 이 사건 소설 등을 공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위와 같은 정치입문에 앞두고 자신에 대한 홍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진실성 여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4항, 검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와 수사기관의 발표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관련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한 대외적 발표를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설 등이 진실하다거나 또는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원고 등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 중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가 있으나, ① 위 각 증거들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의 치열한 공방 속에 자세히 심리된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반대되는 증거나 정황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된 결과 이 사건 살인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② 피고 강○○는 이 사건 소설을 발간할 당시 현직 검사의 신분이었는데, 직무상 취급한 아가동산 사건에 관하여 위 형사사건에서 그 신빙성이 배척된 기존의 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소설발간 등 사적인 방법으로 발표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소설 등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또는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설 등의 공표행위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설을 발간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소설 발간의 사회적 효용, 이 사건 소설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원고 등 관련 인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들인 노력의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가 피고들의 위 행위에 대응하여 기울인 노력, 피고들의 위 명예훼손에 가담한 횟수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강○○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해우출판사가 배상할 위자료는 위 금원 중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강○○는 금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해우출판사는 피고 강○○와 각자 위 금원 중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3. 10.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10.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 승 국
판사 민 소 영
판사 윤 재 남

〈별 지〉 기사, 소설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보도의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주·월간지임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선정적 문구를 사용하여 흥미를 유발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자 판결 (2003나55334)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04년 10월 12일 연예인 주○○씨가 에스비에스와 제작담당 PD, 일요신문사와 소속기자, (주)서울문화사(우먼센스)와 소속기자, (주)경향신문사(레이디경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주)서울문화사(우먼센스)와 소속기자, 경향신문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주)서울문화사와 소속기자는 각자 1천만원의 위자료료, (주)경향신문사는 3천만원의 위자료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일요신문사와 소속기자에게 각자 5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그 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요신문과 우먼센스, 레이디경향의 보도에 대해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가 경찰서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처럼 주장하나, 각 보도를 작성한 기자들은 담당경찰관 등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지득한 사실을 기초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들의 매체의 특성이 보도의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주간지 또는 월간지이어서 사실 확인이 절실히 요구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지나치게 선정적인 문구나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에스비에스의 보도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위 보도에 앞서 각종 신문의 사건 관련 보도를 수집·정리하는 등 자료 수집에 필요한 노력을 하였고, 원고와 수사경찰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사실 및 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려 한 의도가 보이며, 원고가 유죄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보도의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

다”고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이유를 설시했다.

원고는 2003년 7월 4일 에스비에스와 일요신문, 레이디경향, 우먼센스 등이 원고의 성폭행혐의 논란에 대해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일요신문사와 소속기자에게 각자 5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1심 판결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1집 106~121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3나5533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만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대표이사 윤 세 영, 송 도 균

2. 이 ○ ○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문 선 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3.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일요신문

대표이사 신 상 철

4. 백 ○ ○

피고, 피항소인 : 5.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35

대표이사 조 대 응

6. 김 ○ ○

피고 3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 남 희

7.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조 용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병 국

제 1 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8777 판결

변 론 종 결 : 2004. 8. 31.

판 결 선 고 : 2004. 10. 12.

주 문 :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김○○,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김○○은 각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2. 28.부터 2004.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 31.부터 2004.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김○○,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이○○,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백○○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김○○,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위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이○○,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백○○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백○○의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백○○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에스비에스' 라고 한다.), 이○○은 연대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이하 '피고 일요신문사' 라고 한다.), 백○○은 연대하여 3

억 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문화사(이하 '피고 서울문화사' 라고 한다.), 김○○은 연대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1.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이하 '피고 경향신문사' 라고 한다.)는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1.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에스비에스, 이○○은 연대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일요신문사, 백○○은 연대하여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서울문화사, 김○○은 연대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1.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피고 경향신문사는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1.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일요신문사, 백○○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연예인 겸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 에스비에스는 'SBS TV'의 방송사업을 운영하는 방송사이고, 피고 이○○은 별지 1 기재 보도 당시 SBS TV '한밤의 TV 연예' 프로그램의 제작담당 프로듀서(PD)이다.

(3) 피고 일요신문사는 주간신문인 '일요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백○○은 별지 2, 3 기재 각 기사를 작성한 피고 일요신문사의 기자이다.

(4) 피고 서울문화사는 월간 잡지인 '우먼센스'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김○○은 별지 5 기재 기사를 작성한 피고 서울문화사의 기자이다.

(5) 피고 경향신문사는 월간 잡지인 '레이디경향'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1) 강○○은 원고가 2000. 11. 19. 02:30경 자신을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같은 날 05:45경 원고를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국립경찰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 상처부위 진단을 받고, 질에서 체액을 채취하도록 하였다.

(2) 원고가 2000. 11. 21.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경찰은 원고에 대하여 강간치상혐의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00. 11. 22.자 검찰의 재수사명령에 의하여 보강수사를 한 다음 2000. 11. 24.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3) 그 후 원고에 대한 위 강간치상 피의사건은 2000. 11. 27.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검찰의 수사를 거쳐 2000. 12. 14. 서울지방법원에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다.

(4) 검찰의 기소를 전·후로 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강간치상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를 하였다.

(가) 피고 에스비에스, 이○○은 2000. 11. 22. 저녁에 방영된 SBS TV '한밤의 TV연예' 프로그램에서 별지 1 기재 보도를 방영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원고가 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여대생의 진술이 2차례에 걸쳐 번복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재수사명령을 내려 경찰이 현재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 보도내용과 더불어 원고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습, 원고와의 인터뷰, 담당경찰관과의 인터뷰, 사건현장, 강○○로부터 채취한 체액샘플 등의 화면을 함께 방영하였다.

(나) 피고 일요신문사, 백○○은 2000. 12. 3.자 일요신문에 강○○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별지 2 기재 기사로 게재하였고, 2001. 1. 14.자 일요신문에 원고를 둘러싼 소문과 장아무개

에 대한 인터뷰를 내용으로 하여 별지 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 서울문화사는 우먼센스 2001년 1월호에 강○○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별지 4 기재 기사로 게재하였고, 피고 김○○은 2001년 2월호에 당시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의 인터뷰 내용과 위 강간치상 사건의 제1심 재판과정 및 원고가 그동안 폭력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가 있다는 내용의 별지 5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피고 경향신문사는 레이디경향 2001년 1월호에 강○○에 대한 인터뷰 내용과 원고가 그동안 폭력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가 다수 있다는 내용의 별지 6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도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기소된 이후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1391호로 진행된 제1심에서 2001. 3. 21. 강간치상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1노852호 재판에서 2001. 11. 28.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2. 7. 12. 상고심인 대법원 2001도6777호 재판에서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데, 강○○가 사건 다음날인 2000. 11. 20. 원고와 합의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합의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의 제출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① 피고 에스비에스, 이○○이 2000. 11. 22. '한밤의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강○○로부터 원고의 정액이 채취된 바 없고 경찰이 원고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언론기관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집에서 채취한 체액샘플만을 토대로 '증거자료로 제출된 정액샘플'이라는 자막과 그 샘플의 영상을 원고가 조사받는 모습과 함께 방영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가 강간범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울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며, ② 피고 일요신문사, 백○○, 서울문화사, 김○○, 경향신문사는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취함이 없이 강○○와의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보도하거나 공

공의 이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된 소문, 원고의 범죄경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2 내지 6 기재 각 기사(다만 원고는 별지 5 기재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 하단의 원고에 대한 전과 관련 보도만을 문제삼고 있다.)를 게재함으로써 위 각 기사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오인하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가)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나) 마찬가지로 신문기사나 잡지에 게재된 보도 내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독자의 기사에 관한 인상이 기사의 제목 및 제목에 따르는 본문의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제목의 표현, 글자의 크기, 배치뿐만 아니라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기사를 읽는 일반적인 독자가 그 기사를 읽었을 때 그 기사 전체로부터 받는 통상적인 인상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의 유무

(가) 먼저 피고 에스비에스, 이○○의 별지 1 기재 내용의 방송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로서 국내에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실명(實名)이 거론되면서 원고가 강간치상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동시에 원고의 조사받는 화면, 원고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됨으로써 위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원고가 강간치상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 에스비에스, 이○○의 위와 같은 방송으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인이고,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을 전제로 자청하여 인터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지위나 방영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원고로서

는 자신이 경찰서에서 수사받는 모습과 인터뷰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화면과 함께 보도된 내용은 원고가 강간치상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인터뷰하거나 조사받는 장면은 그 보도 내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모습이 화면으로 방영된 부분은 보도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한 정도에 그쳤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일요신문사, 백○○, 서울문화사, 경향신문사가 각 보도한 별지 2, 4, 6 기재 각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은 원고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파렴치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면서 은밀하게 강○○와 접촉하여서는 그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였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피고 일요신문사, 백○○이 보도한 별지 3 기재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3 기재 기사는 형식상으로는 장아무개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고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듯이 보이나, 결국, 위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원고가 평소에는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여자를 만나 성적 접촉을 하는 등의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사의 게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 서울문화사, 김○○이 보도한 우먼센스 2001년 2월호에 게재된 별지 5 기재 기사 중 전과관련 보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별지 5 기재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기사 말미에 원고에 대한 전과를 보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전력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위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위 기사 보도 당시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범죄 이외에도 각종 범죄로 처벌받는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도는 공적 인물인 원고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한 보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있고, 그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보도 내용

도 진실한 것이거나 피고들이 보도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각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피의사실의 보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1) 언론매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와 같은 증명이 없더라도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2)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 또는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또는 방송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의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참조).

다. 공공성

(1)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의 범죄에 대한 보도는 범죄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

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의 보도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처럼 널리 알려진 연예인 겸 기업 대표로서 유명인인 원고가 강간치상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혐의와 관련한 보도 및 범죄경력에 대한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1, 2, 4, 6 기재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별지 6 기재 기사는, 강○○와의 인터뷰 부분에 뒤이어 원고의 범죄경력에 관한 보도를 하고 있는바, 이 부분 보도는 다음에서 판단하는 별지 5 기재의 전과 관련 부분과는 달리 다른 기사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를 작성한 기자로서도 원고의 범죄경력보도를 강○○와의 인터뷰 내용에 그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자료로서 추가하여 하나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전과관련 부분을 전체기사에서 분리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평가하여서는 안 되고, 위 보도의 주된 내용인 강○○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다만, 별지 3 기재 기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유명한 연예인 겸 기업 대표로서 이른바 공인(公人)이라고 할지라도 그 보도 내용이 원고가 여자를 마담뚜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소개받았다는 소문 또는 원고를 둘러싼 여자관계에 대한 소문 등에 관한 것으로서 지극히 사적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원고에 대한 강간치상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보도는 그 내용과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에 대한 피고 일요신문사, 백○○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별지 5 기재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체계는, 범죄혐의에 대한 원고 자신의 입장 표명과 원고에 대한 재판진행 상황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다가 말미에 이르러 원고는 그 동안 폭력으로 3차례 벌금형에 처해졌고, 대마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가 있다는 것인바, 원고의 범죄경력보도 부분이 별지 5 기재 기사의 주된 보도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전과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강간치상혐의와 동종의 전과도 아니고, 제범방지를 위하여 그 보도가 필수불가결한 경우라거나 국민들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부분에 관한 보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로서 공인이라는 이유나 국민들의 알권리만을 이유로 위 전과관련 보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 서울문화사, 김○○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진실성

별지 1, 2, 4, 6 기재 각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2001노852호)에서 무죄판결, 대법원(2001도6777호)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일반 시청자나 독자에게 원고가 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주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 에스비에스, 이○○, 일요신문사, 백○○, 서울문화사, 경향신문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일요신문사, 백○○은 인터뷰 기사의 경우 인터뷰의 내용을 기자가 별도의 편집이나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였다면, 그 보도 자체의 진실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터뷰 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가 다른 형식의 기사와 달리 보는 것은 아니고, 인터뷰 기사의 경우에만 객관적 진실성의 개념을 달리 인정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상당성

그렇다면, 별지 1, 2, 4, 6 기재 각 기사는 공공성은 인정되나, 그 적시사실의 주요내용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나아가 과연 피고 에스비에스, 이○○, 일요신문사, 백○○, 서울문화사, 경향신문사가 위 각 보도의 내용이 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언론기관이 그 보도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도매체의 성격, 사건의 진행 단계와 관련된 보도의 시기(기소 전후, 판결 전후 등),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구성, 표현방법,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명예훼손을 당한 자의 유책성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별지 1 기재 기사에 관한 판단

피고 에스비에스, 이○○의 보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한밤의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인 원고가 현재 성폭행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강간혐의를 부인하는 원고에 대한 인터뷰 및 담당경찰관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또 피해자인 강○○의 진술번복으로 원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혼란을 빚고 있어 사건의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원고가 조사받는 모습과 강○○로부터 채취된 정액샘플을 촬영한 장면을 방영하고 있는바, 위 보도는 보도에 앞서 각종 신문의 사건 관련 보도를 수집·정리하는 등 자료 수집에 필요한 노력을 하였고, 원고 본인뿐 아니라 수사경찰관, 원고의 사업장 관계자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의 충분한 인터뷰를 통하여 사실 및 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려 한 의도가 보

이며, 보도 내용도 혐의를 부인하는 원고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사건에 대한 원고의 반론을 게재하고 아울러 피해자인 강○○의 진술번복으로 원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혼란을 빚고 있어 사건의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유죄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터뷰 내용 및 강○○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사정 등을 비교적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의 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한 위 피고들의 노력이나 보도의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자신의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강○○의 체액샘플 화면을 방영하면서 자막으로 내보낸 '증거자료로 제출된 정액샘플'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그 자체로는 강○○의 체액샘플 속에 원고의 정액이 들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소 없지 아니하나, 위 체액샘플은 수사경찰이 위 피고들에게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이를 방영하게 되었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체액을 채취하여 정액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전후의 보도 내용 및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위 자막과 함께 방영된 체액샘플이 강○○로부터 채취된 것이고 그 속에 원고의 정액 등 체액이 들어 있는지 여부는 경찰이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체액샘플 화면을 방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성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에스비에스, 이○○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별지 1 기재 보도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

(3) 별지 2, 4, 6 기재 각 기사에 관한 판단

피고 일요신문사, 백○○, 서울문화사, 경향신문사는, 이 사건 각 보도가 사건수사를 담당하였던 용산경찰서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인 강○○를 직접 만나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구속,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결과가 번복되는 등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혐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피고들은 위 각 보도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가 용산경찰서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도를 작성한 기자들은 용산경찰서의 담당경찰관 등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그로부터 지득한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죄

사실의 보도에 있어 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이나 수사기관의 내부분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연예인으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강○○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사정과 위 피고들의 매체의 특성이 보도의 긴급성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 주간지 또는 월간지여서 위와 같은 사실확인의 요청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사실확인을 위한 특별한 조사나 관련자들을 통한 정확한 사실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고 강○○에 대한 일방적인 인터뷰 내용만을 기사화하여 보도하였고, 각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매체의 특성이나 그 주요 독자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선정적인 문구나 제목을 사용하여 원고의 혐의사실을 일반 독자로 하여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할 뿐 아니라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통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들이 위 각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외에도 피고 일요신문사, 백○○은 별지 2 기재 기사는 피해자 강○○에 대한 인터뷰 형식의 기사로서 비록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했다고 하더라도 문답식 기술방법을 채택하고,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등 나름대로 객관적인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성폭행 피해자의 주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의 성적인 수치심을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이 진실일 개연성이 높으므로 피고 일요신문사, 백○○이 이 사건 보도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보도의 형식이 인터뷰 형식을 취하고 있다거나 성폭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도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인 보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이유가 없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일요신문사, 백○○은 별지 2, 3 기재 각 기사를 통하여, 피고 서울문화사는 별지 4 기재 기사 및 별지 5 기재 기사 중 전과 관련 기사를, 김○○은 별지 5 기재 기사 중 전과 관련 기사를 통하여, 피고 경향신문사는 별지 6 기재 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기사 제목의 내용과 크기 및 표현방법의 선정성, 보도문의 형식과 내용, 크기, 원고의 입장을 반영한 정도, 보도 횟수, 보도 이후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는지 여부, 언론기관으로서의 위 피고들의 지위 및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일요신문사, 백○○은 각자 5천만 원, 피고 서울문화사, 김○○은 각자 1천만 원, 피고 경향신문사는 3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피고 일요신문사, 백○○은 각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별지 2 기재 기사 게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0. 12. 14.부터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7.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서울문화사, 김○○은 각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별지 4, 5 기재 각 기사 게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 2. 28.부터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4. 10.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경향신문사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별지 6 기재 기사 게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 1. 31.부터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4. 10.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일요신문사, 백○○, 서울문화사, 김○○, 경향신문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에스비에스, 이○○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서울문화사, 김○○, 경향신문사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하는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서울문화사, 김○○, 경향신문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서울문화사, 김○○, 경향신문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에스비에스, 이○○, 서울문화사, 백○○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서울문화사, 백○○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김 대 응

판사 박 인 식

〈별 지〉 기사목록 생략 — 편집자 주



안기부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0.자 판결 (2001가합34985)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004년 10월 20일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전 안기부 간부들과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및 소속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고, 더불어 월간조선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안기부 간부들에게는 “피고들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해 언론기관으로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당하고 법인으로서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각자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월간조선사와 소속기자들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 종합분석이란 이 사건 문건은 그 존재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며 내용 또한 언론사의 보도성향을 당시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공개될 필요가 있으므로 다소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의 명예가 다소 훼손되었다고 하여도 원고로서는 스스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비판도 그만큼 수인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기사 내용·제목 등을 전제로 원고의 보도성향을 ‘친북적’, ‘좌익적’이라고 평가하고 원고를 ‘로동신문 서울지국’으로 비유한 것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에버랜드 안전사고 보도내용과 원고의 광고수주 증가 사이에는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로서는 안기부가 작성한 이 사건 문건 내용에 그와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광고수주 비리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월간조선의 2001년 4월호 “특종-안기부가 1997년 4월 5일 작성한 『한겨레신문 종합분석』 입수”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친북·좌익 성향의 보도를 하여 왔고, 광고수주를 위해 국영기업체를 협박하거나, 재벌 대기업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 축소 보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합34985 손해배상(기)
 원 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최 학 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 정 희
 피 고 : 1. 권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전 창 열
 2. 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표

3. 임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전 창 열

4.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대표이사 조 갑 제

5. 조 갑 제

6. 조 ○ ○

7. 우 ○ ○

피고 4 내지 7의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조선일보사

피고 4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변 론 종 결 : 2004. 9. 22.

판 결 선 고 : 2004. 10. 20.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권○○, 피고 박○○, 피고 임○○은 각자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5. 부터 2004. 10. 20.까지는 연 5%의, 200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피고 조갑제, 피고 조○○은 각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부터 2004. 10. 20.까지는 연 5%의, 200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조선'의 '편집장의 편지' 뒷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은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로 하여 1회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가 가. 항 기재 기간 안에 가. 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원고에게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월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우○○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권○○, 피고 박○○, 피고 임○○,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피고 조갑제, 피고 조○○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권○○, 피고 박○○, 피고 임○○ 사이에 생긴 부분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권○○, 피고 박○○, 피고 임○○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피고 조갑제, 피고 조○○ 사이에 생긴 부분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

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피고 조갑제, 피고 조○○이, 원고와 피고 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피고 권○○, 피고 박○○, 피고 임○○은 연대하여 5억원,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이하 '피고 월간조선사'라 한다), 피고 조갑제, 피고 조○○, 피고 우○○은 연대하여 15억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피고 권○○, 피고 박○○, 피고 조○○은 1997. 4. 5.부터, 피고 월간조선사, 피고 조갑제, 피고 조○○, 피고 우○○은 2001. 4. 1.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의,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월간조선사는 이 사건 판결송달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조선'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표지 중앙에 제목을 24급 고딕활자로, 표지 다음 면에 제목을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을 18급 명조 활자로 하여 게재하고, 피고 월간조선사가 그와 같은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월간조선사는 원고에게 그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2호증의 각 1, 2, 강제3호증, 강제4호증의 1 내지 14, 강제8호증의 1, 2, 강제9호증, 강제10호증의 1, 2, 6 내지 8, 강제11호증의 1, 2, 5 내지 7, 강제12호증, 강제15호증의 1 내지 4, 을다제1호증의 1 내지 4, 을다제2호증의 1 내지 3, 을다제4호증의 1 내지 5, 을다제5호증의 1 내지 6, 을다6호증의 1 내지 3, 을다제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피고 조○○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7. 12. 15. 설립되어 일간지인 '한겨레', 주간지인 '한겨레 21' 등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권○○은 1994. 12. 4.부터 1998. 3. 4.까지, 피고 박○○은 1996. 12. 21.부터 1998. 3. 7.까지, 피고 임○○은 1996. 12. 30.부터 1998. 3. 31.까지 각각 구 국가안전기획부(1999. 1. 21.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안기부'라 한다)의 부장, 제1차장, 대공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피고 월간조선사는 시사종합일간지인 '월간조선'을 발행하는 회사이며(2003. 1. 3. 소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로부터 계열분리·독립하였다), 피고 조갑제, 조○○, 우○○은 각각 피고 월간조선사의 발행인 겸 편집장, 편집위원, 취재2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안기부의 조직 및 직무 범위

(1) 구 안기부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같다)에 따르면 안기부에는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 2인 이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제5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에는 제1·2차장을 두어 제1차장 산하 실·국에서 국내 정보의 수집·분석과 보안 업무 등을, 제2차장 산하 실·국에서 해외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각각 맡고 있었다. 또한, 구 안기부법에서 부장은 안기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제7조 제2항),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제7조 제3항), 기타 안기부의 조직은 부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구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안기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제3조 제1항)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부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제11조 제1항), 이에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제19조 제1항) 규정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

(1) 그런데 안기부에서는 1997. 4. 5.자로 원고의 조직, 보도양태 및 이념성향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원고를 견제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겨레신문 종합분석」이라는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국가정보원이 2001. 3. 14. 공보실을 통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존재 사실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문건을 안기부가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은 뒤의 2항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사건 문건은 ‘한겨레신문 종합분석’, ‘한겨레신문의 국익저해 보도실태 및 문제점’, ‘한겨레기사와 북한신문·방송 보도내용 비교’, ‘한겨레기사와 북한신문·방송보도내용 대비자료’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겨레신문 종합분석’에서는 “한겨레신문은 창간(1988년 5월) 이후 계기시마다 친북보도와 좌익세력 지원으로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 동지(同誌)의 이적성 및 취약점을 면밀분석,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강구가 긴급”하다며 한겨레신문의 창간배경, 조직 및 인적구성, 경영상태, 추진사업, 보도양태, 한겨레신문의 취약점, 안기부에 대한 시각을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라 “① 오보발생시마다 해당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인 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소송 제기로 편집국 정상운영 방해(각 부처) - 기 구성된 ‘정부오보대책반’ 운영 활성화, ② 한겨레 출입기자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각종 취재편의 제공 거부함으로써 취재력 약화와 심리적 위축감 유발(각 부처), ③ 사세확장 견제 - 정부기관·친여단체를 총망라, 범정부 차원의 절독운동 전개, 문화센터·뉴미디어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시 행정규제 강화, ④ 친북·좌익세력 지원보도에 대한 강력항의로 ‘비난 여론’ 조성 -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의 한겨레 사옥 앞 항의시위 유도, 새물결·한국논단 등 우익보수지 활용, 친북·이적성 지속폭로”한다는 단기 대책과 “① 대공혐의 포착, 사법처리 - 이적·반국가 단체와의 연계 및 북한자금 유입 여부 철저 규명, 경영·편집간부 등 전 조직원에 대한 대공용의점 정밀 내사, ② 자금지원 차단으로 다각적인 경영압박 - 정부부처 및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한겨레신문 광고중단조치, ‘진경련’ 등과 협조, 대기업광고 점진 축소 유도, 기 대출된 자금(100억원)의 상환기간 연장 및 추가대부 금지, ③ 고○○ 논설위원 등 비주류 인물 중점관리, 계과갈등 간접 조장, ④ 광고압력 등 횡포실태 수집·폭로, 대외 이미지 실추”시킨다는 장기대책을 제시한 다음, ‘한겨레신문 기본현황’, ‘한겨레신문 창간사’,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연도별 경영실적’, ‘친북·이적성 보도사례(북한입장 적극 옹호, 좌경세력 입지강화, 체제비판 여론 조장)’, ‘반국가·이적단체 광고 게재 사례’, ‘사내계과 구성현황’을 각각 도표화하여 첨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겨레신문의 국익저해 보도실태 및 문제점’에서는 “진보성향지로 창간된 한겨레신문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북한주장 동조·좌경세력 대변·통치권 훼손·무분별한 정부대책 비판 등 국익저해보도를 자행해 오고 있는바, 체제수호 차원의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면서 1993. 2. 25.부터 1995. 4. 30.까지의 유형별 국익저해보도실태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① 친북보도에 대한 대공용의점 적출, 법적 대응 - 친북 논조의 칼럼리스트, 논설위원 성향 내사, 기자·간부들의 대북 연계성 여부 지속 추적, 친북 논조 철저 점검, 사법대응, ② 정간법위반 등 불법행위시 법절차를 통한 중벌 조치 강구, ③ 구체적인 국익저해 보도사례를 각 부처 출입기자(한겨레)들에게 적시, 자성, ④ 언론연구원 및 시민언론 감시단체 등을 통한 국익저해 보도폐해 공론화 유도, ⑤ 보수논객의 기

고 등을 통한 한겨레신문의 친북성향 비판, ⑥ 정부정책관련 오보발생시 증재위 제소 등 법적대응”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것을 제시한 다음, ‘문민정부출범 후 1995. 4. 30. 현재까지의 유형별 국익저해 보도 실태(북한주장동조, 좌경운동권 대변, 각하 폄하, 정부정책 왜곡·비판)’를 도표화하여 첨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기사와 북한신문·방송 보도내용 비교’에서는 도표를 통해 정부의 통일방안 비난, 국가보안법 개폐주장, 안기부 개폐주장, 미전향 출소자 북한송환 주장, 밀입북 사건 두둔, 핵문제 관련 북한입장 두둔, 박○총장의 주사파 폭로발언 비난, 좌익사법 석방·수배자 해제 촉구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기사·사설·칼럼 내용과 북한의 신문·방송의 보도 내용을 비교·서술하고, 그 대비자료를 첨부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문건의 작성을 전후한 시기는 1993년 이른바 문민정부 출범 이후 폐지되었던 안기부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구 안기부법 개정안이 1996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구 안기부법의 개정을 반대하여 1996. 12. 26. 06:00경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변칙적으로 통과되기에 이르러 그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않게 제기되던 때로서, 원고는 구 안기부법 개정은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파행 운영되던 바와 같은 안기부의 정치사찰 및 정치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개악적 법개정이라며 연일 그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1996년 말경부터 광고수주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1996년 10월경 ‘한겨레 21’의 광고수익이 30% 정도까지 하락하였는데, ‘한겨레’와 ‘한겨레 21’에 광고를 발주하거나 광고를 예약을 했던 한국통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들이 광고발주를 중단하거나 광고예약을 취소한 것이 큰 원인이 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1996년 12월경 광고발주중단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사원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편집국 산하에 특별취재팀을 만들어 그 배경을 취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취재팀은 공기업의 광고발주 관행에 따라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들에 대해 광고발주횟수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던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이 원고에 대하여만 광고발주를 중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의 광고발주담당자 등을 통해 안기부가 원고에 대한 광고발주를 중단 또는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와 같은 특별취재팀의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안기부의 원고에 대한 광고수주방해의혹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한편, 1997. 3. 12.부터 1997. 4. 11.까지는 총 14차례에 걸쳐 “안기부 대해부”라는 제

목의 특집 기사를 연속적으로 게재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문건의 입수 및 이 사건 기사의 게재·보도

(1) 피고 조○○은 2001. 3. 11.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1997. 4. 5.자로 작성된 이 사건 문건을 입수하였다(한편, 피고 조갑제, 조○○은 뒤에서 보는 출판물예의한명예훼손 피의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이 사건 문건의 입수 경위에 관하여 2001년 3월경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제8기 한총련 실체’라는 문건과 함께 이 사건 문건이 피고 조갑제의 사무실로 배달되어 왔다고 그와 달리 진술한 바 있다).

(2) 이에 피고 조○○은 ‘월간조선’ 2001년 4월호(120쪽부터 144쪽까지)에 “특종 - 안기부가 1997년 4월 5일 작성한 「한겨레신문 종합분석」입수”라는 큰 제목 아래 “한겨레신문은 친북성향보도 및 좌익세력지원으로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는 주제목과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주장 간접 옹호”, “북한체제 정당성 홍보 및 대외·대남 선전활동 지원”. “북의 사주를 받는 좌익세력들의 사회주의 혁명투쟁 지원”, “반정부 이적성 광고 게재”, “광고수주 위해 국영기업체 협박, 광고 요구”, “에버랜드사고 축소 보도, 광고수주”, “통일문화재단 모금하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경영·편집간부 등 조직원에 대한 대공용의점 정밀 내사(대책)”, “자금지원차단으로 경영압박(대책)”, “통일문화재단기금 증여세 부과(대책)”이라는 10개의 작은 제목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 편집자의 주를 게재하고(이하 ‘타이틀 부분’이라 한다), 이어 본문에서는 먼저 “월간조선의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문건의 내용 중 한겨레신문의 보도양태와 취약점, 추진사업 중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단기대책, 장기대책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여 완성형의 문장으로 풀어 쓰고(이하 ‘요약 부분’이라 한다), 다음으로 “월간조선의 안기부 문서내용 검증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조○○이 이 사건 기사 작성 경과 등을 소개하였고(이하 ‘검증 부분’이라 한다), 이어 “한겨레신문의 보도”라는 제목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월간조선사보다 먼저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였음을 밝히고 원고의 보도 내용을 요약하였고(이하 ‘한겨레보도 부분’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안기부의 보고서 전문 공개 「한겨레신문 종합분석」”(이하 ‘전문공개 부분’이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문건의 전문을 게재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 월간조선사는 2001. 3. 18.부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월간조선’ 2001년 4월호를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기사 보도 전후의 정황

(1) 한편,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래 2001년 2월경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국내 22개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때로, 원고는 정부의 언론개혁의지와 언론사 세무조사를 적극 지지하였던 반면, 피고 월간조선사의 모회사격인 소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한겨레'에 "심층해부 언론 권력"이라는 연재기사를 기획하고 2001. 3. 6.부터 2001. 3. 19.까지 그 중 제1편으로 "무한권력횡포"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던 주요 언론사들 중 특히 조선일보사 사주의 편법상속, 세금탈루와 파행 보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당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던 소위 '안티(Anti)조선운동'에 관해 보도하는 등 조선일보사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2)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문건을 입수하게 된 피고 월간조선사는 이 사건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공개하기 전인 2003.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문건의 입수 사실을 알리고 원고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의 작성기관을 밝히고 이 사건 문건의 전문과 함께 서면질문서를 보내면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월간조선사는 이 사건 문건의 핵심내용을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정리한 요약본(을다제2호증의 3)을 원고에게 보내었으나 이 사건 문건의 작성기관과 전문을 공개하는 데 대한 상호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그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월간조선사로부터 송부받은 요약본과 자체적으로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 월간조선사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인 2003. 3. 15. '한겨레' 1면에 "한겨레에 광고 주지말라"는 큰 제목에, "안기부 97년 '언론공작'"이라는 주제목과 "은행대출 불허? 범정부차원 구독중단 등 건의"라는 작은 제목으로 "안기부가 15대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두고 「한겨레신문사 종합분석」이라는 문건을 만들었고, 안기부는 그 문건을 통해 원고를 '친북·좌익세력 지원 언론'으로 규정한 뒤 그 대책으로 원고에 대한 광고를 탄압하고 금융을 압박하는 등을 건의하고 있다"며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 "국가정보원 공보실은 2003. 3. 14. 이 사건 문건의 존재를 부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하였고, 이어 3면에서 피고 월간조선사를 통해 이 사건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피고 월간조선사가 원고에게 보내 준 이 사건 문건의 요약본의 내용을 보도하고 더 나아가 "「한겨레신문사 종합분석」의 주요내용"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이 사건 문건의 요약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친북·좌경편향보도 - 김일성 사망시 민족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미화시키며 정부에서 조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북측에 선전공세 빌미를

제공',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캠페인 이적성 - 통일문화재단 설립이 불허될 것에 대비해 1996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모금한 4,300만원 가량의 성금과 분유 등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한 내용까지 더하여 이 사건 문건에 대한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다. 그 후로도 원고는 2003. 3. 16.자 '한겨레'에 "충격적인 '한겨레' 압살 공작"이라는 제목의 사실과 "안기부 문건을 보며"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는 등 이 사건 문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왔다.

바. 원고의 형사 고소와 그 진행경과

원고는 2001 3.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문건 작성 및 그 내용에 따른 실행에 관여한 당시의 안기부 부장, 제1차장, 대공정책실장이던 피고 권○○, 박○○, 임○○을 각 안기부법위반죄로,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보도에 관여한 피고 조갑제, 조○○, 우○○을 각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하였으나, 2003. 6. 30. 피고 조갑제, 조○○, 우○○은 각 혐의 없음의, 피고 권○○, 박○○, 임○○은 각 공소시효 경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피고 권○○, 박○○, 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 권○○, 박○○, 임○○(이하 2항에서 '피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 안기부의 부장, 제1차장, 대공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구 안기부법이 정한 직무범위를 넘어 원고를 사찰하여 원고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또한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고의 사세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에 원고에 대한 광고발주를 중단케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언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직권남용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안기부 재직 당시 이 사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는 등 이 사건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나아가 그 내용에 따라 실행하는 데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문건의 작성

국가정보원이 2001. 3. 14. 공보실을 통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존재 사실을 부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문건이 안기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

접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월간조선사, 조갑제, 조○○, 우○○이 이 사건 문건이 안기부에서 작성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이 원고의 조직·경영실태·구성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보도태도·구성원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한겨레’의 기사 등의 날짜를 적시하여 열거하고 있음은 물론 일반인으로서의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의 신문·방송 역시 날짜와 제목을 적시하여 ‘한겨레’의 기사 내용과 비교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세확장 등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이 사건 문건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에 대해 광고중단 등의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여 그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주체가 조직력, 정보력, 영향력을 구비한 국가기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문건은 국가기관 중 특히 ‘안기부에 대한 시각’이나 ‘안기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논의하고 있거니와, 안기부가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본래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업무 이외에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사찰을 일부 수행하는 등의 파행을 보이기도 하였고, 특히 언론기관에 대한 사찰을 위해 별도로 ‘언론팀’을 조직하고 주요 언론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기사 내용을 파악하고 언론기관의 조직, 구성원의 이념적 성향, 보도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는데(피고 권○○도 이 사건 문건 작성 직전인 1996. 12. 9.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언론팀’의 존재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내정보수집요원이 언론사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 문건은 국가기관 중 안기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한편, 국가정보원은 이 법원이 2002. 4. 18., 2002. 5. 28., 2004. 7. 8.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존재 여부에 관해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을 하였는데도 그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안기부의 조직 및 업무관장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1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문건 내용의 실행

피고들이 이 사건 문건 내용에 담긴 장·단기 대책이나 원고에 대한 고려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 역시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문건의 작성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문건에 대책으로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 등 국영기업체들이 원고에 대한 광고발주를 중단하기도 하여 원고가 광고수주에 어려움을 겪

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문건은 원고의 사세확장 등을 저지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 적시된 대책들 중 상당부분은 정상적인 법집행, 행정규제 또는 통상적인 활동 등의 외관을 띠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과정에 안기부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점, 이 사건 문건 작성과 그 실행 당시의 안기부와 원고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안기부가 이 사건 문건 내용에 담긴 일부 대책을 실행에 옮겼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3) 피고들의 직권남용

그와 같이 안기부는 장기간에 걸쳐 원고 내부를 사찰하여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무릇 사적인 조직에 대한 사찰은 권력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평온 등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안기부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 국내 신문의 논조를 분석하는 정도는 구 안기부법상의 정보수집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여 원고의 사세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 등까지 마련한 것은 정당한 정보수집의 범위를 벗어 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안기부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실정법 위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 창간 이래 이 사건 문건 작성 전까지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원고 내부의 정보를 수집·분석한 것은 과도하다고 할 것이어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넘어 선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안기부는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내용대로 일부 실행에 나갔던 바, 이는 원고의 언론기관으로서의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조직체인 법인으로서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앞서 본 구 안기부법상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의 안기부의 조직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권○○는 부장으로서 이 사건 문건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함으로써, 피고 박○○은 국내업무를 담당하는 제1차장으로서 피고 권○○를 보좌하여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을 지휘·감독함으로써, 피고 임○○은 대공정책실장으로서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각각 이 사건 문건 작성 및 그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일부 실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액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직권남용행위로 인해 언론기관으로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당하고 법인으로서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공동불법 행위자인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배상할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문건 작성 및 실행 당시 안기부의 영향력, 피고들의 안기부 내부에서의 직위 및 권한 내용, 이 사건 문건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기간, 수집된 정보의 내용 및 이 사건 문건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문건 상의 실행방법, 다만 그 실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정, 언론기관인 원고의 사회적 역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위자료액은 7,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7. 4.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4. 10. 20.까지는(그때까지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민법에 정한 연 5%의, 200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월간조선사, 조갑제,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 월간조선사, 조갑제, 조○○(이하 3항에서 '피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① 원고가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친북·좌익 성향의 보도를 하여 왔고, ② 광고수주를 위해 국영기업체를 협박하거나, 재벌 대기업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 축소보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취지는 안기부가 작성한 이 사건 문건의 발굴 및 그 내용 자체를 공개함에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문건을 그대로 인용·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한 바 없고, 가사 그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보도성향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논평의 주체 또한 안기부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기준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그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 표현의 전체적 취지와 의도,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표명인가를 가리기 위하여서는 그와 같은 점들 외에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것이다.

(3)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명

(가) 이 사건 기사 보도의 취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앞·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문건 내용 중 특히 원고의 친북적 보도성향, 반체제·좌경인물을 미화하는 등의 보도성향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 광고수수비리 부분을 보태어 그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타이틀·요약·검증 부분에 각각 기술하고 그 뒤에 이 사건 문건의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이를 보강하였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기사의 총 분량 25쪽 중 20여 쪽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기사를 편집함에 있어서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로동신문'의 사실과 '한겨레'의 사실을 비교한 도표를 첨가하기도 하였고, 피고 조갑제, 조○○은 앞서 본 수사절차와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문건에 나타난 의견이 피고들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여 별도의 편집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게재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이 사건 문건의 표현을 인용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보도성향, 원고의 광고수수 비리 등에 관한 일부 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원고의 친북적 보도성향, 원고의 광고수수 비리 등에 관한 부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의견표명에 해당하는지, 그와 같은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순차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친북적 보도성향 등에 관한 판단 부분

피고들은 타이틀 부분에서 원고가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주장 간접 옹호”하였고, “북한체제 정당성 홍보 및 대외·대남 선전활동 지원”, 하였으며 “북의 사주를 받는 좌익세력들의 사회주의 혁명투쟁 지원”하였고, “반정부·이적성 광고 게재”하였다고 하며 작은 제목을 통해 원고의 보도 태도에 대해 논평한 다음, 그와 같은 원고의 보도태도를 ‘친북성향 보도’와 ‘좌익세력지원’으로 요약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보도태도로 인해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서울지국’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어 피고들은 요약 부분에서 “보도양태”라는 큰 제목 아래, “북한대변입장”, “좌경세력 입지 강화 지원”, “체제수호 여론을 수구논리라며 매도”, “체제에 대한 회의감 조성”, “반국가·이적단체 광고 게재”라는 작은 제목으로 세분한 다음 원고의 기사·사실·칼럼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시하거나 그 제목과 날짜만을 게재하고, 이를 전제사실로 하여 원고가 “북한체제가 정당하다는 홍보성 보도를 하고 북한의 대외, 대남 선전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북측이 주장해온 연방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간접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게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 비판 여론을 희석시키거나 북측 입장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 왔고”, “반체제·좌경인물을 미화, 대정부 비판활동에 동조하는 여론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체제수호 여론을 수구 논리라며 일방적으로 매도, 좌경활동을 비호하고 있고”, “보수 언론·단체에 대한 부도덕성을 집중 거론, 신뢰도를 저하시킴으로써 건전한 보수여론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으며”, “공안기관에 대한 불신 여론을 조장하여 대공활동위축을 시도하고 있고”, “재벌·정부는 악이요, 노동자·농민은 선이라는 식의 대결구도를 설정, 논조에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회 저변에 체제저항의식을 자극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문제점을 수시로 지적하는 한편, 국내의 사회주의 혁명가들에 대한 향수를 부각, 진보이념에 대한 동경심을 자극하고 있고”, “반국가·이적단체들의 의견광고를 무조건적으로 게재, 체제전복세력에게 합법적 의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원고의 보도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그에 덧붙여 이 사건 문건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로동신문’의 1994. 2. 25.자 “파쑈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한겨레’의 1994. 10. 21.자 “보안법,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도표화하여 비교·게재하였다.

그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기사·사실·칼럼의 제목과 내용 등을 게재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보도태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하여 원고를 ‘로동신문의 서울지국’으로 비유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일응 원고가 ‘친북적’인 ‘좌익지원세력’이고 언론기관으로서의 객관성을 잃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통념상 ‘친북적’이라 함은 북한의 이념 또는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의미이고, ‘좌익세력’이라 함은 사회주의적, 급진주의적,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바, 남과 북이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04. 8. 30. 2004도3212 판결 등,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26, 93헌바34, 35, 36 결정 등 참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어(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 432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한총련,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친북적’이거나 ‘좌익세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실정법상의 처벌을 받거나 반사회적인 세력으로 비판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물론 현재로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그와 같은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다) 광고수주 비리 부분

피고들은 별지 3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이틀 부분에서 “광고수주 위해 국영기업체 협박, 광고 요구”, “에버랜드사고 축소보도함, 광고 수주”라는 작은 제목을 통해 원고가 국영기업체나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와 같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기 위하여 협박이나 축소보도와 같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인상을 준 다음, 전문공개 부분에서 원고가 은행감독원·전기통신공사 등 국영기업체나 정부산하단체들의 광고 게재 요구 거부시 간부들의 사생활 취재 위협을 하였고 삼성·현대 등 재벌기업들에 대한 비판기사는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는데, 일례로 용인 에버랜드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1단으로 처리한 후 삼성측에 광고지원을 요청하여, 1996년 11월 5,000만원에 광고를 수주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그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어 피고들은 검증 부분에서 “에버랜드 사고 관련 검증”이라는 큰 제목으로 그 중 “용인 에버랜드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1단으로 처리한 후 삼성측에 광고지원을 요청, 1996년 11월, 5,000만원을 수주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1996. 9. 15. 에버랜드 환상특급 궤도열차에서 안전레버가 풀리는 사고’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4개 신문 사회면에 보도되었고 ‘1996. 10. 13. 에버랜드 실내 파도풀장에 설치된 대형분수장치가 수영장으로 떨어져 남매가 중상을 입은 사고’에 관하여는 ‘한겨레’를 비롯한 9개 중앙일간지 사회면에 보도되었

는데 ‘한겨레’의 기사크기는 1단이었다고 하여 원고가 2번의 에버랜드 안전사고중 한 번만 기사화하였을 뿐이고 그 크기도 1단에 불과했다고 한 다음, 이어 피고들이 삼성측에 물어본 결과 에버랜드가 ‘한겨레’에 게재한 광고액이 1995년 1,500만원에서 1996년 8,0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1997년 5,500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그와 같은 광고액의 증감이 에버랜드의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 역시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그 문면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에 에버랜드의 안전사고를 축소보도하였고 그 시기에 원고의 에버랜드에 대한 광고수주액이 증가하여 원고의 축소보도와 광고수주액의 증가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기타 타이틀·요약·검증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고도 이를 특별히 문제삼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안기부의 언론사찰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보도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작성한 문서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으므로 그 적시된 사실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진실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으며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기준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특히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그 허용 한계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더구나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표현의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한편, 남북통일, 남북한 체제, 좌·우의 이념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보다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악의적으로 비방·모욕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비판적 기능,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 존재에 해당하는 언론사 상호간의 비판에 해당하는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사는 다른 공적 존재와 비교해 보더라도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의 접근이 쉽다는 점,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 언론사 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한편으로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비판은 매우 폭넓게 수인되어야 할 것이며, 언론사는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에 대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의 기준들은 순수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한 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 그 중 특히 남북통일, 남북한 체제, 좌·우의 이념문제 등에 대한 의견 표명 및 언론사 상호간의 비판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나 그와 같이 자유로운 의견 또는 논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

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3) 공익성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는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부의 언론기관대처방법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고, 더욱이 정부나 여당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언론문건’들이 언론사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여 정부의 언론개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문건을 입수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문건은 그 존재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도 또한 언론사의 보도성향을 당시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공개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원고는 공적존재로서 그의 정치 이념, 보도태도, 방향에 대한 분석·비판은 공개되어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져 토론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에 다소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진실성 또는 상당성

(가) 원고의 친북적 보도성향 부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게재한 원고의 기사 등의 날짜, 제목 및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피고들의 의견 표명의 전제사실은 진실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의견 표명이 정당한 논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그와 같이 게시된 원고의 기사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을 일부 같이하거나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한총련, 범민련 등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그들의 광고를 게재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조선일보’와 같은 다른 신문의 보도태도를 ‘메카시 선포’, ‘수구언론’, ‘부시 정권의 기관지’ 등으로 표현하는 등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왔는바, 이처럼 언론기관으로서 원고는 실정법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이 주장하고 논평하며 자신과 정치적 이념과 보도 성향 등을 달리하는 다른 언론사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견해와 보도 성향을 달리하는 피고들 역시 그와 같은 원고의 보도태도를 ‘친북적’, ‘좌익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다소 훼손되었다고 하여도 원고로서는 스스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비판도 그만큼 수인하여야 한다. 더욱이 피고들은 이 사건 문

건의 표현을 인용하여 언론사로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존재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과 보도 성향에 대해 논평한 것인데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라는 표현이 다소 선정적이고 직접적이기는 하나 이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 특히 남북통일, 남북한 체제, 좌·우의 이념문제 등에 대한 논평으로 그것이 원고의 기본 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언론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도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김대중 정권이 북한 정권에 대해 ‘햇볕정책’을 시행한 이래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후 남·북을 오가며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남·북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정보도 예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친북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상의 처벌을 받거나 반사회적인 성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정도의 표현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결국,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들이 원고의 기사 내용·제목 등을 전제로 원고의 보도성향을 ‘친북적’, ‘좌익적’이라고 평가하고 원고를 ‘로동신문 서울지국’으로 비유한 것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광고수수비

원고가 1996년 용인 에버랜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1단 크기로 보도한 사실, 삼성에버랜드가 원고에게 발주한 광고액수가 1995년 1,500만원에서 1996년 8,000만원으로 증가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강제1호증의 1, 2, 강제13호증, 을다제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에버랜드 안전사고 관련 기사는 1996. 10. 13.자 ‘한겨레’에 게재된 사실, 원고는 1996년 에버랜드에 대한 광고를 총 8회 게재하였는데 그 중 7회가 1996. 10. 13. 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에버랜드 안전사고 보도내용과 원고의 광고수수증가 사이에는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 중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들이 삼성에버랜드에 1996년 원고의 광고 수수액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므로 광고시기 등을 함께 조사하였더라면 양자 간에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도 만연히 양자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게재하였고, 또한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분량과 광고수수액수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아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만이 에버랜드 안전사고 관련 기사를 축소보도하였고 그로 인해 광고를 수수하였다는 인상을 갖게 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한 바대로 은행감독원·전기통신공사 등 국영기업체나

정부산하단체들의 광고 게재 요구 거부시 간부들의 사생활 취재 위협을 하였고 삼성·현대 등 대기업들에 대한 비판기사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관련 부분 역시 진실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던 피고들로서는 안기부가 작성한 이 사건 문건 내용에 그와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그 부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액수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의 광고수주 비리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대해 보면,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문건의 표현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된 한편 검증 부분에서 일부 사실 적시가 추가된 점, 이 사건 기사에서 위 사실적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 원고에게 요약본을 보내 원고가 그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기사의 구체적 작성 경위, 내용, 원고의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액수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작성·게재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4.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10. 20.까지는(그때까지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준부와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민법에 정한 연 5%의, 200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 및 간접강제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게재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보도의 시점, 정정보도기사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월간조선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조선'의 '편집장의 편지' 뒷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24급 고딕활자로, 그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18급 명조활자로 각각 게재하게 함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월간조선사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같

은 정정보도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약 피고 월간조선사가 그 기간 안에 그와 같은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월간조선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기간의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고 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우○○에 대하여도 피고 월간조선사, 조갑제, 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나, 피고 우○○이 이 사건 문건의 입수, 이 사건 기사 취재·집필·게재·보도, 특히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한 기사의 취재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권○○, 박○○, 임○○, 월간조선사, 조갑제, 조○○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판결 후 확정될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본문, 제102조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 지〉 정정보도문

제 목 : 정정보도문

‘월간조선’은 2001년 4월호 120쪽 이하에서 안기부의 「한겨레신문종합분석」이라는 문건을 인용하여 한겨레신문이 광고수주를 위해 국영기업체를 대상으로 협박하는 것은 물론, 삼성·현대와 같은 재벌 대기업 관련 비판기사는 축소보도하는 등의 광고수주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으나, 한겨레신문이 그와 같은 광고수주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끝.

〈별 지 2~9〉 생략 — 편집자 주

□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아주 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으로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비판한 경우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2.자 판결 (2001가합59144)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박동영 부장판사)는 2004년 10월 22일 동아일보사와 재단법인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인촌기념회가 한겨레신문과 소속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동아일보사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도 및 만평은 원고 동아일보사의 기사 자체에 대한 비판, 논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동아일보사의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 방법, 권력과의 유착관계, 사주의 친일행적 등에 관한 보도로서 동아일보사의 언론사로서의 본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되므로, 이러한 영역에 대한 비판은 언론사의 본래적 기능과 관련된 사안만큼이나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언론사에 대한 비판이 아주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으로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비판한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제1, 2 보도 및 만평 및 제4, 6 보도 중 각 일부 내용의 경우 비록 직접적이고도 충분한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다소 과장된 표현, 심지어는 언론 본연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표현까지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제5보도 및 만평은 동아일보사가 한겨레신문사의 뒷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동아일보사를 과거 정보기관 직원들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뒷조사하는 부정한 권력집단으로 묘사하였음은 물론, 그동안 한겨레신문사가 지적해온 동아일보사의 부도덕한 행태 또는 치부가 모두 사실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동아일보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인식이 심각하게 저하되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아일보사가 한겨레신문사를 뒷조사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보도 및 만평을 게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동아일보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이 2001년 3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사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정치권력 못지않은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언론권력’이 성역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심층해부 언론권력』이란 제하의 시리즈 기획 기사를 작성하여 연일 게재하자 동아일보사와 재단법인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인촌기념회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합59144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 학 준, 김 재 호

2. 재단법인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대표자 이사장 민 관 식

3.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대표자 이사장 현 승 중

원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 추

담당변호사 조 윤, 김 종 룰, 김 기 영, 원 희 룡, 류 용 현, 강 선 희, 이 병 삼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준 범

피 고 :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최 학 래

2. 최 학 래

3. 정 ○ ○

4. 고 ○ ○

5. 조 ○ ○

6. 고 △ △

7. 김 ○ ○

8. 김 △ △

피고 2 내지 8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한겨레신문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이 돈 명, 김 창 국, 이 석 태, 김 형 태, 이 정 희, 윤 영 환

변 론 종 결 : 2004. 10. 15.

판 결 선 고 : 2004. 10. 22.

주 문 : 1.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피고 최학래, 피고 정○○, 피고 고○○, 피고 김 △△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4.부터 2004. 10.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피고 최학래, 피고 정○○, 피고 고○○, 피고 김△△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피고 조○○, 피고 고△△,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재단법인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원고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피고 최학래, 피고 정○○, 피고 고○○, 피고 김△△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이를 10분 하여 그 9는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나머지는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피고 최학래, 피고 정○○, 피고 고○○, 피고 김△△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피고 조○○, 피고 고△△, 피고 김○○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재단법인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원고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원고 재단법인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원고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금 5억 원,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원고 재단법인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에 연대로 금 3억 원,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원고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에 연대로 금 2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4.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도래되는 18일간에 결

쳐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간신문 ‘한겨레’에 별지 1 내지 6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같은 별지의 각 말미에 적은 게재일자, 게재위치, 활자크기 및 모양에 맞추어 각 게재하라.

3. 만일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제2항 기재의 게재일자에 같은 항 기재 각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항 기재 정정보도문 1건마다 그 게재일자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원고 동아일보사’라 한다)는 국내 대표 유력 일간신문인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원고 재단법인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이하 ‘원고 마라톤 재단’이라 한다)은 마라톤 꿈나무 육성과 국내 마라톤 발전을 위해 1995. 12.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원고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하 ‘원고 인촌기념회’라 한다)는 망 김성수의 유지를 기리는 장학사업과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1966. 5.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겨레신문사’라 한다)는 일간신문 ‘한겨레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한겨레신문사가 별지 기재 제 1 내지 13 기사 내지 사실 및 별지 1 내지 4 만평을 각 보도할 당시 피고 한겨레신문사의 임원, 기자 등으로 재직하던 사람들로 그 구체적인 직책과 맡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최학래 : 대표이사, 한겨레신문의 발행인·편집인 겸 인쇄인

(나) 피고 정○○ : 이사 겸 논설주간, 사실 작성 및 게재

(다) 피고 고○○ : 편집국장 겸 편집위원장(2001. 3. 24. 논설위원으로 전보됨),
편집총괄

(라) 피고 조○○ : 편집위원장(2001. 3. 24.부터 재직), 편집총괄

(마) 피고 고△△ : 사회부장 기사의 기획, 취재, 작성, 편집 등을 지휘 감독

(바) 피고 김○○ : 사회부차장, 취재, 작성, 편집 등을 지휘 감독

(사) 피고 김△△ : 편집국 소속 직원으로 ‘장군봉’이라는 필명으로 한겨레 만평 ‘한겨레 그림판’을 담당하던 사람

(3) 한편, 피고 한겨레신문사의 편집국과 논설위원실은 직제상 분리되어 있어 논설주간은 신문의 논조를 지도하고, 논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만 편집국 산하의 편집위원회와 협의할 뿐 달리 편집국이 작성, 편집, 보도하는 기사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기사 및 만평의 보도

(1) 김대중 전대통령이 2001. 1. 11.경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전후하여 언론사들에 대한 성역없는 세무조사, 소유구조 개선,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등을 요구하는 일부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의 요구가 거세어 졌고, 이에 국세청은 같은 달 1. 30.경 원고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중앙일간신문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방침을 전격 발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언론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2) 당시 야당 및 원고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일부 유력 일간신문사들은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와 같은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조사가 언론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한겨레신문사는 2001. 3. 6.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과 같이 사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정치권력 못지 않은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언론권력'이 성역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비판한다는 의도하에 <심층해부 언론권력>이란 제목의 시리즈기획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한겨레신문' 신문을 통해 연일 게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언론개혁에 대한 정치권, 언론사, 시민단체 사이의 찬반논쟁이 가열되었다.

(3) 피고 한겨레신문사는 위 시리즈기획 기사를 제1부 "무한권력 횡포"라는 주제하에 10회에 걸쳐, 제2부 "추악한 과거"라는 주제하에 9회에 걸쳐, 제3부 "언론개혁 해법"이라는 주제하에 6회에 걸쳐 각 보도하였는바, 이 중 원고들이 명예훼손 여부를 문제삼고 있는 기사 및 만평은 다음과 같다.

(가) 동아일보사 사옥에 관한 보도

위 시리즈기획기사 제1부 "무한권력 횡포" 중 2번째 기사로 "언론사 사옥은 성역?"이란 주제로 게재되었는바, 소주제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종로 광장 건설 문제 : 별지 제1 목록 기재 기사 중 일부, 별지 제2 목록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보도'라 한다)

② 지하철 1호선 노선변경 문제 : 별지 제1 목록 기재 기사 중 일부, 별지 제3 목록 기재 기사, 별지 제1 기재 만평(이하 '이 사건 제2 보도 및 만평'이라 한다)

(나) 동아마라톤 재단 의혹 관련 보도

위 시리즈기획기사 제1부 "무한권력 횡포"의 첫 시리즈로 게재된 별지 제4 내지 9 목록 기재 기사, 별지 제2, 3 기재 만평(이하 '이 사건 제3 보도 및 만평'이라 한다)

(다) 동아일보 친일 곡필에 관한 보도

위 시리즈기획기사 제2부 “추악한 과거”의 2번째 기사로 ‘동아일보의 친일 곡필’이란 주제로 게재된 별지 제10, 11 목록 기재 기사 중 각 일부(이하 ‘이 사건 제4 보도’라 한다)

(라) 기타 보도

① 한겨레 뒷조사 의혹 관련 보도 : 별지 제12 목록 기재 기사 및 별지 제4 기재 만평 (이하 ‘이 사건 제5 보도 및 만평’이라 한다)

② 권 - 언 유착 관련 보도 : 별지 제13 목록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6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5, 을 제4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2. 언론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가.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 기준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인이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는바, 단순한 의견만을 개진한 경우 이는 개인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져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어떤 의견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위법성 조각 사유

언론기관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적인 인물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

언론은 국가기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의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3) 언론사 간 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의 특수성

당해 표현이 또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언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언론사 자신 역시 고도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는데, 언론사는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는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을 수인하는 범위도 넓어야 할 것이고 게다가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언론사의 다른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어느 공인 또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언론사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 자체도 언론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한다. 개개의 언론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의견을 다른 언론사에 의한 비판과 함께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또한 언론사의 활동에 대한 다른 언론사들의 감시가 활성화됨으로써, 다시 말하자면 언론시장 내에서의 상호비판 과정과 독자들에 의한 평가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향상과 이에 따른 올바른 여론형성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사의 다른 언론사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러한 언론시장의 자율적 정화 내지 발전기능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제도적 장치를 통한 규제이거나 민형사상 책임의

추구를 통한 제재이거나를 막론하고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하는 언론의 공개시장의 본질적 기능을 제한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시도는 배척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언론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으로서의 그 어떤 공공적 사안의 경우보다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명예훼손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일응 언론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그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될 정도에 이른 때에만 비로소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우선 공익적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이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였다고 보이며, 또한 이러한 목적과 정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쉽사리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한편, 언론사는 여론형성의 주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으로서도 존재하는 것인바, 그러한 기업으로서의 언론사에 대한 비판적 표현인 경우, 즉, 상대방 언론사의 언론으로서의 본래적 기능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비판(기사 자체에 대한 비판, 논조에 대한 비판이라면 본래적 기능에 관한 비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업경영상의 비리나 탈세 등을 이유로 한 비판이라면 본래적 기능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 하겠다)인 경우에는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 대한 비판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된다.

영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언론사라 하여도 그 수행하는 영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기업보다는 그 주체 면에서 높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바와 같이, 기업으로서의 언론사의 경우에도 당해 표현이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인바, 기업으로서의 언론사 내지는 그 언론사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주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 내용이 언론사 내지 그 사주가 편집이나 기사에 영향력을 미치는지의 여부나 그 정도, 정치권력과의 친소관계 내지 그것이 기사 등에 미치는 영향, 언론이 지니는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 여부나 그 행사의 적법성 등과 같이 앞서 본 언론사의 본래적 기능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은 기사의 방향이나 내용 등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나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영역에 대한 비판은 언론사의 본래적 기능과 관련된 사안만큼이나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의 성립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역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경우 언론사의 본래적 기능에 대한 판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쉽사리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언론사 사주의 경우로 문제를 확대하여 본다. 언론사 사주의 경우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공인적 성격이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언론사 사주에 대한 비판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나 공개적 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을 따져보아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언론의 특수성에 근거를 둔 명예훼손법리까지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하겠다. 다만, 언론사의 사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사의 내용, 방향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기업으로서의 언론사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할 것인바(앞서 언론사의 경우를 논하면서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언론사의 본래적 기능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쉽사리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보도 및 만평은 원고 동아일보사의 기사 자체에 대한 비판, 논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 방법, 권력과의 유착 관계, 사주의 친일행적 등에 관한 보도로서 원고 동아일보사의 언론사로서의 본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영역에 대한 비판은 언론사의 본래적 기능과 관련된 사안만큼이나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제한적 비판이 가능한 것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

히 이 사건 보도 중 원고 동아일보사의 현재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멀게는 일제 시대로부터 가깝게는 1970년대까지의 원고 동아일보사의 행적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특별기획의 형식으로 보도함에 있어서는 다른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과는 달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판이 될 수 있도록 비판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함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확보된 근거자료를 일방적으로 왜곡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기사 및 만평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하여 그 주된 쟁점별로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 동아일보사는 공적 관심사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력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원고 동아일보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나 일반 대중의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각 보도 내지 만평이 원고 동아일보사에 대한 가혹하고 불쾌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그 저변에 피고 한겨레신문사의 상업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 및 만평의 공공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동아일보사가 관여하는 원고 마라톤재단의 운영실태 및 원고 동아일보사를 설립한 김성수의 친일행적에 관한 사항 역시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공성에 관하여 이를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별도의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제1 보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서울시는 1952. 3. 25. 서울시내 거의 전역에 걸친 도로계획을 고시하면서 32곳의 교통광장에 관한 계획을 변경·고시하였는바, 이때 고시된 '황토현 광장 고시안'에 의하면 현 세종로 일대에 반지름 약 150미터, 면적 70,700(150×150×3.14)㎡ 크기의 원형광장이 만들어 지게 되고, 이때의 원형광장 안에는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위 '황토현광장 고시안'은 1962. 2. 8. 건설부 고시 제77호로 그 명칭이 '세종로광장 고시안'으로 변경되면서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 수준인 33,228㎡로 축소되었고, 이후 1978. 5. 11. 옛 중부소방소 앞 부지 1,300㎡가 각각정리되어 위 '세종로광장 고시안'의 광장범위에 포함되었다.

(3) 1980. 3. 7. '신문로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설부 고시안에 따라 세종로 일대의 기존 고시안이 모두 폐지되었다.

(4) 한편 원고 동아일보사는 1970. 4. 2. 동아일보 창간 50돌을 맞아 광화문에 새 사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1971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여의도 택지(현 원고 동아일보사 문화센터 부지) 3,689평의 불하 공개입찰에 응찰해 금 197,540,000원에 낙찰받으며, 이후 1999년 구 동아일보사 사옥 인근에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의 동아미디어센터 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나. 명예훼손 여부

(1) 보도 내용 중 원고 동아일보사가 문제삼는 부분의 요지

(가) 서울시는 1952. 발표한 '황토현광장 고시안'에 대하여 원고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1962. '세종로광장 고시안'으로 변경하면서 광장의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절반을 줄였다. 그러나 위 '세종로광장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원고 동아일보사의 부지는 여전히 광장계획선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 동아일보는 이를 무시한 채 1970. 4. 2. 광화문에 새 사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여의도의 1등급 노른자위 땅을 불하해 주기로 하고, 원고 동아일보사로부터 광화문사옥을 여의도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원고 동아일보는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1999. 광화문에 새 사옥을 완공하였는데, 결국 원고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만 없었다면 광화문에서 시청 앞은 너비 100m의 넓은 시민광장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2) 원고 동아일보사의 명예훼손 여부

위 보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울시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계획한 시민광장이 원고 동아일보사의 반대와 약속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끝내 무산되었는데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인 원고 동아일보사가 언론으로서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결과이며 그 언론권력이 가히 성역이라 할 수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일반인들의 원고 동아일보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5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에 앞서 본 기초사실을 보태어 보면, 1970. 경부터 1975. 경 사이에 서울시 재정기획관 및 도시계획국장으로서 근무한 손○○(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은 위 재직기

간 동안 ‘황토현광장 고시안’이 원고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세종로 일대의 지주들의 반대로 그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세종로광장 고시안’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광장계획선 내에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 1970. 4. 2. 원고 동아일보사의 새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세종로 일대의 광장계획을 내세워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신축에 필요한 건축허가신청을 계속 보류하였던 사실, 그 무렵 원고 동아일보사는 손○○에게 건축허가신청을 받아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손○○은 원고 동아일보사를 찾아가 여의도의 장래성을 설명하고 여의도 토지 불하를 약속하면서 원고 동아일보사에 사옥이전을 권유한 사실, 한편 손○○은 위와 같은 자신의 생각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1996. 11. 월간 ‘국토정보’지에 서울도시계획이야기 7 ‘전재복구계획(하)’(을 제6호증)라는 제목의 글을, 1997. 12. 월간 ‘국토’지에 서울도시계획이야기 20 ‘여의도 건설과 시가지 형성되는 과정(하)’(을 제6호증)라는 제목의 글을 각 기고한 사실, 한편 피고 한겨레신문사 소속 기자들은 세종로광장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손○○을 찾아가 손○○이 기억하고 있는 바를 청취한 다음, 손○○의 소개로 손○○이 기고한 위 글들을 열람하였고, ‘황토현광장 고시안’의 원형 광장 면적 70,700㎡을 그 중심점을 그대로 둔 채 ‘세종로광장 고시안’ 광장 면적인 33,228㎡으로 줄여보면, 즉 반지름 150m의 원형 광장을 반지름 102m의 원형 광장으로 줄여보면 여전히 그 광장계획 내에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 부지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보도를 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들이 위 보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주로 손○○의 진술 또는 그의 저서에 기초한 것일 뿐, ‘세종로광장 고시안’의 정확한 결정도면 등과 같은 물적증거에 기초하여 ‘세종로광장 고시안’의 광장계획선 내에 원고 동아일보사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위 보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달리 생각해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 ‘세종로광장 고시안’의 정확한 결정도면과 같은 확실한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상황임이 인정되므로(원고 동아일보사는 갑 제5호증의 2의 도면에 의하면 ‘세종로광장 고시안’의 광장계획선 내에 원고 동아일보사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위 도면만으로는 ‘세종로광장 고시안’의 광장계획선 내에 원고 동아일보사 부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피고들이 위 도면을 기초하여 원고 동아일보사 부지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여겨지며, 그 밖에 ‘세종로광장 고시안’이 예정한 광장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를 피고측은

물론 원고측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피고들로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도시계획분야의 권위자가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그가 발표한 저작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진실확인을 위한 목적하에서도 이를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공개하여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보도는 보도내용 및 그 성격상 신속히 보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이는 반면, 위 보도로 인해 원고 동아일보사의 명예는 상당한 정도의 훼손이 예상되므로, 위와 같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 아님에도 '세종로광장 고시안'의 광장계획선 내에 원고 동아일보사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 동아일보사가 '세종로광장 고시안'을 결국 무산시켰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일응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고, 피고들이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의무를 다하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바, 다만 궁극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종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제2 보도 및 만평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의 11.8km 구간은 1971. 4. 12. 착공이 시작된 이래 기존의 도로나 하천, 교량을 따라 개착식 공법(땅을 위에서부터 파는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사유재산 건물을 헐거나 그 밑으로 지나가는 구간 없이 공사가 완료되었다.

(2) 지하철 1호선의 시청역~종각역 구간의 곡선 반경은 약 140m(청량리 방향의 상행선 곡선반경 141m, 하행선이 136m)로 이는 현재 서울 지하철 1 내지 8호선 모든 구간을 통틀어 최급곡선 구간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급곡선의 구간의 경우 보통의 직선구간이나 완만한 곡선구간에 비해 구간 통과시 탈선의 위험이 있어 속도를 줄여야 하고,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레일의 마모가 심해 자주 레일을 교체하여야 한다(직선구간 레일교체 주기 약 10년, 시청역~종각역 구간 레일 교체 주기 약 3년).

(3) 서울지하철 1호선이 완공되기 직전인 1974. 7. 8. 공포된 대통령령 제7201호에 의하면 지하철 선로의 곡선반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60m 이상(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35m)으로 설계되도록 되어 있다.

(4) 지하철 1호선의 시청역~종각역 구간의 곡선 반경을 160m으로 할 경우 지하철 1호선 노선은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 건물 밑을 통과하게 되고, 곡선 반경을 250m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 동아일보사 사옥의 뒤편 동쪽인 무교동과 서린동 일대를 통과하게 된다.

(5) 지하철 노선의 설계과정은 통상 처음 노선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관련 기술자들이 현장을 답사하여 노선의 통과가능성을 조사하고 노선에 대한 측량을 하여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건설규정에 맞게 선형을 확정하게 되고, 그 후 도시계획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된다.

[인정근거]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증인 백○○의 증언

나. 명예훼손의 여부

(1) 보도 및 만평의 내용 중 원고 동아일보사가 문제삼는 부분의 요지

서울시는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할 당시 시청역~종각역 구간을 동아일보 사옥을 헐고 지나가는 완만한 곡선의 노선으로 설계하였으나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동아일보측의 반대로 직각에 가까운 급곡선을 그리는 노선으로 수정하였고, 이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잦은 레일 교체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2) 원고 동아일보사의 명예훼손 여부

위 보도 및 만평은 원고 동아일보사의 반대로 지하철 1호선의 노선이 원고 동아일보사를 빗겨 가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고 동아일보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인상을 주었다 하겠는바, 이로써 원고 동아일보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서울지하철 1호선의 설계기준상 곡선반경은 160m 이상이어야 함에도(위 설계기준상의 곡선반경은 지하철 1호선 노선을 설계함에 있어 실제 적용되었던 기준이 지하철 1호선이 완공될 즈음 대통령령에 의해 사후적으로 명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청역~종각역 구간의 곡선 반경은 약 140m의 급곡선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지(을 제8호증)에 의하면 '광화문에서 동아일보 사옥을 피하기 위해 급곡선 삽입'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증인 백○○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9호증의 1,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증인 백○○, 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보태어 보면,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재임한 김□□은 시청역~종각역 구간 공사와 관련하여 곡선반경을 완만하게 그리며 원고 동아일보사 사옥 밑

을 지나는 방안에 관하여 원고 동아일보사의 임원과 수 차례 협의를 한 사실, 피고 한겨레신문사 소속 기자들은 1977년부터 지하철건설본부에 근무하면서 지하철 설계와 시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백○○을 찾아가 시청역~종각역 구간이 급곡선으로 건설된 경위에 관하여 취재를 하였는바, 위 백○○은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당시 설계기준, 지리적 여건, 당시의 기술 수준과 소요 공사비 문제 등에 비추어 보면 곡선반경을 160m로 설계하여 지하철 1호선이 원고 동아일보사 사옥 밑을 지나가는 것이 최적의 노선임에도, 원고 동아일보사의 반대로 인해 현재와 같이 급곡선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시청역~종각역 구간의 선형이 당시 서울지하철 1호선의 설계기준(곡선반경 160m 이상)에 못 미치는 급곡선으로 결정된 데에는 다른 여러 원인(당시의 기술 및 공법의 수준, 소요 공사비 문제, 지리적 여건 등)도 작용하였겠지만 원고 동아일보사측의 반대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하겠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에서 더 나아가, 위 보도 및 만평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마치 이미 존재하는 지하철 노선 설계안이 원고 동아일보사의 반대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는바,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도 없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시가 원고 동아일보사의 반대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노선으로 지하철 1호선을 설계를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이 위 백○○의 추측에 근거하여 원고 동아일보사를 ‘오만’한 언론사로까지 매도하여 그 명예를 손상한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인바, 다만 궁극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종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5. 이 사건 제3 보도 및 만평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동아일보사는 1993. 1. 경 황영조 선수의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제패를 기념하는 사업, 원고 동아일보사의 별도 재단법인인 ‘동아꿈나무 장학재단’ 소유의 경기 양평군 소재 임야 32만 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마라톤 전용 훈련코스과 연수원 기념관 등을 건립, 운영하는 사업 및 원고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동아마라톤 대회를 국제대회로 승격시키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사고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설립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벌였다.

(2) 위와 같은 경위로 1995. 12. 원고 마라톤 재단이 설립되었고, 위 모금운동의 결과

2000. 12. 31.을 기준으로 총 4,934,274,214원이 모금되었는데, 이자 등 수입으로 금 3,941,350,831원이 발생하여 원고 마라톤 재단의 기금자산은 금 6,629,508,556원으로 불어났다.

(3)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농림·준농림지역인데다 시설물 건립이 강력히 규제되는 수질보전특별대책 1 권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어서 전용 마라톤 훈련코스과 연수원 기념관 등을 건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용지구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한바, 원고 마라톤 재단이 양평군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받은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마라톤 재단은 1995. 3. 22. 이 사건 임야에 타원형으로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양평군에 제출하였으나 ‘타원형’ 개발계획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나) 같은 해 4. 22. ‘공공시설 입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마라톤 코스가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다) 같은 해 11. 23. 국토이용계획 변경 대상 면적을 늘리고, 이 사건 임야에 눈썰매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눈썰매장과 같은 불필요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라) 1997. 2. 13.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다시 신청하면서 대상면적을 14만 9천 m²로 줄여 신청하였고, 양평군은 이를 승인하여 1997. 6. 해당 면적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원고 마라톤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였는바, 1996.부터 2002.까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제 집행된 내역

① 동아마라톤지원금으로 1996년 금 2억 7,065만 원, 1997년 금 3억 5,000만 원, 1998년 금 3억 원, 1999년 금 3억 원, 2000년 금 5억 원, 2001년 금 3억 원, 2002년 금 5억 8,000만 원을 각 집행하였다.

② 마라톤 코스개발비 명목으로 1996년 금 993만 원(거래업체 양평군), 1997년 1억 1,260만 원(거래업체 양평군), 1998년 4,250만 원(거래업체 천일기술단)을 각 집행하였다.

(나) 사업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이 되지 아니한 내역

① 1997년 훈련장건립비로 금 1억 원, 1998년에 전문훈련장 건립비로 금 5천 만원, 1999년, 2000년에는 각 코스개발비로 금 3천 만원을 각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가 중

로구청에 제출되었으나, 각 해당 연도에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

② 원고 마라톤 재단은 2001. 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입 계획을 의결하고, 2001년에는 동아마라톤지원금으로 금 3억 원을, 기념관 및 훈련장 부지구입비로 금 15억 원을, 대한육상연맹 지원금으로 금 2,000만 원을 각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였으나, 위 동아마라톤지원금만 실제 집행되고 나머지 기념관 및 훈련장 부지구입비 및 대한육상연맹 지원금은 집행되지 않았다.

(5) 원고 동아일보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장학재단'의 활동에 대하여는 해마다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소개하였으나 원고 마라톤 재단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밝힌 바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의 1, 2, 을제41호증의 1, 2, 3, 을 제58호증의 1 내지 8, 을 제59호증의 1 내지 25,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나. 명예훼손 여부

(1) 위 보도 및 만평 중 원고 동아일보사 및 원고 마라톤 재단이 문제삼는 부분의 요지
(가) 원고 동아일보사 및 원고 마라톤 재단은 이 사건 임야에 마라톤 훈련장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앞세워 국민성금을 통해 40억 원이라는 거금을 모금하였으나 모금된 돈의 사용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위 원고들은 지금까지 모금한 거금의 돈으로 자사 마라톤대회 지원 사업에만 성금의 1/3이 넘는 돈을 지원하였을 뿐 우선 추진사업으로 내세웠던 마라톤 전용훈련장 건립 사업 등은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그 부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마라톤 전용훈련장 건립 예정지인 이 사건 임야는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으로 묶인 상태여서 애초 불가능한 사업을 내세워 모금활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원고 마라톤 재단의 이와 같은 기금운용에 대해 대한육상연맹은 기금운영권을 넘겨받는 문제를 검토하는 등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국세청도 원고 마라톤 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바, 원고 마라톤 재단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피고 한겨레신문사의 취재가 진행되자 종로구청에 2001.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냈으며, 처음으로 양평 마라톤 훈련장 건립사업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켰다.

(나) 원고 동아일보사 및 원고 마라톤 재단은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와 양평군에 여러 차례 강력한 요청을 하는 등 무리한 용도변경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마라톤 육성과는 무관한 눈썰매장을 설치해 영리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려한 것이 드러나 마라톤 육성과는 무관한 곳에 국민성금을 사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원고 동아일보사측의 해명과는

달리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의 사업계획서에는 마라톤 전용 훈련장 건립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 원고 마라톤 재단은 2000년 육상연명에 매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고도 2000년 사업실적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한편 원고 동아일보사측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장학재단'의 활동에 대하여는 거의 해마다 한 차례씩 지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소개하면서도 원고 마라톤 재단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에 형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외에는 이를 밝히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민성금의 조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동아일보사 및 원고 마라톤 재단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가) 위 보도 및 만평은 원고 동아일보사 및 원고 마라톤 재단이 동아마라톤 대회 지원에만 열을 올리고 당초 약속과는 달리 마라톤 전용 훈련장 건립과 관련된 사업은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마라톤 전용 훈련장 건립 약속의 순수성과 약속실현의 의지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사건 임야는 수질보전특별대책 1 권역으로 묶인 땅이라는 점,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동아일보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재단의 소유라는 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하자 사업계획서에 마라톤 전용 훈련장 건립과 관련된 사항이 처음 포함되었다는 점, 이 사건 임야에 마라톤 육성과는 무관한 눈썰매장을 설치하려 한 점, 육상연맹이 원고 마라톤 재단에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점 등)을 적시하고, 나아가 국민성금의 조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위 원고들은 더 나아가 원고 마라톤 재단이 이 사건 임야의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환경부, 양평군에 무리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마치 위 원고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여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별지 제5 목록 기재 기사의 소재목으로 '용도변경 잇단 압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별지 제9 목록 기재 기사의 큰 제목으로 '용도변경 집요한 줄다리기 2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지 제5 목록 기재 기사의 해당부분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 마라톤 재단이 이 사건 임야의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와 양평군에 여러 차례 '강력한 요청'을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별지 제9 목록 기재 기사는 원고 마라톤 재단이 양평군에 수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한 끝에 2년여 만에 최종 허가를 받게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 내용일 뿐이며, 위 각 기사 본

문 어디에도 원고 동아일보사 또는 원고 마라톤 재단이 환경부, 양평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소제목 또는 큰 제목에서 ‘압력’ 또는 ‘집요한 줄다리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원고 마라톤 재단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겠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1)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보도 및 만평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원고 동아일보사 및 원고 마라톤 재단이 국민성금으로 자사 마라톤대회 지원 사업에만 대부분의 돈을 집행하고 마라톤 전용훈련장 건립 사업 등은 8년여가 지나는 동안 부지 매입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마라톤 재단이 이 사건 임야에 눈썰매장을 설치해 영리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동아일보사가 운영하는 별도 재단의 소유이고, 수질보전특별대책 1 권역으로 묶여 있던 땅이라는 사실, 원고 마라톤 재단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밝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각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보도 및 만평은 그 주요 내용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의혹제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 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들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처럼 위 보도 및 만평은 그 주요 내용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의혹제기라고 이해되지만, 이하에서는 위 보도 및 만평의 내용 중에서 원고 동아일보사 및 원고 마라톤 재단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적극 문제삼으며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따로 살펴 봄으로서 위와 같은 결론을 보충하기로 한다.

(가) 위 원고들은 마라톤 코스개발비 명목으로 1998년 4,250만 원, 1999년, 2000년에는 각 금 3천 만원을 각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가 종로구청에 제출된 바 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 마라톤 재단이 종로구청에 제출한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의 사업계획서에 마라톤 전용 훈련장 건립과 관련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도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별지 제7 목록 기재 기사를 살펴보면 마라톤 코스개발비 명목으로 1998년 4,250만 원, 1999년, 2000년에는 각 금 3천 만원을 각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원고 마라톤 재단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전용훈련장 사업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들이 위 마라톤 코스개발비가 마라톤 전용 훈련장 사

업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오해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위 마라톤 코스개발비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도하였다는 점,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마라톤 재단은 1999년, 2000년 마라톤 코스개발비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켰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들은 전용훈련장 사업의 진행을 부지 매입 및 공사착공으로 한정하여 이해한 나머지 코스개발비는 전용훈련장 사업계획과 무관하다고 이해하였을 뿐 취재로 알게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숨기려 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점, 코스개발비 지출계획이 동아마라톤 지원금 지출계획에 비해 현저히 소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계획서에 마라톤 전용 훈련장 건립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보도는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위 원고들은 국세청의 원고 마라톤 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은 2001. 1. 31.에 전격적으로 발표되었고, 원고 마라톤 재단은 그 바로 전날인 2001. 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입 계획을 의결하는바, 세무조사가 들어가자 훈련장 부지구입비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켰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다룬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대중 전대통령이 2001. 1. 11.경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전후하여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실시를 요구하는 등의 여론이 있었다는 점, 원고 마라톤 재단이 종로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시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발표 이후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 들어가자 부지매입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큰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또한 이 사건 제3 보도 및 만평의 주된 취지는 원고 마라톤 재단이 전용훈련장 건립 등을 약속하고도 원고 동아일보사의 동아마라톤 대회 지원에만 막대한 돈을 집행하고 8년여 동안 마라톤 훈련장 부지 매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비난의 여론이 있자 2001년에 와서야 부지 매입 자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음을 지적하려는 데에 있다고 이해되고 이러한 지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체로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것인바, 이러한 이 사건 제3 보도 및 만평의 주된 취지에 다소 벗어나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원고 마라톤 재단의 부지 매입결의 사이의 선후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오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혹제기가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2000년 육상연명에 지급한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 동아일보사이지 원고 마라톤 재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마치 원고 마라톤 재단이 지원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실적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 기금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 22호증의 1(이○○과의 전화녹취록), 2(이△△과의 전화녹취록),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에 앞서 본 기초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 한겨레신문사 소속 정△△ 기자는 육상연맹 위원장 겸 원고 마라톤 재단 이사인 이○○, 육상연맹 사무국장 이△△을 차례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육상연맹 내부 일각에서 원고 마라톤 재단의 기금운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심지어 기금운영권을 되찾아 오는 방안까지 논의된 적이 있으며, 대한육상연맹측이 원고 마라톤 재단측에 수차 마라톤 꿈나무 양성을 위한 지원금을 요구하여 2000년부터 매년 1,000 내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속 받고 그 해 곧바로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사실, 그런데 원고 마라톤 재단의 2000년 실적보고서에는 대한육상연맹에 대한 지원금 집행내역이 없고, 그 대신 2001년 사업계획서에 육상연맹에 지급할 지원금으로 금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위 원고들은 2000년에 지급된 육상연맹 지원금은 원고 동아일보사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1년부터 지원 주체가 원고 동아일보사에서 원고 마라톤 재단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인지,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이 각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육상연맹에 지급된 1,000만 원의 지원금이 원고 마라톤 재단의 돈으로 믿은 데에는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원고 마라톤 재단이 기금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혹제기를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이 사건 제4 보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동아일보 체육부 이□□ 기자는 1936. 8. 25.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 출전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사건을 보도하면서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수상 사진에서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지워 이를 보도하였다(이를 편의상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 칭한다).

(2)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해 일본 경찰은 이□□ 기자 등 8명을 구속하였고, 조선총독부는 원고 동아일보사측의 책임을 물어 동아일보의 무기정간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는바, 그 후 이□□ 기자 등은 앞으로 언론기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구속에서 풀려났다.

(3) 동아일보사가 1976년 발간한 <인촌 김성수전>은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당시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주 인촌 김성수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보전 이사실에서 이 사실을 전화로 연락받은 인촌은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점점

협약해져 가는 시국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해도 무기정간이 내릴 것은 틀림없었다. 제2, 3차 무기정간 처분의 이유가 되었던 외국인의 메시지나 축사의 비가 아니었다. 제1차 무기정간을 가져온 '삼중신기'도 간접으로 그것을 건드렸던 것이고, 또 시대가 그때와 달랐다. 몇 달 전 동경에서 이른바 황도파 장교들이 내대신 사이또오, 장상 다카하시 등 중신을 살해한 소위 2.2 사건 때도 그들이 내세운 구호가 국체명징이었고, 국기는 그 국체의 상징인 것이다. 급히 동아일보사로 오는 자동차 속에서 인촌은 히노마루 말소는 몰지각한 소행이라고 노여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린데서 오는 순간의 쾌와 동아일보가 정간되거나 영영 문을 닫게 되는데서 오는 실을 생각하여 그 답은 분명하였다. 산란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던 인촌은 도중에 문제의 신문을 구해서 그 사진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민족의 정기가 농축되어만 가고 변질하는 유명무명의 군상이 늘어가는 세태를 볼 때, 히노마루의 말소는 잠자려는 민족의식을 흔들여 놓은 경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다소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에 대한 탄압은 민족대표지로서 쾌히 지고 가야할 십자가라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4)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대의에 죽을 때-황민됨의 책무 크다' 라는 김성수 명의의 친일 논설이 1943. 11. 매일신보에, '문약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 라는 김성수 명의의 친일 논설이 1943. 8. 5.자 매일신보에 각 게재되었다.

나. 명예훼손 여부

(1) 위 보도 중 원고 동아일보사 및 원고 인촌기념회가 문제삼는 부분의 요지

(가)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하여 원고 동아일보사의 당시 사주였던 김성수는 몰지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여 노여워 하였고, 동아일보는 이□□ 기자와 관련자들을 쫓아내었다.

(나) 김성수는 1943.경 매일신보에 기고한 친일논설들을 통해 일제를 찬양 등 친일행적을 보였다.

(2) 원고 동아일보사 및 원고 인촌기념회의 명예훼손 여부

위 보도는 원고 동아일보사인 발간하여 온 동아일보의 친일 곡필을 밝히겠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동아일보를 창간, 경영한 김성수의 친일행적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동아일보사와 원고 인촌기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1) 원고 동아일보사 및 원고 인촌기념회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촌 김성수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일장기 말소 사건을 접한 김성수가 처음에는 동아일보의 폐간 사태를 우려하여 이일용 기자의 행위를 몰지각한 소행으로 생각하여 노

여위하였으나, 곧이어 민족혼을 일깨운 행위로 생각하고 이□□ 기자의 행위를 지지하였음을 기술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김성수의 반응을 보도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인촌 김성수전>의 일부 내용 만을 발췌하여 김성수를 친일파로 매도하였다.

(나) 이□□ 기자 등은 일제에 언론기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동아일보에서 자진 사퇴한 것이지 동아일보사가 쫓아 낸 것이 아니다.

(다) 매일신보에 김성수 명의의 게재된 친일논설은 사실은 매일신보 기자인 김○○가 김성수의 이름을 빌어 대필한 것이다.

(2) 판 단

먼저, <인촌 김성수전>의 일부 인용 문제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제10목록 기재 기사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위 기사는 전체적으로 동아일보의 친일적 보도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그 주를 이루면서 이러한 동아일보의 친일적 보도행태를 당시 사주였던 김성수의 친일행적과 연관시키기 위해 그의 친일행적에 관한 여러 일화 중의 하나로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그의 반응의 일부를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독자들에게 보도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하였음을 밝힌 <인촌 김성수전>의 관련부분 내용은 일제치하에서 민족적 장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단선적인 입장에 머무를 수만은 없었던 언론사 사주로서의 복잡하고 괴로운 심경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은 책임 있는 언론사로서의 보도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동아일보사가 이□□ 기자 등을 쫓아 내었다는 표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3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동아일보가 무기 정간처분을 받은 이후 당시 동아일보사 사장 송진우는 조선총독부 등을 찾아가 일장기 말소 사건은 기자의 독단으로 저질러진 것에 불과하니 동아일보의 정간처분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 후 원고 동아일보는 1937. 6. 2. 동아일보를 속간하면서 '지면을 쇄신하고 대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사명을 다하고 조선통치의 익찬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속간사고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인정사실을 근거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킨 일장기 말소 사건의 한 주역인 이□□ 기자와 관련자들을 동아일보사가 쫓아내었다고 적시한 것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지나친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궁극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위 <인촌 김성수전> 관련 부분과 함께 뒤에서 다시 종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결므로 김성수 명의의 게재된 친일논설이 사실은 김성수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문제의 친일논설들이 김병규의 대필에 의한 글들이라 할지라도, 위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에 의하면 김병규는 친일논설들을 게재하기에 앞서 김성수에게 글의 내용을 보이고, 김성수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 이후에 대필한 친일논설을 매일신보에 게재하였다는 것인바, 김성수가 만인이 보는 신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글이 게재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사전에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게재를 용인하였다면 그와 같은 경위로 게재된 글은 김성수 자신의 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들이 김성수가 위 친일논설을 기고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들이 이러한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이들의 주장 사이의 틈은 이렇게 크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 마치 김성수가 변명의 여지없이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하였고 후에 이러한 과거행적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였다는 듯한 표현에까지 이르른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하나, 위 보도의 주된 내용이 일제 말기에 친일적 논설들을 통하여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점에 있고 위 부분은 이를 다소 과장하면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보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하겠다.

7. 이 사건 제5 보도 및 만평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1) 위 보도 및 만평 중 원고 동아일보사가 문제삼는 부분

(가)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치부가 드러나자 족벌신문들은 그동안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을 괴롭혀온 수법대로 자사 기자들을 동원해 <한겨레신문>에 대한 뒷조사를 한다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별지 제12 목록 기재 기사 중 일부).

(나) ‘족벌신문’이라고 이름을 적은 두 남자가 검은 색안경을 쓴 채 망원경으로 한겨레신문사 건물을 정찰하고 있고, 그 옆에 ‘옛 안기부직원’이라고 지칭된 남자가 “오, 또 저 것들 뒷조사해? 예전에 우리도 광고탄압하고 별 수 다 써봤는데... 잘해봐. 파이팅”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그린 만평(별지 제4 기재 만평)

(2) 원고 동아일보사의 명예훼손 여부

위 보도 및 만평은 원고 동아일보사가 과거 정보기관 직원들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집단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여 원고 동아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보도 및 만평에서 지칭하는 족벌신문은 조선일보를 지칭하는 것이고 원고 동아일보사 또는 동아일보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 보도는 명백히 ‘족벌언론사들’로 그 대상을 복수로 지칭하고 있

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겨레신문사는 위 보도 이전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를 그 직접 상대로 하여 <심층해부 언론권력>이란 제목의 시리즈기획 기사를 연일 보도하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 및 만평이 지칭하는 족벌신문사들에는 원고 동아일보사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통의 독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진실성 또는 상당성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은 을 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근거로 조선일보사가 피고 한겨레신문사의 직원들의 뒷조사를 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동아일보사가 피고들의 뒷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원고 동아일보사가 피고들의 뒷조사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5 보도 및 만평이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데에 관여한 피고들은 원고 동아일보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8. 이 사건 제6 보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1974. 10. 24. 동아일보사 기자 180 여명이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떤 외부 간섭도 배제한다'는 내용의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섰고, 그 후 당시 유신정권하에서 금기시되던 유신반대시위 등에 관한 기사가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2) 1974년 12. 경부터 원고 동아일보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한꺼번에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계약체결을 기피하는 사태(이하 '광고탄압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 동아일보사는 광고란이 백지인 상태로 신문을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 동아일보사는 같은 달 27.경 동아일보의 광고란에 독자들의 광고 게재를 부탁하는 '동아일보 신문광고 피아르1'을 실었는데, 이후 독자들로부터 성금기탁과 격려광고 의뢰가 쇄도하였다.

(3) 독자들의 성금과 격려광고가 줄을 이었으나 원고 동아일보사의 경영상태는 현저히 악화되었고, 이에 원고 동아일보사는 경영악화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1975. 2. 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7명을 사임하도록 하여 그들의 급여등 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① 일부 사원들의 거둬진 사규문란 행동(위계질서 문란 행위, 무허가 집회 개최 행위, 무허가 유인물 배포행위 등)을 주시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조속히 사내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고, ② 원고 동아일보사의 여러 기구들 중 불요불급한 사업과 기구를 정비하고 기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경영을 합리화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4) 위와 같은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원고 동아일보사는 같은 해 3. 8. 심의실, 편집국 기획부와 과학부, 출판국 출판부 등 3부 1실을 폐지하고 소속사원 18명을 해임한다고 공고하였다.

(5) 한국기자협회 동아일보사 분회(이하 '기협분회'라 한다) 및 그 집행부 보좌기관인 자유언론실천 특별위원회(이하 '실천특위'라 한다) 등에서 활동해온 사원들은 위와 같은 원고 동아일보사의 기구축소 및 해임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원고 동아일보사측에 집단해고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동아일보사측은 같은 달 10.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한편, 장운환 전 기협분회장 등 2명을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동욱 주필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하였다.

(6) 위와 같은 2명의 추가해임에 대해, 기협분회 소속 일부 기자들은 같은 달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경영진의 대량해고를 자유언론을 주장, 실천하는 기자들을 구조적 제도적으로 제거하려는 작업으로 비난하는 한편, 해직사원 20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결의한 후, 편집국, 공무국 등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하였다(이후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원은 크게 제작거부파와 제작참여파로 나뉘었다).

(7) 원고 동아일보사는 신문 및 방송의 제작이 제작거부파의 점거농성으로 파행으로 치닫자 기협분회 간부 전원을 포함한 17명을 추가로 해임하는 한편, 같은 달 13. 동아일보사를 통해 '광고탄압이라는 외우와 사원들이 하극상을 함부로 하는 내환 속에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8) 원고 동아일보사가 같은 달 17. 농성중인 사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자, 강제해산된 다음날인 같은 달 18. 해임기자들과 제작거부 및 점거농성에 가담했던 사원들은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라 한다)를 결성하고 출근을 거부한 채 매일 아침 회사 정문에 도열하여 시위를 벌였다.

(9) 원고 동아일보사는 같은 달 27. 제작거부파 직원 12명을 추가해임하고, 7명을 무기정직시키는 한편, 강제해산 이후 출근을 거부하는 사원들에게 같은 달 31.까지 출근할 것을 종용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10) 원고 동아일보사는 같은 해 4. 11. 그 때까지 출근을 거부하는 사원 75명에 대하여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는바, 이로써 원고 동아일보사는 1975. 3. 8. 기구축소를 이유로 18명을 해임한 이래 5. 1.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49명을 해임하였고, 84명에 대하여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무기정직 처분을 당한 사원들 대부분은 6개월이 지나도록 복직명령이 없어 해임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나.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제 1 보도내용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의 요지는 '동아일보의 당시 사장인 김상만은 유신정권의 광고탄압에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부족했고, 자유언론실천운동을 펼치며 유신정권에 맞서 싸운 기자들은 정권과 결탁한 사주에 의해 해직되었다'는 부분인바, 위 내용은 원고 동아일보사가 당시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기자들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로써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1) 먼저 위 보도 내용 중 동아일보의 한 관계자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김상만 사장이 광고탄압에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부족했다고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7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위 보도 내용은 피고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기자 권○○이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원고 동아일보사의 광고국장으로서 재직한 김◇◇를 인터뷰한 후 그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원들이 제작거부과, 제작참여과 등으로 나뉘고 많은 사원들이 해임 내지 무기정직까지 당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김상만 사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부족'했다는 정도의 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적어도 피고들이 위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사주가 유신정권과 결탁하여 유신정권에 맞서 싸우던 기자들을 해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 동아일보사가 1975. 3. 8. 18명의 사원들을 해고한 이래 한 달여 동안 무려 130여 명의 직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무기정직처분을 내린 일련의 조치들은 일응 광고탄압사태로 빚어진 극심한 경영난을 타개하고 일부 과격한 사원들의 제작거부, 점거농성, 출근거부에 대한 징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당시 원고 동아일보사가 광고탄압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최초 18명을 해고한 것은 일응 적법한 경영상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이후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로 2명을 해고한 것은 경영난 타개와는 무관하게 사내 질서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원들이 제작참여과와 제작거부과로 나뉘어 대립이 시작되고, 제작참여과와 경영진 사이에도 갈등이 증폭되는 등 사태가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는 점, 당시 자유언론을 주

장하는 기자들이 주로 제작거부와 접거농성에 참여하면서 20여 명의 해직사원들의 복직을 요구함에 대해, 원고 동아일보사측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사태 해결보다는 강제해산과 해고, 무기정직처분 등 강경한 조치들로 일관하며 무려 130여 명에 이르는 기자 및 사원들을 해고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동아일보사가 해고 또는 무기정직처분으로 일관한 조치는 최초 경영난 타개를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 하여도, 그 과정에서 최초의 의도가 변질되어 중국에는 사내 질서와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하에 당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주도하며 유신정권과 긴장관계에 있던 기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당시 경영진의 선택이 경영상 불가피했고, 대량 해고가 법적으로 적법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 사건의 전후 사정 및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동아일보사의 위와 같은 대량 해고 조치는 단순한 사내분규 이상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실제로 을 제28호증 내지 38호증의 1, 2, 3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동아일보사는 2000. 4. 1. 펴낸 <민족과 더불어 80년>이라는 동아일보 사사(社史)를 통해 “7개월에 걸친 광고 탄압은 자유언론의 숨통을 끊으려는 정권의 ‘계획된 테러’였다. 온 국민의 성원을 등에 업고 이 음모를 끝내 돌파하기는 했지만 동아일보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마지막 승리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 많은 동료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던 것이다. 서슬 퍼런 유신 치하에서 횡횡을 높이 치켜들었던 자유언론실천이 언론인의 무더기 해직으로 이어진 동아사태는 동아일보 역사, 아니 한국언론사를 통틀어 큰 비극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언론탄압에 저항한다는 대명제는 같으면서도 단지 투쟁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달랐기에 비롯된 불행이었다.”고 기술하여 원고 동아일보사 자신도 당시의 대량 해고가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2001. 1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동아투위’ 관련 해직기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고 명예회복결정을 내린바 있고, 원고 동아일보사가 해직한 기자들로 구성된 ‘동아투위’는 현재까지도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원고 동아일보사의 대량 해고조치를 정권과 결탁하여 자유언론을 탄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직접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 없이 원고 동아일보사의 위와 같은 대량 해고 조치를 자유언론을 주장하는 기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원고 동아일보사가 당시 독재정권과 결탁하였다고까지 표현한 것은, 그 내용이 언론사로서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여겨지는바, 다만 궁극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종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9. 위법성 조각 여부의 종합적 검토

언론사의 다른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어느 공인 또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바, 그러나 언론사에 대한 비판이 아주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이러한 비판을 한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경우까지도 언론 상호간의 자유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언론 수용자들의 평가에만 맡겨둔 채 방치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공권력을 비판, 감시, 견제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언론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이며 또한 위험한 태도이기도 하다. 더욱이 언론사라면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무리 언론사에 대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검증이 가능한 사안을 선택하여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안을 추적 보도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사실이 어느 정도의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일반 독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성의 있는 자료 수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검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면 스스로 보도를 자제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둘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보도, 이 사건 제2 보도 및 만평, 이 사건 제4, 6 보도 중 각 일부 내용의 경우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보도한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곧바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이루어진 비판인 경우에는 언론의 언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일응 이러한 허용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보도 및 만평들을 기획하게 된 기본적인 바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기사 및 만평이 계획되고 취재활동이 이루어져 보도된 2001년 무렵은,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여망이 결집되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의 민주적 정권의 수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시기였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올바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과거의 불행한 역사, 즉 국권상실 이후 혹독한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자주 독립세력과 친일매국세력을 양극단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민족의 분열상, 광복 이후 더욱

극심하게 겪게 된 좌우대립이라는 이념적 분열과 그에 이은 6·25사변이라는 동족 상잔의 민족적 비극, 그리고 철저한 반공을 바탕으로 한 군사정권 하에서의 강권억압정치의 상처 등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근, 현대사를 새롭게 평가하고, 그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반성과 청산을 통하여 민족정기를 다시 세우고 단결된 힘으로 정의와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이 어느 때보다도 고양되어 있었던 시기였는 바, 피고 한겨레신문사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전통 있는 우수 언론사나 그 사주의 지난 행적을 다시 한번 밝혀내고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여 올바른 언론의 사명 내지 언론관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언론상을 세워보고자 하는 사명감을 느끼고 그 바탕 위에서 특집기사를 기획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이 사건 각 기사 및 만평을 작성, 보도하게 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 전반의 개혁적인 분위기와 이를 반영하는 시대적 요청 내지 국민적 여망, 그리고 이에 부응하여 올바른 언론상을 세워보겠다는 언론의 각오 등 이 사건 각 기사 및 만평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여러 사정들은 당연히 이 사건 각 기사 및 만평의 위법성 여부를 관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들의 하나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 사건 제1 보도, 이 사건 제2 보도 및 만평 및 이 사건 제 4, 6 보도 중 각 일부 내용의 경우 비록 직접적이고도 충분한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다소 과장된 표현, 심지어는 언론 본연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표현까지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것은 없다 하겠다.

10.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 및 만평 중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제5 보도 및 만평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 중에서 이 사건 제5보도 및 만평의 작성 및 게재에 관여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먼저, 누가 이 사건 제5 보도 및 만평이 게재된 데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보도 및 만평을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피고 한겨레신문사, 발행인인 피고 최학래, 논설주간 피고 정○○, 편집책임자 피고 고○○ 및 위 만평을 그린 피고 김△△의 경우에는 위 보도 및 만평을 작성, 게재 등에 관여한 사람들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 하겠으나, 나머지 피고들은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위 보도 및 만

평의 작성, 게재 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책임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동아일보사에 배상해야할 손해배상액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 5 보도 및 만평은 원고 동아일보사가 피고 한겨레신문사의 뒷조사를 하였다든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동아일보사를 과거 정보기관 직원들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뒷조사하는 부정한 권력집단으로 묘사하였음은 물론, 그동안 피고 한겨레신문사가 지적해온 원고 동아일보사의 부도덕한 행태 또는 치부가 모두 사실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동아일보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인식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동아일보사가 피고 한겨레신문사를 뒷조사한 사실이 없음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보도 및 만평을 게재하였다는 점, 그밖에 원고 동아일보사 및 피고 한겨레신문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자료료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1.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한겨레신문사, 피고 최학래, 피고 정○○, 피고 고○○, 피고 김△△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동아일보사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5 보도 및 만평이 게재된 2001. 3.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10.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동아일보사의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피고 최학래, 피고 정○○, 피고 고○○,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피고 최학래, 피고 정○○, 피고 고○○, 피고 김△△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피고 고○○, 피고 조○○, 피고 고△△,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재단법인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원고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동 영

판사 민 성 철

판사 이 봉 수

〈별 지〉 기사목록, 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목적기관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언론의
감시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의 저하 정도는 수인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4. 10. 26.자 판결 (2004나17001)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04년 10월 26일 전 한국마사회 비서실 과장이 동아일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한국마사회와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그로써 올바른 인사를 유도하기 위한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이 부담하는 보도내용의 진실성 담보의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이 이 기사를 통하여 공익목적 기관의 구조조정 작업이 투명한 과정과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보도함에 있어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위 문서들의 작성자로 지목한 원고를 직접 취재하지 못하였고, 언론사가 실명(實名)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 관련 부분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익목적기관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의 저하 정도는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가 2002년 3월 21일자 1면 및 3월 20일자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사회 살생부 노조위원장 개입』 제하의 기사에서 당시 비서실 과장이던 원고가 노조위원장과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은 물론 인사발령 문제까지 의논하였고, 인사부서의 자료와

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구조조정용 살생부'라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가 저하되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동아일보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1집, 297~308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4나1700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2. 권 ○ ○

3. 이 ○

4. 이 △ △

피고 2., 3., 4.의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일보사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4. 1. 30. 선고 2002가합28017 판결

변 론 종 결 : 2004. 9. 14.

판 결 선 고 : 2004. 10. 26.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2. 3.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동아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1면 기사 게재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3. 만약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위 2항 기재 기간 안에 위 2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3.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8. 4.경부터 2000. 7. 26.까지 한국마사회의 비서실에서 계장, 과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 '동아일보'의 발행 및 판매, 도서 잡지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신문사이며, 피고 권○○은 피고 동아일보사의 사회부장, 피고 이○, 이△△는 피고 동아일보사 사회부 소속 기자들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 이○, 이△△는 '마사회 살생부 노조委員長 개입'이라는 제목 하에, "98년 구조조정 때 使측과 대상자 선정 협의"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기사 1'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고 한다.)를, '마사회 살생부 노조委員長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사 2'와 같은 내용의 기사(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사 끝 부분이 약간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 동아일보사는 이 사건 제1기사를 2002. 3. 21.자 동아일보 제1면에, 이 사건 제2기사를 2002. 3. 20. 피고 동아일보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a.com) 뉴스란에 각 게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한국마사회의 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던 구조조정 계획이나 절차에 관여한 적이 없고, 그 문제에 관하여 노조위원장과 상의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비서실장인 정○○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의 인사자료를 챙기고 정○○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구조조정관련 일정 등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준 일이 있을 뿐이다.

(2) 그런데 피고들이 위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제1, 2기사를 작성하여 원고의 이름을 실명(實名)으로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원고가 1998년경 한국마사회의 비서실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 비서실에서 노조위원장과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은 물론 인사발령 문제까지 의논하였고, 인사부서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이른바 ‘구조조정용 살생부’라는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사실이 드러나자 휴가를 내고 잠적하였다는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따라서 피고 동아일보사는 이 사건 제1, 2기사를 게재·배포한 자로서, 피고 권○○은 피고 동아일보사의 사회부장으로서, 피고 이○, 이△△는 이 사건 제1, 2기사를 작성한 기자들로서 이 사건 제1, 2기사의 보도에 관여하였으므로 각자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입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의 지급, 정정보도문의 게재 및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물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2기사 중 「김씨는 “당시 신○○ 노조위원장이 비서실 이○○ 과장과 비서실에서 10여 차례 이상 정리대상자 선정 문제를 상의했고 인사발령 문제까지 얘기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98년 4월 부임한 오회장장과 비서실장이 직원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이 과장이 인사부서에서 받은 자료와 주관적인 평가를 담아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라고 한 부분과 이 사건 제1기사 중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이○○ 당시 비서실 과장은 19일 휴가를 내고 중국여행을 떠나 휴대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 및 이 사건 제2기사 중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이○○ 당시 비서실 과장은 20일 휴가를 내고 잠적했으며 휴대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이 부분은 먼저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으로 인터넷 뉴스란에 게재되었다가 그 후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으로 수정되어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다.)은, 원고가 노조위원장과 정리대상자 문제를 상의하였고, 인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주관적인 평가를 담아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제1, 2기사 게재일 직전에 휴가를 떠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의 적시로서, 한국마사회가 1998년도에 시행한 구조조정 작업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비서실 과장이던 원고가 노조위원장과 협의한 내용과 인사부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의 개인적, 주관적 판단하에 구조조정 대상자를 정한 문서(이른바 ‘마사회 살생부’)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원고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잠적하였다는 인상을 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기사에 관한 자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공공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기사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행정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한국마사회의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바, 한국마사회의 직원인 원고가 그 자체로 공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제1, 2기사에서 문제삼고 있는 공기업의 인력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공적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공익에 관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2)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대한 상당성

(가) 진실성 여부

갑 제2,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3, 4, 5,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의 8, 10, 11, 20,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구조조정의 경위 등

㉔ 한국마사회는,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역임한 오영우가 1998. 3.경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IMF 외환위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의 경제여건 변화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인력감축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오다가, 1998. 8.경 당시 문화관광부로부터 정부

출연 또는 위탁기관의 인력감축을 골자로 하는 경영혁신 방안인 '정부 출연·위탁기관 경영 혁신 추진계획'을 통보받음에 따라 본격적으로 인력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㉔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우선 1998. 9. 22.경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된 1급 직원들에게 그 전날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1급 직원 25명 중 12명이 고용조정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1998. 9. 28.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2급 직원 66명 중 16명이 감축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서 고등인사위원회의 적부 심의에 회부한 다음, 1998. 9. 30. 개최된 제13차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위 16명 전원이 감축대상으로 결정되자, 당일 그들에게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㉕ 한국마사회는 또한 1, 2급 직원들 중 일부를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하기 이전인 1998. 9. 19.부터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1998. 10. 31.까지 5차례에 걸쳐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고용조정대상자로 통보받은 1급 직원 12명 중 9명이, 2급 직원 16명 중 5명이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1, 2급 직원들은 대기발령 절차(1급 : 1998. 10. 1., 2급 : 1998. 10. 2.)를 거쳐 직권면직(1급 : 1998. 11. 9., 2급 : 1998. 11. 2.)되었다.

㉖ 한편 한국마사회는 위와 같이 1, 2급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정절차를 진행시키면서 3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조와 계속 협의하였는데, 그 결과 1998. 11. 6.에 이르러 고용조정기준을 '생계유지 가능 정도, 불법·부정경마와 관련된 자,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미소지자, 장기근속자·고령자, 특별채용자 중 3급 이상인 자 또는 최근 특채자, 직원 준수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자, 1993. 2. 25.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직원,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내용을 불이행하여 노사분규를 야기한 자'로 정하기로 하는 등 노사간에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게 되었고, 1998. 11. 16.에 3급 이하 직원들 중 27명을 감축하기로 고용조정 규모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㉗ 한국마사회는 위 고용조정으로 1, 2급의 직급에서 결원이 생기자 1999. 1. 1. 직원 중 6명을 1급으로, 16명을 2급으로 각 승진시켰다.

② 취재경위

㉘ 피고 이○은 2002. 3. 11. 한국마사회 소속 신△△ 과장으로부터 한국마사회의 199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신지역과 정치성향이 정리대상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었고, 위 출신 지역 등을 기초로 하여 해직대상을 선정한 일종의 '구조조정용 살생부'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다음날 피고 동아일보사를 방문한 신△△ 등 7명으로부터 구조조정 과정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구조조정 당시 한국마사회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김○○가 비서실 및 회장

실에서 수집하였다는 “구조조정관련 일정 등 보고”, “대상자 명단”, “인명조정(안)”의 제목이 붙은 타이핑된 3개의 문서(을 제1호증의 3, 4, 5)와 한국마사회 2급 직원 3명의 사조직 운영, 지역차별 등의 행태가 손으로 기재된 제목 없는 문서(을 제1호증의 6) 1개 등 4개의 문서를 건네 받았다.

㉔ 이에 피고 동아일보사는 피고 이○, 이△△와 박○○으로 하여금 취재를 하도록 하여 피고 이○, 이△△와 박○○은 그때부터 이 사건 제1, 2기사 보도 전까지 위 제보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는데, 김○○에 대한 인터뷰과정에서, 원고가 인사자료를 가지고 문서작업을 하는 것과 원고가 노조위원장인 신○○와 비서실 옆 접견실에서 의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원고와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원고에 대한 인터뷰는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 2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㉕ 당시 원고는 휴가를 내고 2002. 3. 19.부터 2002. 3. 21.까지 중국여행을 하던 중이었다.

㉖ 위 각 문서의 내용 및 작성자 등에 관한 진상조사와 수사 결과 등

㉗ “구조조정관련 일정 등 보고”라는 문서는, 구조조정절차 및 시점, 대기명령요건 등 관련규정, 정리해고대상, 발탁승진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보직/발탁승진 고려대상, 출신대학별 직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리해고대상에는 정리대상유형이라는 제목 아래 정리해고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지역편가르기와 직원간 위화감 조성에 앞장서고 아직도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 ‘과거정권의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정치권 줄대기에만 급급한 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정리대상 평가내역란의 사내여론 부분에는 ‘호남인물 공개적 박해인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곳도 있다.

㉘ “대상자 명단”이라는 문서는, 마사회 1급직원부터 기능직 직원까지 85명, 기수협회 회원 3명, 마주협회 회원 4명 등 총 101명을 정리대상자로 하고 이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 ‘특정지역 출신 탄압’, ‘지역편향주의자’, ‘전기득권세력 추종자’, ‘반개혁적 인물, 이회창 지지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㉙ “인명조정(안)”이라는 문서는, 능력 및 성향란에 ‘반개혁성향’, ‘지역편견’ 등의 문구가 일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개인별로 퇴출을 의미하는 ‘퇴(退) ×’, ‘× 전출’ 표시와 보직유지를 의미하는 ‘○’ 표시가 되어 있다.

㉚ 그 후 한국마사회가 2002. 3.경부터 2002. 6.경까지 사이에 1998년도 구조조정의 진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노사공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문서 중 “구조조정관련 일정 등 보고”라는 문서에 관하여는, 정리대상유형, 평가내역(사내여론), 조

치 등의 내용을 당시 비서실장인 정○○이 정해 주어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작업만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대상자 명단” 및 “인명조정(안)”이라는 문서는 당시 사업이사이던 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㉔ 한편 위 진상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김○○는, 원고가 인사과로부터 인사 자료를 건네 받아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대상자 명단” 및 “인명조정(안)”에 기재된 사람들이 평소 원고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위 문서들의 작성자로 원고를 지목하게 된 것이며, 원고가 노조위원장인 신○○와 의논하는 것을 몇 차례 보았으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밖에 위 진상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위 각 문서들의 실질적인 작성자라거나 원고가 신○○와 구조조정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밝혀진 바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기사 중 한국마사회가 1998년도에 시행한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서실 과장이던 원고가 노조위원장인 신○○와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하였고, 나아가 원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하에 구조조정 대상자를 정한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및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원고가 잠적하였다는 점은 한국마사회의 자체 진상조사과정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진실이라고 밝혀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위 기사 부분이 진실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기사 중 위 기사 부분이 진실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대한 상당성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의 8, 9, 10, 11, 13, 14, 15, 20, 을 제20호증의 7,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한국마사회 회장 오영우를 보좌하는 비서실에는 실장인 정○○, 과장인 원고 및 그 부하직원인 여직원 김○○와 장○○ 등 모두 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여직원인 김○○와 장○○은 전화받기, 차접대, 사무실 정리정돈 등의 일상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② 한국마사회에서 구조조정을 시행할 당시 그에 따른 정리대상자의 선정, 구조조정 절차 등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서인 인사과가 아닌 회장 비서실에서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③ 비서실장 정○○은 오영우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데려온 사람으로서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될 당시 한국마사회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아니하였던 반면, 원고는 1989.

4.경 4급 공채로 한국마사회에 입사하여 1998. 4.경 비서실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발매과, 장외과, 인사과 등지에서 근무하였다.

④ 원고는 위 구조조정 작업 중이던 1998. 6.경부터 8.경 사이에 인사과 소속 대리인 최○○에게 3회에 걸쳐 직원들의 인사자료 중 성명, 생년월일, 직급, 부서, 입사일자, 출신학교, 본적지 등의 자료를 항목별로 요구하여 최○○으로부터 위 자료를 넘겨받은 적이 있다. 또 원고는 1998. 9.경에는 기획조정실 부실장 조○○, 기획과장 김□□, 노조위원장 신○○와 함께 음식점에 모여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원고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주로 2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 평가, 평판 등을 말하는 방식으로 토의하였다.

⑤ “구조조정관련 일정 등 보고” 등 이 사건 문제가 된 4개의 문서를 수집하였던 김○○은 당시 원고가 비서실장 정○○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문서를 작성하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신○○ 노조위원장간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알 수가 없었지만 두 사람이 비서실 옆 접견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몇 차례 목격하였다.

⑥ 한국마사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김◇◇ 등이 자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2000. 8. 22. 선고 99구27282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1. 7. 26. 선고 2000누11538 판결)에서는 그 해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김◇◇ 등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03. 7. 8. 대법원(2001두7602)이 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⑦ 한편, 피고들이 신△△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4개의 문서들 중 “구조조정관련 일정 등 보고”라는 문서는 정○○과 원고가, 손으로 쓰여진 제목 없는 문서는 한국마사회 홍보실장이던 김○○이 각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대상자 명단”과 “인명조정(안)”이라는 문서는 그 작성자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업이사이던 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⑧ 피고 동아일보는 이 사건 제1, 2기사 외에도 2002. 3. 20.자 동아일보에 ‘1998년 마사회 인력 구조조정 당시 출신지-정치성향 따져 강제해직’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마사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신 지역과 정치성향 등이 정리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입증하는 이른바 ‘구조조정용 살생부’를 입수하였다는 내용과 그 문서들의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고, ‘구조조정도 지역차별 소문이 사실로’라는 제목 아래 오영우 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이 주도해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과 그 문서들의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輿출신 낙하산 4인방이 주도’라는 제목 아래 오영우 회장, 이○○ 부회장, 황○○ 감사, 김△△ 이사 등 4인이 한국마사회의 구조조정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관련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이들 기사에서는 원고의 실명이나 직책 등 원고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마사회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서인 인사부서가 아닌 비서실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던 상황에서, 비서실 소속 직원들 중 김○○와 장○○은 위 4개의 문서를 작성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작성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인 반면, 원고는 그 무렵 인사과에 직원들에 관한 인사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위 문서들의 작성자로는 비서실 과장인 원고와 그 상급자인 비서실장 정○○이 지목받을 만한 객관적 상황이 조성되었던 점, 비서실장 정○○은 구조조정 작업 당시 한국마사회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 위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에 해당하는 한국마사회의 내부 사정이나 직원들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기 힘든 처지에 있었으므로, 한국마사회의 여러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마사회의 내부 사정에 밝으며 구조조정을 주도한 경영진과 출신지역도 같은 원고가 위 문서들의 작성자로 지목될 여지가 더 많았던 점, 나중에 위 문서들 중 “구조조정관련 일정 등 보고”라는 문서의 작성 작업은 원고가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원고가 비서실장인 정○○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그 문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은 원고였고, 그 무렵 원고가 신○○ 노조위원장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도 인정되므로, 정○○이 원고에게 위 문서에 기재할 내용을 미리 정해 주어 그에 따라 원고가 위 문서의 작성 작업을 한다는 사실은 모른 채 원고가 위 문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목격한 김○○로서는 위와 같은 당시의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신○○ 노조위원장과 구조조정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상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 문서의 내용도 결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측하게 되었던 점(문서의 내용을 결정한 자와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로서는 문서화하는 작업을 한 자가 문서의 내용도 결정한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 피고 이○○이 신△△ 등으로부터 위 문서들을 건네받을 때 그들로부터 한국마사회 비서실 소속 직원이 회장실과 비서실에서 수집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위 문서들을 수집한 당사자인 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러한 문서들의 출처와 수집경위에 비추어

위 문서들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나중에 그 문서들 중 2개는 작성자가 밝혀지는 등 실제 존재하는 문서임이 확인된 점, 이 사건 제1, 2기사 게재 전에 이미 김◇◇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들에서 한국마사회의 구조조정 작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 사건 제1, 2기사 및 관련기사의 내용 중 문서의 작성자로 원고를 언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한국마사회의 부당한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진실이거나 진실에 가까운 점, 피고 이○ 등은 이 사건 제1, 2기사 게재 전에 위 판결들을 수집·검토하여 그 판결들의 내용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구조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신△△ 등의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제1, 2기사를 작성·게재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이○, 이△△ 등이 이 사건 제1, 2기사 게재 전에 원고에 대한 취재를 시도하였으나 공교롭게도 원고가 그때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 중이어서 원고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이○ 등이 그와 같이 이 사건 제1, 2기사 게재 전에 사실확인을 위하여 원고와의 접촉을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제1, 2기사 및 관련기사를 종합하면, 한국마사회에서 있었던 1998년도의 구조조정 작업에 관한 동아일보의 기사들은, 당시 여권에 의해 임명된 신임 회장 등 여권인사들에 의해 한국마사회의 구조조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출신지와 정치성향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 핵심이 놓여 있고, 이른바 ‘마사회 살생부’ 라고 지칭한 문서들의 작성자가 원고인지는 기사의 중점 보도내용이 아니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제1, 2기사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김○○의 진술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마치 원고가 위 문서들의 작성자라고 단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기사 끝 부분에서는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이○○ 당시 비서실 과장’ 이라고 하여 문서의 작성자로 ‘추정’ 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점,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인 이 사건 제2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원고가 휴가를 내고 ‘잠적’ 하였다고 게재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해외여행을 떠나 국내에 없게 된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기사를 접한 원고의 처가 원고는 원래 예정되었던 휴가를 중국으로 간 것일 뿐 잠적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 동아일보사에 보내오자 이를 반영하여 그 이후 게재된 이 사건 제1기사에서는 ‘잠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그 대신 중국여행을 떠났다고 보도한 점 등을 더하여 볼 수 있다.

끝으로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 언론이 한국마사회와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기

관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그로써 올바른 인사를 유도하기 위한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이 부담하는 보도내용의 진실성 담보의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제1, 2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기사를 통하여 공익목적기관의 구조조정작업이 투명한 과정과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보도함에 있어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기사를 작성·게재함에 있어서 위 문서들의 작성자로 지목한 원고를 직접 취재하지 못하였고, 언론사가 실명(實名)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기사 중 적어도 원고 관련 부분은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익목적기관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 2 기사로 인한 명예의 저하 정도는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피고들은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1, 2 기사를 작성·게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김 대 응

판사 박 인 식

〈별 지〉 정정보도문, 기사목록 1심 판결문 참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1집 306면 ~308면 참조) — 편집자주

부정확한 사실적시나 불공정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부분이 없지 않으나 원고의 공적 지위, 표현의 객관적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3.자 판결 (2003가합6645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사가 2003년 7월 28일자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 제하의 사설 및 8월 1일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 제하의 기사 등 총 7건의 기사에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연간 휴가·휴일일수가 165-177일이며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고 있고 이러한 고임금 구조가 자동차 가격 상승, 협력업체 납품가 하락 및 도산, 국제 경쟁력 하락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이 아닌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보도내용 중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165일 또는 177일간의 휴가를 누리면서 연봉을 5,000만원 이상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가 기사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사용가능한 모든 휴가일수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을 부정확하게 과장하여 보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어떤 근로자가 1년에 165일 또는 177일을 휴무하면서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 취지대로 근로대가에 상응하는 충분한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히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시간당 고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또한, 재판부는 “휴일수와 시간당 임금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적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원들이 휴가일수의 축소 없는 주 40시간 근로제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현대자동

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다른 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그러한 비판의견은 적시된 사실에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뿐으로서 원고 조합의 규모, 그 사회·경제적 영향력, 원고 조합 자신도 조합원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쟁의의 방향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중요한 공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 조합으로서도 그 정도의 비판은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그 부분 기사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투쟁방향과 관련된 기사 부분과 과거의 임금수준에 관한 기사 부분, 주5일제 실시에 관련된 기사 부분, 임금인상에 관련된 기사 부분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다소 부정확하게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소 불공정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견이 원고에 대한 모욕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3가합66450 손해배상(기)
원 고 : 현대자동차주식회사노동조합
 울산 북구 양정동 700
 대표자 위원장 이 헌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동 우, 고 재 환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변 론 종 결 : 2004. 9. 22.

판 결 선 고 : 2004. 11. 3.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강제1호증의 1 내지 7, 강제7호증의 1 내지 5, 강제8호증의 1, 2, 강제9, 12호증, 을제1호증의 1, 2, 4, 을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다음부터 ‘현대자동차’라 한다)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약 39,000명의 조합원과 90명 정도의 전임자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나.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1)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2년도 단체협약이 2003. 3. 31.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양측 사이에 2003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원고는 2003.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조정이 조정기간인 10일이 지나도록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2003. 6. 24.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4.8%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은 다음 2003. 6. 25.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원고가 약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부분파업을 실시하였으나 2003년 7월말까지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여름휴가마저 겹쳐 업무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03. 7. 30.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도 며칠간 부분파업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2003. 8. 5.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가 최종적인 200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되었다.

(2) 합의 내용(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협약과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다)

(가) 임금에 관련된 내용

기본급을 98,000원 일괄인상하고 2003년 경영목표 성과금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금액을, 2003년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 상당금액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으로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나) 근로시간에 관련된 내용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3. 9. 1.부로 시행하되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개정 즉시 시행한다.

(다) 경영참여에 관련된 내용

회사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중인 정

규인력의 정년을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으며,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거나 판매가 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고, 외주처리·하도급 및 용역전환으로 인한 축소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며,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시장에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다. 피고의 보도 내용

(1) 피고는 원고의 쟁의행위가 계속 중이던 2003. 7. 28. 조선일보 사설에 “현대차노조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논설(다음부터 ‘제1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부분파업이 5주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중략) 현대차 노조는 해외 투자에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사용차측에 요구하고 있다. 생산공장을 국외로 옮길 경우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경영권에 간섭하는 투쟁에 나서면 나설수록 기업은 밖에서 활로를 찾게 된다. 노조의 비합법투쟁은 결국 일자리를 제 손으로 없애는 ‘자해행위’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중략) 평균임금이 5,400만원(14년 근속 생산직)인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 기업문턱이 닳도록 직장을 찾아헤매는 젊은 실업자들의 새 일자리를 가로채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차 노조는 노조 전임자 숫자만 100명에 달한다. 이 사람들은 회사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조 일만 하면서 봉급을 타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런 노조가 임금협상은 뒤로 미뤄놓고 주5일제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공장 망한 뒤 월급 오르면 무엇하냐”는 소속 노조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쟁업체인 일본 도요타의 노조는 지난해에 창사후 최대라는 14조원의 경상이익을 올렸는데도 회사측과 기본급 동결에 합의했다. (중략) 회사가 생존해야 고용도 있는 것이라는 너무도 뻔한 이치를 도요타 노조는 알고 있고, 현대차 노조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2) 피고는 다시 2003. 8. 1. 조선일보 사설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논설(다음부터 ‘제2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전략) 그 동안에도 협력업체들은 현대차 노조가 극렬투쟁을 벌일 때마다 그 대가를 대신 치러왔다. 현대차 생산직 직원의 평균연봉은 5,400만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협력업체들은 현대차가 고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매년 5-10%씩 납품가를 내려야 하는 희생

을 강요당해 왔다. 결국 현대차 노조원 3만 8,000명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는 20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자신들의 배부른 투정이 바로 이들 20만명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후략)」

(3) 피고는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위와 같은 잠정합의가 성립되자, 2003. 8. 7. 조선일보 1면에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훨씬 추월/ 남 165일·여 177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다음부터 ‘제3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득권을 저하하지 않고 주5일 근무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현대차 근로자들의 연평균 휴일·휴가일수가 1년의 절반에 육박하는 남자 165일, 여자 177일(울산 공장 노조원 기준)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 근로자들의 휴일·휴가일수 165~177일은 토·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17일, 월차 휴가 12일, 연차 휴가 평균 21일, 신정·추석·하기 휴가 등 약정 휴가 11일을 합한 것이며 여기에 여직원은 월 1일씩 연간 12일의 생리휴가가 추가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실제로 직원들의 휴일·휴가일수는 남자가 170일, 여자가 182일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70~182일은 토·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7일, 월차 휴가 12일, 연차휴가 평균 21일, 약정 휴가 11일에 평균 경조 휴가, 조합원 교육시간, 임단협 타결시 찬반투표, 대의원선거 등에 따른 비근로일수 5일을 더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휴일·휴가일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연월차 휴가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휴일·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중략)”이라고 말했다」

(4) 피고는 같은 날 조선일보 4면에도 “현대차 1인 연 1,000만원 올라, 평균연봉 5,000만원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해설 기사(다음부터 ‘제4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타결로 현대차 직원들은 올해 1인당 평균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중략) 올해 1인당 평균연봉 증가액이 약 1,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9만 8,000원 인상, ▲성과급 200%(통상임금 기준),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통상임금 기준)+현금 1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측이 밝힌 근로자의 평균 통상임금(약 200만원)을 기준으로 올해 임금상승분을 계산할 경우 우선 기본급이 연간 120만원(9만 8,000원×12개월) 정도 오른다. 여기에 성과급 40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200%)을 더하고,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30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100%와 현금 100만원)을 합하면 82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다음달부

터 '임금 삭감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현재 주 42시간 근무가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 특근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올해 1인당 평균연봉 증가액은 약 1,0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현대차의 일반직·생산직·영업직 등 전체 직원 평균연봉은 4,600만원 수준이다. (후략)」

(5) 피고는 다음날인 2003. 8. 8. 조선일보 26면 만물상 코너에서 다음과 같은 박스 기사(다음부터 '제5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세계에서 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다. 1940년대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 프랑스에선 근로시간이 주 35시간까지로 줄었다. 그래서 근로자의 연간 휴일은 145일에 이르고 신년 휴가 같은 약정 휴가를 더하면 150일을 훌쩍 넘긴다. 프랑스 사람들이 '(도시가) 텅 빈다'는 뜻의 '바캉스'를 한꺼번에 5주씩 즐기는 것도 그 덕분이다. (중략) 프랑스가 지닌 세계 최다 휴일기록이 엇그제 한국 울산에서 깨졌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주5일 근무에 합의하면서 1년에 남자근로자는 165일, 여자는 177일까지 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충분히 늘면서 충분히 월급을 받는 지상천국을 우리 근로자라고 누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 반응은 '부럽다'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경영 여력이 넘치면 차 값부터 내려라"는 야유가 인터넷에 쏟아진다 (후략)」

(6) 피고는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에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논설(다음부터 '제6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전략) 현대자동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노사협상 결과 현대차 직원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65-177일로 늘어났다. 쉽게 말해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다. 평균연봉도 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렇고도 시시각각 흥망성쇠가 판가름나는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그건 턱없는 욕심이고 순진한 기대다. 국민들은 현대차 노사가 차려놓은 이런 흥청망청 질편한 잔칫상이 소비자들과 하도급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략) 현대차 노조의 성공에 한껏 고무돼 있는 노동계는 여세를 몰아 현대차 수준의 주5일제 도입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기업들이 노동계의 공격에 줄줄이 무릎을 꿇는 순간 이 나라 경제는 바닥없는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다 (후략)」

(7) 피고는 계속하여 2003. 8. 9. 조선일보 27면 오피니언면에 이○ 산업부장이 쓴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의견 기사(다음부터 '제7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철밥통이 따로 없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얘기가 아니다. 사측의 파격적인 양보로 입단

협을 끝낸 현대자동차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연간 170-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 게다가 정규직은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구조조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날 일도 없어졌다. 노조의 동의없이는 단 한 명도 해고할 수 없고, 해외 공장 이전을 이유로 국내 공장을 폐쇄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신기술·신차종 개발도 노조에 사전 통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중략) 현대차의 올 임단협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 회사가 뽑은 견적서에 따르면 (중략) 대략 7,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략)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도 현대차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회사측은 “비용상승 요인을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 흡수하겠다”고 말한다. (중략) 결국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은 불가능한 셈이다. 그렇다면 다른 돌파구는 뻔하다. 자동차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부품 납품가격을 깎아 협력업체에 돌리는 것이다. 현대차가 예전부터 즐겨 써온 방법이다. (후략)」

2. 판 단

가. 판단의 기준·범위

(1)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그 의견이 전제된 사실로부터 유리되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그 전제된 사실에 대한 공익성 또는 진실성 판단과 별도로 그 의견자체의 당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견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널리 보장되어야 하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언론사는 일반인과 달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매체를 소유하고 있어 독자들의 의견형성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의견을 표현하는 기사나 논설 등을 게재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성할 책무가 있고, 특히 현대민주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사이에서 의견의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언론사의 고유한 편집방향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기 앞서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리거나 그러한 의견을 가진 측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태도라

고 볼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언론의 책무는 도의적인 것으로서 법적으로 강제할 성격의 것은 아니며 언론사의 의견표명이 위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이르러 독자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독자들에게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여기에서 독자들의 평가대상은 그 의견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알리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즉 공정한 태도로 보도를 한 것인지 여부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제 1 내지 7의 각 기사는 원고의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을 목표로 한 부분 파업이 막바지에 이른 2003. 7. 28.부터 2003. 8. 5.자로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합의가 타결된 직후인 2003. 8. 9.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게재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장노조인 원고의 활동의 당부를 평가하고 그 활동이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그 내용을 단체협약 타결 전의 기사(제1, 2 각 기사)와 그 후의 기사(제3 내지 7의 각 기사)로 나누어 각 기사의 내용별로 그 전제된 사실이 명예훼손적인 것인지 여부, 그러한 경우 그 적시된 사실에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피고의 의견이 원고에 대하여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단체협약 타결 전의 기사

피고는 그 각 기사에서 원고의 투쟁 방향이나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임금 수준 등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원고의 투쟁방향에 관한 부분

(가) 피고는 제1 기사에서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투자시에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하라는 요구를 내세우며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은 비합법적일 뿐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일자리를 없애는 '자해행위'라고 평가한 데 이어, 원고의 전임자 숫자가 100명에 달한다면 '그런 노조가 임금협상보다도 주5일제나 비정규직 같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부분은 논설 형식의 의견기사로서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해외투자에 관한 동의권 행사요구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정의행위의 허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해외에 투자할 때마다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해외투자가 위축되어 수익창출과 고용의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가 조합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존재해야 할 원고가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의 비대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정작 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집착하는 등 노조 본연의 존재의의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은 그 자체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고, 위와 같은 의견 표명이 원고를 지나치게 모멸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기사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노동조합에 헌법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부여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구조적 요소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가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의 재산을 다소간 제약하거나 경제성장과 충돌하더라도 그것은 근로3권의 본질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한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사용자 대표와 동수의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일정한 경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의·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사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근로만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는바, 원고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그 수단도 폭력이나 파괴를 동원하지 않은 부분파업이어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는데도, 위 기사에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거나 원고의 요구조건이 단체협약사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원고의 쟁의행위를 ‘비합법적’이라고 표현하였고, 원고 전임자 수의 과다여부는 전체 조합원수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도 단순히 100명에 이른다고 함으로써(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는 90명 정도이나 이를 100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소한 과장에 불과하다) 원고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투쟁을 일삼는 자기목적적인 조직인 것처럼 비추어지게 한 데서 나아가, 원고가 근로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개선과 같은 사안 또는 일정 범위의 경영에 관련된 사안에 관여하는 것은 그 목적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임에도 원고가 목적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위와 같은 노사관계의 당위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현실의 경제상황이나 경제성장의 논리만을 강조한 불공정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다만 원고의 '경영권에 간섭하는 행동'의 예로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투자시에 원고와 협의하는 절차 등이 아닌 원고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 것을 들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러한 동의권의 부여가 기업주가 갖고 있는 경영사항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영참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피고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2) 과거의 임금수준에 관한 부분

(가) 피고는 제1, 2의 각 기사에서, 현대자동차 직원이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전부터도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14년 근속 생산직원의 평균임금이 5,400만원(제2 기사에서는 '전체직원'의 평균임금을 5,400만원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제1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부정확한 표현으로 보인다)이라는 예를 들고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납품가를 5~10%씩 내리도록 함으로써 보전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이에 대하여 고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통해 더 높은 임금을 쟁취하는 것을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하면서 이는 실업자들의 새 일자리를 가로채는 행위라거나 그로써 고임금을 쟁취하는 대가를 그 조합원들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나) 그런데 강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년 2월 당시 현대자동차의 평균 근속연수 14.1년인 생산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임금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월할상여금을 합한 금액은 월 2,250,786원이었고, 여기에 법정 변동수당인 평일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근로수당, 기타 변동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합한 금액(원고는 그 수당을 얻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추가근로시간이 평균 월 157.1시간이라고 하고 있다)은 월 3,346,62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전체 직원의 평균 급여는 변동수당을 제외한 경우 2,405,282원, 그 금액을 합산한 경우 월 3,224,394원이다), 그 월 평균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결국 14년 근속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은 약 4,000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기사에서 그 연봉이 5,400만원을 초과한다고 적시한 부분은 부정확한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강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를 이원화하여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협력업체들 스스로 납품가를 낮추게 하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것이 기사의 내용대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로 증가된 비용을 다시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는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로 적시된 사실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기사 부분 역시 논설 형태의 기사로서,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원고 조합원들이 이미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쟁취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임금을 고루 나눠가져야 할 근로자들 중 일부를 실업자 상태로 남아있게 할 뿐 아니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취지로 비난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피고의 의견이 원고에 대한 모욕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을 어떤 비율로 생산에 참여한 요소들에 분배할 것인지는 전반적인 금리, 부동산·생산설비나 원재료의 가격 및 임금수준과 업계의 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한 부분의 생산요소에 돌아갈 몫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생산요소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거나 생산제품의 가격을 높여 매출이익을 증가시키므로써 그 증가하는 몫을 보전하게 될 것인데, 이 사건에서처럼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임금인상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예컨대 자본에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제품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함에 따라 협력업체나 소비자가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하여 위 기사는 그 책임을 주로 임금인상을 요구한 원고 탓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다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단체협약 타결 후의 기사

피고는 그 각 기사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임금인상, 고용보장 등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내용과 그로 인하여 파급될 효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주5일제 실시에 관련된 부분

피고는 제3, 5의 각 기사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가일수증가에 관하여, '원고

와 현대자동차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직원들의 연평균 휴일·휴가일수가 남자 165일, 여자 177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휴가일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그 설명에 따르면 휴가일수는 토·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17일, 월차 휴가 12일, 연차 휴가 평균 21일, 신정·추석·하기 휴가 등 약정 휴가 11일을 합산한 것(여직원은 월 1일씩 연간 12일의 생리휴가를 추가 합산)으로서 일단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잘못이 있으나 그와 같은 잘못은 사소한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휴가일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2) 임금인상에 관련된 부분

(가) 피고는 제4 기사에서 임금인상에 관하여, '현대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로 직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 증가액이 약 1,0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가액수인 1,000만원의 내역을 기본급 연간 약 120만원(98,000원×12개월), 성과급 40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200%),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30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100%와 현금 100만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증가되는 휴일의 근무에 따른 특근수당 약 180만원으로 설명하고 있다(같은 기사 말미에서는 지난해 현대차의 일반직·생산직·영업직 등 전체 직원 평균연봉이 4,600만원 수준이라고도 보도하고 있어 단체협약 타결 이전의 보도에서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이 5,400만원이라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 그런데 강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년도 단체협약 체결시에 이미 성과급 200%와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15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로 상승된 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임금상승분을 부정확하게 과장하여 보도한 것에 해당하고(다만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직원의 평균 급여는 제수당을 합산한 경우 월 3,224,394원으로서 연봉으로 환산하면 38,692,728원이므로 평균 연봉이 4,600만원이라고 표현한 것도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제 연봉이나 연봉상승액을 부풀려 보도하는 것 역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휴가일수 증가와 임금인상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부분

(가) 한편 피고는 제6, 7의 각 기사에서는 휴가일수 증가와 임금인상에 관하여,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65~177일로 늘어났고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넘

어섰다' 라고 함께 언급하고 이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의 협상을 '질편한 잔칫상'에 비유하면서 이는 소비자들과 하도급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한편, 노동계가 그 전철을 밟아 주5일제 도입을 밀어붙이게 되면 이 나라 경제는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 직원이 연간 170~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 데다가 게다가 정규직은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라고 정년보장에 관하여까지 함께 언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고용을 보장받고 있다는 뜻에서 그들의 지위를 '철밥통'으로 비유하고,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이 누리는 고임금과 많은 휴일로 인한 비용증가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자동차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부품 납품가격을 깎아 협력업체에 돌리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마지막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현대자동차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기사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다).

(나)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165일 또는 177일간의 휴가를 누리면서 동시에 연봉을 5,000만원 이상 받는다는 위 기사 내용에서 추론되는 단위 근로시간당 임금은 공장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으로서는 비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증인 장○○의 증언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생산직 사원들이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중 실제로 휴무를 하는 일수는 평균 60일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수는 근무를 함으로써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에 의하더라도 임금인상 전에 변동수당, 즉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평균 급여는 월 2,405,282원으로서 연봉으로 환산하면 28,863,384원에 불과하고, 임금인상분을 포함하더라도 피고가 기사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사용가능한 모든 휴가일수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을 부정확하게 과장하여 보도한 것에 해당한다(피고는 위 기사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일수를 보도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사용가능한 휴일수를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기사에서 휴일수와 연봉액을 병렬적으로 거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다른 부분에도 기사에 언급된 휴일수를 제도적인 휴일수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여 주는 단서나 표현이 없으며, 피고의 다른 기사에서 나타난 보도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가 휴일수와 연봉액을 병치시킴으로써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소지가 없지 않다). 다만 정년이 58세까지 보장된다고 표현한 부분은 2003년도 단체협약 내용 중 현대자동차가 해외 현지공장을 설립하거나 외국회사와 합작할 때에도 현재 재직 중인 정규인력의 정년을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희망

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은 잘못된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러나 어떤 근로자가 1년에 165일 또는 177일을 휴무하면서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 취지대로 근로대가에 상응하는 충분한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히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시간당 고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다만 휴일수와 시간당 임금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적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원들이 휴가일수의 축소 없는 주 40시간 근로제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다른 업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그러한 비판의견은 적시된 사실에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뿐으로서 원고 조합의 규모, 그 사회·경제적 영향력, 원고 조합 자신도 조합원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쟁의의 방향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중요한 공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 조합으로서도 그 정도의 비판은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그 부분 기사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이와 같이 사실적시가 비난의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적시된 사실의 객관적인 의미가 표현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명예훼손적인 의미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표현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은 그에 내포된 의견의 작용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연해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각 기사 중 일부에 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고가 표명한 의견이 그 비판의 당부를 떠나 다소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

공영방송 KBS의 공적지위에 비추어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탄핵방송과 관련하여 편파논란이 계속되어 온 점, 이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사는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0.자 판결 (2004가합33303)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004년 11월 10일 한국방송공사가 동아일보사 및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가 동아일보 지난 2004년 3월 23일자 1면에 『탄핵방송 특정 정파에 유리 공정 못 지켜 편파시비 표적』이라는 큰 제목 아래 『KBS 내일 긴급이사회』라는 소재목으로 “KBS가 탄핵관련 편파논란에 대한 대책논의를 위해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고 보도하자 “2004년 3월 24일에는 KBS 이사 간담회만 개최되었을 뿐이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원고가 공영방송으로서 갖는 공적지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은 쉽게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KBS의 탄핵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한나라당·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편파적인 보도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항의 방문하여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고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편파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KBS 이사 전원에게 통지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또 이사 9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그 간담회에서 ‘탄핵관련 KBS 방송의 편파 시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그 결과 ‘KBS 이사회는 최근 탄핵 관련 KBS 방송 내용에 대한 편파 시비 논란과 정치권의 항의 방문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KBS가 공정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간담회 개최 5일 전에 이미 간담회 개최가 예정되어 이사 전원에게 통보되었고 KBS 이사회 규정에 따른 KBS 이사회가 정식으로 소집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그 이사회에 KBS의 제작 및 편성 책임자들을 출석시켜 KBS의 탄핵관련 프

로그래머들의 제작 및 보도경위를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긴급 이사회', '이사 간담회'의 용어 차이나 5명의 이사의 발의 여부, 제작 및 편성책임자들의 출석 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고 할 수 있어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33303 손해배상(기)

원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창 우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 재 호, 김 학 준

2. 이 ○ ○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일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이 병 삼

변 론 종 결 : 2004. 10. 27.

판 결 선 고 : 2004. 11. 10.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동아일보' 2면 중 광고란을 제외한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0급 명조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10급 명조활자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내지 3호증, 강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 을제5·6호증의 각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KBS 1, 2 TV와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일간지인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며, 피고 이○○은 피고 동아일보사 문화부 소속 기자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기사 보도

피고 이○○은 2004. 3. 23.자 '동아일보' 1면에 "탄핵방송 특정 정파에 유리 公正 못 지켜 편파시비 표적"이라는 큰 제목 아래, "KBS 내일 긴급이사회"라는 작은 제목으로 「KBS 이사회(이사장 이종수)는 KBS 1 TV의 탄핵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이 편파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KBS의 탄핵방송이 특정 정파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제작돼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편파 시비의 표적이 됐다"며 "정기이사회 열리는 31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중대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24일 오후 KBS의 제작 및 편성 책임자들을 출석시켜 편파 시비를 불러온 프로그램들의 제작 및 보도경위를 듣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KBS는 지난 해 9월 '한국사회를 말한다'가 재독학자 송두울씨에 대한 미화 논란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최근 '인물현대사'의 진행자 문성근씨가 돌연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으나 이와 관련해 긴급이사회를 소집한 경우는 없었다. (이하 생략)」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 보도 전·후의 정황

(1) 이 사건 기사 보도 전인 2004. 3. 12.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9명이 발의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KBS 등 방송 3사는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탄핵소추의결로 인한 헌정중단이 각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집중보도하면서 국정혼란 등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보도하기도 하였는데, 그러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각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KBS 등의 보도 태도를 문제삼아 원고 등을 항의방문하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찬·반 의견을 균형 있게 방송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부 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2) 그러한 상황에서 2004. 3. 24. KBS 이사회 소속 이사 11명 중 9명과 원고의 부사장 및 정책기획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 간담회가 열려(2004. 3. 19. 소속 이사들에게 E-mail로 통지되었다) '탄핵관련 KBS 방송의 편파 시비'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KBS 이사회는 이사 간담회 결과에 대해 'KBS 이사회 간담회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KBS 이사회는 최근 탄핵 관련 KBS 방송 내용에 대한 편파 시비 논란과 정치권의 항의 방문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KBS가 공정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했다'는 내용의 KBS 이사회 명의로 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3) 한편, 피고 이○○은 이 사건 기사 보도 후 2004. 3. 24.자와 2004. 3. 25.자 '동아일보'에 KBS 이사회가 2004. 3. 24. 편파 논란을 빚고 있는 KBS 1 TV의 탄핵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당초 그 소속 이사 5명이 요청한 내용과 달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의 후속보도를 하였고, 2004. 3. 27. 방영된 KBS 1 TV의 '미디어포커스'라는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이사회가 간담회로 축소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04. 3. 24. KBS 이사 간담회만 개최되었을 뿐이고 그 간담회에서 탄핵관련 방송의 제작 및 편성책임자들을 출석시켜 편파 시비를 불러온 프로그램들의 제작 및 보도 경위를 듣도록 예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를 통하여 2004. 3. 24. 긴급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그 이사회 개최 동기나 목적이 KBS의 탄핵관련 편파 방송의 시비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날 탄핵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책임자들을 출석시켜 그 제작 및 보도 경위를 들을 예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탄핵관련 프로그램들이 편파논란을 빚고 있어 이사회 관계자가 원고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동아일보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의 기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신문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인이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① KBS 1 TV의 탄핵관련 프로그램들이 편파 논란을 빚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프로그램들을 제작·방송하였다는 인상을 준 다음, ② KBS 이사회는 그와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2004. 3. 31. 직전인 2004. 3. 24. 긴급 이사회를 열고, 그 이사회에 KBS의 제작 및 편성 책임자들을 출석시켜 그 프로그램들의 제작 및 보도경위를 들을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KBS의 탄핵관련 프로그램들의 편파 논란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결국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적책임을 부담하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기사는 공영방송인 원고의 보도의 편파성 문제에 대한 기사로 공익성이 있으며, KBS 이사들이 간담회를 열어 KBS TV의 탄핵관련 프로그램들의 편파 논란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이상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언론매체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공영방송으로서 갖는 공적지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은 쉽게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KBS의 탄핵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한나라당·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편파적인 보도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항의방문하여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고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편파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4. 3. 24. KBS 이사 전원에게 통지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또 이사 9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그 간담회에서 ‘탄핵관련 KBS 방송의 편파 시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그 결과 ‘KBS 이사회는 최근 탄핵 관련 KBS 방송 내용에 대한 편파 시비 논란과 정치권의 항의 방문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KBS가 공정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까지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간담회 개최 5일 전에 이미 간담회 개최가 예정되어 이사 전원에게 통보되었고 KBS 이사회 규정에 따른 KBS 이사회가 정식으로 소집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그 이사회에 KBS의 제작 및 편성 책임자들(제작본부장이나 편성본부장 등)을 출석시켜 KBS의 탄핵관련 프로그램들의 제작 및 보도경위를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긴급 이사회’, ‘이 사 간담회’의 용어 차이나 5명의 이사의 발의 여부, 제작 및 편성책임자들의 출석 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고 할 수 있어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 지〉 정정보도문

본지 2004. 3. 23.자에 게재된 “탄핵방송 특정 정파에 유리 公正 못 지켜 편파 시비 표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KBS 이사회(이사장 이종수)는 KBS 1 TV의 탄핵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이 편파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

기로 했다고 전제한 후 KBS 이사회 관계자는 'KBS의 탄핵방송이 특정 정파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제작돼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편파 시비의 표적이 됐다'며 '정기이사회 열리는 31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중대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보도하고, 이사회는 24일 오후 KBS의 제작 및 편성 책임자들을 출석시켜 편파 시비를 불러온 프로그램들의 제작 및 보도경위를 듣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보도한 부분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동아일보는 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위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공익을 위한 보도로서 방송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1. 19.자 판결 (2004가단2254)

사실개요

서울지방법남부지방법원 민사2단독(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은 2004년 11월 19일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김○○ 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최재원의 양심추적’은 원고의 모습이 화면에 전혀 나오지 않았거나,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으며, 음성은 변조되지는 않았으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상태가 목소리가 선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름이나 사회명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위 방송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위 방송의 대상이 원고라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되지 않는다. 또 「추적 60분」의

경우 2001년경 당시 심각한 지방세 체납실태가 국내 언론의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고 담세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고의적·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무에 대한 국민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에 대하여 고의적인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획, 제작되었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방송내용은 대부분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보도는 비록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한국방송공사가 2001년 6월 24일 「추적 60분」 프로그램의 ‘수십 억 부자, 그러나 세금 낼 돈은 없다 - 고액체납자들에 관한 보고서’ 제하의 방송과 「좋은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의 ‘최재원의 양심추적-고액체납과의 전쟁’에서 원고를 악덕체납자로 방송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단 2254 위자료

원 고 : 김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오 세 창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오 수

변 론 종 결 : 2004. 8. 27.

판 결 선 고 : 2004. 11. 19.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 1억 원을 지급하고, (2) 이 사건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케이비에스(KBS) 제2텔레비전의 좋은나라 운동본부(서울시 38세 금기동팀) 최초의 방영시간에 “본 방송국에서 2003. 11. 23.자 고액의 악덕채납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부과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동인이 그의 소유재산 등을 도피시켰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확인결과 위 보도내용과는 상이하므로 위 방송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는 판결.

이 유 :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지방세 체납

(1) 원고는 2000. 10.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위 성북구청장이 1999. 6. 경 부과·고지한 부동산취득세 12,426,250원을 비롯하여 2000. 9.경부터 부과·고지한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10건의 지방세 합계 40,852,91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2001. 2. 17.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그 후에도 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1. 6.경에는 합계 44,327,470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었고, 2003. 11.경에는 1999. 6.경부터 2003. 10.경까지 사이에 위 성북구청장이 부과·고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등 15건의 지방세 합계 61,234,850원이 체납되었다.

나. 원고의 재산관계

(1) 원고는 1973년경부터 섬유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주식회사에서 ○○물산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 경영하여 왔고, 1987년에는 수출진흥에 진력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여 받은 바 있다.

위 ○○의 대표이사는 설립 후 줄곧 원고이었는데 1997. 11. 1. 원고의 아들인 김○○으로 변경되고 2001. 2. 20. 원고의 처인 최○○으로 다시 변경되었으나, 실제 경영은 원고가 회장직에 있으면서 계속하여 왔다.

(2) 원고는 시가가 약 12억 원(2002. 9.경 현재) 상당되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 695㎡ 지상의 2층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 대지와 주택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1998. 9. 16. 증여를 원인으로 그의 처인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증여세가 많이 나오자 1998. 12. 9.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였고, 1999. 5. 6. 다시 최○○의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가 국세 2억 여 원을 체납하자 대한민국이 최○○을 상대로 위 대지와 주택에 관하여 1999. 5. 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데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10. 서울고등법원 2002나64867호로 “최○○과 원고 사이의 1999. 5. 6. 위 대지와 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260,060,990원(2003. 6. 20. 현재 원고의 국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최○○은 대한민국에게 260,060,9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한민국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최○○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1999년경 그가 소유하던 위 ○○의 주식 17,440주를 그의 처와 자녀들에게 전부 양도하였고, 위 ○○은 1999년에 160,635,000원의 당기순이익을, 2000년에 107,318,000원의 당기순이익을 각 얻었다.

(4)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03. 6. 23.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최○○에게 양도하였다.

(5) 위 대지와 주택의 증여 이후 원고의 소유 명의로 된 재산은, 전항 기재 근저당권을 제외하면 위 증여 당시 공시지가 480만 원 상당인 위 성북동 ○○-○○임야 15㎡와 공시지가 36,754,000원 상당인 같은 동 ○○-○○대지 46㎡ 뿐이다.

(6) 원고는 위 주택의 1층을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놓았다.

다. 원고에 대한 방송보도

(1) 피고는 2001. 6. 24. 케이비에스(KBS) 제2텔레비전의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수십 억 부자, 그러나 세금 낼 돈은 없다”라는 제목(부제 : “고액 체납자들에 관한 보고서”)으로 원고의 세금체납사실에 대하여 약 10분간 방송하였다.

‘추적 60분’은 피고의 대표적 사회고발 프로그램이다. 2001년경 당시 심각한 지방세 체납 실태가 국내 언론의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고 담세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일어났으며,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자 중에 국회의원, 기업인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추적 60분’ 제작팀은 이러한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납세 의무에 대한 국민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에 대하여 고의적인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2001. 6. 24.자 방송을 기획, 제작하였다. 위 제작팀

은 고액채납자 명단을 입수하여 고의성과 상습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을 취재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그들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판단된 세 사람에게 대한 세금체납사실을 방송하였는데, 그 중에 원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 또한 피고는 케이비에스(KBS) 제2텔레비전의 ‘좋은나라 운동본부’라는 프로그램의 ‘최재원의 양심추적’(부제:“고액 체납과의 전쟁”) 코너에서 2002. 8. 2. 과 2003. 6. 6. 및 2003. 11. 23. 총 3회에 걸쳐 원고의 고액의 지방세체납사실에 대하여 방송하였다.

‘좋은나라 운동본부’는 “기본이 바로 선 사회”,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 “살맛 나는 사회”를 이루고 세계 속의 한국, 세계적인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한국인의 의식 중 바꾸고 고쳐야 할 점, 시민생활운동으로 바로 세워야 할 점 등을 알아보고 선진국민이 되기 위한 국민적 아젠다(agenda)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된 교양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송은이의 결정! 최고의 제안’, ‘최재원의 양심추적’, ‘아이를 찾습니다, 박준형의 182’의 3개의 코너(2003. 11. 23. 현재, ‘최재원의 양심추적’을 제외한 나머지 코너는 그 제목과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최재원의 양심추적’(그 중에서도 “고액 체납과의 전쟁”의 부제가 붙은 것, 이하 ‘최재원의 양심추적’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와 서울시가 함께 기획하여 방송한 것으로서 그 동안 세금을 장기간 체납해도 속수무책이었던 우리사회의 탈세관행을 방송을 통해 집중 부각시켜 탈세방지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1. 10. 1.부터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본세 500만 원 이상의 시(市)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고액 체납시세 징수전담조직인 “38세금기동팀”을 구성하여 직접 징수하여 왔는데, ‘최재원의 양심추적’은 “38세금기동팀”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피고와 프로그램제작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 또는 ○○프로덕션(대표이○○)의 제작진과 최재원 등이 동행하여 취재한 것을 방송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재원의 양심추적’이 방송된 후 체납된 세금의 추징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자 2003. 10.경 피고의 ‘좋은나라 운동본부’ 제작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고, 2004. 2. 2. ‘서울시의 “38세금기동팀”의 체납징수 활약상을 심층 보도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정착시키는 등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제2회 서울정책인대상을 수여하였다.

라. 방송보도의 구체적 내용

(1) 2001. 6. 24.자 ‘추적 60분’(이하 ‘추적 60분’이라고만 한다) 방송 중 원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프로듀서가 “최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체납액이 지나치게 증가해 재정이 어렵다. 그 중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부자 동네의 체납비율이 가장 높다.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부자들 그들의 생활을 밀착 취재하였다”라고 해설한 다음, 서울 성북구청의 모습이 보이며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해”라는 음성변조가 안된 원고(방송에서는 김씨라고 익명 보도하였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어서 구청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원고의 뒷모습이 보이며, 프로듀서가 “이 사람이 그 동안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구청직원들에게 유명해진 체납자 김씨”라고 해설한다.

② 계속해서 취재진이 성북구청 체납관리반에 들어가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며, 프로듀서가 “구청직원들이 김씨의 체납세를 받아내기 위하여 수차례 집을 찾았으나 아예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피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결국 구청은 김씨를 형사고발하였다”고 해설한다. 이어 구청직원이 김씨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이며,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너 국장하고 너 이놈의 새끼 이리와” 라는 원고의 목소리가 음성변조가 안된 상태로 들린다. 그 다음에는 원고의 지방세 체납 내역과 “총 체납액 44,327,470원, 약 4천 4백만 원 체납”이라는 자막이 보인다.

③ 이어서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상태로 고급주택들의 전경이 보인 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취재진이 부동산중개업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중개업자는 이 곳은 큰집이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하는 제일 고급주택단지라고 설명한다. 계속해서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상태로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의 차고와 대문, 담장과 주택 전경이 차례로 보이고, 인근주민의 모습이 보인다. 인근주민은 “이 집은 상당히 넓어서 땅이 약 350평 정도 되고, 유지비가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말한다.

④ 그 때 마침 차고에서 나오는 원고의 승용차의 모습(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이 보이며, 프로듀서가 “김씨 집에서 나온 차는 시가 5천만 원이 넘는 외제 승용차 캐딜락이고, 전용기사까지 달려 있다. 20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과 외제승용차 이것이 세금 4,400만 원을 못 내고 있는 김씨의 실제 생활이다.”라고 해설한다. 이어 위 주택의 명의를 원고의 처인 최씨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 소유자 명의를 가려진 채 보인다. 계속해서 원고의 승용차의 이동 모습과 취재진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원고의 명함이 클로즈업되어 보이는데 회사명과 원고의 성명의 일부는 가려져 있으나 아랫부분의 (株)○○ : 서울특별시 종로구 , TEL ○○○-○○○○-○”는 선명히 보인다.

⑤ 이어서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원고의 회사 사무실 내부와 함께 취재진이 여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여직원은 “이 회사의 회장이 김○○이고 매일 9시경 출근해서 하루종일 있다가 간다”고 말한다. 사무실 벽에 있는 “참된 사람, 모두 합심, 내 것처럼”이라는 사훈이 보이면서 프로듀서가 “김씨의 회사에는 ‘참된 사람’이라는 사훈이 걸려 있고 ○○○○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해설한다.

⑥ 그 다음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라는 자막과 함께 강화에 있는 원고의 공장 내부의 기계들 모습이 보인다. “(주)○○”라고 자막이 보인 후 프로듀서가 “김씨는 1973년 이 회사를 설립한 이후 줄곧 이 회사를 경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설한다. 공장 직원은 “저희 회장님이 공장 일을 전부 다 컨트롤한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법인등기부상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처인 최씨로 되어 있는 것이 자막으로 보이고, 프로듀서가 “지난 해 부인 최씨가 대표이사로 바뀌고 따라서 현재 공장은 최씨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설한다.

⑦ 다시 성북구청 사무실 내부가 보이며 프로듀서가 “세금징수를 위하여 구청이 찾아낸 김씨의 재산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자투리땅이 전부”라고 해설한다.

⑧ 이어서 취재진이 이 사건 주택으로 찾아가서 원고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원고의 목 위 부분을 제외한 전체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상태로 보이고, 원고는 음성변조가 안된 목소리로 “내가 탈세할 사람이 아니다. 기업을 한 40년 간 하면서 대통령포상도 받고 우수납세자로 선정도 받았다. 국세도 150억 원 정도 내었다”라고 말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원고는 현재 행정소송 중이어서 소송이 끝나면 낼 것이라고 한다.

⑨ 계속해서 취재진이 성북구청 사무실에서 구청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직원은 “김씨 명의로 된 소송은 없고 그의 처인 최씨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원고가 근린생활시설은 호화주택의 2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므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위 주택의 1층을 한의원으로 신고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놓은 사실을 프로듀서의 해설과 함께 취재진이 구청직원과의 대화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준다.

⑩ 그리고 “본인 명의로 안되어 있으니까 징세를 강제하는 방법이 없지요”라고 구청직원이 말하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방송이 끝난다.

(2) ‘최재원의 양심추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02. 7.경 최재원과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의 제작진들이 “38세금기동팀”을 동행하여 원고의 주택을 1차 방문하였으나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 원고를 만나지 못한 채 원

고의 외손녀로 보이는 어린이와 대문의 인터폰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002. 8. 2. 자 방송에서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방영되었다.

② 2003. 6. 6.자 방송은 ○○○프로덕션의 제작진이 최재원과 함께 “38세금기동팀”을 동행하여 취재한 내용이다. 처음에는 해설자가 “그동안 수차례 방문했던 체납자” 라고 말한 후 원고의 주택 앞에서 “38세금기동팀”의 한 조사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대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이고, 이어서 “못 연다. 한 놈만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라는 음성변조가 안된 상태의 원고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어서 해설자는 “그러나 체납자는 만남을 거부한 채 옥실만 퍼붓고... 1시간 동안 38팀과 대치상태. 체납자와 연락을 취해 봐도 대답이 없고, 정말 높은 담장만큼 비양심도 철옹성이군요”라고 해설한다. 드디어 대문이 열리고 “38세금기동팀”과 제작진, 최재원이 체납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과 체납자의 넓은 정원과 화려하게 꾸민 실내가 보이며, 해설자가 “체납자의 집은 넓은 정원과 화려한 경관이 돋보이는 대저택, 그리고 집안에는 으리으리한 실내장식까지 도무지 체납자의 집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설한다. 이어서 위 주택의 거실에서 원고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원고는 “에이!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은 질이 낮아. 내가 이명박 찾아가서 주지, 당신들은 안 취”라고 말한다. 이 방송에서는 원고의 얼굴 부분이 모자이크처리가 되었고, 원고의 음성은 변조가 안된 상태로 나오나 옥실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상태라 목소리가 선명하지 않으며, 위 주택의 대문과 차고, 실내 정원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③ 2003. 11. 초경 ○○○프로덕션의 제작진과 최재원이 “38세금기동팀”을 동행하여 다른 체납자인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이○○를 취재하다가 원고가 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3. 6. 23. 위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최○○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위 제작진과 최재원, “38세금기동팀”이 원고를 3차 방문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2003. 11. 23. 자 방송에서 방영하였다.

처음에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또 다른 체납자인 원고가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고 최근에 6억 원을 갚았다는 내용의 해설과 “38세금기동팀”의 한 조사관과 최재원의 대화가 나온 다음, 원고에 대한 2003. 6. 6.자 방송내용이 잠시 나온다. 이어서 “바로 이 분이 6억 원을 돌려받은 체납자이다.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해설한다. “정말로 돈이 없는 건 아닐까요” 라는 최재원의 말에 조사관은 “집도 상당히 고급주택이고 자녀들도 유명대학교 나와 잘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채권 6억 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지금 아마 돈이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한다. 원고의 주택을 찾아갔으나 원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고급외제 승용차를 타고 온 원고와 원고의 처를 위 주택

앞에서 만나는 모습이 보인다. 원고는 “38세금기동팀”을 보자 “에이 나쁜 놈”이라고 욕부 터 하였고, 조사관이 근거당설정해 놓은 것에 대하여 문자 원고는 “친구의 부탁으로 근거 당설정 시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6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다. 조사관이 “실제 채무관계가 없는 것이냐?”고 다시 문자 원고가 “큰돈은 아닌데, 몇 억 원 있었으나 그 돈을 이미 받아버렸다”고 대답한다. 이어서 원고는 “98년까지 한번도 세금을 연체해 본 적이 없는 성실한 기업주야. 내가 ○○협회 회장도 한 사람이야”라고 말한다. 조사관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말하자고 하자 “안 들어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나는 임마 지금까지 세금 120억 원 냈어, 이 개새끼들아” 라고 하며, 조사관이 “지금 6,000만 원 체납되었잖아요” 라고 하자 “이 개새끼야, 니 애비보고 내라고 해”라며 “38세금기동팀”에 대하여 폭력까지 행사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원고가 대문 안으로 들어 가버린 후 원고의 처와 조사관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온다. 조사관이 원고의 처에게 “아까 그 렉서스 승용차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문자 “우리 아들 차”라고 대답하는데, 그 때 원고가 대문 위에 “38세금기동팀”을 향해 호스로 물을 뿌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어서 해설자가 “정말 너무 한다. 올해로 고회를 맞은 체납자, 화려한 대저택과 고급 외제차를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양심은 잃어버렸군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끝맺는다.

이 방송에서 원고의 주택의 대문과 차고는 그대로 보였지만, 원고의 승용차 번호판과 원고의 얼굴부분은 전부 모자이크처리 하였고, 원고의 음성도 전부 변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 갑7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7, 갑13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4호증, 비디어 테이프검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위 ‘추적 60분’ 방송은 원고가 살고 있는 주택 전경을 촬영한 화면을 여러 차례 내보냈고, 원고의 명함의 일부만 어둡게 처리한 채 원고의 성과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클로즈업시킨 화면을 내보냈으며, 원고의 음성은 전혀 변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송하였고, 원고의 모습도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수차 내보냈으며, 원고의 공장이 강화에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공장내부시설을 그대로 방영하고, 더욱이 종로에 있는 원고의 회사 사무실 내부를 방영하면서 사훈을 부각하여 방송하였다. 그래서 원고나 원고의 회사를 알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송대상이 원고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위 ‘최재원의 양심추적’ 방송은 원고의 얼굴을 약간 흐리게 비추면서 ○○업체에 수십년 간 종사하고 나이가 70세라고 하여 방송대상이 원고임을 은연중에 알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위 두 방송은 시청자가 원고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악덕채납자 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영함으로써 원고 및 그 가족으로 하여금 모욕감과 수치심을 극도로 느끼게 하였을 뿐 아니라, 수십년 간 쌓아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위 방송들을 방영하기 위하여 3일간 원고의 주택 주변에 심부름센터 직원을 동원하여 대기 중인 자동차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한 후 원고 가족의 일상생활을 은밀하게 촬영하고 원고의 승용차를 미행하는 등으로 원고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③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와 사생활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 ‘좋은나라 운동본부’의 방영시간에 청구취지 (2)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1) 위 ‘추적 60분’ 방송에 대하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방송에서 원고의 이름이 익명으로 “김씨”로만 보도되었으나 원고의 음성이 변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되고 더욱이 원고의 명함의 “(주) ○○ : 서울 종로구, TEL : ○○○-○○○○-○” 부분이 선명히 보였으며, 원고의 회사 사무실의 내부와 사훈이 그대로 보이고, 강화에 있는 원고의 공장 내부가 보이면서 회사명이

“(주)○○”으로 자막에 나옴과 아울러 “1973년 설립된 ○○○○을 생산하는 회사” 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위 방송의 전체 내용을 볼 때 원고 또는 원고의 회사인 위 ○○과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방송에 나오는 “김씨”가 바로 위 ○○의 설립자이자 현재 회장인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방송의 제목이 “수십 억 부자, 그러나 세금 낼 돈은 없다”이고 그 내용이 “원고가 20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승용차에 전용기사까지 두고 있으며 위 ○○을 실제 경영하고 있으면서 위 주택의 소유명의로와 위 ○○의 대표이사를 그의 처 앞으로 이전해 놓고 지방세 약 4,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라는 것이므로 위 방송은 “원고가 수십 억 원의 재산을 가진 기업주로서 재산 전부를 처의 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의적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라는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추적 60분’ 방송보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된다.

(2) 위 ‘최재원의 양심추적’에 대하여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2. 8. 2. 자 방송에서는 원고의 모습이 화면에 전혀 나오지 않았고, 2003. 6. 6.자 방송에서는 원고의 얼굴부분이 모자이크처리가 되었으며 원고의 음성이 변조되지는 않았으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상대라 목소리가 선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택의 대문이나 차고와 정원, 실내의 모습은 부분적으로 그대로 보였으며, 2003. 11. 23.자 방송에서는 원고의 얼굴부분과 승용차의 번호판이 전부 모자이크처리가 되고 원고의 음성이 모두 변조되었으며, 원고의 이름이나 사회명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위 방송내용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주택의 대문이나 구조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원고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위 방송대상이 원고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위 방송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위 방송의 대상이 원고라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최재원의 양심추적’ 방송보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의 조각 여부

피고는 가사 위 ‘추적60분’ 방송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추적 60분'의 방송이 2001년경 당시 심각한 지방세 체납실태가 국내 언론의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고 담세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고의적·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무에 대한 국민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에 대하여 고의적인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획, 제작되었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2001. 6. 경 지방세 약 4,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그의 소유이던 10억여 원이 되는 주택과 대지를 그의 처인 최○○에게 증여하였다가 소송에서 사해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자신이 소유하던 위 ○○의 주식을 그의 처와 자녀들에게 전부 양도하고, 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1999. 6. 경 이후 지방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방송내용은 대부분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추적 60분'의 방송보도는 비록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생활침해의 성립 여부

위 '추적 60분' 방송의 제작진이 성북구청에 찾아가 원고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택을 찾아가 그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차고에서 나오는 원고의 승용차를 뒤따라간 사실, 종로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과 강화에 있는 원고의 공장을 찾아가 취재한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정도는 위법성이 없는 위 방송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3일간 원고의 주택 주변에 심부름센터 직원을 동원하여 대기 중인 자동차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원고 가족의 일상생활을 은밀하게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최재원의 양심추적'은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주택 등을 수색할 권한이 있는(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26조 제1항 참조) 서울시의 "38 세금기동

팀”을 동행하여 원고의 주택 앞에서 원고를 기다리다가 원고를 만나 원고의 주택 안에 들어갔으며 이를 취재한 것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 인 숙



신속 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취재원의 진술내용을 믿어 보도한 것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9.자 판결 (2003가합46616)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004년 12월 29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동아일보사와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가 동아일보 2003년 6월 14일자 1면 『“박지원 씨에 2억 줬다”』라는 제목과 『김○○ 씨 ‘관광협회장 임명에 도움 대가’ 진술』, 『검찰 월드컵 회장권 수사 ... 김씨 영장 청구』라는 중간제목의 기사에서 월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이 원고가 문화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 김○○ 관광협회중앙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김△△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 원고에 대한 그러한 의혹제기가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해 수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아 김△△의 진술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김△△가 원고에게 2억원을 건네주기 위해 돈을 마련해 주었다는 김○○에 대해서 따로 취재하지 않은 사정, 이 사건 기사의 가장 중요한 취재원인 김△△ 자신이 월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있었고, 김△△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 자체도 진술을 할수록 로비 대상이 점점 확대됨은 물론 그 일관성도 없어졌던 사정,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김○○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목과 본문 내용 등에서 김○○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한 사정, 당시는 대북송금사건에 원고가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원고가 월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일반 독자들이 쉽게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상황이었던 사정, 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김△△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사정 등 이 사건 기사의 취재경위, 취재원인 김△△의 진술내용 및 그 신빙성, 취재 당시 원고의 상황,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진술을 믿어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과 함께 원고가 김○○ 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3가합46616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지 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 주 원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 재 호

2. 이 ○ ○

3. 이 △ △

4. 이 □ □

피고들의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이 병 삼

변 론 종 결 : 2004. 12. 1.

판 결 선 고 : 2004. 12. 29.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8.부터 2004. 12. 29.까지는 연 5%의, 200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첫 번째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제2면 우측 상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억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 라고 한다)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동아일보 제1면 우측 상단에 가로 3단, 세로 16cm의 크기로 게재하라. 피고 동아일보사는 원고에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위 정정보도문 게재일까지 1일 1,000만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7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3. 2. 24.까지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 동아일보사는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며, 피고 이○○, 이△△, 이□□은 아래에서 보는 동아일보 2003. 6. 14.자 기사를 작성한 피고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들이다.

나. 동아일보 2003. 6. 14.자 기사

동아일보는 2003. 6. 14.자 1면 우측 상단에 “박지원씨에 2억 줬다”라는 제목과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에 도움 대가’ 진술”, “검찰 월드컵 회장권 수사 … 김씨 영장 청구”라는 중간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 회장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에 김○○ 관광협회중앙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박 장관이 2000년 5월경 초기 회장사업권자인 CPP코리아 회장이던 김씨에게서 “관광협회중앙회장으로 임명되는 데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CPP코리아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현금 2억원을 받았다는 관련자의 진술 및 정황을 확보했다. 김 회장이 당시 홍콩에서 열린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PATA)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박 장관에게 총회결과를 보고하러 가면서 김△△ 전 CPP코리아 대표(38)에게서 받은 2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13일 김 회장에 대해 CPP코리아 등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원이 박 전 장관에게 전달됐으며 다른 2억원이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권 전 고문은 최근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며 김○○씨를 관광협회중앙회장이 되도록 한 사람은 박지원씨”라고 말했다. 검찰은 월드컵 회장상품 생산업체인 G&B월드와 회장사업권자였던 코오롱TNS가 각각 월드컵 홍보관 사업권을 획득하고 CPP코리아로부터 회장사업권을 이전받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 및 진술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본보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장관측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기사 보도 전후의 언론보도 등

이 사건 기사 보도 전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회장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업체들이 2000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에 사업권 확보를 위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월드컵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 동아일보는 2003. 4. 28.자 동아일보에 “월드컵 회장권 수 십억 로비 ... 의원, 전 장관 등 20여 명 수사”라는 제목으로 “...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검찰이 포착해 27일 전면 수사에 나섰다. (중략) 검찰은 또 당시 DJ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모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정부 투자기관 고위 인사 등에게 거액이 전달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검찰은 조만간 CPP코리아와 코오롱TNS 관련 인사 등을 소환 조사해 정관계에 전달된 정확한 금품 액수와 로비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SBS는 2003. 5. 21. '8시 뉴스'에서 “검찰, 박지원씨 금품수수 진술 확보”라는 제목으로 “...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회장사업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중략) 검찰은 최근 CPP코리아 김모 전 사장

으로부터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월드컵회장사업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G&B월드 대표 심○○씨가 월드컵 홍보관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지난 2000년에서 2001년 1월 사이에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수 억 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러나 박 전 실장은 심○○씨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회장사업과 관련해 어떤 로비도 받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정점에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고 말해 이미 박 전 실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빠르게 파악해 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방영하였으며, 중앙일보 2003. 5. 22.자, 경향신문 2003. 6. 12.자, 연합뉴스 2003. 6. 14.자, 문화일보 2003. 6. 14.자 등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가 김○○ 관광협회중앙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을 당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고, 검찰은 김○○가 2000년 3월부터 2000년 7월까지 회장사업대행업체인 CPP코리아와 코오롱TNS월드측으로부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받은 10억원 중 2억원씩을 구(舊)정권 실세 K씨와 P씨 등에게 건넸다는 ‘전언’ 진술을 확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각각 보도하였다.

라. 김○○에 대한 수사 경위

(1) 이 사건 기사에서 취재원으로 기재된 김△△는, 2000년경 2002년 월드컵회장사업권을 가진 CPP코리아의 대표이사였는데, 2002년 월드컵회장사업과 관련하여 CPP본사로부터 2000. 12. 20. 이전에는 총판계약(월드컵 회장이 들어간 제품의 독점판매권 설정계약)이나 OEM(월드컵 회장이 들어간 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11월경부터 2000년 8월경까지 사이에 월드컵 회장사업의 제주총판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9억 여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어, 2002. 9. 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이 법원 2002고합577, 2002고합822(병합)}, 김△△가 그에 대해 항소하여 2003.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2003노 2434, 그 판결에 대해 김△△가 상고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약 11개월만에 구금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 그와 같이 김△△는 구금상태를 면한 후 2003.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당시에는 서울지방검찰청이었다. 이하, ‘서울지검’이라 한다)에서 2000년 당시 CPP코리아의 회장이었던 김○○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시 김○○를 CPP코리아의 회장으로 영입한 이유가 김○○의 인맥을 이용하여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하여 월드컵 회장사업권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이었고, 자신이 김○○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김○○는 그 금

품을 사용하여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월드컵회장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하였다는 것이었다(김△△는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김△△의 2003. 4. 29. 자 진술서 말미에는 “제가 얘기해야겠지만 …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02년 10월 당시에도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김△△가 김○○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앞서 본 김△△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 중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 검찰에 그와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김△△가 구금상태에서 벗어나자 검찰이 김○○와 관련된 사안의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3) 김△△는 위와 같이 진술한 후 2003. 4. 29., 2003. 5. 23., 2003. 6. 2. 및 2003. 6. 13.의 각 검찰조사에서 “정치권 인사 등에 대해 로비를 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와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고 당시 관광협회중앙회장이었던 김○○에게 CPP코리아의 회장으로 취임하도록 부탁하였고, 김○○가 그 취임을 승낙한 후(2000. 3. 28. 취임하였다) 김△△ 자신에게 관광협회중앙회장으로 선출되도록(1999. 12. 28. 선출되었다) 도움을 준 원고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0. 5. 20.경 김○○에게 2억원을 건네주었고, 그 후 김○○가 자신에게 ‘김사장은 걱정말고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등에 비추어 그 2억원이 원고에게 건네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김△△는 검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할 때에는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2003. 5. 31. 처음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대해 2003. 6.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4) 한편 김△△의 그와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은 2003. 6. 11. 김○○를 긴급체포하여 구속하였으나, 김○○는 2003. 6. 13. 김△△와의 대질신문 등에서 일관하여 김△△로부터 2000년 9월경에 급여 명목으로 23,956,700원을 교부받은 외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김○○에 대한 공소제기 및 그에 대한 재판결과

(1) 서울지검 소속 검사 박용호는 그와 같은 김△△의 진술을 근거로 2003. 7. 1.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에게 돈을 준 사람으로 보도된 김○○에 대해 “1999년 11월경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2 소재 신라호텔에서, 김△△로부터 월드컵조직위원회 등 정·관계 및 체육계 등에 로비를 하여 CPP코리아의 월드컵회장사업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관공서 등의 납품 등 월드컵회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명목상 CPP코리아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존에 피고인이 인간관계를 맺어오던 각계의 고위공직자 등을 통해 로비를 함으로써 청탁 내용을 실현키로 마음먹고, 고

위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년 3월경부터 2001년 12월경까지 수 회에 걸쳐 함께 7억 5,000여 만원을 교부받았다(2000. 5. 20. 원고에게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2억원 포함)”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03고단6122, 2003고단8532(병합)}.

(2) 그러나 이 법원은 그와 같은 공소제기에 대해 2003. 12. 11.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인 김△△의 검찰 및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03노11524호), 이 법원은 2004. 10. 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에 대해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04도6958호).

바. 원고에 대한 당시의 수사 상황 등

(1) 2003년 4월경부터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2003. 03. 15. 법률 제6864호)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이른바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의 핵심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거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언론에서는 그 사건의 가장 중심적 인물로 원고를 지목하고 있었으며, 특별검사도 조만간 원고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었고(원고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2003. 6. 16. 특별검사에 소환되어 2003. 6. 17. 긴급체포되었다),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자 원고를 비롯한 대북송금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2) 한편 김△△의 그와 같은 진술이나 김○○의 그와 같은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로비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원고 등이 그에 관하여 실제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2.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실은 원고가 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김○○가 검찰에서 관광협회중앙회장 임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원고에게 2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마치 원고가 김○○로부터 관광협회중앙회장에 임명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성,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 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기사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 기사의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동아일보의 제1면 우측 상단부분에 배치하면서 “박지원씨에 2억 줬다”라는 제목을 중간 제목보다도 훨씬 큰 활자로 표시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 도움 대가’ 진술”이라는 중간 제목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사 가운데에 원고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면서 본문 내용에는 원고가 김○○로부터 돈을 받은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검찰이 원고의 금품수수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원고를 수사할 예정인 것처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권노갑이 피고 동아일보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며 김○○씨를 관광협회중앙회장이 되도록 한 사람은 박지원씨”라고 말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본문에 원고가 “문화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 김○○ 관광협회중앙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김회장이 … 박 장관에게 총회결과를 보고하러 가면서 김△△ 전 CPP코리아 대표에게서 받은 2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배치, 제목과 중간 제목의 문구 및 크기, 원고의 사진 게재, 관련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서는 먼저 기사 제목에 의하여 원고의 범행사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 내용은 그냥 읽어 넘어가기가 쉽고, 본문 내용을 읽어보더라도 원고의 금품수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단순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원고가 김○○로부터 2억원을 수수하였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대북송금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여론의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 사건 기사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원고가 김○○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기사는 중간 제목으로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 도움 대가 진술”이라고 게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의 본문에는 김○○가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김△△가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기사에서의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그 자체로 전직 공직자였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전직 고위공직자였던 원고의 직무 청렴성 등에 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은 물론 이 사건 기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서울지검 특수1부에 대한 취재와 다각적인 확인절차, 김△△ 등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인물에 대한 직접 확인 및 기타 주변 정황에 대한 검토 등 당시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제16대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문화관광부장관, 청와대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원고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그 직무에 속하는 관광협회중앙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김○○로부터 그 임명에 도움을 준 대가로 김○○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는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원고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대다수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5, 을제7호증의 9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가 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00. 5. 20.경 김○○가 원고에게 인사하여야 한다면서 2억원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자신이 현금으로 2억원을 준비하여 김○○에게 주었는데, 그 후 김○○가 자신에게 ‘이제부터는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였고, 또 그 후부터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CPP코리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 김○○가 그 2억원을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김○○는 김△△의 그와 같은 진술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김△△가 본사에서

의 자금지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을 들여 로비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원고가 김○○로부터의 금원수령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거나 입건, 기소되지 않았고 김△△가 김○○에게 교부했다는 돈 중 상당부분을 수표로 교부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의 김△△와 김○○의 각 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로부터 김○○에게 전달되었다는 수표나 돈이 송금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점, 김△△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위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김○○로부터 2억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기사와 같이 보도 내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그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보도에 앞서 더욱더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인 피고 이□□, 이○○, 이△△ 등은 2003. 4. 25.경 김△△의 아버지(성명을 알 수 없다)로부터 월드컵회장 사업권 관련 수사에서 청와대 등 정치권 인사들, 특히 원고가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2003. 4. 27. 직접 김△△를 만나 김△△에 대한 서울지검 특수1부의 수사경위, 직접 관련된 정관계 로비 등을 취재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4. 28.자 동아일보에 원고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보도하였고, 그 후 서울지검의 수사경과를 지켜본 후 2003. 6. 1.경 및 2003. 6. 13. 김△△를 다시 취재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다만 피고들은 서울지검 특수1부 관계자

들로부터도 김△△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김○○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 그 경위를 밝히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원고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대북송금사건 수사 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위한 직접 취재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김△△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하였는바(서울지검 특수1부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당시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해서 원고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이미 피고 동아일보사 발행의 동아일보 및 다른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었던 내용으로 보도가치의 측면에서 그다지 신속하게 보도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2003. 4. 28.경 원고에 대한 그러한 의혹제기가 있었음에도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수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아 김△△의 진술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김△△가 원고에게 2억원을 건네주기 위해 돈을 마련해 주었다는 김○○(그 당시 김○○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다)에 대해서 따로 취재하지 않은 사정, 이 사건 기사의 가장 중요한 취재원인 김△△ 자신이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있었고, 김△△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검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김○○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김△△가 김○○와 관련된 진술을 시작한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하여 김△△ 자신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을 때로 보이는데, 김△△로서는 편취한 돈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님을 주장함으로써 형량의 감경을 피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여러 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편취금액의 지출내역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 이○○, 이△△, 이□□이 김△△로부터 그가 검찰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 김○○가 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었을 것이며, 김△△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 자체도 진술을 할수록 로비 대상이 점점 확대됨은 물론 그 일관성도 없어졌던 사정,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김○○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목에서 “박지원씨에 2억 줬다”,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 도움 대가’ 진술”이라는 제목과 “김○○가 당시 홍콩에서 열린 태평양 아시아관광협회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박 장관에게 총회결과를 보고하러 가면서 김△△ 전 CP코리아 대표에게서 받은 2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는 본문 내용 등에서 김○○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한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는 대북송금사건에 원고가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 사건과 별개로 원고가 월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일반 독자들이 쉽게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상황이었던 사정, 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김△△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사정 등 이 사건 기사의 취재경위, 취재원인 김△△의 진술내용 및 그 신빙성, 취재 당시 원고의 상황,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진술을 믿어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음이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의 위치와 내용 및 크기, 피고 동아일보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이 사건 기사와 유사한 내용이 이미 다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3,000만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3. 7.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아울러 피고 동아일보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 판결 확정 후 첫 번째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제2면 우측 상단에 게재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제1면 우측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나, 앞서 본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면 우측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한다), 피고 동아일보사가 그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씩의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 지〉 정정보도문

본보 2003. 6. 14.자 “박지원씨에 2억 줬다”라는 제목과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 도움 대가’ 진술”이라는 중간 제목 이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관광협회중앙회장 임명에 도움을 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정정보도문 글씨체 및 크기 : 명조체, 28급

본문 글씨체 및 크기 : 명조체, 14급 끝. □

**원고 신문사를 “파렴치한 족벌언론”, “가중스러운 신문”
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9.자 판결 (2001가합79612)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004년 12월 29일 조선일보사

가 문화방송과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5,00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지난 2001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수차례 「뉴스테스크」 프로그램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고 언론사의 지배구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과, 원고의 보도태도, 안티조선운동 등에 관해 보도하자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원고에 대해 “파렴치한 족벌언론”, “해악을 일삼는 족벌신문”,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타락한 기업”, “해악”, “없어져야 할 사회악”, “괴물”, “비정상적인 언론”, “가증스러운 신문”, “기피와 혐오의 대상”, “군림하되 책임지지 않는 언론권력”, “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횡포” 등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사주의 입장에서 억측과 왜곡기사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거나 원고를 “족벌”, “밤의 대통령”, “권력” 등으로 논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단정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기 위한 것이거나 모욕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언론사인 원고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할 신문 사주가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내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제된 사실이 주요한 부분에서 진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논평한 것이므로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 밖에 원고가 유신, 5공 군사독재 시절 왜곡보도를 했고, 특히 5공 시절 원고의 매출액이 4배나 늘고 자산이 9배 급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그와 같은 원고의 급성장이 권력에 영합했던 왜곡보도 덕분이었다고 논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다소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있다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합79612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이 긍 희
2. 엄 기 영
3. 최 용 익
4. 윤 능 호
5. 이 용 마
6. 손 석 희
7. 정 태 인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 문화센터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 택 수, 전 태 진,
김 혜 라, 한 상 혁

변 론 종 결 : 2004. 11. 24.

판 결 선 고 : 2004. 12. 29.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5,000만원,
나. 피고 엄기영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각자 그 중 1,500만원,
다. 피고 이용마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 엄기영과 각자 그 중 1,000만원,
라. 피고 최용익, 손석희, 정태인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각자 그 중 2,000만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01. 9. 7.부터 2004. 12. 29.까지는 연 5%의, 200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윤능호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윤능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3/5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 엄기영은 연대하여 30억원,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 엄기영과 연대하여 피고 최용익, 피고 손석희, 피고 정태인은 그 중 15억원, 피고 윤능호, 피고 이용마는 그 중 10억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01. 9. 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별지 1 내지 11 기재의 각 정정보도문을 그 각 기재 방송 시간, 프로그램, 방송순서 및 방송방법에 따라 방송하고, 만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그 각 기간 안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그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정정보도문마다 매일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내지 9호증, 강제10호증의 1 내지 10, 강제11호증의 1 내지 3, 강제19호증의 1, 2, 강제20호증의 2 내지 30, 강제21호증의 1, 2, 강제22, 2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11, 을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제11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1, 2, 을제13호증, 을제15호증의 1 내지 3, 을제16호증의 1 내지 8, 을제18호증의 1 내지 11, 을제19호증의 1 내지 13, 을제20호증의 1 내지 15, 을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일간지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라 한다)은 'MBC TV'를 통하여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엄기영은 피고 문화방송의 보도본부장으로 뒤에서 보는 '뉴스데스크(매일 21:00 방영)' 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책임자이고, 피고 윤능호, 이용마는 피고 문화방송 소속 기자들로 해당 '뉴스데스크'의 기사를 취재·보도한 사람들이며, 피고 최용익은 피고 문화방송 소속 연출자로 뒤에서 보는 '미디어 비평(매주 토요일 23:05 방영)' 프로그램의 책임 연출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 손석희는 피고 문화방송 소속 아나운서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사람이며, 피고 정태인은 시사평론가로 해당 '미디어 비평'의 기사를 취재·보도한 사람이다.

(2) 원고는 1920. 3. 5. 창간된 신문사로서 1933년 3월경 방응모가 원고를 인수한 이래 방응모·방일영·방우영을 거쳐 1993. 3. 10. 방상훈이 원고의 대표이사(이하 '사주'라 한다)로 취임하였고, 원고 및 그 계열사인 조광출판인쇄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포츠조선의

주식은 모두 사주인 방상훈의 일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3) 한편 스포츠조선의 사장이던 신동호가 1992년 11월경 원고의 전 사주인 방일영을 ‘밤의 대통령’에 비유한 후 ‘밤의 대통령’은 원고의 사주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나. 이른바 안티조선운동

(1) 원고가 1998년 11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지인 ‘월간조선’에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 기획위원장이던 최장집 교수의 사상과 관련하여 특집 기사를 게재한 것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원고를 비판하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2000년 8월에는 각계의 지식인 154명이 ‘조선일보’에 글을 기고하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겠다는 지식인 선언을 하였으며, 그 무렵 60여 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정식으로 발족하는 등 조선일보 반대운동(이른바 ‘안티(anti)조선운동’)이 조직화되기에 이르렀다.

(2) 그런데 그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사 및 그 사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방상훈 사장 퇴진 및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전개하였고, 원고 사옥 앞에서 조선일보반대 시위가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단체들이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등 안티조선운동이 확산되어 갔다.

다.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원고와 방상훈에 대한 기소 등

(1)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국세청은 2001. 2. 8.부터 국내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 6. 20. 원고를 포함한 23개 언론사에 대해 탈루 또는 포탈된 세금 5,056억원을 추징한다는 1차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어 2001. 6. 29. 최종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6개 신문사 및 그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위 6개 신문사에 부과한 추징 세액 및 그 내역을 공개하였다(그에 따라 국세청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약 734억원의 법인소득을 탈루하였고, 원고 법인에게 법인세 약 342억원을 추징할 예정임을 공개하였으나 그 후 2002. 6. 3. 남대문세무서장은 원고 법인에게 부과되었던 약 278억원의 법인세 중 232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2) 그러한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하여는 언론개혁이라며 지지하는 입장과 언론탄압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특히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01. 2. 9.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권력의 언론길들이기 작업이라는 취지로 맹렬하게 비판하여 왔

다. 그 후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결과발표가 있자 원고 소속 기자들은 2001. 6. 27. 조선일보 기자 일동 명의로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원고 등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어 언론 개혁의 이름을 가장한 비판 언론탄압이자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음모로 그 음모에 맞서 싸우겠다는 취지의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한나라당도 2001. 7. 1.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비판적인 언론을 무력화시킨 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7. 2.자 '조선일보' 1면과 5면에 한나라당의 그와 같은 의혹제기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조선일보 반대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원고 소속 기자들의 대정부 성명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은 2001. 7. 3. 원고의 보도태도를 "야당과 손잡고 색깔론을 들먹임으로써 여론을 오도하려한다"며 비판하였으며, '한겨레', '서울신문' 등도 원고의 태도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3) 검찰은 2001. 8. 16. 원고의 대표이사인 방상훈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날 피고 문화방송을 비롯한 KBS, SBS가, 이어 2001. 8. 17.자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 등 신문들이 일제히 "방상훈이 1997년 12월 54억 상당의 주식 6만 5,000주를 명의신탁·매매하는 방법으로 아들에게 우회증여, 63억원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공금 50여 억원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4) 한편 그 과정에서 2001. 9. 5. 국제언론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이하 'IPI'라 한다), 세계신문협회(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이하 'WAN'라 한다) 관련자들이, 2001. 9. 6.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이하 'IFJ'라 한다) 관련자들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지·반대의 대립되는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보도한 데 반해 원고는 '조선일보'에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며 비판한 IPI와 WAN의 견해만을 보도하였다(당시 방상훈은 IPI의 부회장이자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5) 그런 가운데 방상훈은 2001. 9. 4. 63억원의 탈세와 45억원의 횡령 혐의 사실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02. 9. 30. 이 법원 2001고합922호로 공소제기된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위반죄(인정된 횡령금액은 약 40억 여원에 이른다)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6억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공소사실 중 방상훈이 개인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그 비용 합계 526,700,120원을 조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방상훈과 검사 모두 서울고등법원 2002노2753호로 항소하였는데 2004. 1. 14.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방상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방상훈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일부 법인세 및 증여세 포탈 사실과 방상훈이 원고 법인의 부외자금 중 합계 2,372,920,827원을 조광출판인쇄 주식회사 등 원고의 계열회사의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따라서 항소심에서 인정된 방상훈의 횡령금액은 합계 25억 7,000만원이다), 이에 방상훈과 검사 쌍방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04도817호로 상고심 재판이 계속중이다.

라. 원고의 보도 등

(1) 2001년 6월경 미국 공화당 의원 등과 민간단체인 디펜스포럼재단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황장엽이 미국을 방문할 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황장엽의 신변보호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들어 미국 방문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황장엽의 미국 방문에 대하여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과 황장엽의 인권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01. 7. 5.자 '조선일보'에 '황장엽씨 선택에 맡겨야', '정부, 황장엽씨 방미 왜 막나- 김정일 답방 걸림돌 될까봐..'라는 제목으로 황장엽의 미국 방문을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실 및 기사를 각각 게재하였다.

(2) 2001. 8. 15.부터 2001. 8. 21.까지 사이에 분단 후 최초로 북한의 평양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 등 민간 단체가 주축이 된 '8·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측이 개·폐막식장소로 정한 '3대 현장 기념탑' 행사에 우리측이 불참한다는 조건으로 민간 단체 회원 등 337명의 행사참가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우리측 참가자들 중 100여 명이 '3대 현장기념탑' 개막식 행사에, 80여 명이 폐막식 행사에 각각 참석하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방명록의 '만경대 정신'에 서명하는 등 우리 정부의 당초 방북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조선일보' 2001. 8. 21.자 4면과 2001. 8. 23.자 1면에 '8·15 민족통일대축전' 당시 일부 인사들의 개·폐막식 참가 및 방명록 서명을 문제삼는 보도를 하였다.

마.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보도

피고 문화방송은 앞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직후인 2001. 1. 11. 'MBC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보도를 다룬 후 2001. 6. 23.부터 2001. 9. 7.까지 사이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과 2001. 4. 28. 새로 편성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통하여 ① 원고의 지배구조, 사주의 기자 등에 대한 영향력, 사주의 회사 자금 횡령 등과 관련하여 별지 12의 순번 1, 2, 4 기재의 각 기사를, ② 언론사 세무조사의 진행경과 등과 관련하여 별지 12의 순번 6, 별지 13의 순번 1, 2, 별지 14의 순번 1의 나, 아 기재의 각 기사를, ③ 원고의 보도태도 등과 관련하여 별지 12의 순번 3, 5, 별지 13의 순번 3, 별지 14의 순번 1의 마, 사 기재의 각 기사를, ④ 안티조선운동 등과 관련하여 별지 14의 순번 1의 가, 다, 라, 바, 2의 가 내지 다 기재의 각 기사를 각각 보도하였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가. 판단기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의견·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있어야 하나,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또한 그와 같은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고 앞서 본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국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떠한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더욱이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비판적 기능,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 존재에 해당하는 언론사 상호간의 비판에 해당하는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사는 다른 공적 존재와 비교해 보더라도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의 접근이 쉽다는 점,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 언론사 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한편으로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비판은 매우 폭넓게 수인되어야 할 것이며, 언론사는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에 대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의 전제 사실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고 순수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른 공적인 존재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의 경우보다 더 완화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언론기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중요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더욱이 원고는 우리 나라 최대의 신문사로서 공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편집권 및 인사권의 독립과 같은 언론사 내부로부터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이 사건 각 보도 당시는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언론개혁이라는 찬성의 입장과 언론탄압이라는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때로, 원고가 한나라당과 입장을 같이하여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고,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원고의 보도태도 등을 문제 삼아 전례없는 신문구독금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언론사의 지배구조, 언론사 세무조사의 경과, 원고의 보도태도, 안티조선운동 등에 관한 이 사건 각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들이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하여 원고와 달리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 선 보도태도를 취하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다소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언론사인 피고들이 다른 언론사인 원고의 보도태도 등과 관련하여 비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익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먼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배구조, 언론사 세무조사, 원고의 보도태도, 안티조선운동 등에 관한 이 사건 각 보도 부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의견표명에 해당하는지, 그와 같은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 다음, 위법성 및 의견표명의 한계와 관련하여 그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한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의견표명이 그 허용한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 순차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보도

(1) 별지 12의 순번 1 보도

1) 2001. 6. 29.자 ‘뉴스데스크’는 ‘독립하는 길만이...’라는 자막 제목하에 원고 소속 기자들이 2001. 6. 27. 대정부 투쟁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성명서의 내용을 “언론사주에 대한 탄압이 언론사와 나아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요약하여 적시하고 이를 “비장한 결의”라고 평가한 다음, 기자인 피고 윤능호가 그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은 밤의 대통령으로까지 칭송받던 언론사 사주의 위력을 새삼 실감했다”고 단정하고 김서중, 김재홍 교수와의 인터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원고 소속 기자들이 편집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주인 방상훈의 지시에 따라 그러한 내용의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적시하여 원고 소속 기자들이 사주의 의사결정에 예속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결국 그 기자들이 소속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을제1호증, 을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속 기자들이 2001. 6. 27. 발표한 대정부 성명의 내용은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형태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언론개혁을 가장한 언론탄압을 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소속 기자들이 그와 같은 성명서를 채택·발표하기까지 원고의 사주 등 경영진 등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어 위 보도는 주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1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소속 기자들이 발표한 대정부 성명서에는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요구하는 정권의 지시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주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 소속 기자들도 국세청의 고발조치 및 사주 구속 등을 예상하고 그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

게 되었다고 그와 같은 성명채택취지 및 배경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 문화방송, 피고 엄기영, 윤능호로서는 그 성명서의 내용을 위 보도에 적시된 바와 같이 요약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별지 12의 순번 2 보도

1) 국세청의 고발로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1. 7. 10. 자 ‘뉴스데스크’는 ‘사주 물러나라’라는 자막 제목하에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원고의 방상훈 사장 퇴진운동 및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를 “족벌신문”으로 비유한 다음, 기자인 피고 이용마가 원고의 보도 태도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시민연대측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주의 입장에서 억측과 왜곡 기사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고 논평하고, 다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상임대표인 홍근수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원고를 “밤의 대통령”, “신문권력”에 해당한다고 논평하여 결국 원고는 그 사주가 “족벌”, “밤의 대통령”, “권력”에 비유될 만큼 사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와 같은 사주의 영향력 때문에 원고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방상훈의 퇴진운동 및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선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보도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사주의 입장에서 억측과 왜곡 기사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거나 원고를 “족벌”, “밤의 대통령”, “권력”으로 논평한 부분은 다소 단정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위 보도 당시의 상황, 원고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이 없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모욕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언론사인 원고의 지배구조 및 보도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원고로서도 그 정도의 비판은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도 역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별지 12의 순번 4 보도

1) 검찰이 방상훈에 대해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2001. 8. 16. 자 ‘뉴스데스크’는 ‘회사 돈 빼내 썼다’라는 자막 제목 하에 구속영장에 기재된 방상훈의 횡령 혐의 사실을 보도하면서 방상훈이 국세청의 고발장에 원고 법인의 장부외자금으로 표시됐던 50억원 상당의 돈을 그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 또는 개인차량 매수 및 유지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와 관련하여 “사회 부정부패를 감시

해야 할 신문 사주가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내 썼다”고 논평함으로써 원고의 사주가 공금을 무단으로 횡령한 듯한 인상을 주어 결국 원고의 사회적 평가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방상훈이 항소심에서 기소된 횡령 사실 중 일부 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유죄로 인정될 횡령금액이 25억 7,000만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방상훈을 조세포탈 외에 약 45억원의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고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그와 같은 혐의 사실로 방상훈을 구속·기소하여 1심에서 약 40억원의 횡령 사실을 포함한 기소된 대부분의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보도 중 적시된 사실이 주요한 부분에서 진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방상훈은 공적 존재인 언론사의 사주로 역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방상훈에 대한 수사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의 고발조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 그 범죄 피의사실도 방상훈의 개인적인 비위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의 조세 포탈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 및 위 보도 당시 다른 언론들의 보도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보도가 비록 방상훈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되기 전에 방상훈의 범죄 피의사실을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보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상훈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문화방송, 피고 엄기영 등으로서 그 적시된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방상훈이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내 썼다”고 논평한 것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 결국 위 보도 역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언론사 세무조사의 진행경과 등과 관련된 보도

(1) 별지 13의 순번 1 보도

1)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결과 발표 후인 2001. 6. 23.자 ‘미디어 비평’은 ‘긴급진단 - 파렴치한 족벌언론의 탈세’라는 자막 제목 하에 원고를 “파렴치한 족벌언론”으로 논평하고 시사평론가인 피고 정태인이 원고를 포함한 “3대 족벌신문들”이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정치문제로 쟁점화하려는 현상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원고가 세금 규모와 언론사주의 구속을 놓고 정치적 흥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다음, 원고를 “오만한 자세”를 지닌 “언론권력”으로 논평함으로써 원고가 그 발행 신문의 영향력을 믿고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정치문제화하여 국세청의 과세처분과 원고 법인과 사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려 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

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위 보도 중 원고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정치문제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원고를 “족벌신문”, “오만한 자세를 지닌 언론권력”으로 논평한 부분은 언론매체 상호간의 합리적인 비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성격, 전문가의 견해를 통하여 한 주간의 각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위 프로그램의 진행방식, 위 보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언론사인 원고의 보도태도 등에 대한 비평의 과정에서 나온 다소 과장된 의견표명 또는 논평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도 그 비평을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원고를 “파렴치한 족벌언론”과 같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평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 인신공격 내지는 모욕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 중 이 부분 보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별지 13의 순번 2 보도

1) 2001. 7. 7.자 ‘미디어비평’은 ‘뉴스 초점 - 세무조사에 웬 색깔론?’이라는 자막 제목 하에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비판적이던 한나라당의 홍사덕 의원이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른바 ‘속삭임설’을 제기하자, 원고가 한나라당의 의혹제기를 여과없이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는 등 언론사 세무조사를 이른바 ‘색깔논쟁’으로 정치쟁점화 하려는 현상이 있다고 분석하고 그 전제 사실로 2001. 7. 2.자 ‘조선일보’ 1면의 기사 제목과 내용을 인용하고 이를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한 ‘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 제목과 내용을 ‘조선일보’와 대조하여 적시한 다음, 2001. 7. 4.자 ‘한겨레’에 보도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보도는 “자사이기주의에 몰입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에 해당하고 “야당과 손잡고 색깔론을 들먹임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논평함으로써 원고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입장을 같이 하는 한나라당과 영합하여 이른바 ‘색깔론’을 거론하는 등 정부·여당을 비판·공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강제8호증, 을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제목과 내용은 진실하다 할 것이고,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적 의혹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2001. 7. 2.자 ‘조선일보’ 1면에 한나라당의 의혹제기를 큰 제목으로 삼아 보도하고 다시 그 5면과 인터넷 판에서 “언론계 재편 후 정계 개편→재집권”이라는 제목과 “야당, 비판언론에 재갈 물려 답방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의 의혹제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문화방송, 피고 최용익, 손석희가 2001. 7. 2.자 ‘조선일보’ 1면의 기사 제목 및 내용을 인용함에 있어 그 중 한나라당의 의혹제기를 비판한 정부·여당의 태도를 반영한 부분을 누락·편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누락된 부분이 위 ‘조선일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편집이 원고의 기본적인 입장을 왜곡할 정도로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아 위 보도 중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주요한 부분에서 진실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자사이기주의에 몰입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를 하고 있고”, “야당과 손잡고 색깔론을 들먹임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논평한 부분은 언론사인 원고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평으로서 그 표현이 다소 단정적이라고 하여도 허용되는 정도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 위 보도 또한 위법성이 없다.

(3) 별지 14의 순번 1의 나 보도

1) 2001. 7. 17.자 ‘뉴스데스크’는 ‘추기경이 친북?’이라는 자막 제목 하에 2001. 7. 12.자 ‘조선일보’ 독자 투고란에 천주교에 좌익 성향이 많고 친북 색채가 짙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되었는데, 그 전에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에 동참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가 위 사제단이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에 동참을 선언한 데 대한 보복으로 그와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는 인상을 준 다음, 기자인 피고 이용마가 위 사제단이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데 대하여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신문의 해악 폭로”하기 위해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타락한 기업이나 다른 없는 언론을 개혁하는 운동에 동참”한 것이라는 취지로 논평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2001. 7. 12.자 ‘조선일보’ 독자 투고란에 천주교에 좌익 성향이 많고 친북 색채가 짙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그 전인 2001. 7. 9.경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에 동참하기로 선언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보도 중 사실 적시 부분은 진실하다고 인정되나, 원고를 “해악을 일삼는 족벌신문”이나,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타락한 기업”에 빗대어 논평한 부분은 원고의 보도 태도 등에 대한 합리적인 비평의 한계를 넘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이 부분 보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별지 14의 순번 1의 아 보도

2001. 8. 1.자 ‘뉴스데스크’는 ‘홍위병이라니’라는 자막 제목 하에 원고와 한나라당이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같이 하는 데 대하여 시

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략적 합세” 또는 “권언유착”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원고를 “홍위병”, “한나라당의 기관지”, “한나라당의 나팔수”라고 논평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태도를 취해야 할 신문사인 원고가 오로지 한나라당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보도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논평은 언론사인 원고의 보도 태도 등과 관련한 비평으로 다소 단정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보도 당시의 상황, 다른 언론들의 보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논평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를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그와 같은 비평을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위 보도 역시 위법성이 없다.

(5) 별지 12의 순번 6 보도

1) 2001. 9. 7.자 ‘뉴스데스크’는 ‘왜 끌어드리나’라는 자막 제목 하에 기자인 피고 이용마가 IPI, WAN, IFJ와 같은 세계적인 언론인 단체들이 같은 시기에 정부의 언론사 세무 조사와 관련하여 언론탄압과 개혁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중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IPI와 WAN의 주장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그와 반대되는 IFA의 주장은 무시하는 보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와 같은 원고의 보도태도를 “단순한 자사 이기주의를 넘어 사대주의적 발상의 전형”이라고 논평함으로써 원고가 국제적인 언론인들의 단체의 주장을 주체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IPI, WAN의 주장을 IFA의 주장보다 더 중점적으로 보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원고가 2001. 9. 8. ‘조선일보’ 2면에 IFA의 주장을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도 중 논평의 전제되는 사실의 주요한 부분이 진실하다고 인정되며,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보도 태도를 “자사 이기주의”,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논평한 부분은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언론사인 원고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평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수사적 과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 역시 위법성이 없다.

라. 원고의 보도태도 등과 관련된 보도

(1) 별지 13의 순번 3 보도

1) 2001. 7. 14.자 ‘미디어 비평’은 ‘뉴스초점 - 황장엽 방미 보도 분석’이라는 자막 제목하에 황장엽의 미국 방문 문제와 관련하여 찬반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황장엽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2001. 7. 5.자 ‘조선일보’의 사설 및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인용하고 그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향신문', '한겨레'의 관련 보도와 대조하여 적시한 다음, 원고의 보도와 관련하여 "이쯤되면 왜곡이다", "무지의 소치"라고 논평한 2001. 7. 7.자 '한겨레'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진행자인 피고 손석희가 원고가 냉전의 논리 속에서 균형감각을 잃고 미국의 강경 보수 의원들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있다고 논평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보도 중 논평의 전제가 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 등은 진실하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원고의 보도 태도와 관련하여 "왜곡", "무지의 소치", "균형감각을 잃고 미국의 강경 보수 의원들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있다고 논평한 부분은 다소 직설적이긴 하나 언론사인 원고의 보도태도 등을 비평하는 과정에서 나온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의견표명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 역시 위법성이 없다.

(2) 별지 14의 순번 1의 마 보도

1) 2001. 7. 21.자 '뉴스데스크'는 '친일행각 한눈에'라는 자막 제목 하에, 그 날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역사 왜곡 전시회를 소개하는 보도를 하면서 민족언론으로 알려진 원고의 사주가 당시 일본 천황 부분의 건강과 일제의 번영을 기원한 글을 월간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을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주가 원고 발행의 월간지인 '조광' 40년 3월호에 당시 일본 천황 부분의 건강과 일제의 번영을 기원한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보도 중 적시된 사실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 역시 위법성이 없다.

(3) 별지 12의 순번 3 보도

1) 2001. 7. 22.자 '뉴스데스크' 기사는 '권력영합 규탄'이라는 자막 제목 하에 조선일보 반대시민연대 산하 시민단체 대표 400여명이 조선일보사 앞에서 별인 시민규탄대회를 보도하면서 원고가 일제와 유신, 5공 군사독재 시절 왜곡보도를 했고, 특히 5공시절 원고의 매출이 4배나 늘고 자산이 9배 급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그와 같은 원고의 급성장은 권력에 영합하였던 왜곡보도 덕분이었다고 논평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할 신문사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유신 당시 왜곡보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5공화국 당시 원고의 매출이 4배, 자산이 9배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피고가 제대로 제출하

지 않고는 있으나, 을제5호증, 을제21호증의 1 내지 4, 을제22호증, 을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일제 시대 ‘조선일보’와 ‘조광’ 등에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을 위한 조약이라는 등 일부 친일적인 보도를 하였고, 5공화국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보도 태도를 취하여 일부 사실을 달리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매출액이 1980년 104억 여원에서 1987년 610여 억원으로 약 5.9배 가량 성장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고의 매출 및 자산의 성장률 등에 다소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문화방송, 피고 엄기영 등으로서는 위 보도 중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5공화국 당시 그와 같이 급성장하게 된 것은 권력에 영향하였던 왜곡보도 덕분이었다고 논평한 부분은 다소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있고 언론사인 원고의 보도태도 등에 대한 비평으로서 원고로서도 그 정도의 비평은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보도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하겠다.

(4) 별지 14의 순번 1의 사 보도

1) 2001. 7. 26.자 ‘뉴스테스크’는 ‘조선 방사장 고소’라는 자막 제목 하에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이 2001. 6. 19.자 ‘조선일보’의 노사제 관련 기사가 현장취재도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방상훈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위 공공연맹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와 같은 원고의 보도태도를 “해악”으로 논평함으로써 원고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2001. 6. 19.자 ‘조선일보’에 노사제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현장취재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달리 피고 회사 등이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원고의 보도 태도를 “해악”과 같은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평한 것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여 위 보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별지 12의 순번 5 보도

1) 2001. 8. 26.자 ‘뉴스테스크’는 ‘보도 적절했나?’라는 자막 제목하에 2001. 8. 23일자 ‘조선일보’의 8.15 민족통일대축전 당시 우리 측 참가자들의 돌출 행동에 관한 기사를 인용하고, YWCA 사무총장인 김교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취재 기자가

밝힌 취재원인 김숙희 YWCA 회장은 그 기사 내용과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기자인 피고 윤능호가 원고 등이 8.15 민족통일대축전의 긍정적인 성과는 보도하지 않고 일부 참가자들의 돌출행동만을 확대보도하여 우리 나라 내의 대결구도를 확대시켰다고 논평한 다음, 그러한 원고의 보도태도 뒤에는 어떤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 하에 8.15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하여 왜곡·확대 보도를 통하여 우리 나라 내의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을제8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1. 8. 23.자 '조선일보' 1면에 김숙희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 내에 있는 김일성 밀랍상 앞에서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큰 절을 올리고 몇몇은 엎드려서 크게 울먹었다"고 보도한 사실, 그 후 김숙희는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 소속 기자에게 '몇 사람이 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서 위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부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피고 윤능호 등이 김교자로부터 김숙희가 위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부정한 바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더 나아가 원진술자인 김숙희로부터 그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 보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보도 중 적시된 사실의 주요한 부분이 진실하다고 인정되고, 피고 문화방송, 피고 엄기영, 윤능호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원고의 보도태도에 대해 "정치적 의도하에 우리 나라 내의 대결구도를 확대하였다"는 취지의 논평을 한 부분은 언론사인 원고가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 부적절한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평으로 원고로서도 그 정도의 비평은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위 보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안티조선운동 관련 보도

(1) 별지 14의 순번 2의 가 보도

1) 2001. 6. 9.자 '미디어 비평'은 '미디어 이슈 - 별난 언론운동 안티조선'이라는 자막 제목하에 시사평론가인 피고 정태인이 진행자인 피고 손석희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안티조선운동 현상과 그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전제로 안티조선운동을 "80년대 관제언론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KBS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에 비유하면서 "독자권리찾기 운동"이며, "언론개혁·사회개혁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그 의의를 논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1. 5. 17. 원고 사옥 앞에서 벌어진 시위현

장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하면서 “조-웃선일보”, “×까고들 있네”와 같이 원고를 비방하는 욕설을 담은 노래 가사를 자막으로 처리하여 방영하는 한편 반티조선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의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하나의 없어져야 하는 사회악”이라거나 “다양한 얼굴의 괴물” 또는 “한국적 특성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적인 언론”으로 논평하였음은 물론, 충북 옥천군의 반티조선운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운동원의 말을 여과없이 방영하는 방식으로 과거 ‘조선일보’의 친일적 보도 태도를 빗대어 “조선일보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한테 정신대 가라고 했던 신문”이라고 논평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보도에 적시된 반티조선운동 현상과 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 피고 정태인이 반티조선운동의 의의를 논평한 것은 시사평론가로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전문적·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과거 친일적 보도 태도를 빗대어 논평한 부분 역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앞서 본 원고의 일제 시대의 보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러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거칠고 속되게 비방하는 욕설을 하였고 이어 “없어져야 하는 사회악”, “괴물”, “비정상적인 언론”과 같은 극단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평한 것은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가진 존재를 더불어 비판하며 공존할 상대가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까지 삼는 행위로서 결국 원고를 악의적으로 모함한 인신공격 또는 모욕에 해당하여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문화방송, 피고 최용익, 손석희, 정태인은 위 보도가 방송의 생동감을 높이기 위해 반티조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주장 등을 그대로 전파한 것으로서 원진술 내용을 가감없이 보도한 이상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거나 그 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목과 진행자, 시사평론가, 나레이터 등의 해설을 달아 보도한 이상 위 피고들로서는 시민단체들의 주장 내용을 수인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논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위 피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각 보도 중 전문형식의 보도에 대하여 모두 같다).

(2) 별지 14의 순번 2의 다 보도

1) 2001. 6. 30. 자 ‘미디어 비평’은 ‘미디어 이슈 - 민주노총의 반티조선운동’이라는 자막 제목하에 민주노총이 반티조선운동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민주노총 관계

자의 주장을 자료화면으로 방영하는 방식으로 “2001년 6월 초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 당시 조선일보가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 못한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피고 정태인이 민주노총이 안티조선운동에 참여하는 데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논평한 부분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을제24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6. 12.자 ‘조선일보’에 “가뭄 속에 명분 약한 연대파업” 등의 제목으로 2001년 6월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을 불법파업이라는 취지의 사실 및 기사를 게재한 이래 2001. 6. 16.까지 그에 대한 비판적인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나아가 원고가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최용익, 손석희, 정태인으로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분 보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14의 순번 1의 가 보도

2001. 7. 16.자 ‘뉴스데스크’ 기사는 ‘구독거부 확산’이라는 자막 제목 하에 조선일보구독거부 운동 등에 참여하기로 한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련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노동자와 민중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대한 허위 편파 왜곡 보도의 정도가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 가증스러운 신문”으로 “가증스럽다”와 같은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평함으로써 원고를 악의적으로 비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음은 물론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분 보도는 위법하다고 인정된다.

(4) 별지 14의 순번 1의 다 보도

1) 2001. 7. 18.자 ‘뉴스데스크’는 ‘대학가 거부확산’이라는 자막 제목하에 원고를 ‘수구 족벌 언론’이라고 논평한 다음, 조선일보 반대운동에 참여하기로 선언한 대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고를 “부패에 얼룩진”,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존재로 평가하고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군림하되 책임지지 않는 언론 권력의 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횡포가 드디어 정부, 민중저항에 부딪치게 된 것”이라고 논평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위 보도 중 언론사인 원고의 지배구조와 보도태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수구 족벌 언론”이나 “부패에 얼룩진”이라고 논평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를 모함하는 데 이르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도 수인하여야 할 수사적인 과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나,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원고를 “기피와 혐오의 대상”, “군림하되 책임지지 않는 언론 권력”이라고 하거나 원고의 보도 태도 등을 “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횡포”에 해당한다고 논평한 것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비방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보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그 외에 별지 14의 순번 1의 라, 바의 각 기재 보도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등의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참여 사실에 관한 것이고, 별지 14의 순번 2의 나 기재 기사는 원고가 충북 옥천군의 조선일보바로보기옥천시민모임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속보 형식으로 보도한 것인데, 그 내용 중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

가. 손해배상액수

피고 엄기영은 별지 14의 순번 1의 가 내지 다, 사 기재 각 기사의 보도를 통해, 피고 이용마는 그 중 별지 14 순번 1의 나, 다, 사 기재 각 기사의 보도를 통해, 피고 최용익, 손석희, 정태인은 별지 13의 순번 1, 별지 14의 순번 2의 가 기재 각 기사의 보도를 통해 각각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기사를 방송한 자이며 피고 엄기영, 최용익, 이용마, 손석희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대해 보면, 위 각 기사의 보도가 언론사 상호간의 비평의 한계를 넘어 악의적인 비방, 욕설, 모멸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정, 방송은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의사전달이 이루어 지고 일단 방영되면 나면 시청자로서는 그 내용을 재고해 보기 어려워 통상 신문 등에 비해 시청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점, ‘뉴스 데스크’ 및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성격, 공영방송으로서 방송법과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따른 공적책임을 부담하는 방송사인 피고 문화방송의 지위, 신문사로서의 원고가 우리 나라에서 갖는 위상 및 그 발행 신문인 ‘조선일보’의 영향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기사 보도 당시의 상황,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 이 사건 각 보도 경위, 모욕적 표현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빈도 수, 피고 엄기영, 최용익, 이용마, 손석희의 피고 문화방송 내에서의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액수는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는 5,000만원, 피고 엄기영에 대하여는 1,500만원, 피고 이용마에 대하여는 1,000만원, 피고 최용익, 손석희, 정태인에 대하여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한편

이 사건 각 보도 중 피고 윤능호가 취재한 기사의 보도를 통하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된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윤능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문화방송은 5,000만원, 피고 엄기영은 피고 문화방송과 각자 그 중 1,500만원, 피고 이용마는 피고 문화방송, 피고 엄기영과 각자 그 중 1,000만원, 피고 최용익, 손석희, 정태인은 피고 문화방송과 각자 그 중 2,000만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별지 13의 순번 1, 별지 14의 순번 1의 가 내지 다, 사, 2의 가 기재 각 기사의 보도가 있는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최종 보도일인 2001. 9. 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4. 12. 29.까지(그때까지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준부와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200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써 별지 1 내지 1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여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정신적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사정, 이 사건 각 보도 중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 표현은 의견의 표명 또는 논평에 해당하여 정정보도를 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정, 현재 이 사건 각 보도가 나간 후 3년 여의 기간이 경과한 사정, 그 밖에 별지 13의 순번 1, 별지 14의 순번 1의 가 내지 다, 사, 2의 가 기재 각 보도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현재의 상황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정정보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문화방송, 피고 엄기영, 최용익, 이용마, 손석희, 정태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윤능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 지〉 정정보도문, 기사목록 생략 — 편집자 주

□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제기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대법원 2005. 1. 14자 판결 (2001다28619)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999년 7월 20일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원들로서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었던 원고들이 조선일보사와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감청 등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사실 중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조선일보가 지난 1999년 7월 31일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하로 원고들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 과정 중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전 조폐공사 사장과와의 통화내용에 대해 불법 감청을 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하자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일반 독자로 하여금 검찰이라

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295~307면 참조).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을 이 사건 사실에 적시된 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사실의 전체 취지가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제되는 중요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바 있다(2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9집 96~107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1다2861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1. 이 ○ ○
2. 이 △ △
3. 주 ○ ○
4. 길 ○ ○
5. 윤 ○ ○
6. 김 ○ ○
7. 조 ○ ○
8. 최 ○ ○
9. 한 ○ ○
10. 김 △ △
11. 이 □ □
12. 신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2. 정 ○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조선일보사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1. 4. 19. 선고 2000나9859 판결

판 결 선 고 : 2005. 1. 14.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II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로서 1999. 7. 20.부터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위 수사 본부에서 원고 이○○는 본부장, 원고 이△△은 주임 검사, 나머지 원고들은 각 수사 검사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한편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정○○은 피고 회사의 논설 위원이다.

(2) 전 대검찰청公安부장이던 진○○는 1999. 6. 7. 기자들에게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그 보도를 접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대검찰청은 그 진상 조사를 위하여 위 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3) 원고들은 1999. 7. 21. 위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진○○와 전 조폐공사 사장 강○○의 집과 대검찰청公安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진○○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고, 기타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쳤는데, 그 수사 결과 위 사건은 '진○○가 구조 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어 업적을 쌓을 목적으로 행한 1인극'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들은 1999. 7. 30. 진○○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위 수사를 종결하였다.

(4) 그런데 위 수사 과정에서 진○○가 강○○에게 전화를 하여 '집 전화로 통화하면 수

사기관에 추적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기를 보내겠다'고 제안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강○○에게 전하였고, 진○○와 강○○이 그 휴대전화기로 수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5) 한편, 원고 이○○ 등은 위 수사본부에서 위 수사 내용과 관련된 일문일답식의 브리핑을 가끔 하였는데, 1999. 7. 27. 오후에 진○○가 강○○에게 휴대전화기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1999. 7. 29. 오전에는 강○○의 진술임을 전제로 진○○가 강○○에게 “강사장, 우리 딱 한 번 만난 거야... 알았지”, “우리가 5월에 한 번 만난 것밖에 없지”, “당신이 나와 통화한 것은 범죄신고 차원이 아니냐”, “구조 조정은 조폐공사 스스로 한 것인데 내가 뭘 알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맞추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하였으며, 그 때 그 통화 내용이 감청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위 통화 내용은 감청이나 비화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강○○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청취한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6) 위 브리핑 관련 기사를 취재한 피고 회사 소속 이○○ 기사는 ‘검찰이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위 브리핑을 하였고, 그 브리핑 전달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던 통화 내용을 그 다음날에 상세히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기사가 1999. 7. 30.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

(7) 피고 정○○은 위 보도 기사와 기타 다른 언론 보도를 참작하여 ‘검찰의 감청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원심판결 판시 별지 제1 사설(이하 ‘이 사건 제1 사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상응하는 사설을 쓴 다음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 또는 보고 절차, 편집 절차를 거쳐, 1999. 7. 30. 18:00경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1999. 7. 31.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街版)에 이 사건 제1 사설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어 배포하였다.

(8) 그런데 원고 이○○가 위 신문을 보고 피고 회사 소속 서울지방검찰청 법조 출입 기자에게 위 사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자, 피고 정○○은 다시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사설의 제목을 ‘휴대폰도 도청되냐’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고쳐 원심판결 판시 별지 제2 사설(이하 ‘이 사건 제2 사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상응하는 사설을 쓴 다음 내부 편집 절차를 거쳐, 1999. 7. 30. 23:00경 1999. 7. 31.자 조선일보에 이 사건 제2 사설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어 배포하였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

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한편, 언론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보도가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사실의 문면에 의하면, 문제된 각 감청행위의 주체로 '검찰'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들을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위 각 사실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진○○와 강○○ 사이의 휴대전화기 통화 내용을 검찰이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 판단은 검찰이 파업유도 사건을 조사,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들을 전제로 한 것인바, 당시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들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업유도 사건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독자들도 쉽게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은 위 각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특정 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여부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의견 또는 논평이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

결,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신문 등 언론 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인정 사실에 터 잡아, ① 피고가 이 사건 제2 사설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사설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는 내용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그 내용 중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② 이 사건 제1 사설은 ‘검찰의 감청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첫 문단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와 강○○ 간의 휴대폰 통화내역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시한 뒤,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로서, 검찰이 전날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하고, 감청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였으며,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진○○와 강○○이 주고받은 대화체로 되어 있고, 한 달도 더 넘은 시점부터 약 2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눈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바, 비록 위 사설 중에는 통화 내용의 공개가 이례적이라든가 감청이 아님을 강조한 점이 석연치 않고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된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적시한 부분 등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가 사설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위 사설의 제목과 앞서와 같은 사실들을 포함한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설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 사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그 사설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 사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함

것으로 수궁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 또는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위법성의 조각 여부

(1) 원심은, '이 사건 제1 사설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 보도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신문 또는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 또는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판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설은 검찰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휴대전화 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나, 나아가 위 사설 중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거나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함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제1 사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은 피고 회사 및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보도 사실에 터 잡아 위 사설 내용을 작성한 다음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하였고, 위 사설은 평가, 비판, 촉구 따위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한 것인데,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의 증명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진○○와 강○○의 대화를 감청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원고들에게 감청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원고들의 해명을 듣는 등의 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나 다른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를 사실로 잘못 알고서,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위 사설을 작성하여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적시된 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사실의 전체 취지가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제되는 중요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2)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 참조).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사실의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감청 등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사설의 내용은, 그 첫머리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 전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역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다음, 이어서 그와 같이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로, ① 검찰이 전날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② 검찰이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그것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점, ③ 검찰이 공개한 내용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체로 되어 있는 점, ④ 한 달도 더 넘은 시점부터 약 2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눈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등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면서,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추가해명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도청과 감청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 누구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이미 보급대수 1,000만 대를 넘어서 국민의 생필품이 된 ‘휴대폰’ 마저 도청된다면 국민생활은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밝히면서 “도청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수사기관의 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사설 중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주심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고현철

□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가 편집책임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기사의 작성·편집에 간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대외적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05. 1. 25.자 판결 (2003나82497)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05년 1월 25일 한나라당과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이재오 씨가 오마이뉴스 편집자 겸 발행인 오○○ 씨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언론매체가 그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가 불법행위자로서 그 보도로 인한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하고,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편집책임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구체적인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간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대외적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사 작성 및 편집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 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언론이 더 넓은 표현의 자유영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적인 인물이나 공공의 관심 사항에 관한 문제제기가 가지는 영향이나 결과를 고려하여 반드시 문

제를 제기하게 된 전제사실이나 취재원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제보가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이상,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거나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오마이뉴스사가 주간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 3일자 제16, 17면, 인터넷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 4일자 『‘김○○ 테이프 조작 거짓증언’ 대가로 이재오 의원측에서 3,500만원 받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이 이재오 의원을 통하여 금원지급을 대가로 김○○ 씨의 조작진술을 청탁하고 실제로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1집, 251~263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3나8249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4-17

대표자 박 근 혜

2. 이 재 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윤 숙

피고, 항소인 : 1. 오 ○ ○

2. 김 ○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빌딩 505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강

담당변호사 이 지 은

제 1 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2003. 11. 12. 선고 2002가합81643 판결

변 론 종 결 : 2004. 12. 21.

판 결 선 고 : 2005. 1. 25.

주 문 :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당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 오○○는, 자신이 이 사건 보도가 게재된 오마이뉴스 2002의 명목상 발행인 겸 편집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기사의 작성 및 편집에 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언론매체가 그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가 불법행위자로서 그 보도로 인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하고,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편집책임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구체적인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간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대외적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금○○의 제보(이하 금○○의 피고들에 대한 제보를 '2차 제보'라 한다)를 직접화법을 사용하여 여과 없이 인용하거나 그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논평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반론도 지면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이를 함께 보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금○○의 2차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

으로 '원고 한나라당이 원고 이재오를 통하여 금○○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금○○로 하여금 김○○과 함께 테이프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폭로하도록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대가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을 직접 대중에 전달하거나 최소한 보도를 접하는 독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암시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금○○의 2차 제보를 단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내용을 전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가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논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사 내용에 일부 반론 등을 함께 게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원고들은 김○○과 테이프를 조작하였다는 금○○의 제보(이하 '1차 제보'라 한다)가 여러 정황을 통하여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제보 내용을 언론에 유출시켜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를 자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금○○의 2차 제보나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한나라당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언론 매체 종사자임을 자처하는 피고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신들이 발행하는 주간지에 함부로 게재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금○○의 2차 제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이 항공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하고 금○○의 동거녀인 이○○과 원고 이재오의 보좌관 및 원고 한나라당의 당직자를 통하여 원고 이재오와 금○○가 접촉하거나 만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들로서는 금○○가 피고 김○과 접촉하여 2차 제보를 하기에 앞서 원고 한나라당에 김○○과 테이프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을 1차 제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1차 제보 당시 원고 이재오를 비롯한 원고 한나라당의 당직자들이 금○○와 접촉하여 제보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은 원고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므로, 원고 이재오가 금○○를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원고 이

재오가 금○○를 매수하여 테이프 조작에 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도록 하였다는 2차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금○○는 제보 이전에 있었던 김○○의 기자회견이나 관련 병역비리 수사과정 등에서 전혀 언급되거나 관련자로 지목된 적이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을 여기저기에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보한 이후에도 입장을 바꿔 기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등 2차 제보 내용을 선뜻 신뢰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었던 반면 그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발생할지 모르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를 취재하는 기자라면 과연 금○○가 그와 같은 제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제보 내용 자체의 모순은 없는지, 제보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금자료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작업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작성한 피고 김○ 스스로가 이 사건 보도 내용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금○○가 허위제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2차 제보 내용을 기사의 큰 제목 등으로 부각시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보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거나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보도를 통하여 당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서 원고 한나라당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다는 현실적 약의가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는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하여는 언론에 의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또한 완화되어야 하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언론이 더 넓은 표현의 자유영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적인 인물이나 공공의 관심 사항에 관한 문제제기가 가지는 영향이나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 전제사실이나 취재원에 대한 보다 고도의 사실확인 작업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금○○의 2차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와 같은 제보가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인식 아래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이상, 이 사건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의 게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2.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3. 11.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김 대 응

판사 박 인 식

□